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522호
2019. 5. 30.(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27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
제427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
제4277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10
제4278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1
제4279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3
제4280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4
제4281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15
제4282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7
제4283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28
제4284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31

[입법예고]

제2019-1523호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74
제2019-1526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5
제2019-15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6
제2019-1543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7

◈ 고 시

제2019-159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 78
제2019-160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 121
제2019-161호 정비사업의 표준 공동사업시행협약서 ····· 172
제2019-166호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200
제2019-16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 207
제2019-168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 209

제2019-169호 서울특별시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 209
제2019-17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10
제2019-171호 장지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14
제2019-172호 푸른수목원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26
제2019-173호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고시 ····· 242
제2019-17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242
제2019-176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 ····· 247
제2019-177호 2019년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 291

◈ 공 고

제2019-145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 300
제2019-1473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301
제2019-1474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315
제2019-1484호 「2019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 327
제2019-148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 335
제2019-1489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 336
제2019-1493호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336
제2019-1501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 공고 ····· 346
제2019-150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 347
제2019-1505호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선정 결과 공고 ····· 347
제2019-1513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348
제2019-1514호 도시·군관리계획(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 350
제2019-1515호 '서울, 건축 이야기' 제5회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 ····· 355
제2019-1516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 358
제2019-151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358
제2019-1522호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 360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9-4호 2019년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고 ····· 365

◈ 구 고 시

제2019-75호 사고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 367
제2019-7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이촌소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용산구) ····· 369
제2019-8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북구) ····· 371
제2019-77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도봉구) ····· 378
제2019-62호 도시계획시설(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노원구) ····· 381
제2019-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은평구) ····· 385
제2019-65호 도시계획시설(염창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강서구) ····· 388
제2019-10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 392
제2019-1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로구) ····· 394
제2019-10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구로구) ····· 396
제2019-1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고시(구로구) ····· 397
제2019-10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고시(구로구) ····· 401
제2019-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동작구) ····· 405
제2019-42호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동작구) ····· 406
제2019-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동작구) ····· 408
제2019-101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서초구) ····· 410
제2019-7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 413
제2019-74호 도시관리계획(삼전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송파구) ····· 416

◈ 구 공 고

제2019-42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작성 및 열람공고(중구) ····· 419
제2019-5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중랑구) ····· 425
제2019-592호 신내어울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중랑구) ····· 428
제2019-771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429
제2019-5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서대문구) ····· 433

제2019-538호 도시계획시설(샛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변경)(마포구) ····· 434
제2019-7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조성)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양천구) ····· 437
제2019-976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영등포구) ····· 440
제2019-1007호 도시관리계획[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영등포구) ····· 443
제2019-1066호 도시계획시설(봉은역사공원 조성) 사업 공사완료 공고(강남구) ····· 457
제2019-900호 일자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강동구) ····· 457

◈ 사업소고시

제2019-1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472
제2019-1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472
제2019-1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473
제2019-1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473
제2019-1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474
제2019-1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474
제2019-1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475

◈ 사업소공고

제2019-136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 476

◈ 기 타

제2019-139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479
제2019-140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480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27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8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6항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한다.

제19조제3항제8호 중 “품질관리·안전관리”를 “품질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기술심의”을 “건설기술심의”으로, “기술안전”을 “설계안전”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제6항제2호 중 “개발”을 “개발사업 총괄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제6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색역 일대 기반시설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관련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색역 일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8. 수색1 존치관리구역 사업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9. 서북권·도심권 발전 기본구상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41조제3항, 제97조제2항 및 제142조제4항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개방형 직위 지정변경, 현안업무 반영 등 부서 사무분장 정비 등 기구 변동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개방형 직위 지정변경
      (1)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개방형 직위 지정해제(안 제41조)
      (2)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개방형 직위 지정해제(안 제97조)
   나. 현안업무 반영 등 부서 사무분장 정비
      (1)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법무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른 부서 사무분장 정비(안 제10조, 제142조)
      (2) 2019년 1월 1일 금융산업 업무가 경제정책과로 이관되었으나, 투자창업과 분장 사무에 중복되어 있으므로 투자창업과 분장 사무 중관련 조문 삭제 등 정비(안 제11조)
      (3) 안전관리 업무는 안전총괄실로 일원화되었으므로 기술심사담당관 사무분장 중 '안전관리' 용어 삭제 등 정비(안 제19조)
      (4) 안전관리 효율성 및 재난대응 신속대응을 위해 안전총괄과에 상시적 안전감찰 업무 신설(안 제20조)
      (5)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완료 및 일부 사무의 도시공간개선단으로의 이관에 따라 관련 사무 삭제 등 서북권사업과 사무분장 정비(안 제23조의3)

◈ **서울특별시규칙 제427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1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18,472	4,604	328	8,034	5,346	160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475	4,412	319	403	5,181	160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382	903	45	54	350	30
행정	633	450	42	22	94	25
시설	187	116			70	1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전산란, 녹지란, 시설란, 방재안전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359	1,775	103	102	1,293	86
행정	1,248	815	80	40	255	58
전산	85	61	3	3	16	2
녹지	66	34			32	
시설	542	294	2	2	227	17
방재안전	1	1				
행정 · 공업또는시설	80	75			5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행정· 공업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372	1,298	98	149	1,789	38
행정	1,264	680	69	59	430	26
공업	408	29	5	12	360	2
시설	493	204	1	5	276	7
방송통신	59	24	3	12	20	
행정 · 공업또는 시설	38	37		1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사육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705	209	48	79	1,368	1
행정	224	36	15	16	157	
사육운영	4				4	

같은 표 전문경력관 소계란, 나군 소계란, 동물사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경력관 소계	104	28	4	4	68	
나군 소계	51	24	3	4	20	
동물사육	2				2	

같은 표 다군 소계란, 동물사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군 소계	49		1		48	
동물사육	15				15	

같은 표 연구직 계란, 연구사 소계란, 학예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387	29		193	165	
연구사 소계	325	26		158	141	
학예연구	98	21		2	75	

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란, 교수·부교수·조교수또는전임강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 계	520			520		
교수 · 부교수 · 조교수또는전임강사	450			45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대공원 사육운영8급 7명 감축과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다군 6명 증원 조정사항은 해당직위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정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분야 중점보강 등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총 정원을 18,422명에서 18,472명으로 50명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수요 증대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보강(+50명)
      (1) 박물관 건립·운영, 재난상황관리 감찰기능 강화, 공무직· 공공안전관 전담조사팀 신설, '32년 하계올림픽 유치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35명)
      (2) 시립대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교수인력 확충(+15명)
   나. 서울대공원 사육사 직무의 전문경력관 직위지정에 따라 전문경력관 7명 증원, 일반직 5급 이하 7명 감축
   다.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직렬 조정(3명)

◈ 서울특별시규칙 제4277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중 단위업무 제23호의 세부항목 제7호가목 중 (1) 조례 제정안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례 제정안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같은 표 제31호의 세부항목 제2호란 중 “(복지, 안전, 일자리)”를 “(혁신, 청년, 일자리, 복지, 문화, 안전, 도시공간, 주택)”으로 하고, 협조처란 중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을 “젠더자문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강화 및 전결권 조정을 통한 신속한 행정구현을 위해 전기관 공통 사무에 대한 사무전결처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확정방침에 대한 전결권 하향 조정(안 별표 제23호)
   나.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대상(주요정책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분야 확대(안 별표 제31호)

◈ 서울특별시규칙 제4278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23조"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보화사업계획 수립)"을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제시하여야"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자료"를 "심사요청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시 정보화 기본계획 및"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가 및 조례 제7조의 정보화전략위원회에"를 "전문가에게"로 한다.

제9조 중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제안요청서 검토요청 시”를 “사업계획과 제안요청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과목표와 지표를 현행화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검토(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 여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명확성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를 “기술검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 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
3. 과업지시서
4.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결과 통보예정일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관리점검)”을 “(성과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를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정보화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종료 시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명시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대상 조정, 제안요청서 검토기간 단축 등 정보화사업 관리 개선 방안과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정보화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시 '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6조)
나. 사업발주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시 성과목표와 지표를 현행화하여 명시하도록 규정(안 제9조)
다. 기술검토 시 운영 및 유지관리,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과업지시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3항)
라. 제안요청서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안 제11조)
마.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정보화사업 종료 시 정보화사업 계획에 명시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9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279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와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준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제10조제3호(종전의 제1호) 및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3호”를 각각 “제5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10조제4호”를 “제10조제6호”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입실확인서 등 계약증빙자료”로 한다.

제16조제4항 전단 중 “확 정”을 “확정”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위소득50퍼센트”를 “중위소득 5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임대료 보조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준주택(고시원) 거주자의 임대료 지원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의 실질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과 “준주택”을 정의하여 임대료 보조 대상을 명확화(안 제10조)
   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제출이 불가한 준주택(고시원)의 경우 계약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임대료 보조 신청 서류를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실확인서 등 계약증빙자료 제출”로 변경(안 제13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280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가목 중 “189백만원”을 “242백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복지 재산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이전에 집행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19. 1월부터 국가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재산기준이 135백만원에서 188백만원으로 완화되어, 일부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자가 국가 긴급복지 수혜자로 전환됨
      ※ 현행 서울형 긴급복지의 재산합계액 기준은 189백만원임
   나. 이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재산의 기준을 “189백만원 이하”에서 “242백만원 이하”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4호가목)

◈ 서울특별시규칙 제4281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의 본문, 제8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가진 자”를 각각 “가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를 “(지도직공무원으로 한정한다)”로, “자에”를 “사람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가진 자”를 각각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3조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시험예정일로부터”를 “시험예정일부터”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6조 중 “별지 제1~1-1에 의거”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경우에 한하며”를 “경우로 한정하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를 “2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경우에 한하며”를 “경우로 한정하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를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필기시험에 한하며”를 “필기시험에 한정하며”로, “규정에 다른”을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에게만”을 “사람에게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요건은”을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각각”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를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사람”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한다.

제18조제6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란 통·번역 등으로 한다.

제18조제7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지방전문관규정”을 “「지방전문관규정」”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7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급대상란”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를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지방공무원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25조 중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경험이 있는 자”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제47조제3항 중 “자에”를 “사람에”으로 한다.

별표 2의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이 조문을 신설한다.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3의 표의 연구사·연구관란 중 “전공한 자”를 각각 “전공한 사람”으로 하고, ““전공한 자”란”을 ““전공한 사람”이란”으로 하며, “졸업한 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하고, “가진 자를”을 “가진 사람을”로 한다.

별표 4의 표 중 전직류, 농촌생활, 어촌의 지도관란 중 “전공한 자”을 각각 “전공한 사람”으로 하고, 주 1. 중 ““전공한 자”라”를 ““전공한 사람”이라”로, “졸업한 자”를 “졸업한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주 2. 중 “자를”을 “사람을”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으로 한다.

별표 6 중 수질, 대기, 폐기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같은 표 작물 및 농업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을 삭제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14조제1항 관련)"을 "(제18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 표 중 중 환경 직렬의 수질, 대기, 폐기물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가목 표 중 운전 직렬의 9급 란 중 "제1종운전면허(대형)"을 "제1종운전면혀(대형)(1)"로 하고, 비고 제3호 중 "별표 5의2"를 "별표 9의2"로 한다.

수 질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별표 9의3 제1호의 비고 제1호, 제2호의 비고 제2호 및 제3호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3항, 제6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1의 주 3 중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으로 한다.

별표 14의 제목 중 “제18조제6항 및 제22조제4항”을 “제18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4의2의 제목 중 “제18조제6항 및 제22조제5항”을 “제18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제17조제2항 및 제6항 관련”을 “제22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 제1호가목의 표의 행정, 사회복지란 중 “행정, 사회복지”를 “행정, 세무, 사회복지”로 하고 공업(화공)의 5급란 중 “공업화학”을 “화공, 공업화학”으로 하며, 간호의 6급·7급란 중 “정신보건간호사1급”을 “정신보건간호사1급, 정신건강간호사1급”으로 하며, 간호의 8급·9급란 중 “정신보건간호사2급”을 “정신보건간호사2급, 정신건강간호사2급”으로 한다.
같은 표, 환경 5급, 6급·7급, 8급·9급란 중 “폐기물처리, 공업화학”을 각각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으로 하고, 화공운영 6급·7급, 8급·9급란 중 “공업화학”을 “화공, 공업화학”으로 하며, 표 아래의 주 부분 중 “복지건강본부”를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으로 한다.
별표 23 제1호나목의 표 중 공업연구, 환경연구의 연구사란 중 “공업화학”을 각각 “화공, 공업화학”으로 한며, 표 아래 주 부분 중

별표 24의 제목 중 “평정점”을 “평정점(제45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TEPS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국어영어능력평가시험(NEAT)란을 삭제한다.

TEPS	340점이상	276점이상 340점미만	252점이상 276점미만

별지 제1의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의2 서식으로 한다.

별지 1호 서식 및 별지 1호의2 서식(종전의 별지 제1의1호 서식) 중 “필기적감재정용란”을 각각 “필적감정용기재란”으로 한다.

별지 14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2]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제43조제2항 관련)

구분 \ 상당 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임기제		"가급" 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 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 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 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 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 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 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 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 로 재직한 기간	"6호" 로 재직한 기간	"7호" 로 재직한 기간	"8호" 로 재직한 기간	"9호" 로 재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 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 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 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 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 군 27호봉 이상	"가" 군 26호봉 이하	"나" 군 28호봉 이상	"나" 군 27호봉 이하	"다" 군 28호봉 이상	"다" 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지방소방정	소방령 지방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공무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별지 제14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위	채용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문임기제공무원	□ 정책 결정 보좌		□ 특정 업무 분야	

2. 담당예정업무 :

3. 근무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무시간 : 주 시간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1.1.3. 유 의 사 항

1. 채용구분 : 임기제공무원 종류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상당계급 기재
   * 예 : 일반임기제 ○급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 ○급 (상당), 한시임기제 ○급(상당) 전문임기제 ○급 (상당) 등
2.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업무 특성 및 성격 (정책 결정 보좌 또는 특정 업무 분야)을 구분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함
2. 근무시간,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한함
3.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함

1.1.5.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7호 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 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안을 반영한 후속조치와 서울시 공무원의 임용·평정시 자격요건이나 가점대상이 되는 자격증 정비,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요건 조항 중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분야를 규정하여 보완하는 등 현행 인사 규칙을 보다 합리적이며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에 따른 관리운영직 전직시험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함 (안 제22조제5항, 제6항, 별표10, 별표14, 별표14의2, 별표1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기제공무원 등의 근무경력의 시보면제 기준 등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통일함 (별표 22)

다.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및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추가, 연구·지도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을 정비함 (별표 6, 별표 9의2)

1) 6급이하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환경직렬(수질·대기·폐기물)에 “산림기사” 자격증을 신설함

2) 농업연구 및 농촌지도 직렬 대상 자격증 중 “기능사” 관련 자격증을 삭제함

라.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복무기간 중 총3년 초과기간에 대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함 (안 제43조)

마. 자격증 및 외국어 능력 자격증 정비 (별표23, 별표24)

1) 자격증의 가점 취지가 담당직무의 전문성 강화인 점을 감안세무직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자격증인 세무사·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적용함

2)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격증 명칭 변경·통합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간호사”와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를 추가함

3) 외국어능력 자격증 중 TEPS 총점 변경에 따른 성적별 평정점을 변경하여 반영하고, 2015년 시행 종료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삭제함

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요건 조항 중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그 밖에 특수 전문 분야”를 “통·번역 등”으로 규정하여 임기제공무원의 학위·경력 임용요건 보완함 (안 제18조제6항)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오·탈자 정비 등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4282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법 제1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시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사용목적) ① “임차자”는 대부를 받은 재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 목적으로 사용한다.

②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시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공유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결제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사항('19. 3. 28. 시행)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이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받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시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현행 제6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283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굴착 깊이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 중 “처리할 수 있다”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이하 “조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56조 제1항에 따라 도로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관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을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검토하여야”를 “확인·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의 경우에는 관할도로사업소장이,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가 각각 확인·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 중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를 “검토의견서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외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

제19조제3항 중 “연 2회 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를 “수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도로굴착·복구공사 점검에 필요한 자료(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관할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의 적용례) 제2조제6호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별표]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 복구기준(제17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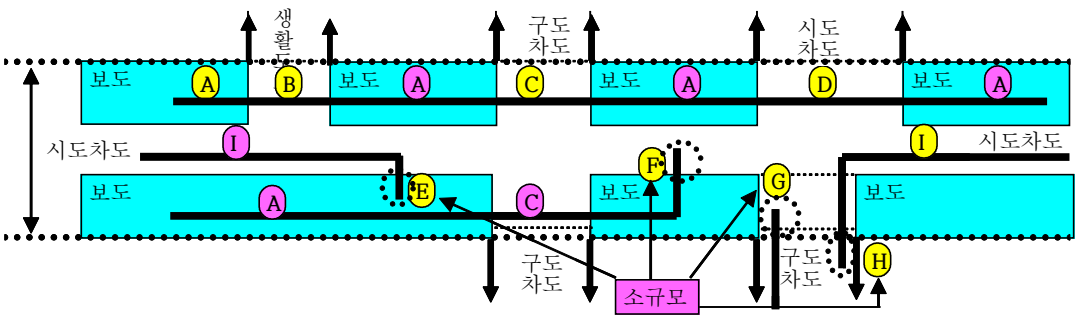

○ 적용구분 → ①은 직접복구비, ②는 감독업무비, ③은 간접복구비

→ 원인자복구 시 직접복구비 ①은 미징수

→ 원인자가 굴착영향구간을 전폭정비 시 ①+③은 미 징수

구분	복구비 부과 구분	복구자	비고
A구간	① + ② + ③은 구기금으로 징수	자치구	보도
B구간	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	도로 사업소	보도공사에 포함된 생활도로 나팔구진입 시도(차도)
C구간	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	도로 사업소	보도공사에 포함된 구도차도 진입 시도(차도)
D구간	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	도로 사업소	보도가 포함된 시도(차도) → 보도는 자치구에서 시도는 도로사업소에서 분리해서 복구
E구간	① + ② + ③은 구기금으로 징수	자치구	시도(차도)에 포함된 보도
F구간	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	도로 사업소	보도에 포함된 소규모 시도(차도)
G구간	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	도로 사업소	구도(차도)에 포함된 소규모 시도(차도)
H구간	① + ② + ③은 구기금으로 징수	자치구	시도(차도)에 포함된 소규모 구도
I구간	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	도로 사업소	시도(차도)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절차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도로굴착·복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의 체계를 종전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굴착공사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의무화(안 제4조)
   다.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주체의 체계화(안 제7조 및 제8조)
   라. 도로굴착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의 사업 적정성 검토 권한 부여(안 제11조)
   마. 상위 법령과 동일한 조항 삭제 등 정비(안 제6조 및 제10조)
   바. 시장의 계획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점검 권한 신설(안 제19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284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자금확보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2조제5호 및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조합설립인가서)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거나 해당 인가사항의 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27조제4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을 말한다.

제7조(분양신청)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와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함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에 이를 명기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매도하려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공람 전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비용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하는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매입여부 및 그 비용, 매입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에게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관계도면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자금확보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7조제5호에 따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27조제6호 및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27조제9호에 따른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⑦ 영 제27조제10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 및 영 제30조제1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별 명세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⑦ 영 제30조제4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⑧ 조례 제35조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⑨ 조례 제35조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43조에 따라 주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별지 제24호서식의 설치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보조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보조대상 시설의 조서·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하는 경우에 정비기반시설등 설치비용 지원 및 그 비용, 지원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보조대상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조할 수 있다.
1.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중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비
2.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받는 국·공유지 비용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보조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조대상자
2. 우선 보조대상 정비사업
3. 보조금액
4. 신청기간
5. 신청서류

제14조(우선 보조대상 정비사업) 시장은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보조대상 정비사업을 선정하여 다른 정비사업보다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보조신청) ①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3조제4호의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정비사업 보조신청서를 자금 사용계획서 및 세부 집행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조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대상 및 금액 결정방법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보조신청자가 제출한 자금 사용계획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여부 및 순위,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대상 및 순위, 금액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보조대상자 통보) 시장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조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

※ 이 서식은 사업 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구분	[ ] 빈집정비사업 [ ] 자율주택정비사업 [ ] 가로주택정비사업 [ ] 소규모재건축사업

신청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날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 시행 구역	구역명칭							시행면적			(㎡)
	위치							건축물	(무허가 동)		동
	거주가구 및 인구				가구(명)			도시계획			지역 지구
	지목별	지목					국공유지 관리청별	관리청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동의 내역	토지면적		토지소유자 수		건축물소유자수	
	대상면적	㎡	대상소유자 수	인	대상소유자 수	인
	동의면적 (동의율)	㎡ (%)	동의자 수 (동의율)	인 (%)	동의자 수 (동의율)	인 (%)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table>
<tr><td rowspan="15">사업시행계획</td><td colspan="2">시행기간</td><td colspan="3">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일</td><td>사업비</td><td colspan="3">원</td></tr>
<tr><td rowspan="4">건축시설</td><td colspan="2">토지 명칭</td><td></td><td>대지면적
(㎡)</td><td></td><td>주용도</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건축면적
(㎡)</td><td></td><td>건축연면적
(㎡)</td><td></td><td>지하면적
(㎡)</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td><td>용적률
(%)</td><td></td><td>최고높이</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층수
(지상·지하)</td><td></td><td>주차장
(대, ㎡)</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주택</td><td>공급
구분</td><td>주택
형태</td><td>동수</td><td>세대수</td><td colspan="4">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분양</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임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5">정비기반시설</td><td colspan="2">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td><td colspan="5">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td></tr>
<tr><td>종류</td><td>규모</td><td>종류</td><td>규모</td><td>시행자</td><td colspan="3">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td><td>건축물
(동)</td><td>철거</td><td>이전</td><td>공작물
(개소)</td><td>철거</td><td colspan="2">이전</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개수대상 건축물</td><td colspan="2">동</td><td>임시수용계획</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 rowspan="2">수용 또는 사용대상</td><td rowspan="2">토지</td><td>필지 수</td><td>면적
(㎡)</td><td>권리자
수</td><td rowspan="2">건축물</td><td>동수</td><td>연면적
(㎡)</td><td>권리자 수</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세입자 대책</td><td>대상 세대수</td><td colspan="2">임대주택
공급세대</td><td colspan="2">주거대책비
지급세대</td><td colspan="2">비대책
세대</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able>

(제3쪽)

건축물 및 건축시설	시행 전 건축물	허가 건축물		동		무허가 건축물	동(새로 발생 동)		
	시행 후 건축물	용도		대지면적	동수	층수	세대수	건축 연면적	비고
		주택	소계						
			분양						
			임대						
		상가							

건축물 및 건축시설	공급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 수					상가 면적 (㎡)	그 밖의 건축 시설면적(㎡)	
			계	㎡	㎡	㎡	㎡			
		계								
		토지등소유자								
		보류시설								
		일반분양								
		임대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구분	분양신청				수인이 1인의 분양 대상자로 신청	권리신고(권리종류별)			
		소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소계			
	신청인수					건 (인)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 인)	권리자별	대상	분양				청산	수용	협의 매수	그 밖의 처분
			소계	주택	상가	그 밖의 용도				
	계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제4쪽)

소유권 외의 권리	대상	건	이전 설정	건	해지 또는 소멸	건	

토지 소유권 변환	총면적	시행 전	사유 토지		국공유지		그 밖의 토지				
	(필지) ㎡	시행 후	시행자 보유					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	그밖의 토지		
			청산	수용	협의 매수	국공 유지 매각	국유지·공유지 무상양수				

토지 용도 변환	용도	택지				공공시설				그 밖의 용도		
		소계	공동 주택	단독 주택	그 밖의 건축 시설	소계				소계		
	시행 전 (㎡)											
	시행 후 (㎡)											

공공시설	신설					용도폐지				
	종류	명칭	규모	설치비용	관리청	종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 (㎡)	무상양여 (㎡)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행 전			시행 후		
	계	토지	건축물	계	토지	건축물

자금운용	총 사업비			수입 추산액		

(제5쪽)

일괄처리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건축협의 ( )	도로공사시행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설치인가 (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 )	국유지사용수익허가 ( )
	공유지대부·사용허가 ( )	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	소방동의·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

년 월 일

( )구청장 ㊞

※ 붙임서류

※ 인가안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9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자 금 확 보 계 획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소요비용추산액	계			
	조사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공사비	소 계		
		대지조성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부대복리시설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기타 공사비		
	보상비	소 계		
		손실보상비		
		이 주 비		
		기 타		
	관 리 비			
	기 타 경 비			
자금조달계획	계			
	시행자 자금			
	국민주택자금			
	금융기관자금			
	시공자대여금			
	토지등소유자 부과금			
	기 타 자 금			

※ 자금확보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변경될 수 있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조합원 번호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권리자			권리의 소재지	도시계획 사설저촉 사항	토지소유권					건축물소유권							국공유토지점유권			지상권		소유권이외의 물권		기타의 권리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목	면적(㎡)			이용상황	유허가			무허가				관리청	1필지의 공부상 면적	점유면적	목적	내용	종류	내용	종류	내용	
							공부상 (1필지)	구역편입	소유		용도 및 형태	1동(또는 1세대)의 연면적	소유면적	건물 번호 (또는 판독근거)	용도	1동의 연면적	소유면적										

※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제출서류	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울시보 제3922호 서울특별시 2019. 5. 30.(목)

[별지 제4호서식]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1. 철거 개요
   가. 사 업 명 :
   나. 시 행 자 :
   다. 사업위치 :
   라. 철거기간 :
   마. 철거 건물현황

(단위 : 동, ㎡)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동											
연면적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에 포함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에 작성

2. 비산먼지 방지대책
   가. 공사용 임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
   - 설치기간 :
   - 높 이 :
   - 길 이 :
   - 가설울타리 재료 :
   ※ 설치계획서 첨부 - 가설울타리 디자인 등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나. 세륜기 설치계획
   - 설치위치 :
   - 설치규격 :
   다. 살수기 설치계획
   라. 도로 청소계획
   마.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계획

3.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
   가. 작업시간
   나. 철거장비 및 시설설치 기준
   다. 소음·진동 측정계획

4. 석면 조사, 해체 및 제거 등 처리계획
   가. 석면함유건축물 조사결과

연번	건축물 개요				석면함유현황				비고
	위치	층수	연면적 (㎡)	용도	자재명	함유량 (%)	부위	면적 (㎡)	

나. 해체 및 제거 등 처리계획

※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등 처리계획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497조의3까지에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과 안전보건공단에서 권고하는 석면해제·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H-70-2012) 참고)하고 석면해체 및 제거 전에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5. 빈집관리 계획

가. 빈집현황

(단위 : 동, 세대수)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동											
연면적											

나. 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및 건물명	건물 용도	건물규모		소유자 또는 관리자	
			층수(지/상), 동호수	연면적	성명	주 소

다. 관리계획 : 순찰, 범죄 예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 안전관리계획

6.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조 합 원 명 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명칭 :)

연번	조합원 번 호	조 합 원				권 리 내 역								세대주 성 명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제출서류	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 ) 동 의 총 괄 표

1. 동의총괄내역(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명칭 :)

가. 토지면적

구 분	동의율 (%)	동의대상 총면적(㎡)			동 의 면 적(㎡)			토지신탁 총면적(㎡)
		계	지상권 비설정토지	지상권 설정토지	계	지상권 비설정토지	지상권 설정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기 타								

나. 토지등소유자

구 분 / 권리유형	전 체 토지등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수				건축물 소유자수
			계	사유지	국공유지	기타	
총소유자수							
동의자수							
동의율(%)							

2. 동의자 명부

연번	조합원 번 호	동 의 대 상 자		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신탁		
					지상권 미설정		지상권 설정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동의총괄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 등 동의서 제출시 첨부하고, 총괄표 작성은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명칭	사업조합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설립목적	사업의 시행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 치			
조합원수	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이내	
동의사항 (토지등 소유자수)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명 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

※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20조)
2.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법 제20조, 제21조)
3.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분 양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접수번호	※ 시행자가 기재		
	주 소	(전화)					조합원번호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						(총 인)			

권리내역	토지	소유토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공 유 여 부	이 용 상 황	취 득 일 자	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부
					공부상	편입	소유				
			(계 필지)								
		점유국공유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관 리 청	점 유 상 황	비 고 〈불하희망여부〉		
					공부상	점유인정					
			(계 필지)								
		건축물	소 재 지	연면적(㎡)	용 도	취 득 일	공 유 여 부	허 가 유 무	무 허 가 건물번호		
			(계 동)								
분양희망의견	주 택 규 모					상가용도 등 및 규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별지 제9호서식]

사업시행계획 동의서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 재 지(허가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본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제출서류	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토 지 등 소 유 자 명 부

(정비사업 명칭 :)

연번	토지등소유자				권 리 내 역								세대주 성 명	동의여부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동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울시보 제3922호 서울특별시 2019. 5. 30.(목)

[별지 제11호서식]

주 민 이 주 대 책

<table>
<tr><td rowspan="2" colspan="2">이주계획</td><td>방 법</td><td>전체 이주대상</td><td>임시수용시설 수용</td><td>융자알선 이주</td><td>기타 이주방법</td></tr>
<tr><td>세대수</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이주시기</td><td rowspan="3">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td><td colspan="6">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td></tr>
<tr><td>총 이주 가구수</td><td>인가 후 3개월 이내 이주가구</td><td>인가 후 6개월 이내 이주가구</td><td>인가 후 9개월 이내 이주가구</td><td>인가 후 1년 이내 이주가구</td><td>기 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방법별내역</td><td rowspan="3">임시수용시설이주</td><td rowspan="2">위 치</td><td rowspan="2">부지면적</td><td colspan="2">설치 세대수</td><td rowspan="2">구 조</td><td rowspan="2">부대시설 종류 및 규모</td><td colspan="3">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td><td colspan="3">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td></tr>
<tr><td>세대당 규 모</td><td>세대수</td><td>토 지 소유자</td><td>토 지 용 도</td><td>토지 사용 방법</td><td>위 치</td><td>주택의 형 태</td><td>주 택 규모별 세대수</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융자알선이주</td><td colspan="4">융 자 규 모</td><td colspan="5">융 자 조 건</td></tr>
<tr><td colspan="4"></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기타이주방법</td><td colspan="4">유 형</td><td colspan="5">방 법</td></tr>
<tr><td colspan="4"></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세입자 임시이주 계 획</td><td colspan="8"></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연번	구 분 (철거·이전·존치 등)	소재지	건 축 물							기 타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전·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	비고
			용 도	구 조	층 수	건축/준공 연도	허 가 유 무	건 축 면 적 (㎡)	건 축 연면적 (㎡)	종 류	용도	규모	성 명	주 소		

제출서류	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울시보 제3522호 서울특별시 2019. 5. 30.(목)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1.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내역

종류	명칭	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	시 행 내용의 범 위	저촉 토지 등의 내역					설 치 비 용				비 용 부 담			비 고
					토 지		건축물		기 타	계	보상비	공사비	기 타	부담자	부 담 내 용	부담액	
					필지수	면 적	동수	연면적									

제출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설치비용계산서 1부.	

(뒤 쪽)

2. 정비기반시설별 저촉 토지 등의 명세

종류	시설별	토지·건축물 소재지	토지 내역							건축물 내역					총평가액	처분방법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	비고
			지목	이용상황	면적(㎡)		소유자		평가액	용도	연면적	소유자		평가액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서식]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조서

1. 정비기반시설 및 관련 토지 내역

종 류	명 칭	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	저촉 국·공유토지			무상양여 국·공유토지			비 고
				필지수	면 적 (㎡)	감 정 평가액	필지수	면 적 (㎡)	감 정 평가액	

2. 정비기반시설 및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무상양여 국·공유지			비 고
		소재지	지 목	면적(㎡)			실 제 이 용	평가액	도면 번호	면적 (㎡)	평가액	도면 번호	
				1필지 공부상	구 역 편 입	정비기반시설편입							

(주) 도면번호: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

제출 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서식]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연번	분양대상자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								비고
	성명	주소	조합원(권리자)/분양설계서 번호	소재지	토지					건축물				총평가액	소재지(또는 부호)	대지		건축시설			총추산액	1주택 1상가 의수인 공유분 양시 지분율	
					지목	면적(㎡)			평가액	용도	연면적(㎡)	허가유무	평가액			분양면적(㎡)	추산액	용도	분양면적(전용면적)	추산액			
						계	소유	점유또는배분															
			/																( )				
			/																( )				
			/																( )				

서울시보 제3522호 서울특별시 2019. 5. 30.(목)

2. 제출서류

가. 국·공유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나. 건축물 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에 의한 경우 각 증빙자료 사본 1부.

다. 토지·건축물 및 대지·건축시설에 관한 평가자료 1부.

라. 건축시설의 용도·규모별 분양면적 및 분양액 산출조서 1부.

마. 건축시설의 공유지분 대지면적 산출조서 1부.

바.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및 주택규모 배정 내역서 1부.

사. 2주택 이상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및 주택규모 배정 내역서 1부.

아. 부대시설·복리시설 분양대상자의 순위별 내역서 1부.

자.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및 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 배정 내역서 1부.

서울시보 제3522호 | 서울특별시 | 2019. 5. 30.(목)

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설계연번					
분양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조합원(권리자) 번호		주 소											시행고시 ~ 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	
분양신청 내용		접수번호				신청일				희망의견										
시행구역 일반현황		구역지정 고시일						구역변경 (추가)고시일							변경지역 포함여부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분양신청기간												
분양대상여부	소유토지 (점유포함)	소유자 성명	소재지	지목	면적(㎡) 공부상 1필지	구역편입	소유또는 점유	배분토지	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	토지이용상황	취득일자 (사유토지)	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	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	토지 건물 분리 여부	평가액 (원)	분양설계 대상여부 대상	제외			
		계																		
	소유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	소유자 성명	소재지	용도	면 적(㎡) 1동(또는1세대) 연면적	소유면적	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	사업자 등록 여부	취득일자	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	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	토지건물 분리여부	평가액 (원)	분양설계 대상여부 대상	제외					
		계																		
	분양대상결정(해당란에 ✔ 표시)	주택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대상( )		해당주택의 소재지					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			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대상( )		종전토지총면적		제외면적		잔여소유면적	토지면적			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90㎡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 대상( )		종전가액		제외가액		권리가액	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			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상가	조례 제38조제2항 대상( ) /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 대상( )		종전건축물 용도		사업자 등록내용		종전가액	주택분양시 분양액		잔여가액		상가 최소 단위추산액						
분양규모	주택	대지위치	지분대지면적	평 형	분양면적	전용면적	분양액		평형배정근거	신청인별 대지주책지분율										
	상가	대지위치	지분대지면적	용 도	분양면적	최소단위 칸수	분양액	순위	분양규모근거	신청인별 대지주책지분율										

서울시보 제3522호 서울특별시 2019. 5. 30.(목)

4. 국·공유지 점유자별 점유 인정면적 내역서

연번	점 유 자				점 유 국·공 유 지								비 고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지목	관리청	면 적 (㎡)				점유 유형	
								1필지 공부상	구역 편입	점 유	점유 인정		

제출서류	1. 측량성과도 1부. 2. 기타 점유증빙자료(현황전경사진, 현황도면 등) 1부.	

서울시보 제3922호 서울특별시 2019. 5. 30.(목)

5. 분양대상자별 청산금 추산내역서

연번	분 양 대상자		①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			② 기준 가액 ① × 비례율 ( )	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							⑥ 분양가액			청산금 추산액		비 고
	성명	주 소	계	토 지	건축 물		③차인 계 ⑤—④	④ 부담액			⑤ 상환액			계	대 지	건 축 시 설	징 수	지 급	
								소계			소계								
																			년 월 일 현재 추산액 이 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 규정의 이전고시 후 조정확정 됩니다

※ 비례율 : 구역 내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가액으로 나눈 값을 말함
※ 이 서식은 정비사업 구역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일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울시보 제3922호 서울특별시 2019. 5. 30.(목)

[별지 제16호서식]

보류지(대지, 건축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소재지 (또는 부호)	지목	용도	면적(㎡)		추산가액	처분방법		비 고
				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	일반분양 (보류면적)		대 상	방 법	
대지	계								

	규모별		소재지	동·층·호	세대수	추산가액		지분대지				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		처분방법	
	계	전용 / 공용				세대당	총가액	면 적		추산가액		세대당	총가액	대상	방법
								세대당	총면적	세대당	총가액				
주택	총계														
		/	계												
		/	계												
		/	계												

	용도별	소재지 (또는 부호)	동·층·호	면 적		추산가액		지분대지		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		처분방법	
				전 체	일반분양 (보 류)	단 위 시 설	총가액	면 적	추 산 가 액	단 위 시 설	총가액	대 상	방 법
기타건축시설													

제출서류	1.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소요비용추산액	계				
	조사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부대시설 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지장물 정비	건축물철거비		
			이 설 비		
		기 타 공사비	임시수용시설 공 사 비		
	보상비	국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			
		손 실 보상비	건 축 물		
			토 지		
			기타손실보상		
		이주비	주거대책비		
			기타 이주보상비		
	관리비	인 건 비			
		등 기 비			
		사무용품비			
		통 신 비			
		회 의 비			
		제세공과금			
		기 타			

(뒤 쪽)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소요비용추산액	부대경비	감정평가수수료			
		채 권 매 입			
		외 주 용역비			
		기 타 경 비	교통영향평가		
			광 고 선 전		
	재건축부담금				
자금조달계획	계				
	시행자 자금				
	국민주택 자금				
	보조 및 융자(행정청)				
	금융기관 자금				
	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				
	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시공자 대여금				
	기 타				
수입추산액	계				
	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	조합원			
		임 대			
		일 반			
		보 류			
	부대복리시설				
	대 지 분 양				
	유상귀속 공공시설				
	기 타				
추정비례율	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		공통부담 소요비용		분양대상토지 등의 총평가액
			징수청산 총 액		지급청산총액

※ 이 서식은 사업시행구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별지(조합원 분담규모와 분담시기)에 작성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8호서식]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연번	조합원(권리자)번호	성명	주소	종전의 토지·건축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				소유권외의 권리의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	소유권외 권리의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분양제외자)
				소재지	토지		건축물		권리의 종류	권리의설정 대상		권리의 내용	권리자			소재지(또는 부호)	대지 분양 면적	건축시설			
					지목	면적	용도	연면적		토지	건축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용도	분양 면적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9호서식]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연번	성 명	주 소	세입자구분				거주주택·상가의 가옥주명 (조합원번호)	계약일	사업자 등록일	권리명세 및 평가액				비고
			주거	상가	대상	비대상				소 재 지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	동산이전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0호서식]

현금 청산 토지 · 건축물의 소유자별 명세

구분	연번	권 리 자			권 리 내 역								권 리 금 액	협 의 매 수 (수용) 일자	청산사유 및 법적근거	비 고
		조합원 (권리자) 번호	성 명	주 소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기 타						
						면 적	평가액	연면적	평가액	종 류	규 모	평가액				
	계															
	계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토지소유권의변환	시행전	계	사유지	관리청별 국공유지								기타
				소계								
		㎡										
		필지										
	시행후	계 ①+②+③+④	① 환지대상	② 현금청산	③ 수용	④ 협의매수	국공유지 불하					
							소계 ⑤+⑥	⑤ 시행자	⑥ 점유자			
		㎡										
		국공유지 무상양여	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				기타	시행자보유토지				
		⑦시행자	소계					②+③+④+⑤+⑦	배분면적			
토지지목의변환	지목		계									
	시행전	면적										
		필지수										
	시행후	면적										
		필지수										
토지용도의변환	시행전 토지	용도	계									기타
		면적(㎡)										
	시행후 대지	용도	계	대지				정비기반시설				기타
				소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소계	도로	공원		
		면적(㎡)										
시행전 건축물	허가유무	계	유허가	무허가								
				소계	특정	신발생						
		동										
	용도별	계										
		동										
	시행별	계	철거	존치	개수	기타						
		동										
	국공유지 점유 건축물	계	정비기반시설점유				일반대지 점유					
			소계	도로	공원							
		동										

(제2쪽)

시행후 건축시설

부지별계획

부지명칭	대지면적(㎡)	용도	주택						기타 건축시설		
			형태	분양임대구분	동수	층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동수	층수	건축연면적
계											

공급계획

공급대상	주택								기타 건축시설			
	규모별세대수(전용면적기준)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계											
계												
토지 등의 소유자												
세입자												
보류시설												
일반공급												

권리자별관리처분(단위: 인)

유형	대상	분양					청산 또는 손실보상				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
		소계	주택	상가	주택및상가		소계	청산	협의보상	수용	
계											
토지 및 건축물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권리

권리의종류	권리자수	이전	소멸	기타
계				

세입자대책

대책구분		세입자세대수
계		
대책	임대주택입주	
	주거이전비지급	
비대책		

(제3쪽)

평가액 및 추산액

토 지	총평가액	㎡ 당			건축물	총평가액	동 당		
		평 균	최 대	최 소			평 균	최 대	최 소

대 지	총평가액	㎡ 당			건축시설	구 분	건 축 연면적	총 평가액
		전 체 평 균	분양대지 평 균	임대부지 평 균		계		
						주 택		
						부대복리 시설		

건축시설의 단위규모별 — 주택

세대당 분양면적(㎡)					세대당 분양가격(원)			
주 택 면 적				지분대지면적	계	건축비	택지비	기 타
계	전 용	공 용	기 타					

건축시설의 단위규모별 — 부대복리시설

종 류	건 축 연면적	지 분 대 지 면 적	총 평 가 액			분양단위 규모별			
			계	건축비	대지비	최소단위 규 모 (㎡)	평 가 액		
							평 균	최 대	최 소

기타 대지 및 시설	종 류			
	면적(㎡)			
	평가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서식]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 · 처분방법

	소 재 지 (또는 부호)	지 목	용 도	면 적(㎡)		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			임대부지 총추산가액	처분방법
				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 면적	임대부지 면적					
대 지	계									

	주택규모별(㎡)				소 재 지 (또는부호)	동층호	세대수	처분가액		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		처분 방법
	계	전 용	공 용	기 타				세대당	총가액	세대당	총가액	
주 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분 양 대 상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또는 부호)	시 설		대 지		대지포함 총 가액
					면 적	총 가액	면 적	총 가액	
부대복리시설									
	분 양 제 외	종 류		규 모					

기타시설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또는 부호)	시 설		대 지		대지포함 추산가액	분양대상 여 부
				면 적	추산가액	면 적	추산가액		

총괄조서	처분대상자	대 지		주 택		부대복리시설		기 타		총추산가액
		면적	추산 가액	세대수	추산 가액	면적	추산 가액	면 적	추산 가액	

제출서류	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3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

연번	대 상 자			거주주택의 가옥주명 (조합원 번호)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이 주 (예 정) 일 자	가족수	거 주 건축물 용 도	임대주택 희망여부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4호서식]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치				

구분	항목	면적 (㎡)	토지비 (원)	공사비 (원)	합계 (원)
설치비용	도로				
	공원				
	녹지				
	소계(①)				
제외비용	국·공유지 토지비				
	무상양도 상당비용				
	소계(②)				
보조 신청금액	(① - ②) x (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보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수수료
	1.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1부. 2.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산출내역서) 1부.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5호서식]

정 비 사 업 보 조 신 청 서

<table>
<tr><td rowspan="5">신 청 인</td><td colspan="2">사업시행자 명칭
(조합, 주민합의체 등)</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대표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2">주된 사무소
소재지</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2">사업구역</td><td colspan="2">구역명칭</td><td></td><td>구역면적</td><td>㎡</td></tr>
<tr><td colspan="2">위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신청금액</td><td colspan="3">금 원정(₩)</td></tr>
</table>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조합설립인가서(주민합의체 신고서) 및 취급은행 통장 사본 2. 보조금 사용계획서 및 세부 집행계획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2018. 12. 31.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구청장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9조)

다. 구청장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조합설립 인가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조례 제27조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으로 함(안 제6조)

마.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도하려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공람 전에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9조)

바. 사업시행자가 조례 제43조에 따라 주요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에 설치비용 보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은 설치비용의 보조를 위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사업비 보조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함(안 제13조)

아. 시장은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보조대상 정비사업’을 선정하여 다른 정비구역보다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보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5조)

차. 시장은 보조신청자가 제출한 자금 사용계획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여부 및 순위,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카. 시장은 보조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

타. 그 밖에 조합설립,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별지 제1~25호서식)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523호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고: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도시담당관(전화: 02)2133-2917, FAX: 02)2133-1070, E-mail: celina56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526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기존 자체감사업무 외에 고충민원 조사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여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와 공공사업 감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의결사항 체계 정비(안 제3조제2항)
다.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4조제2항)
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3년)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4조제3항)
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 등의 자격·신분보장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바. 위원의 감사 등 활동 사항에 감사원 등에서 의뢰하는 감사 등을 추가(안 제7조제2항제6호)
사. 고충민원의 조사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시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15조제1항제1호)
자. 공공사업 감시·평가 관련 전산자료 제출요구 등의 규정 신설(안 제19조제6항 및 제7항)
차. 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카.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22조제2항)
타. 수당 등 지급 근거 정비(안 제28조)
파.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재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7, 팩스: 02)768-8846, 이메일: sudomul@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5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기관 간 사무이관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시정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9년 7월 1일자로 경제정책실에서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이관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제로페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2020년 1월 1일부터 이관하는 것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 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02- 2133-6724, FAX : 02-2133-0822, E-mail : 201211268 @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543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중 공신력, 책임능력에 대한 구체적 평가항목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중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평가항목으로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수탁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②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을 규정함(조례 제7조 제5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동일한 평가항목은 조례 개정이후 별도의 개정절차를 거쳐 삭제 예정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 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02- 2133-6743, FAX : 02-2133-0822, E-mail : iriswh@ 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9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857호, 2018. 2. 9.시행)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을 말한다.
3.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4. “설계도서”란 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5. “물량내역서”란 당해 정비사업의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과 규격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6. “산출내역서”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내역서를 말한다.
7. “검증기관”이란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서 정한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8. “전문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법·같은 법 시행령·조례(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공자 선정 절차 등

제4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4호의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따른다.

제5조(공사원가 자문) ① 조합은 제4조에 따라 설계도서 및 공사원가가 산정된 경우에는 입찰공고 3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 검증기관, 전문기관에 공사원가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공사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을 자문기관에 제공하여야 하고, 자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사원가 자문 결과를 시공자 선정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의 방법) 조합이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조례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자(이하 “공공지원자”라 한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입찰참여자격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금지 등에 관한 사항
5.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거친 경우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계획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 공고 등) 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찰을 공고하고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또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 대상자에게 통지(도달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대안설계 제안 시공내역 제출 등) ① 건설업자등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 등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조합은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등이 제안한 대안설계에 따라 후속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건설업자등의 입찰 내역서 작성 및 조합의 입찰 내역서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반영하여 입찰 추진일정을 계획하는 등 조합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명과 부정당 사유 및 일자를 공공지원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설명회) ① 조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서
 나. 공사도면
 다. 공사시방서
 라. 물량내역서(필요시)
 마.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설계도서 열람방법(도면과 시방서 등은 현장설명회 참여자에게 정보저장매체로 제공할 것)
2. 입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여안내서

가. 입찰제안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예입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라.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및 위반시 제재사항
마.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3.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공사도급계약서(안)
나. 공사도급계약조건 및 특수조건(안)
다. 공사도급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공사도급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찰참여자는 제1항제1호라목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물량내역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도서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물량내역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시공자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 접수 시에 조합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공자 입찰참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등)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한 때에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하고, 건설업자등과 각각 확인·날인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대의원회의 의결)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을 결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 개최 전에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대의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에 따른다.

제15조(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를 선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 개최 전에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 중 어느 하나도 출석한 조합원(서면의결권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에서 제3항에 따라 재투표하는 경우 재투표를 하기 전에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수의계약의 공사비 검증)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계약 체결을 의결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보칙

제17조(입찰보증금)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에 따른 입찰시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등에게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예입조치) ①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정된 건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등의 입찰보증금을 해당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미리 그 뜻을 해당 건설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예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등에게 통지하고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조합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해당 건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총회 상정할 업체 결정에서 제외된 건설업자등 : 대의원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2.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등 : 계약일부터 14일 이내(단,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한 경우 대여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업자등 :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④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제1항과 제2항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9조(입찰참여안내서 등의 작성)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제출 등)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선정계획 :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공고 : 관련 기관에 공고 의뢰 전
3.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 상정 자료 : 소집 공고 전
4.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 결과 : 개최 후 지체없이
5. 현장설명회 결과 : 그 행위가 있은 후 지체없이

제21조(자료의 공개 등)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클린업 시스템 또는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을 말한다)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설계도서 포함)
3. 현장설명회 자료
4. 조합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5. 시공자 선정계약서
6. 입찰참여업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공사비 검증보고서(제16조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제22조(감독) 공공지원자는 조합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113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부정행위 단속) ① 공공지원자 및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시공자 선정 완료시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기간에도 제1항에 따른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10. 09. 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적합하게 선정된 시공자는 이 기준에 의한 시공자로 본다.

부 칙

(2011. 6. 23)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도면 작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방법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의 단서, 제5조, 제9조 제6호, 제9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6.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계획 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1.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계획 결정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 종전의 기준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한 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제 호〉

시공자 입찰참여 의향서

귀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귀 조합에서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참여시공자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팩스번호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여 의향서 접수증

당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제 호	접수자 확인	(인)
참여사명		대표자명	

년 월 일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장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 제 호〉

시공자 입찰참여 신청서

입찰참여자	회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팩스번호	

귀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입찰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장 귀중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여 확인서

접수번호	제 호	접수자 확인	(인)
회사명		대표자	
제출자		전화번호	

당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장 ○○○ (인)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제안서 비교표

구 분			기호1	기호2	기호3	비고
회사 일반 사항	법인명					
	시공능력 평가순위					
	신용등급/부채비율					
	정비사업 준공실적					
공사 금액	조합 작성 설계서 기준 (원안)	순공사비				철거 포함
		제경비				
		총공사비				VAT 포함
	대안계획 (원설계의 대안)	순공사비				철거 포함
		제경비				
		총공사비				VAT 포함
무상제공계획(무상품목)						총금액
사업비 대여	대여자금(원)					
	금리조건					
	상환조건					
청산 방법	부담금 납부시점/방법					
	환급금 지급시점/방법					

구 분		기호1	기호2	기호3	비고
공사 도급 조건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지질여건 변동시 설계변경 여부				
	착공시기				
	공사기간				
	공사비 지급방법				
분양책임/조건					
시공자 책임에 따른 공사지연시 보상조건					
기타사항(무상지분율 환산)					
사실 확인		본 입찰제안서 비교표는 각 사에서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입찰제안서 등 일체 서류와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			
		(인)	(인)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인) (법인 인감)			

(주1)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법·령, 국토교통부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이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다.

(주2) 조합은 무상제공 또는 대안설계계획에 대한 세부 자료를 포함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3) 조합은 필요한 경우 시공자 입찰금액 등 사업비를 기준으로 조합원·일반분양수입 등 수익금을 토대로 무상지분율을 환산하여 조합원에게 비교·제시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입찰참여 안내서

20 .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 목 차 -

Ⅰ. 일반사항

Ⅱ.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규정

Ⅲ. 정비구역 현황

Ⅳ.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 서식 - 입찰제안서

※ 서식 - 이 행 각 서

※ 서식 - 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 서식 - 입찰참여견적서(밀봉)

※ 서식 -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Ⅰ. 일 반 사 항

1. 지침의 성격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사업참여 및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인 동시에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 등을 이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침서이다.

2. 입찰참여자격

가. 입찰보증금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다.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라. 면허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3) (1)에 해당하는 자가 (2)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

(4)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간 공동도급 가능

마.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됨.

3. 시공자 선정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 20 년 월 일 (요일)

나. 입찰참여안내서 배부 (현장설명회시)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00:00(오후 시)
- 장 소 : 조합 사무실 (☎ :)

다. 입찰서 접수 마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 접수)

(1) 제출시한 : 20 년 월 일(요일)00:00까지 (우편접수 불가)

(2) 장 소 : 조합 사무실(※ 입찰서 이외 입찰부속서류 등 방문접수)

라. 시공자 선정 방법

(1) 입찰방법 :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2) 국토교통부 고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고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름.

Ⅱ.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제 1 조】총 칙

1. 이 규정은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번지 일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규정은 제1호의 정비사업의 입찰제안서 작성·입찰참여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3. 이 사업의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결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이 규정 및 낙찰자의 제출서류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시공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5.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해당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을 말한다.
2. "입찰자"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제시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시공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발주자의 총회에서 선정되어 시공계약의 우선권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4. "예정가격"이란 발주자인 조합이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공사원가 범위 안에서 입찰공고 시 공표한 입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 3 조】입찰참여 신청 서류

입찰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입찰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제안서 1부
2. 입찰참여 신청서 1부
3. 이행각서 1부
4. 공람확인서 1부
5. 입찰참여 견적서 1부(밀봉)
6.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1부
7. 무상제공계획서 및 대안설계계획서 1부(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첨부)
8. 산출내역서 1부(화일 첨부)
9. 법인인감증명서 1부
10.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13. 회사 소개서 1부
14.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자료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 각 1부
15.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단, 사용인감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제 4 조】 입찰제안서 및 입찰참여견적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제안서는 조합이 배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입찰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사용인감 가능)
3. 입찰제안서의 금액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숫자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것에 따른다.
4. 입찰제안서의 제출시 입찰참여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조합에 귀속한다.
6. 입찰제안서 제출시 조합이 배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무상제공계획서 또는 대안설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조합에 귀속되며,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설계변경시 응용 및 활용될 수 있다.

【제 5 조】 입찰의 무효

1.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
2.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
3. 현장설명회 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4. 입찰제안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날인을 누락한 업체
5. 담합·타사의 참여 방해 또는 조합의 입찰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가 속한 업체
6.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7.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참여규정(제한사항) 및 제반 조건을 위반한 때
8.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입찰참여안내서를 미수령한 업체
9. 우편 또는 FAX로 접수된 입찰제안서
10.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구비서류가 누락된 입찰제안서
11. 2개 이상의 상이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회사
12. 입찰제안서 제출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업체
13. 국토교통부 고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한 업체

【제 6 조】 입찰의 연기 및 재입찰

1. 발주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공고(내용증명) 또는 입찰참여안내서에 기재된 입찰제안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입찰자의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회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포함하여 재공고 또는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찰을 하여야 한다.
   가. 입찰자가 없는 경우
   나.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참여조건과 입찰자의 제안내용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재입찰이 불가피한 경우

【제 7 조】 시공자 선정방법

1. 투표용지의 기호 순번은 입찰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른다.
2.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비밀투표에 따라 선정한다.
3. 국토교통부 고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고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4.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다만, 미응찰 또는 단독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5.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3인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하거나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6. 입찰자는 조합이 주관하는 합동홍보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제공한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에서는 조합에 미리 등록된 홍보직원에 한하여 조합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 8 조】 계약체결

1. 낙찰자는 총회에서 선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9 조】 입찰제안서 제출 및 입찰 서류 확인

1. 입찰자는 이 규정과 입찰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 마감 이후 입찰제안서 일체를 개봉하되, 입찰제안서 중 입찰참여견적서 개봉 시기는 조합이 입찰참여 업체에 추후 통지하여 건설업자등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1인과 조합임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하여 확인·날인 한다.
3. 개봉된 입찰참여견적서의 원본은 해당 입찰자가 모두 인감 날인 후 발주자의 책임하에 보관・관리한다.

【제 10 조】 건설업자등의 개별홍보 금지

1.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입찰자로 결정된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합동홍보설명회 이외에 임・직원과 홍보요원 등을 동원하여 개별홍보를 하거나 사은품 및 금품제공 등 국토교통부 고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제4항(제34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
3. 조합은 합동홍보설명회의 개최 일시・장소 및 방법 등을 설명회 개최 3일 전까지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원으로 한다.
   - 금융기관 : 은행
   - 예 금 주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 계좌번호 :
2. 입찰보증금은 시공자의 담합 또는 홍보지침 미준수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참여자격의 박탈 등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총회에서 선정이 무효로 된 경우 조합에 귀속된다.
3. 조합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 개최 후 입찰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을 14일 이내 환급하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환급한다. 이 경우 예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조합에 귀속된다.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등

1. 입찰자는 입찰참여안내서 등 입찰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제안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시 입찰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입찰참여 규정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및 정관과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입찰자는 입찰참여안내서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서면으로 입찰자 모두에게 유권해석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 임원 등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

Ⅲ. 정비구역 현황

1. 일반현황

가. 사 업 명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번지 일대

다. 시행면적 : ㎡

라. 기존건축물 동수 :

마. 거주가구 및 인구 :

바. 용도지역 :

사. 조합원수 : 명

2. 사업시행계획

가. 공사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개월

나. 건축시설

- 대지면적 : ㎡
- 주 용 도 :
- 건축면적 : ㎡(건폐율 %)
- 건축연면적 : ㎡(용적률 %)
- 층수 및 동수 :
- 주택규모별 건설세대수(전용면적 기준)

공급구분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합계								
분양								
임대								

다. 정비기반시설

시설구분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비고
	대로	중로	소로						
시설규모									

Ⅳ.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1. 입찰제안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입찰자들이 제안하는 공사비 및 이주비 산출내역을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하게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에서 배부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비 산출내역
   입찰자는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제공한 물량내역서는 단순히 참고용으로서 낙찰자는 향후 계약체결 및 계약후 설계도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3. 사업비 대여에 관한 사항
   입찰자가 사업비를 대여할 수 있는 총액·이율 및 대여조건을 기재하되 조합이 제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항목별로 구분하여 조건을 명시할 수 있고, 담보물 제공에 따른 설정비용 부담사항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4. 이주기간(조합이 시공자의 업무범위에 이주를 포함한 경우에 한함)
   이주기간을 제시한다.
5. 공사기간
   가. 이주 완료 후 철거공사, 부지조성( )개월(철거 및 잔재처리 포함) 이내로 한다.
   나. 착공 후 준공 시까지 ( )개월 이내로 한다.
   다. 공사기간은 총 ( )개월 이내로 한다.
6. 금리기준
   사업비 대여이자와 연체이자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7. 대안설계제안 및 무상제공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안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안설계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가 있고, 공기단축 또는 비용절감이 가능한 설계를 말하며, 입찰참여자는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서와 대안설계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가 계약 체결 후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이 기준에 따라 입찰참여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안이 아닌 대안설계 제안내용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 입찰금액을 제안하여야 한다.
   라. 입찰참여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따라 시공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입찰금액 외에 별도로 설계에 없는 부분을 무상제공 할 항목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금액과 구분하여 그 품목의 규격, 수량 및 금액 등 산출조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체결시 기초자료가 된다.
   마. 대안설계 및 무상제공할 항목을 제안한 입찰참여자가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내역을 반영하여 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 찰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제20 –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발주방식	도급제(지분제)		
전용면적별 건축 아파트세대/ 부대복리시설	㎡ – 세대 (임대) ㎡ – 세대 ㎡ – 세대 ㎡ – 세대 부대복리시설 동 평		
공 사 기 간			

당사는 귀 조합의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1. 입찰참여 견적서 1부(밀봉)
2.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서약서 1부
3. 이행각서 1부
4. 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1부
5. 회사소개서
6. 산출내역서 1부(화일첨부, 밀봉)
7. 무상제공계획 및 대안설계계획서 1부(필요시, 밀봉)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9.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12.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자료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 각 1부

20 . . .

입찰참여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입찰참여 견적서

구 분			입찰조건 및 작성기준	비고
회사 일반 사항	법인명			
	시공능력 평가순위			
	신용등급/부채비율			
	정비사업 준공실적			
공사 금액	원안	순공사비	철거비 포함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첨부
		제경비		
		총공사비	VAT 포함	
	대안	순공사비	철거비 포함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대안 설명서 등 첨부
		제경비		
		총공사비	VAT 포함	
무상제공계획(무상품목)			총금액 기재	품목별 규격, 수량, 금액 등 산출조서 및 도면 첨부
사업비 대여	대여자금(원)		원 이상	조합은 항목별 세분 가능
	금리조건			
	상환조건			
청산 방법	부담금 납부시점/방법		예)계약:중도:입주 =20%:60%:20% 기준	금융비용 제시
	환급금 지급시점/방법			

구 분		입찰조건 및 작성기준	비고
공사 도급 조건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변경 여부와 변경시 기준일 기재	
	지질여건 변동시 설계변경 여부		
	착공시기	이주 완료 후 개월 이내	
	공사기간	착공 후 개월 이내	
	공사비 지급방법	기성/분양	
분양책임/조건			
시공자 책임에 따른 공사지연시 보상 조건			
사실 확인		당사의 입찰제안내용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를 조합에 제출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작성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업체명 : (인) (법인 인감)	

※ 입찰참여자는 공사금액 항목 중 원안인지, 대안으로 제시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당사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귀 조합에서 입찰 지위 및 선정된 시공자의 지위를 박탈하여도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귀 조합이 시공자를 적법하게 선정하지 못하거나,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는 귀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지출한 제반비용의 부담 및 이에 따른 조합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홍보 관련 준수사항 및 위반시 제재조치

연번	구 분	준 수 사 항	제 재 조 치
1	합동설명회	· 1차 : 20 년 ○월 ○일(○) 오후 ○시 · 2차 : 20 년 ○월 ○일(○) 오후 ○시 · 회사소개 및 홍보동영상 : 20분 이내 · 홍보인원 : 회사별 5명 이내 (해당 명단과 증명사진을 조합에 제출)	· 합동설명회 이외 개별홍보활동 일체 금지 · 조합에 등록된 인원 외의 홍보자 적발시 입찰자격 또는 시공자 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2	시공사 선정 총회일	각사 화환 설치 불가. 총회 당일 전단지·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설치 금지. 무대·파라솔·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금지	· 임원,공공지원자등 감시단 통제에 불응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3	홍보물	· 홍보물(카다로그) 1종 : 40쪽 이내 (표지포함) · 전단지 1종 : 국전 양면 · 크기 : A4 규격(반드시 준수) · 수량 : 400매 (조합원 우편물 발송용) · 합동설명회 및 총회시 A.V 시스템은 각사 준비	· 홍보물은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 합동설명회 전까지 조합에 신고된 것만 인정하고, 임의변경시 입찰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4	현수막 설치	· 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부착 일체금지	·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연번	구 분	준 수 사 항	제 재 조 치
5	허위과장 홍보 및 상호비방, 허위사실 유포금지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홍보물 제작 금지 · 경쟁사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 타사를 가장하는 홍보활동 금지	· 타사를 가장하여 고의로 자격박탈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여 및 시공자 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6	부정행위	· 금품살포 및 이권약속 금지 ·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 금지	·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7	기 타	· 모델하우스,무대,파라솔,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 금지(조합이 제공하는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 1개소는 예외로 함)	·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8	공통사항	·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음 · 타사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본 조합에 제재조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서면의 방법으로 하되 반드시 증거자료(사진,녹취,동영상 촬영 등)를 첨부해야 함. · 조합은 제출된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공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년 월 일

위 확약인 업체명 :

대표자 : (인감)

주 소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이 행 각 서

귀 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시공자로 선정되기 전이나 선정된 후에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조합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하여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제출된 모든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하는 지정 기간일까지 어김없이 이행하겠음.
2. 홍보시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범위 안에서만 홍보하고,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
3. 다른 참여업체를 비방하거나 관련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음.
4. 외부인을 고용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유언비어 유포, 상호비방, 과대선전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
5. 어떠한 경우에도 임원, 대의원, 조합원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전 등을 일절 제공하지 않겠음.
6. 낙찰에 관계없이 조합의 결정사항을 이의없이 따르겠음.
7.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후 공사 시공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조합이 차순위 계약상대자와 약정을 체결하여도 이의없이 따르겠음.
8. 입찰지침서 상의 입찰보증금 처리 규정에 따라 이의없이 이행하겠음.
9. 시공자 선정과정 중 국토교통부 고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고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과 귀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조합의 결정에 이의없이 따르겠음.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용도 기입요망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시공자 선정관련 이행각서용)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 확인서

당사는 귀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조합이 작성, 제시한 입찰참여 안내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기에 이에 공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확인자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회사 소개서

□ 회사명 :

○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비 고
	년	년	년	
총 자 산				
자본총계				
부채비율				
매 출 액				
순 이 익				

○ 시공능력 평가 순위(도급순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비 고
	년	년	년	
순 위				
평가액				

○ 정비사업 실적(최근 3년간)

사업명	대지면적	총연면적	건립세대수	착공/준공일	비 고

첨부 : 증빙서류 각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4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

<신 설>	3.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물량내역서"란 당해 정비사업의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과 규격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5. ――――――――――――――――――――――――――――――――규격 등――――――――――――――――――.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7. “검증기관”이란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서 정한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신 설>	8. “전문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 및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제7조제1항――――――――――――――――――――――――――――――― 설계도서(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
② 제2조 제3호의 설계도서 중 설계도	② 제2조제4호――――――――――――

면의 작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따른다.	------ 국토교통부장관-------- ---------- 제4조제1항 ----------.
<신 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법 · 같은 법 시행령 · 조례(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찰의 방법	제2장 시공자 선정 절차 등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조합이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제6조(입찰의 방법) 조합이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삭 제>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지명경쟁으로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	<삭 제>

에는 입찰에 참가할 건설업체등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으며,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하거나 건설업자등을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조합은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건설예정세대수 이내 범위),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입찰참여 신청 및 응찰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삭 제>
제6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조합은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여 신청이 있어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공사원가 자문) ① 조합은 제4조에 따라 설계도서 및 공사원가가 산정된 경우에는 입찰공고 3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 검증기관, 전문기관에 공사원가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공사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을 자문기관에 제공하여야 하고, 자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사원가 자문 결과를 시공자 선정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3장 시공자 선정절차	<삭 제>
제7조(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관리자는 3근무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다만,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선정계획 결정) ① ―――――――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 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	업 e-조합시스템 또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 대상자에게 통지(도달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공고의 내용) 조합은 제8조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현장설명회의 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5. 예정가격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14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제9조(대안설계 제안 시공내역 제출 등) ① 건설업자등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

	등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조합은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등이 제안한 대안설계에 따라 후속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건설업자등의 입찰 내역서 작성 및 조합의 입찰 내역서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반영하여 입찰 추진일정을 계획하는 등 조합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하는 당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명과 부정당 사유 및 일자를 공공지원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선정이 무효로 된 자 2.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로 된 자 3. 제14조 제3항에 따른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로 된 자	
② 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업체명·무효사유 및 처분일자등을 공공관리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현장설명회) ① 조합은 입찰일 4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설명회) ① ----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사업시행인가서 나. ~ 마. (생 략)	1. 사업시행계획인가----------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서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입찰참여자는 제1항 제1호 라목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물량내역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도서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물량내역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1호라목 ----------. ----------.

③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시공자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등이 입찰에 참여----------작성·제출하도록----------.
제11조(입찰제안서의 접수 및 개봉) ① 조합은 밀봉된 상태로 입찰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공자 입찰참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른다.
② 입찰제안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등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각 1인과 조합임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가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 접수시에 조합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공자 입찰참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등) ① 조합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개봉한 때에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하고, 건설업자등과 각각 확인·날인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등)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입찰제안서 비교표의 사본을 제13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삭 제>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대의원 또는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 결정) ① 조합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대의원회의 의결)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을 결정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 개최 전에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대의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등의 결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에 따른다.
제1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① 조합은 제13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미리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과 해당 건설업자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 및 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	

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건설업자등관련자가 제3항에 따른 개별적인 홍보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등은 입찰참여자격의 박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시공자의 선정)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	제15조(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를 선정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 개최 전에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서 제출 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삭 제>

한다.	
⑤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이 출석한 조합원(서면의결권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시공자 선정방법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 중 어느 하나도 출석한 조합원(서면의결권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⑦ 조합은 제6항에 따라 해당 총회에서 재투표 할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에서 제3항에 따라 재투표하는 경우 재투표를 하기 전에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 총회의 ----------공공지원자----------.
제4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삭 제>
제16조(계약의 체결) 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6조(수의계약의 공사비 검증)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계약체결을 의결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장 보칙
제17조(입찰보증금) ① 조합은 건설업자 등에게 입찰시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 ① ――――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에 따른 입찰시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등에게 ――――――

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법·령과 이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한 범위――――――――――――――――――――――.
제20조(자료제출 등)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공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출 등) ―――――――――――――――――――――――――――――― 공공지원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1조(관련자료의 공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클린업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공개 등)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클린업시스템 또는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을 말한다)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공사비 검증보고서(제16조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제22조(감독) 공공관리자는 조합이 이 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공공지원자는 조합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 법 제113조――――――――――――――――――――――――――――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60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857호, 2018. 2. 9.시행)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 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118조제1항·제6항·제7항·제8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제75조제8호·제7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을 하는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업자의 선정 및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시행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제7항제1호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이하 “공동사업시행”이라 한다)하는 조합과 건설업자를 말한다.
2. “조합”이란 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을 말한다.
3.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설계도서”란 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5. “물량내역서”란 해당 정비사업의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과 규격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6. “공사비 내역서”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내역서를 말한다.
7. “사업비”란 정비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대여금과 공사비로 구분한다.
   가. “대여금”이란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조합운영비, 용역비 등을 조합에 대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 “공사비”란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액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8.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9. “검증기관”이란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서 정한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10. “전문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의 선정 및 공동사업시행 협약(법 제118조제7항제1호의 협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하여 법·같은 법 시행령·조례(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동사업시행자 업무 및 부담

제4조(업무 구분) ①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의 대표자는 조합으로 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를 건설업자에게 제공한다.
1. 정비사업에 적합하고, 권리상의 어떠한 제한이나 토지 자체에 일체의 하자가 없으며, 조합 및 조합원이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는 택지
2. 사업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등 관련서류 일체)

③ 건설업자는 대여금을 조합에 제공하고,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내용대로 건축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공사 등을 완료하여 준공한다.

제5조(용역업체 선정) ① 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용역시행 가능 여부 및 시행중인 용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는 용역시행 가능여부 및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복잡한 용역시행인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의견회신 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해위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의견 회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연명 날인하여 체결하고,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약 체결 이전에 조합이 체결한 설계용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 등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연명 날인하여 변경한다.

제6조(사업비 조달 및 부담) ①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입찰 제안서 내용에 대여금과 공사비를 구분하여 조합원들이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 내역 및 조달계획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되는 대여금은 건설업자가 직접 차입하여 조합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지급 보증하여 조합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대출이자 중 입찰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는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하여야 하며, 조합의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대출이자는 전액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건설업자는 공동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설업자가 대여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금리 및 상환기간, 상환조건을 조합운영비 및 용역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⑥ 건설업자는 공사비를 순공사비(간접공사비를 포함한다)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조합원들이 건설업자 공사비 제안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안한 설계도서와 산출내역에 따른 공사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건설업자가 입찰시 제안한 공사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요구하는 설계변경과 자연재해,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로 공사비 증가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친 때에는 건설업자가 입찰시 제안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있다.

⑧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시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내용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그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확정한 공사비에서 건설업자가 공기단축 및 신공법 등의 노력으로 절감한 금액은 건설업자의 수익으로 한다.

제7조(미분양 분담) ① 조합은 준공인가시까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건설업자의 대여금이나 공사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의 현물로 전액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에 활용되는 현물의 가격은 분양 당시의 분양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건설업자 선정 절차 등

제8조(입찰의 방법)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조례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자(이하 “공공지원자”라 한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입찰참여자격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건설업자 선정방법 및 입찰에 관한 사항
4.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금지 등에 관한 사항
5.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건설업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관한 사항
7.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설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거친 이후에 대의원회 소집을 통지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건설업자 선정계획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동의) ① 조합은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시행을 하려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의 동의방법(동의 철회의 방법을 포함한다)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제13조에 따른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6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신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사업시행자 선정시기 등) ①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심의를 득한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따른다.

제12조(공사원가 자문) ① 조합은 제11조에 따라 설계도서가 작성되고 사업비가 산정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입찰공고 30일 전에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 검증기관, 전문기관에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공사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조합 부담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에 대하여 자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공고 등)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찰을 공고하고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또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 대상자에게 통지(도달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14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① 제13조에 따른 입찰공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개요
   가. 공사개요(규모, 면적, 공사기간 등)
   나. 사업비 조달 및 집행
2. 입찰의 일시 및 방법
3. 현장설명회의 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예정가격
   가. 공사비 예정가격
   나. 대여금 예정가격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

② 조합은 건설업자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은 건설업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으며,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조합은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제안한 대안설계에 따라 후속절차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건설업자의 입찰 내역서 작성 및 조합의 입찰 내역서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반영하여 입찰 추진일정을 계획하는 등 조합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설명회) ① 조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심의를 득한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의결서(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서)
   나. 공사도면
   다. 공사시방서
   라. 물량내역서(공사 항목별 세부 물량내역을 포함할 것)
   마.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설계도서 열람방법(도면과 시방서 등은 현장설명회 참여자에게 정보저장매체로 제공할 것)

2. 사업비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가. 대여금 조달 방법 및 상환에 관한 사항
   나. 공사비의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다. 연차별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3. 입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여안내서
   가. 입찰제안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예입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라. 건설업자의 공동홍보방법 및 위반 시 제재사항
   마. 건설업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공동사업시행 협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나. 공동사업시행 공사계약조건 및 특수조건
   다. 공동사업시행 공사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공사협약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신청서 제출) ①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참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여자는 직접 작성한 제15조제2항제1호라목의 물량내역서 및 단가를 기재한 공사비 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제14조제1항제5호의 공사비 예정가격 이하여야 하고,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③ 입찰참여자는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제14조제1항제5호나목의 대여금 예정가격에 대한 대여주체, 대여기간, 이율 등이 기재된 대여금 조달계획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대여금 조달계획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제17조(협약서 작성 및 배부) ① 조합은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회에 참가하는 건설업자에게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는 조례 제7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를 기본으로 이 기준의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하여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른다.

제19조(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등)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한 때에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입찰서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준하여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하고 건설업자와 각각 확인·날인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대의원회의 의결)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결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 개최 전에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대의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에 따른다.

제21조(건설업자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 개최 전에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 중 어느 하나도 출석한 조합원(서면의결권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방법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른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에서 재투표하는 경우 재투표를 하기 전에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22조(협약의 체결 및 협약사항의 관리) ① 조합과 건설업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체결 시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와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근거, 시방서, 자재사양서 등과 제6조에 따른 사업비 내역 및 조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합은 건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 체결 후 조합의 공사비 검증 요청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수의계약의 공사비 검증)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협약 체결을 의결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24조(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 제한) 조합은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협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협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후에는 서울특별시고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보조·지원의 제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 또는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약 체결 전 제2호의 융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조합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 및 종전의 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
2. 조례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금

제26조(입찰보증금)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에 따른 입찰 시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입찰보증금의 예치) ① 조합장은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입찰보증금을 해당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미리 그 뜻을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조합귀속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등에게 통지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조합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해당 건설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총회 상정할 업체 결정에서 제외된 건설업자 : 대의원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2.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 협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업자 :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④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제1항과 제2항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명과 부정당 사유 및 일자를 공공지원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의 제출) 조합장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 선정계획 :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공고 ; 입찰공고 의뢰 전 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전
3. 대의원회 및 총회 상정 자료 : 소집 공고 전
4. 대의원회 및 총회 결과 : 개최 후 지체 없이
5. 현장설명회 결과 : 현장설명 후 지체 없이

제30조(관련자료의 공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클린업 시스템 또는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을 말한다)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설계도서 포함)
3. 현장설명회에 관한 사항
4. 이사회·대의원회 및 조합총회의 의사록
5. 건설업자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6. 입찰참여업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공사비 검증보고서(제23조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 제3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제31조(부정행위 단속) ① 공공지원자 및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건설업자 선정 완료시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기간에도 제1항에 따른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각종 서식) ① 본 건설업자 선정 기준과 관련된 조합원 동의서 등 양식은 별지 서식에 따라야 한다.

②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등과 이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별지 제4호 및 제5호의 서식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3조(감독) 공공지원자는 조합이 이 기준에 따라 건설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113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협조 의무) ①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안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11. 1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선정기준 제18조에 따라 입찰공고 한 조합은 종전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정비사업의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 동의서

사업구분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 재 지(허가유무)		동 수	
		( )			
		( )			
		( )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__항에 따라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첨부 :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 제 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참여 의향서

귀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귀 조합에서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참여 건설업자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팩스번호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여 의향서 접수증

당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제 호	접수자 확인	(인)
참여사명		대표자명	

년 월 일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장 ○○○ (인)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제 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참여 신청서

입찰참여자	회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팩스번호	

귀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입찰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여 확인서

접수번호	제 호	접수자 확인	(인)
회사명		대표자	
제출자		전화번호	

당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장 ○○○ (인)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제안서 비교표

구 분			기호1	기호2	기호3	비고
회사 일반 사항	법인명					
	시공능력 평가순위					
	신용등급/부채비율					
	정비사업 준공실적					
공사비 (원안/ 대안)	직접 공사비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간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법정경비				
		기타 간접공사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공사손해 보험료	○%				
	부가가치세	○%				
	총공사비					

구 분			기호1	기호2	기호3	비고
대여금	관리비	조합운영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신탁등기비				
		소송비용				
		회계감사비/ 세무대행수수료				
		총회비용				
		소계(조합부담이자)				
	외주용역비	※ 필요 외주용역 세부내역 작성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소계(조합부담이자)				
	각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공사비				
		하수도부담금				
		지역난방/도시가스 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소계(조합부담이자)				
	제세 공과금	보존등기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재산세				
		채권매입비				
		법인세				
		법인세 세무조정료				
		소계(조합부담이자)				
	기타경비	※ 민원처리비용, 일반분양비용 등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소계(조합부담이자)				
	보상비	청산대상자 청산금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영업손실 보상비				
		주거이전비				
		기타 이주보상비				
		소계(조합부담이자)				

구 분		기호1	기호2	기호3	비고
	예비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소계(조합부담이자)				
	사업비 대여금 이자 (※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 차입시)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____ ~ ____ 직접대여 여부	
	소계(조합부담이자)				
	총 대여금액				
	총 조합부담이자금액				
무상제공계획(무상품목) (주1)		총금액 기재			품목별 규격, 수량, 금액 등 산출조서 및 도면 첨부
공사 조건	착공시기	이주 완료 후 개월 이내			
	공사기간	착공 후 개월 이내			
사실 확인		본 입찰제안서 비교표는 각 사에서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입찰제안서 등 일체 서류와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			
		(인)	(인)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인) (법인 인감)			

(주1) 조합은 무상제공 또는 대안설계 계획에 대한 세부 자료를 포함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입찰참여 안내서

20 .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 목 차 -

Ⅰ. 일반사항

Ⅱ.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 참여규정

Ⅲ. 정비구역 현황

Ⅳ.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 서식 - 입찰제안서

※ 서식 - 이 행 각 서

※ 서식 - 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 서식 - 입찰참여견적서(밀봉)

※ 서식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Ⅰ. 일 반 사 항

1. 지침의 성격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사업참여 및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인 동시에 총회에서 선정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와의 협약 등을 이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침서이다.

2. 입찰참여자격

가. 입찰보증금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다.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라. 면허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

마.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됨.

3.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 20 년 월 일 (요일)

나. 입찰참여안내서 배부 (현장설명회시)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00:00(오후 시)

- 장 소 : 조합 사무실 (☎ :)

다. 입찰서 접수 마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 접수)

(1) 제출시한 : 20 년 월 일(요일)00:00까지 (우편접수 불가)

(2) 장 소 : 조합 사무실(※ 입찰서 이외 입찰부속서류 등 방문접수)

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방법

(1) 입찰방법 :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2)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름.

Ⅱ.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제 1 조】총 칙

1. 이 규정은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번지 일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규정은 제1호의 정비사업의 입찰제안서 작성·입찰참여 자격에 관한 사항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3. 이 사업의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결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이 규정 및 낙찰자의 제출서류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의 일부가 된다.
5.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해당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을 말한다.
2. "입찰자"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제시된 자격 조건을 갖추고,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발주자의 총회에서 선정되어 공동사업시행 협약의 우선권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4. "사업비 예정가격"이란 "공사비 예정가격"과 "대여금 예정가격"의 합계를 말한다.
5. "공사비 예정가격"이란 발주자인 조합이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공사원가 범위 안에서 입찰공고 시 공표한 입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6. "대여금 예정가격"이란 발주자인 조합이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조합운영비, 용역비 등을 산출하여 입찰공고 시 공표한 가격으로서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 3 조】입찰참여 신청 서류

입찰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입찰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제안서 1부
2. 입찰참여 신청서 1부
3. 이행각서 1부
4. 입찰참여 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1부
5. 입찰참여 견적서(대여금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포함) 1부(밀봉)
6.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1부
7. 무상제공계획서 및 대안설계계획서 1부(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첨부)
8. 산출내역서 1부(화일 첨부)
9. 법인인감증명서 1부
10.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13. 회사 소개서 1부
14.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자료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 각 1부
15.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단, 사용인감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제 4 조】 입찰제안서 및 입찰참여견적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제안서는 조합이 배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입찰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사용인감 가능)
3. 입찰제안서의 금액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숫자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것에 따른다.
4. 입찰제안서의 제출시 입찰참여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조합에 귀속한다.
6. 입찰제안서 제출시 조합이 배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무상제공계획서 또는 대안설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조합에 귀속되며,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설계변경시 응용 및 활용될 수 있다.

【제 5 조】 입찰의 무효

1.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
2. 공사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
3. 현장설명회 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4. 입찰제안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날인을 누락한 업체
5. 담합·타사의 참여 방해 또는 조합의 입찰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가 속한 업체
6.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7.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참여규정(제한사항) 및 제반 조건을 위반한 때
8.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입찰참여안내서를 미수령한 업체
9. 우편 또는 FAX로 접수된 입찰제안서
10.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구비서류가 누락된 입찰제안서
11. 2개 이상의 상이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회사
12. 입찰제안서 제출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업체
13.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한 업체

【제 6 조】 입찰의 연기 및 재입찰

1. 발주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공고(내용증명) 또는 입찰참여안내서에 기재된 입찰제안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입찰자의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회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포함하여 재공고 또는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찰을 하여야 한다.
   가. 입찰자가 없는 경우
   나.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참여조건과 입찰자의 제안내용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재입찰이 불가피한 경우

【제 7 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방법

1. 투표용지의 기호 순번은 입찰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른다.
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비밀투표에 따라 선정한다.
3.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등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4.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2명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다만, 미응찰 또는 단독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5.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3명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거나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6. 입찰자는 조합이 주관하는 합동홍보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제공한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에서는 조합에 미리 등록된 홍보직원에 한하여 조합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 8 조】 협약체결

1. 낙찰자는 총회에서 선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낙찰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9 조】 입찰제안서 제출 및 입찰 서류 확인

1. 입찰자는 이 규정과 입찰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 마감 이후 입찰제안서 일체를 개봉하되, 입찰제안서 중 입찰참여견적서 개봉 시기는 조합이 입찰참여 업체에 추후 통지하여 건설업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1인과 조합임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하여 확인·날인 한다.
3. 개봉된 입찰참여견적서의 원본은 해당 입찰자가 모두 인감 날인 후 발주자의 책임하에 보관·관리한다.

【제 10 조】 건설업자의 개별홍보 금지

1.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입찰자로 결정된 건설업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합동홍보설명회 이외에 임·직원과 홍보요원 등을 동원하여 개별홍보를 하거나 사은품 및 금품제공 등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제4항(제34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
3. 조합은 합동홍보설명회의 개최 일시·장소 및 방법 등을 설명회 개최 3일 전까지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원으로 한다.
   - 금융기관 : 은행
   - 예 금 주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 계좌번호 :
2. 입찰보증금은 건설업자의 담합 또는 홍보지침 미준수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참여자격의 박탈 등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총회에서 선정이 무효로 된 경우 조합에 귀속된다.
3. 조합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 개최 후 입찰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을 14일 이내 환급하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 환급한다. 이 경우 예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조합에 귀속된다.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등

1. 입찰자는 입찰참여안내서 등 입찰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제안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시 입찰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하여 입찰참여 규정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정관과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입찰자는 입찰참여안내서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서면으로 입찰자 모두에게 유권해석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임원 등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

Ⅲ. 정비구역 현황

1. 일반현황

가. 사 업 명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번지 일대

다. 시행면적 : ㎡

라. 기존건축물 동수 :

마. 거주가구 및 인구 :

바. 용도지역 :

사. 조합원수 : 명

2. 사업시행계획

가. 공사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개월

나. 건축시설

- 대지면적 : ㎡
- 주 용 도 :
- 건축면적 : ㎡(건폐율 %)
- 건축연면적 : ㎡(용적률 %)
- 층수 및 동수 :
- 주택규모별 건설세대수(전용면적 기준)

공급구분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합계								
분양								
임대								

다. 정비기반시설

시설구분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비고
	대로	중로	소로						
시설규모									

Ⅳ.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1. 입찰제안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입찰자들이 제안하는 공사비 및 대여금 산출내역을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하게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에서 배부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비 산출내역
   입찰자는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제공한 물량내역서는 단순히 참고용으로서 낙찰자는 향후 협약체결 후 설계도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3. 대여금 대여조건
   입찰자는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대여금에 대한 금액, 금리, 상환기간, 상환조건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제공한 대여금 내역서는 단순히 참고용으로서 낙찰자는 향후 협약체결 및 협약 후 조합이 제공한 대여금 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을 이유로 사업에 필요한 외주 용역의 시행을 거부할 수 없다.
4. 공사기간
   가. 이주 완료 후 철거공사, 부지조성( )개월(철거 및 잔재처리 포함) 이내로 한다.
   나. 착공 후 준공 시까지 ( )개월 이내로 한다.
   다. 공사기간은 총 ( )개월 이내로 한다.
5. 금리기준
   사업비 대여이자와 연체이자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6. 대안설계제안 및 무상제공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자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안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안설계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가 있고, 공기단축 또는 비용절감이 가능한 설계를 말하며, 입찰참여자는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서와 대안설계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가 계약 체결 후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이 기준에 따라 입찰참여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안이 아닌 대안설계 제안 내용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 입찰금액을 제안하여야 한다.
   라. 입찰참여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따라 시공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입찰금액 외에 별도로 설계에 없는 부분을 무상제공 할 항목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금액과 구분하여 그 품목의 규격, 수량 및 금액 등 산출조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체결시 기초자료가 된다.
   마. 대안설계 및 무상제공 할 항목을 제안한 입찰참여자가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내역을 반영하여 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 찰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제20 –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구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사업발주방식	공동사업시행		
전용면적별 건축 아파트세대/ 부대복리시설	㎡ – 세대 (임대) ㎡ – 세대 부대복리시설 동	㎡ – 세대 ㎡ – 세대 평	
공 사 기 간			

당사는 귀 조합의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1. 입찰참여 견적서(대여금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포함) 1부(밀봉)
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홍보 지침 및 준수서약서 1부
3. 이행각서 1부
4. 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1부
5. 회사소개서
6. 산출내역서 1부(화일첨부, 밀봉)
7. 무상제공계획 및 대안설계계획서 1부(필요시, 밀봉)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9.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12.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자료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 각 1부

20 . . .

입찰참여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입찰참여 견적서

구 분			입 찰 조 건	비고
회사 일반 사항	법인명			
	시공능력 평가순위			
	신용등급/부채비율			
	정비사업 준공실적			
공사비 (원안 /대안)	직접 공사비	재료비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첨부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간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법정경비		
		기타 간접공사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	○%		
	총공사비			

구 분			입 찰 조 건			비고
대여금	관리비	조합운영비	(금액) _____원	(이자율) _____%	(대여기간) ____ ~ ____	※건설업자 직접대여, 또는 조합명의 금융기관 차입 여부 명시 ※연체이율 명시
		신탁등기비				
		소송비용				
		회계감사비/ 세무대행수수료				
		총회비용				
		소계(조합부담이자)	※ 금액에 기간과 이자율 곱하여 산정			
	외주용역비	※ 필요 외주용역 세부내역 작성	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각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_____원	_____%	____ ~ ____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공사비				
		하수도부담금				
		지역난방/도시가스 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제세 공과금	보존등기비	_____원	_____%	____ ~ ____	
		재산세				
		채권매입비				
		법인세				
		법인세 세무조정료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기타경비	※ 민원처리비용, 일반분양비용 등	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보상비	청산대상자 청산금	_____원	_____%	____ ~ ____	
		영업손실 보상비				
		주거이전비				
		기타 이주보상비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예비비		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사업비 대여금 이자 (※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 차입시)		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총 대여금액		_____원	_____%	____ ~ ____	
	총 조합부담이자금액		_____원			

구 분		입 찰 조 건	비고
무상제공계획(무상품목)		총금액 기재	품목별 규격, 수량, 금액 등 산출조서 및 도면 첨부
공사 조건	착공시기	이주 완료 후 개월 이내	
	공사기간	착공 후 개월 이내	
사실 확인		당사의 입찰제안내용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를 조합에 제출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작성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업체명 : (인) (법인 인감)	

※ 입찰참여자는 공사금액 항목 중 원안인지, 대안으로 제시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당사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귀 조합에서 입찰 지위 및 선정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의 지위를 박탈하여도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귀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적법하게 선정하지 못하거나,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는 귀 조합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해 지출한 제반비용의 부담 및 이에 따른 조합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홍보 관련 준수사항 및 위반시 제재조치

연번	구 분	준 수 사 항	제 재 조 치
1	합동설명회	· 1차 : 20 년 ○월 ○일(○) 오후 ○시 · 2차 : 20 년 ○월 ○일(○) 오후 ○시 · 회사소개 및 홍보동영상 : 20분 이내 · 홍보인원 : 회사별 5명 이내 (해당 명단과 증명사진을 조합에 제출)	· 합동설명회 이외 개별홍보활동 일체 금지 · 조합에 등록된 인원 외의 홍보자 적발시 입찰자격 또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총회일	각사 화환 설치 불가. 총회 당일 전단지·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설치 금지. 무대·파라솔·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금지	· 임원,공공지원자등 감시단 통제에 불응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3	홍보물	· 홍보물(카다로그) 1종 : 40쪽 이내 (표지포함) · 전단지 1종 : 국전 양면 · 크기 : A4 규격(반드시 준수) · 수량 : 400매 (조합원 우편물 발송용) · 합동설명회 및 총회시 A.V 시스템은 각사 준비	· 홍보물은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 합동설명회 전까지 조합에 신고된 것만 인정하고, 임의변경시 입찰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연번	구 분	준 수 사 항	제 재 조 치
4	현수막 설치	· 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부착 일체금지	·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5	허위과장 홍보 및 상호비방, 허위사실 유포금지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홍보물 제작 금지 · 경쟁사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 타사를 가장하는 홍보활동 금지	· 타사를 가장하여 고의로 자격박탈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여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6	부정행위	· 금품살포 및 이권약속 금지 ·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 금지	·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7	기 타	· 모델하우스,무대,파라솔,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 금지(조합이 제공하는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 1개소는 예외로 함)	·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8	공통사항	·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음 · 타사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본 조합에 제재조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서면의 방법으로 하되 반드시 증거자료(사진,녹취,동영상 촬영 등)를 첨부해야 함. · 조합은 제출된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년 월 일

위 확약인 업체명 :

대표자 : (인감)

주 소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이 행 각 서

귀 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되기 전이나 선정된 후에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조합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하여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제출된 모든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하는 지정 기간일까지 어김없이 이행하겠음.
2. 홍보시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범위 안에서만 홍보하고,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
3. 다른 참여업체를 비방하거나 관련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음.
4. 외부인을 고용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유언비어 유포, 상호비방, 과대선전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
5. 어떠한 경우에도 임원, 대의원, 조합원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전 등을 일절 제공하지 않겠음.
6. 낙찰에 관계없이 조합의 결정사항을 이의없이 따르겠음.
7.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된 후 공사 시공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조합이 차순위 협약상대자와 협약을 체결하여도 이의없이 따르겠음.
8. 입찰지침서 상의 입찰보증금 처리 규정에 따라 이의없이 이행하겠음.
9.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정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귀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조합의 결정에 이의없이 따르겠음.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용도 기입요망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관련 이행각서용)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 확인서

당사는 귀 조합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조합이 작성, 제시한 입찰참여 안내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기에 이에 공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확인자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회사 소개서

□ 회사명 :

○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비 고
	년	년	년	
총 자 산				
자본총계				
부채비율				
매 출 액				
순 이 익				

○ 시공능력 평가 순위(도급순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비 고
	년	년	년	
순 위				
평가액				

○ 정비사업 실적(최근 3년간)

사업명	대지면적	총연면적	건립세대수	착공/준공일	비 고

첨부 : 증빙서류 각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7조의4제1항·제7항·제8항·제9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제46조제8호·제48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지원을 하는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업자의 선정 및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118조제1항·제6항·제7항·제8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제75조제8호·제7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

<신 설>	8. “전자조달시스템” 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 를 말한다.
<신 설>	9. “검증기관” 이란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 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서 정한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신 설>	10. “전문기관” 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 제한) 법 제77조의4제8항제1호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공동사업시행협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해제 또는 취소된 후에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 제한) 조합은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협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협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후에는 서울특별시고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비용지원 제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7조의4제8항제1호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2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융자금은 제21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지원의 제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 또는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약 체결 전 제2호의 융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조합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1. 법 제21조제3항 및 종전의 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비용의 보조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금	2. 조례 제53조제4항----------
제5조(관계법령 등의 적용)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의 선정 및 공동사업시행 협약(법 제118조제7항제1호의 협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하여 법 · 같은 법 시행령 · 조례(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조합 및 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과 조합원은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이익이나 편익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되며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은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안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업무 구분) ①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시행의 대표자는 조합으로 한다.	제4조(업무 구분) ① ------ 건설업자 간 ----------.
② 조합은 정비사업에 적합하고, 어떠한 권리상의 제한이나 토지 자체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온전한 소유권을 가진 택지와 사업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등 관련서류 일체)를 건설업자에게 제공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를 건설업자에게 제공한다. 1. 정비사업에 적합하고, 권리상의 어떠한 제한이나 토지 자체에 일체의 하자가 없으며, 조합 및 조합원이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는 택지 2. 사업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등 관련서류 일체)
③ 건설업자는 대여금을 조합에 제공하고,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인가된 내용대로 건축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공사 등을 완료하여 준공한다.	③ ---------- 사업시행계획인가된 ----------.
제8조(용역업체 선정) ① 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용역시행 가능 여부 및 시행중인 용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용역업체 선정) ① ---------- 확인하고,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는 용역시행 가능 여부 및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복잡한 용역시행인 경우에는 협의하여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재해위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조합과 협의하여 의견회신 기한을 --- 수 ----------. 다만, 재해위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의견 회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비 조달 및 부담) ①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입찰 제안서 내용에 대여금과 공사비를 구분하여 조합원들이	제6조(사업비 조달 및 부담) ① ----------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대여금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 내역 및 조달계획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비 ----------.

② 제1항에 따라 조달되는 대여금은 건설업자가 직접 차입하여 조합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지급 보증하여 조합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대출이자 중 입찰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 ---------- 건설업자----------.

③ 공사비는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하여야 하며, 조합의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대출이자는 전액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 건설업자----------.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건설업자는 공동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 관리하여야 한다.

---------- 개설·관리----------.

⑤ 건설업자가 제안하는 조합운영비 및 이주비, 용역비 등 대여하는 비용은 금리 및 상환기간, 상환조건을 구분 제시하도록 한다.

⑤ ---------- 대여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 조합운영비 및 용역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

⑥ 공사비는 순공사비(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조합원들이 건설업자 공사비 제안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업자는 공사비를 순공사비(간접공사비를 포함한다)----------.

⑦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안한 설계도서와 산출내역에 따른 공사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건설업자가 입찰시 제안한 공사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조합이 요구하는 설계변경과 자연재해,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공사

⑦ ---------- 공사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 다만 ---------- 경우로 --

비 증가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건설업자가 입찰시 제안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있다.	---------- 거친 때에는 ----------.
⑧ 건설업자 선정시 조합은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내용에 건설업자가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시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내용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그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확정한 공사비 내에서 건설업자가 공기단축 및 신공법 등의 노력으로 절감한 금액은 건설업자의 수익으로 한다.	⑨ ---------- 공사비---------- ----------.
제10조(미분양 분담) ① 조합은 준공인가시까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건설업자의 대여금이나 공사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 현물로 전액 상환한다.	제7조(미분양 분담) ① ---------- ---------- ---------- ---------- 등의 ----------.
② 상환가격은 분양당시의 분양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에 활용되는 현물의 가격은 분양 당시---- 하나, ---------- ----------.
제11조(입찰의 방법) ① 조합이 건설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8조(입찰의 방법)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① 조합은 제11조에 따라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시공능력	<삭 제>

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따로 승인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5명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 조합은 제11조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명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건설업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건설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방법	제9조(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조례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자(이하 "공공지원자"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건설업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사업비(대여금, 공사비) 조달에 관한 사항	7. 사업비 ----------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거친 경우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건설업자 선정계획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 ------ 이후에 대의원회 소집을 통지하고 ---------- ----.
제15조(조합원의 동의) ① 법 제77조의4제8항제1호에 따라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동의) ① 조합은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시행을 하려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
② 조합원의 동의방법(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법 제17조에 따른다.	② ----------(동의 철회의 방법을 ---------- 법 제36조 -----.
③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제18조에 따른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6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원 ---------- ---------- -- 제13조---------- ----------. ---------- ---------- 회신 기한을 5일 ---------.
제16조(공동사업시행자 선정시기 등) ①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사업비(공사비 및 대여금)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사업시행자 선정시기 등) ① -- ---------- ---------- ---------- 제9조제1항---------- --- 설계도서(건축심의를 득한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사업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사원가 자문)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라 설계도서 및 사업비가 산정된 경우에는 입찰공고 30일 전에 공공지원자,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 전문기관(공사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제공)에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조합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원가 자문) ① ----- 제11조에 따라 설계도서가 작성되고 -------- 제13조에 따른 입찰공고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 검증기관, 전문기관에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을 할 ----------.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자 선정 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 대하여 자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사업시행 ----------.
제18조(입찰공고) 조합은 건설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 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공고 등)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찰을 공고하고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또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 대상자에게 통지(도달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19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조에 따른 입찰공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① 제13조----------.
1. (생 략) - (생 략)	1.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개요 가. (현행과 같음)

– 사업비(대여금, 공사비) 조달 및 집행	나. 사업비 ――――――――――――――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2. ―――――――――― 방법
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3. ―――――――― 일시 · 장소 및 구비서류
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30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6.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조합은 건설업자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조합은 건설업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으며,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건설업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조합은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제안한 대안설계에 따라 후속절차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조합은 건설업자의 입찰 내역서 작성 및 조합의 입찰 내역서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반영하여 입찰 추진일정을 계획하는 등 조합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설명회) ① 조합은 입찰일 45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설명회) ① ------ 입찰서 제출 마감일 45일 전까지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건축심의를 득한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1. ----------
가.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의결서	가. ---------- 의결서(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서)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물량내역서(공사 항목별 세부 물량내역을 포함한다.)	라. ---------- 포함할 것)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만	③ ----------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참여할 ----------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제출하게 ----------.
제21조(입찰신청서 제출) ① 조합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에게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참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신청서 제출) ① ----------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
② 입찰참여자는 제20조제2항제1호라목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한 공사비 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제19조제5호의 공사비 예정가격 이하여야 하고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② ---------- 직접 작성한 제15조제2항제1호라목의 물량내역서 및 ---------- 제14조제1항제5호---------- 하고, ----------.
③ 입찰참여자는 제20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제19조제5호의 대여금 예정가격에 대한 대여주체, 대여기간, 이율 등이 기재된 대여금 조달계획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대여금 조달계획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③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제14조제1항제5호나목---------.
제22조(협약서 작성 및 배부) ① 조합은 제20조에 따른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서 작성 및 배부) ① --- 제15조---------- 참가하는 ----------.
② 제1항의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고시하는 「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를 기본으로 본 기준의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 조례 제7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를 기본으로 이 기준의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 조합은 밀봉된 상태로 참여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18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하여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른다.

를 제출한 건설업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각 1명과 조합임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제24조(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등) ① 조합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개봉한 때에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입찰서에 따라 입찰제안서 비교표에 준하여 작성하고 건설업자와 각각 확인 날인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등)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한 때에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입찰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여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하고 건설업자와 각각 확인 · 날인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입찰제안서 비교표의 사본을 대의원회 또는 총회 개최 안내 시 대의원 또는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총회 상정할 건설업자 결정) ①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명 이상의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가 5명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대의원회의 의결)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결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 개최 전에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대의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에 따른다.
제26조(건설업자의 홍보) ① 조합은 제25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가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미리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 및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일체의 개별홍보 활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의 입찰참가자격 박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건설업자 선정)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를 개최하여 건설업자를 선정하며,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석으로 본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직접 참석자의 수에 포함하되, 해당 조합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	제21조(건설업자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 개최 전에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 중 어느 하나도 출석한 조합원(서면의결권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방법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른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에서 재투표하는 경우 재투표를 하기 전에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검

면결의서 제출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 시 서면결의서 제출 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총회에서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토를 받아야 한다.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조합은 제27조에 따라 선정된 건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2조(협약의 체결 및 협약사항의 관리) <삭 제>
② 조합과 건설업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체결 시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와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근거, 시방서, 자재사양서 등과 제9조에 따른 사업비 내역 및 조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합은 건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 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 제11조---------- ---------- 제6조---------- ----------. ---------- ----------.
<신 설>	② 제1항의 협약 체결 후 조합의 공사비 검증 요청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23조(수의계약의 공사비 검증)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협약 체결을 의결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은 계약

	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입찰보증금) ① 조합은 건설업자에게 입찰 시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입찰보증금) ① -----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에 따른 ----------.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법률 시행령 --------.
제30조(입찰보증금의 예치) ①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정된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미리 그 뜻을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입찰보증금의 예치) ① ----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 사유 없이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제1항과 제2항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공고 당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선정이 무효로 된 자 2.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로 된 자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명과 부정당 사유 및 일자를 공공지원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로 된 자 ② 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업체명·무효사유 및 처분일자 등을 공공지원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자료의 제출) 조합장은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의 제출) 조합장은 공동사업시행 ----------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3조(관련자료의 공개) 조합은 건설업자 선정에 관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클린업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관련자료의 공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클린업시스템 또는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을 말한다)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2. ---------- 사항(설계도서 포함)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입찰참여업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7. 공사비 검증보고서(제23조 및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제34조(부정행위 단속) ① 조합 및 건설업자 등 누구든지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31조(부정행위 단속) ① 공공지원자 및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건설업자 선정 완료시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 또는 승낙하는 행위 2. 제3자를 통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② 공공지원자는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기간에도 제1항에 따른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각종 서식) 본 건설업자 선정 기준과 관련된 조합원 동의서 등 양약은 별지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각종 서식) ① ----------양식은----------.
<신 설>	②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등과 이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별지 제4호 및 제5호의 서식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6조(감독) 공공지원자는 조합이 이 기준에 따라 건설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감독) ---------- 법 제113조----------.
<신 설>	제34조(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협조 의무) ①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안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61호

정비사업의 표준 공동사업시행협약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857호, 2018. 2. 9.시행)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구역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구역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업자"라 한다)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대 ○○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조합"과 "건설업자"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2. "설계도서"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 등)를 말한다.
3. "공사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물량내역서"란 해당 정비사업의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규격, 품목, 수량, 단위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란 물량내역서에 “건설업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또는 “건설업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내역서를 말한다.
6. “사업비”란 정비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대여금”과 “공사비”로 구분한다.
   가. “대여금”이란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조합운영비, 용역비 등을 조합에 대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 “공사비”란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액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7. “공동사업시행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이하 “공동사업시행”이라 한다)하는 “조합”과 “건설업자”를 말한다.

제3조(관계법령 등의 적용) ① 이 협약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 절차 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민법」 등의 관계법령과 국통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관계법령,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르되, 기타 세부 실무내용에 관하여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공사도급계약으로 전환 제한) 서울특별시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이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 협약은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이 정비사업의 인·허가 업무는 “조합”이 주관하되 “건설업자”는 이에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지원 융자금 상환) ① “조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3조제4항에 따라 융자받은 융자금을 이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상환하는 융자금을 “건설업자”가 사업비로 대여하는 자금에 포함하며, “조합”이 융자금을 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에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동사업 시행방법 및 권리·의무

제7조(협약의 범위 및 기간) ① "조합"과 "건설업자"의 공동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 ○○ 재개발(재건축)사업
2.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3. 사업부지면적 : ㎡(평)

② 이 협약의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의 완료일(또는 "조합"의 해산일)까지로 하되, 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는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시행방법) ① "조합"은 제7조에 따른 사업부지(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비 조달과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건설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부지(토지)라 함은 "조합"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건설업자"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제9조(공동사업시행자의 업무 구분) ① "조합"은 공동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설립 및 정관 등에 관한 사항
   가. 조합사무실 운영/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개최
   나. 조합설립변경인가
2. 인·허가 등 업무
   가.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건축·교통·문화재·환경영향평가 등 심의에 관한 사항
   다.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준공인가/이전고시/조합해산 등
3. 이주 및 토지수용 등 업무
   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에 관한 업무
   나. 토지의 사용 및 수용(매도청구)에 관한 업무 등
4. 공사 감리·감독
   가. 감리업체 선정(구청) 등에 관한사항
   나. 공사시공 감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분양 업무 주관
   가. 조합원 분양
   나. 일반 분양
6. 각종 등기, 공부정리 및 납세 관리
   가.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나. 국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7. "건설업자"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②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라 “조합”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2. 용역업체 선정지원 및 관리
 가. 협약 체결 후 신규용역업체 선정절차 추진
 나. 용역수행 관리
3. 이주지원 및 철거
 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지원 및 공가관리
 나. 지장물 이설, 석면제거, 철거 등에 관한사항
4. 일반 분양 지원
 가. 견본주택건립 및 관리
 나. 분양 홍보, 분양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
5. 공사 목적물(토목, 건축 등) 시공 및 하자 등에 관한 사항
6. 입주관리 및 조직구성, 계약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자(이하 “공공지원자”라 한다)의 중재에 따른다.

【주】 공동사업시행자의 업무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음.

제10조(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 및 권리·의무) ①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 시행의 대표자는 조합으로 하고, “건설업자”는 법 제118조제7항에 따라 시공자로 본다.

② “조합”과 “건설업자”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하여 “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이 협약 조건에 따라 행한 “조합”의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조합”의 조합원은 “건설업자”에게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업체 선정) ① “조합”은 이 협약 이후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용역시행 가능 여부 및 시행중인 용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은 용역시행 가능여부 및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복잡한 용역시행인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의견 회신 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해위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의견 회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동사업시행자는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회계감사기관, 감정평가업자 등 관계법령 등에서 선정기준을 정한 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업체 선정 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예산·회계규정」 제24조는 “조합”이 결정하고, 같은

규정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는 “건설업자”가 “조합”의 의견을 들어 절차를 이행하며,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 및 계약하고 제31조의 계약대가(용역비용)의 지급을 공동으로 이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용역비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건설업자”가 제안한 용역비용의 범위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초과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안된 용역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은 공동사업시행자가 연명 날인하여 체결하고,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약 체결 이전에 조합이 체결한 설계용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 등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연명 날인하여 변경한다.

제12조(사업비 확정) ①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대여금과 공사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사업비는 “건설업자”가 입찰 참여제안서에 제출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 3 장 협약의 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제1절 협약의 체결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이 협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이 협약서에 상호 날인함과 동시에 협약 체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를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내용의 변경이 조합원의 부담을 수반할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 총회 의결 후 변경한다.

제14조(협약서류 등) ① 이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사업시행협약서(“조합”과 “건설업자”가 상호 날인, 간인)
2.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필요시)
3.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현장설명서 포함)
4.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5.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6. 협약이행 보증금 또는 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7. 입찰참여제안서, 홍보물 등 “건설업자”가 “조합” 또는 “조합”의 조합원에게 제출한 문서
8. 공문서, 대출약정서 등 기타 협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류 상호 간에 상충부분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

제15조(협약이행 보증) ①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별도로 정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총사업비의 ○○%)을 협약체결과 동시에 “조합”에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이행 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업자”가 조합원으로 속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및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건설업자”는 사업비의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조합”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건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협약이행 보증금은 “조합”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협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합”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19조제1항의 사유로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협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협약이행 보증금을 지체 없이 “건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주】 협약이행 보증금의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제16조(손해보험) ①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시 “조합”, “건설업자”,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조합”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협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순협약금액(협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일 이전까지로 하고, 그 증서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공사 착공 시부터 “조합”의 인수 시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건설업자”는 손해보험 가입 시 협약의 보증이행 규정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건설업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협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건설업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업자”은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건설업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해당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건설업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통지 등의 효력)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하여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이 협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 협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이 협약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통지 등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약이행 중 상대방으로부터 이 협약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협약의 해제 및 해지 등

제18조("건설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제·해지)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해제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는 "건설업자"에게 있고, 협약이행 보증금은 "조합"에 귀속 조치한다.

1.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협약이행 보증금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설업자"가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3. "건설업자"가 입찰 및 협약이행 과정에서 "조합"의 조합원 또는 용역계약업체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4. "건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조합"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건설업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협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건설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건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대여금 조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건설업자"가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를 한 경우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조합"으로부터 대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조합"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조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연배상금이 협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은 경우 "건설업자"는 잔여 공사비에 대하여 협약이행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조합”의 사정변경에 의한 협약의 해제·해지) ① “조합”은 제18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조합”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건설업자”는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업자”가 제18조제3항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제15조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금 및 제24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대여하거나 지급 보증한 대여금 역시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현재까지 “건설업자”가 투입한 공사비를 제외한 정비사업비
2. 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전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건설업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해제·해지의 귀책사유가 “조합”에 있는 경우에 “건설업자”는 “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건설업자”에 의한 협약의 해제·해지) ①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공사비가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는 경우
2. 제53조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사업비 조달 및 상환 등에 관한사항

제 1 절 사업비 조달 및 집행

제21조(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① 공동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내 사용될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매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연차별집행계획에는 협약기간 내 사용하는 대여금과 공사비를 합한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사업비 집행 의결) ① 공동사업시행자는 매년 다음 연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대여금과 공사비로 구분하여 수립한 후 10월말까지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은 “건설업자”가 작성하여 “조합”의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을 거쳐 총회에 상정·의결 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최소비용만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브랜드 홍보비 부담 제한) ①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 “건설업자”가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제안을 함에 따라 그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공동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시행계획 등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의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비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 “건설업자”가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제안을 함에 따라 그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

제24조(대여금 조달 및 관리) ① 사업비 중 대여금은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업자”가 지급 보증하여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대출이자 중 입찰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건설업자”가 제안한 이자율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여금 조건과 같이 부담한다. 만약, 이자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로 대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상환)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대여이자의 부담은 건설업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

【주】 사업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여(상환)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이자부담을 부여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 도모

④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자금을 직접 차입하는 경우의 차입금과 분양수입금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명의 은행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비 확정) ① 공사비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인가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 내역에 따라 작성하되, 공사비의 금액은 이 협약 시 정한 공사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요구하는 설계변경과 자연재해,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로서 공사비 증가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친 때에는 “건설업자”가 입찰 시 제안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조합”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총회에서 확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비(직접·간접 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는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시 “건설업자”가 제안한 공사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사비”는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하여야 하며, “조합”의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는 전액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이 공사비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총회에서 확정된 공사비 내에서 “건설업자”가 공기단축 등의 노력으로

절감한 금액은 “건설업자”의 수익으로 한다.

제26조(사업비 상환) ① “조합”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이 사업의 사업비를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등 수입금이 사업비를 상환함에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공동사업시행자”는 협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사업비 상환은 조합 명의 차입금, 건설업자 대여금, 공사비 순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대의원회 거쳐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조합”이 준공인가 시까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건설업자”에게 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의 현물로 전액 상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현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환가격은 분양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자금관리) ①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금(상가 등 복리시설의 분양 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대주택 매각대금 등의 수납관리는 “건설업자”의 공사비와 대여금 등의 상환 및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때에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의 납입계좌를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계좌로 명기하며, “분양계약서상 명기된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은 이를 정당한 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기한다.

③ “조합”의 조합원 청산금, 일반분양금, 수령한 사업경비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조합”에게 귀속한다.

④ 공동명의의 통장 잔고가 “조합”과 “건설업자”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의 전환은 제한한다. 이 경우에도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동명의 계좌의 입·출금은 공동사업시행자의 공동날인 없이는 입·출금할 수 없다.

【주】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하여 공동명의의 통장 잔고에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조합”의 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도록 한 취지임.

⑥ “조합”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관리는 “조합”이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합”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조합”은 지체 없이 “조합”과 “건설업자”의 공동명의의 계좌로 이체한다.

제28조(연체료 징구) ① “조합”은 이 협약의 조건에서 정한 기간 내의 공사비 및 대여금(조합 운영비는 제외한다) 등의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건설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조합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에 정한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주】 제2항은 “조합”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 의결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할 것임.

제29조(채권확보) ① “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일까지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및 청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건설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 등을 현물로 상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의 책임 하에 “조합”의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제 2 절 대여금 및 이주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조합운영비 집행) ① “건설업자”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총회 의결 여부 및 예산한도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조합”에 3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여금은 관계법령 및 조례, 「예산·회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대여금 지출) ① “조합”은 제30조에 따른 조합운영비 대여금을 제외한 대여금 지출 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주】 조합운영비 대여금을 제외한 대여금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의 항목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임.

② “건설업자”는 제1항의 비용에 대한 지출 시 총회 의결 여부 및 예산한도 충족 여부,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대여금 상환) ① “조합”은 제24조에 따른 대여금에 대하여 이 협약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67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건설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원할 경우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대여금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건축시설의 분양 및 이주 등에 관한 사항

제 1 절 건축시설의 분양

제33조(관리처분계획) ① “조합”은 공사비 등 사업비의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조합” 또는 “조합”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수행하되, “건설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분양업무) 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조합원 및 일반분양) 업무는 “조합”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은 필요시 “조합”이 지정하는 협력업체 또는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자가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상호 또는 “건설업자”가 등록한 상표(브랜드 등)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건설업자”는 사용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브랜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조합원 분양) ① “조합”의 조합원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가액이 권리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산하여야 하며, 청산금의 납부 또는 지급시점, 납부 또는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 “조합”은 입찰시 해당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건설업자”가 충분히 이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계약 체결시 구체적으로 조건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조합”의 조합원은 분양받을 건축시설의 가액이 자신의 권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제 사업비 및 공사비 충당시기를 검토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입주잔금
납부시기	계약체결시	공사기간을 ○회 균등분할한 시점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 만료일 중 앞서는 날
납부금액	분양금액 × ○%	분양금액 × ○%	분양금액 × ○%
납부방법			

2. 계획된 공사 일정이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하여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조합”은 “조합”의 조합원이 부담금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납부대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주】 이 계약조건은 “조합”과 “건설업자” 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 등을 정하는 것이며, 제3호는 “조합”과 “조합”의 조합원 관계로서 비용분담 등 청산방법에 대하여 정관에 정하거나 사전에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4. “조합”은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단축될 경우 잔여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시점은 그 단축기간만큼 변경·조정한다.
5. “조합”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분양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사업계획변경 등 “건설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조합”의 조합원의

부담금 증가가 예상될 경우 미리 정관에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금을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 시 정산하기로 한다.

제36조(일반 분양) ① “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기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분양업무는 “건설업자”가 수행한다.

【주】 “건설업자”의 분양대행 여부와 조건 등을 입찰유의서에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② 준공인가일까지 일반분양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이 미분양되어 공사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물로 상계하여 변제할 수 있으며, 대물변제의 가격 및 방법은 제26조 제5항에 따른다.

【주】 미분양분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물변제조건을 입찰유의서에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제 2 절 이주 및 철거

제37조(거주자의 이주) ① 정비구역안의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정한 이주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조합”의 책임 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이주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주】 공사기간 연장 또는 지연배상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누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취지이며, ″조합“은 이를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대여기간 중에 “건설업자”가 대여한 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임.

② 거주자의 이주 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조합” 및 “조합”의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조합”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이주가 개시된 날부터 공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지장물의 철거) ① “조합”과 “건설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이주완료 후 30일 이내에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건설업자”는 공가관리 등 지장물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 이주 및 철거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건설업자”가 관련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향후 분쟁의 여지가 있는 물가변동에 따른 협약금액 조정·공사기간 연장 또는 대여자금의 연체이자 납입 등을 미리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 것이며, 제37조제1항의 취지와 같음.

②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등 부산물은 “조합”에게 귀속된다. 단, 이러한 부산물의 귀속에 대하여 “조합”과 “건설업자”가 미리 협의하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조합”과 “건설업자”은 본 사업부지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철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등에 석면이 있을 경우, 석면처리 및 지하구조물 철거 등의 비용은 “건설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석면제거 등에 따른 철거기간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연장한다.

제 6 장 공사기준 및 설계 등에 관한 사항

제 1 절 공사의 기준

제39조(공사기간 등) ① 이 사업 공사(이하 “이 공사”라 한다)의 기간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이 공사의 착공신고일로부터 ○○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조합”의 귀책사유 또는 민원 등으로 착공신고일에 착공이 불가한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한 실착공일로부터 OO개월까지로 한다.

【주】 정비사업의 특성상 이주가 완료된 후 지장물 철거 잔재처리 완료 후 공사용지가 확보되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착공신고 기준 등을 감안하여 착공일을 정하되, 대여조건과 지연배상금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하여야 것임.

② 공사완공일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로 한다.

【주】 “건설업자”의 책임 있는 본 공사의 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로 하고, 임시사용승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경비 등 상환방법, 지연배상금 산정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제40조(공사자재 검사) ① 이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건설업자”는 “조합”에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건설업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⑥ “건설업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감리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및 그 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리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건설업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조건을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조합”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 협약금액을 증감하거나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공사감독원) ① “조합”은 이 협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지명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조합”이 위임하는 사항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원을 지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건설사업관리자) “조합”은 이 협약 이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자가 “조합”과의 협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건설업자”는 이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협약문서와 공사감독원 또는 감리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건설업자”는 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건설업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이 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45조(공사감리) ① 이 공사의 감리는 「주택법」 제24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② “건설업자”는 공사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매월 “조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자료의 제출 등) ① “건설업자”는 이 협약 체결 시 제2호, 제3호의 서류를 “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신고서를 “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서
2. 공사예정 공정표
3. 제4조에 따른 협약문서
4.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착공신고서류, 하도급 계약문서 등 기타 “조합”이 지정한 사항

② “건설업자”는 이 협약의 이행 중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이를 조정 요구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현장관리,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건설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조합”에게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공사의 하도급 등) ① “건설업자”는 이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조합”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다)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조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이 공사의 시공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공능력이 없는 하수급인이 선정되어 공사의 조잡, 부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합이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라 이 사업 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협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주】 하수급인의 적정성 판단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공신력 있는 컨설팅기관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임.

제48조(공사의 시정명령) “건설업자”가 관계법령 및 승인된 설계도서 또는 이 협약의 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조합”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건설업자”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조합”에 발생한 손해는 “건설업자”가 부담 또는 배상한다.

제49조(재해방지 및 민원) ① “건설업자”는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건설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과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은 “건설업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하되,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의 공사수행방해, TV난시청 등 공사와 무관한 간접피해 및 민원은 “조합”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한다.

【주】 민원의 내용별 해결주체를 분명히 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에 책임소재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③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건설업자”가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 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조합”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건설업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재해방지 및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0조(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준공검사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생한 손해가 기성공사금액의 1/3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1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건설업자”는 제66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공사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 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를 경유하여 “조합”에게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공사기간 내에 발생하여 공사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공사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청구를 승인하는 경우 해당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66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66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합”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제15조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협약목적물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협약이행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제66조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협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재해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조합”에 필요하여 지시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업자” 및 감리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건설업자”는 협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조합”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건설업자”의 공사정지) ① “건설업자”는 “조합”이 이 협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합”에게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건설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조합”이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이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51조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 2 절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제54조(설계변경)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4. 관계법령의 개정,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 그 밖에 “조합”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지하매설물 등에 따른 설계변경) ① “건설업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조합, 공사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6조(신기술 및 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① “건설업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조합”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를 경유하여 “조합”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요청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감리를 경유하여 “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동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

제57조(“조합”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지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조합”과 감리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조합”은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조합”은 제55조 및 제57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과 감리자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협약금액 및 기간
4. 기타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조합”은 제2항제2호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건설업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5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조정) ① “조합”의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제25조에 따라 협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설계의 협약단가는 “건설업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협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협약금액은 변경할 수 없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협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변경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조합”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따라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협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56조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 승률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른다.

④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협약금액을 제25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협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협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협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결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협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조합”이 그 보완의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전단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의 협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제출한 대안이 채택되어 협약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합”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협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⑨ 제8항에 따른 “조합”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조합”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조합”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조합”이 수용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협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조합”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협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협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⑩ 제9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협약금액을 조정하되, 협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⑪ “조합”은 제5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협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검증기관(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협약금액 조정을 의결 받아야 한다.

제6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조정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공사협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에 협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협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금액의 조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수조정률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시장단가 지수 중 변동율이 낮은 것을 적용한다.

【주】 “조합”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품목조정률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③ 제1항에 따라 협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청구에 따르고, “건설업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협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협약금액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협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협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조합”은 물가변동에 따른 협약금액 조정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④ “조합”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협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협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총회 의결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협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업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조합”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협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협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건설업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그 반송사유를 반영하여 협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그 밖에 협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조정) ① “조합”은 공사협약에 있어서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변경으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5조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협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협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협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협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협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60조제4항을 준용하며, 협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건설업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 3 절 준공검사 및 공사비 지급

제62조(준공검사) “건설업자”는 협약문서 등의 기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 신청 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준공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제63조(기성검사) ① “건설업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조합”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리가 작성한 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원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가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협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4조(공사목적물의 인수) ① “조합”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일 이내에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건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건설업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사업 완료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5조(공사비 지급 등) ① “조합”이 “건설업자”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제26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준공대금인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주】 조합의 공사비 지급은 기성 실적에 따라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고,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② 제1항에 따른 기성률은 감리의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정한다.

제66조(지연배상금) ① “건설업자”는 이 협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연배상금률을 협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 지연배상금률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 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금리 등을 기준으로 “조합”과 “건설업자”의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② “조합”은 제1항의 지연배상금을 산출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협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는 천재지변이 해당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2. “조합”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한 경우
4. 제5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협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의 구입 곤란 등 그 밖에 “건설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조합”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조합”은 지연배상금을 “건설업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7 장 입주 및 하자관리

제67조(입주) ① “건설업자”는 준공검사 완료 즉시 “조합”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한다.
【주】 입주기간을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자의 입주시기, 잔금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이를 조합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토록 한 규정임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조합”과 “건설업자”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기로 하며, “건설업자”는 입주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③ “조합”과 “건설업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청산금, 이주비,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하자 및 관리)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조합”은 준공검사 완료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조합원이 사용검사된 건축시설 입주 후 임의 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8 장 기타사항

제69조(공부정리 등) 관계법령이나 “조합”의 정관 등에 따른 조합원 및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정리, 제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정리, 건축시설의 준공 후 보존등기 및 기타 공부정리는 “조합”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되, “건설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70조(분쟁 및 소송) ① 이 협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되, 쌍방 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는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이 사업 부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주1】 조합과 건설업자가 본 협약에 대하여 해석의 견해 및 적용을 달리 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는 우선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법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그리 하여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한 내용임.

【주2】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아래의 예시와 같이 중재조항을 명시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예) “본 협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이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71조(채권의 양도) “건설업자”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72조(이권개입 금지) ① “조합”은 “조합”의 조합원이나 “건설업자”와 조합정관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조합” 또는 “조합”의 조합원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건설업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조합” 또는 “조합”의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73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이 사업이 완료될 때(“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조합”은 이 협약 체결 전에 협약내용에 대하여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선행하여 협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은 “조합”의 대표자(조합장) 등의 변경과 “건설업자”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이 협약이 제72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할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 “조합”과 “건설업자”는 이 협약을 해제 및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4조(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조합”과 “건설업자”는 이 협약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가 보충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소송 관할법원) “조합”과 “건설업자” 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조 합”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명 칭 : ○○구역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조합
조 합 장 : ○○○ (인)

“건설업자”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명 칭 : ○○건설회사
대표이사 : ○○○ (인)

<별지 제1호 서식>

대여금 조건(양식)

구 분			금액	이자율	기간	비고
대여금	관리비	조합운영비	_____원	____%	___ ~ ___	※건설업자 직접대여, 또는 조합명의 금융기관 차입 여부 명시
		신탁등기비				
		소송비용				
		회계감사비/ 세무대행수수료				
		총회비용				
		소계(조합부담이자)	※ 금액에 기간과 이자율 곱하여 산정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 세부내역 작성	_____원	____%	___ ~ 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각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_____원	____%	___ ~ ___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공사비				
		하수도부담금				
		지역난방/도시가스 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제세 공과금	보존등기비	_____원	____%	___ ~ ___	
		재산세				
		채권매입비				
		법인세				
		법인세 세무조정료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기타경비	※민원처리비용, 일반분양비용 등	_____원	____%	___ ~ 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예비비		_____원	____%	___ ~ 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사업비 대여금 이자 (※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 차입시)		_____원	____%	___ ~ ___	
	소계(조합부담이자)					
	이주비 대여금 이자		_____원	____%	___ ~ 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총 대여금액		_____원	____%	___ ~ ___	
	총 조합부담이자금액		_____원			

【주】 조합운영비 대여금을 제외한 대여금은「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의 항목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임.

<별지 제2호 서식>

공사비 내역(양식)

구 분			금 액	비고
공사비 (원안/ 대안)	직접 공사비	재료비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첨부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간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법정경비		
		기타 간접공사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공사손해 보험료	○%		
	부가가치세	○%		
	총공사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66호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1호(2018.09.06.)로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2호(2018.09.06.)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변경)

-기정 :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 :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변경 사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구역 명칭 변경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번지

○ 면 적: 6,316.4㎡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8년 9월 6일

3. 사업의 종류(변경)

-기정 :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 변경 사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업 명칭 변경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기정	시행자의 성명	토지주 이 경 락	주식회사 와이제이에이치디 대표이사 최 준 봉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389 용산시티파크 101-36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9, 8층(서초동)
	법인(주민)등록번호	4***01.1***036	110111.5989376
변경	시행자의 성명	당산동청년주택피에프브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성 제	주식회사 와이제이에이치디 대표이사 최 준 봉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83, 306호(당산동2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9, 8층(서초동)
	법인(주민)등록번호	110111.6916188	110111.5989376

■ 변경사유 :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원활한 사업진행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행자가 출자한 투자회사 및 주택건설사업자(기존 시행자)의 공동시행으로 변경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

1) 토지세목조서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기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	5	대	6,316.4	이경락	용산구 서빙고로35, 101동 3603호	1/1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5,720,000,000원
										주식회사 하이마트	강남구 대치동 509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350,000,000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케이엔엔 라이프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39-48 누리엔빌딩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84,000,000원
	변경						[위탁자] 당산동 청년주택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83, 306호 (당산동2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1/1	없음	-	-
계						6,316.4	-					

2) 물건조서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연면적(㎡)	지하(층)	지상(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기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	5	대	건물	일반 철골 구조	2009. 06.05.	4,887.92	1	3	이경락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5,720,000,000원
													주식회사 하이마트	강남구 대치동 509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350,000,000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케이엔엔 라이프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39-48 누리엔빌딩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84,000,000원
	변경											[위탁자] 당산동 청년주택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없음	-	-
계									4,887.92	-					

■ 변경사유 : 대상지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변경에 따른 변경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번지	6,316.4	-	6,316.4	서고시 제2018-281호 (2018.09.0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결정 사유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면적(㎡)	결정 사유
-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6,316.4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 변경 사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구역 명칭 변경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02-2133-6292)와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3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 명 칭(변경)

-기정 :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 :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변경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구역 명칭 변경

○ 위 치(변경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번지

○ 면 적(변경없음): 6,316.4㎡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기정	시행자의 성명	주식회사 와이제이에이치디 대표이사 최 준 봉 외 1인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9, 8층(서초동)
	법인등록번호	110111.5989376
변경	시행자의 성명	당산동청년주택피에프브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성 제 외 1인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83, 306호(당산동2가)
	법인등록번호	110111.6916188

■ 변경사유 :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원활한 사업진행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행자가 출자한 투자회사 및 주택건설사업자(기존 시행자)의 공동시행으로 변경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기정	사업기간	지구지정일 ~ 2021년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및 주택기금융자 등
변경	사업기간	지구지정일 ~ 2022년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및 주택기금융자 등

■ 변경사유 : 시행자 재지정(변경) 절차 이행으로 사업시행기간 연장

4.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5.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번지	6,316.4	-	6,316.4	서고시 제2018-281호 (2018.09.0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결정 사유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면적(㎡)	결정 사유
-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6,316.4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 변경 사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구역 명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 변경없음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사항 (변경없음)

가) 획지에 관한 사항

(1)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번지	6,316.4	-	6,316.4	

■ 변경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구역 명칭 변경

(2)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라) 공공기여 계획 (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3. 방재계획 (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변경)

1) 토지세목조서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기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	5	대	6,316.4	이경락	용산구 서빙고로35, 101동 3603호	1/1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5,720,000,000원
										주식회사 하이마트	강남구 대치동 509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350,000,000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케이엔엔 라이프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39-48 누리엔빌딩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84,000,000원
	변경						[위탁자] 당산동 청년주택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83, 306호 (당산동2가)	1/1	없음	-	-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계						6,316.4	-					

2) 지장물 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연면적(㎡)	지하(층)	지상(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기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	5	대	건물	일반 철골 구조	2009. 06.05.	4,887.92	1	3	이경락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5,720,000,000원
													주식회사 하이마트	강남구 대치동 509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350,000,000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58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케이엔엔 라이프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39-48 누리엔빌딩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84,000,000원
	변경											[위탁자] 당산동 청년주택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없음	-	-
계									4,887.92	-					

■ 변경사유 : 대상지 전체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변경에 따른 변경

3) 토지취득 방법 : 구역면적의 100%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소유이며 부동산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의 동의를 득하였음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건축물 1개동 멸실 후 신축계획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6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2호(2018.09.06.)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변경 :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변경 사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구역 명칭 변경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변경)

기정	시행자의 성명	토지주 이 경 락	주식회사 와이제이에이치디 대표이사 최 준 봉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389 용산시티파크 101-36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9, 8층(서초동)
	법인(주민)등록번호	4***01.1**0**6	110111.5989376
변경	시행자의 성명	당산동청년주택피에프브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성 제	주식회사 와이제이에이치디 대표이사 최 준 봉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83, 306호(당산동2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9, 8층(서초동)
	법인(주민)등록번호	110111.6916188	110111.5989376

■ 변경사유 :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원활한 사업진행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행자가 출자한 투자회사 및 주택건설사업자(기존 시행자)의 공동시행으로 변경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기정	사업기간	지구지정일 ~ 2021년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및 주택기금융자 등
변경	사업기간	지구지정일 ~ 2022년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및 주택기금융자 등

■ 변경사유 : 시행자 재지정(변경) 절차 이행으로 사업시행기간 연장

5.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번지

나. 대지면적: 6,316.40㎡

다. 건 폐 율: 59.17%(건축면적: 3,737.280㎡)

라. 용 적 률: 399.58%(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5,239.341㎡)

마. 용 도: 공동주택(공공임대 87세대/민간임대 409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바. 규 모: 2개동, 지하6층/지상19층, 연면적 52,667.495㎡

사. 의제처리사항: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6. 기타사항

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68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반포3동 경로당	서초구 신반포로 23길48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	2019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B등급으로서 재난발생의 위험이 낮고 3종시설물 지정을 통한 별도관리 불필요	-	
예술의마을 경로당	서초구 남부순환로 323길 44-15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	2019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B등급으로서 재난발생의 위험이 낮고 3종시설물 지정을 통한 별도관리 불필요	-	
방배3동 제1경로당	서초구 효령로 14다길21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	2019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B등급으로서 재난발생의 위험이 낮고 3종시설물 지정을 통한 별도관리 불필요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69호

서울특별시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 탁 기 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2. 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

2. 행정사항

가.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은 건설기술용역업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0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 번동 122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오동근린공원 내 위치, 공원경관 저해와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 쓰레기적환장을 지하화하여 훼손된 공원을 복원하고 강북구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공원 중복 결정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378	-	4,378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378	감) 4,378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4,378	4,378	100.0	

- 결정(변경) 사유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강북구 번동 122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4,378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분시설	강북구 번동 122번지 일원	-	증)4,378	4,378	-	오동근린공원 중복결정

- 결정 사유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폐기물 처리시설	○ 신설 - 위 치 : 강북구 번동 122번지 일원 - 면 적 : 4,378㎡	오동근린공원 내 위치, 공원경관 저해 및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 쓰레기적환장(오현적환장)을 지하화하여 훼손된 공원을 복원하고 강북구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공원 중복결정

3.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07),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43)에 각각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용도지역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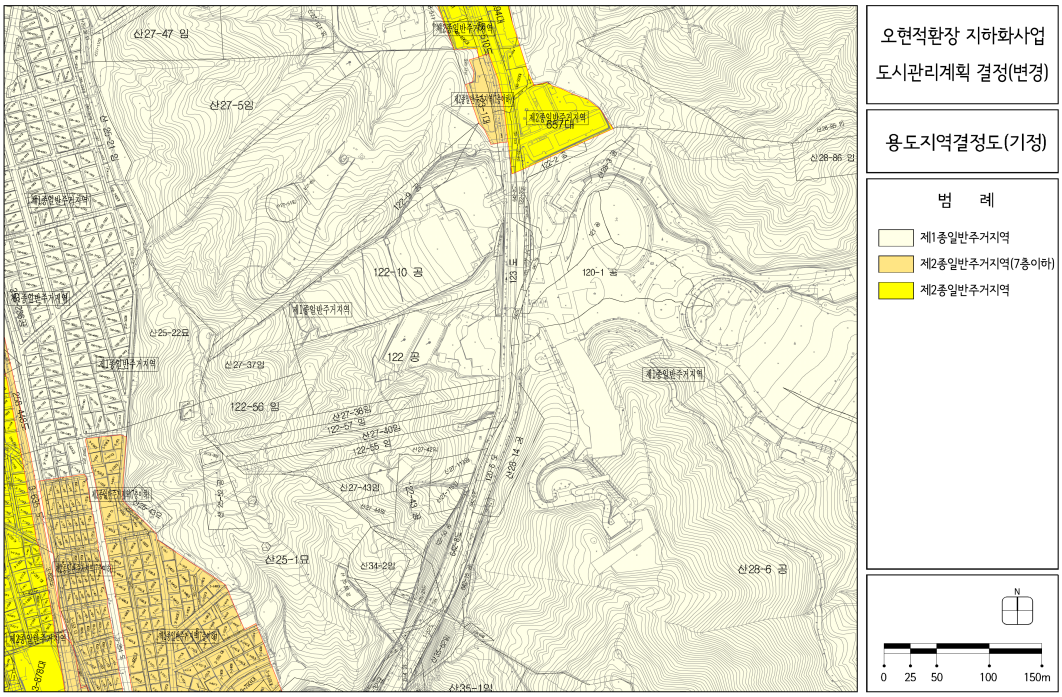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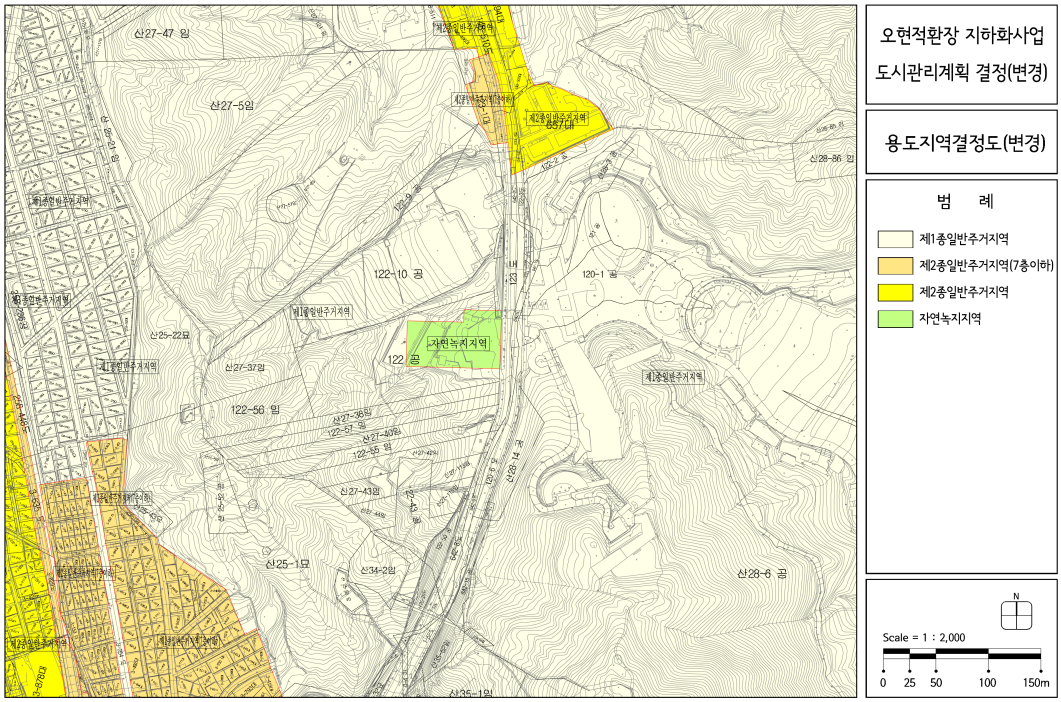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도

- 기정

-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1호

장지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02호(2007.9.6.)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송파구 거여동 145-1번지 장지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장지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장지근린공원 내 도로개설로 인한 관리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45-1번지 일대

3. 면 적 : 133,122.1㎡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4) 및 송파구 공원녹지과(☎2147-3392)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장지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 괄 표(송파구 거여동 145-1번지 일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계		131,366	23,812	3동	1,525.85	1,775.98	84	133,222.1	23,543	3동	1,593.27	1,863.20	174	감 269㎡
기반시설	소계	10,801	10,801				(51)	14,492	14,492					증 3,691㎡
	도로	7,225	7,225					9,858	9,858					증 2,633㎡
	휴게광장	2,500	2,500				(48)	3,036	3,036					증 536㎡
	입구광장	1,076	1,076				(3)	1,598	1,598					증 522㎡
조경시설		5,799	5,799				31	2,722	2,722				20	감 3,077㎡
휴양시설		795	795				1	428	428				65	감 367㎡
교양시설		1,255	1,255					633	633				1	감 622㎡
운동시설		4,752	4,752	1동	1,386.35	1,636.48	51	4,227	4,227	1동	1,386.35	1,636.48	79	감 525㎡
유희시설								208	208				8	증 208㎡
편익시설							1						1	
관리시설		410	410	2동	139.5	139.5		833	833	2동	206.92	226.72		증 423㎡
녹지.기타		107,554						109,679.1						증 2,125.1㎡
시 설 율 (법정40%)		(23,812㎡ / 131,366㎡) x 100% = 18.13%						(23,543㎡ / 133,222.1㎡) x 100% = 17.67%						감 0.46%
건 폐 율 (법정10%)		(1,525.85㎡ / 131,366㎡) x 100% = 1.16%						(1,593.27㎡ / 133,222.1㎡) x 100% = 1.20%						증 0.0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131,366	23,812		3동	1,525.85	1,775.98	84			133,222.1	23,543		3동	1,593.27	1,863.20	174	
기반시설	소계			10,801	10,801					(47)			14,492	14,492						
	도로		전지역	7,225	7,225							전지역	9,858	9,858						증 536㎡
	휴게광장	가		2,500	2,500					(44)	가		3,036	3,036						증 536㎡
		가-1	산78	(89)	(89)					(2)	가-1	가락동 산77	(768)	(768)						
		가-2	산22-2	(122)	(122)															폐지
		가-3	산22-2	(390)	(390)					(3)	가-3	거여동 산21-1	(181)	(181)						
		가-4	145-1	(90)	(90)					(2)										폐지
		가-5	145-1	(227)	(227)					(2)	가-5	거여동 145-1	(64)	(64)						
		가-6	산17-3임	(478)	(478)					(2)										폐지
		가-7	115-1전	(170)	(170)					(1)	가-7	장지동 851	(105)	(105)						
		가-9	산26-1임	(236)	(236)					(1)	가-9	장지동 851	(175)	(175)						
		가-10	산26-1임	(281)	(281)					(16)	가-10	장지동 851	(281)	(281)						
		가-11	113-2전	(417)	(417)					(15)	가-11	장지동 851	(380)	(380)						
											가-12	장지동 851	(518)	(518)						신설
											가-13	거여동 145-1	(493)	(493)						신설
											가-14	거여동 145-1	(56)	(56)						신설
											가-15	거여동 산21-6	(15)	(15)						신설
	입구광장	갸		1,076	1,076					(3)	갸		1,598	1,598						증 522㎡
		갸-1	산17-3임	(101)	(101)															
		갸-2	산16임	(40)	(40)															
		갸-3	산11임	(48)	(48)															
		갸-4	산14임	(578)	(578)					(2)	갸-4	장지동 산14임	(522)	(522)						
		갸-5	115전	(60)	(60)															
		갸-6	55-1도	(20)	(20)															
		갸-7	75대	(229)	(229)					(1)	갸-7	장지동 851	(208)	(208)						
											갸-9	거여동 산21-6	(19)	(19)						신설
											갸-10	거여동 산21-1	(378)	(378)						신설
											갸-11	장지동 851	(323)	(323)						신설
											갸-12	가락동 산77	(87)	(87)						신설
											갸-13	가락동 산77	(61)	(61)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소계			5,799	5,799					35			2,722	2,722					20	감 3,077㎡
	잔디광장	마	산17-3임	336	336															폐지
	야생화 관찰대	바	산11임	1,424	1,424						바	장지동 산11	1,440	1,440						
	야생 초화원	사		2,404	2,404						사		838	838						
		사-1	98-11답	(181)	(181)															폐지
		사-2	산17-3임	(685)	(685)															폐지
		사-3	산16임	(708)	(708)						사-3	거여동 산16-6	(559)	(559)						
		사-4	산17임	(830)	(830)						사-4	거여동 산17-6	(279)	(279)						
	창포원	아	98-9답	67	67															폐지
	수생식물원	자	98-10답	250	250															폐지
	암석원	차	108-2전	147	147															폐지
	억새원	냐	산24임	1,235	1,235															폐지
	그늘시렁	①		(467)	(467)					26	①		328	328					16	
		①-1	산78	(32)	(32)	목조				(2)	①-1	가락동 산77	(32)	(32)	목조				(2)	
		①-2	산78	(32)	(32)	"				(2)										폐지
		①-3	산19-5	(32)	(32)	"				(2)										폐지
		①-4	산21-1	(32)	(32)	"				(2)	①-4	거여동 산21-1	(16)	(16)	"				(1)	
		①-5	145-1	(32)	(32)	"				(2)										폐지
		①-6	145-1	(32)	(32)	"				(2)	①-6	거여동 145-1	(16)	(16)	"				(1)	
		①-7	산17-3임	(32)	(32)	"				(2)										폐지
		①-8	산17임	(16)	(16)	"				(1)										폐지
		①-9	산16임	(32)	(32)	"				(2)										폐지
		①-10	산14임	(32)	(32)	"				(2)	①-10	장지동 산14	(55)	(55)	"				(1)	
		①-11	115-1전	(27)	(27)	"				(1)	①-11	장지동 851	(27)	(27)	"				(1)	
		①-12	113-2전	(16)	(16)	"				(1)	①-12	장지동 851	(16)	(16)	"				(1)	
		①-13	113-3전	(16)	(16)	"				(1)	①-13	장지동 851	(16)	(16)	"				(1)	
		①-18	산25임	(32)	(32)	"				(2)										폐지
		①-19	산26-1임	(36)	(36)	"				(1)										폐지
		①-20	75대	(36)	(36)					(1)										폐지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그늘시렁										①-21	거여동 145-1	(16)	(16)	〃				(1)	신설
											①-22	거여동 145-1	(16)	(16)	〃				(1)	
											①-23	거여동 산21-6	(16)	(16)	〃				(1)	
											①-24	가락동 산77	(16)	(16)					(1)	
											①-25	가락동 산77	(16)	(16)					(1)	
											①-26	거여동 산21-1	(16)	(16)					(1)	
											①-27	장지동 851	(27)	(27)					(1)	
											①-28	장지동 851	(27)	(27)					(1)	
	쉘터	②		(42)	(42)					2	②		42	42					2	
		②-1	산78	(21)	(21)					(1)	②-1	가락동 산77	(21)	(21)					(1)	
		②-2	145-1	(21)	(21)					(1)	②-2	거여동 145-1	(21)	(21)					(1)	
	정자	③		(186)	(186)					3	③		25	25					1	
		③-1	산12임	(62)	(62)					(1)	③-1	장지동 산12	(25)	(25)					(1)	
		③-2	98-9답	(62)	(62)					(1)										폐지
		③-3	산27-2임	(62)	(62)					(1)										폐지
	막구조 파고라										④	장지동 851	49	49					1	신설
휴양시설	소계			795	795					20			428	428					65	감 367㎡
	휴게소	카		795	795					(7)	카		428	428						
		카-1	산17	(212)	(212)					(1)										폐지
		카-2	산16임	(110)	(110)					(2)										폐지
		카-3	산12임	(260)	(260)					(1)	카-3	장지동 산12	(75)	(75)						폐지
		카-4	산25임	(58)	(58)					(1)										폐지
		카-5	98-9답	(79)	(79)					(1)										폐지
		카-6	산27-2임	(76)	(76)					(1)										폐지
											카-7	장지동 851	(140)	(140)						신설
											카-8	장지동 851	(188)	(188)						신설
											카-9	거여동 산17	(25)	(25)						신설
	장의자		전지역							(1) 20기		전지역							4	
	평의자											전지역							27	
	등의자											전지역							3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계			1,255	1,255								633	633					1	감 622㎡
	야외학습장	타	101전	82	82															폐지
	곤충학습장	댜	산26-1임	1,173	1,173															폐지
	야외무대										먀	장지동 851	614	614						신설
	유아숲 대피소										샤	장지동 851	19	19					1	신설
운동시설	소계			4,752	4,752		1동	1386.35	1636.48	51			4,227	4,227		1동	1,386.35	1,636.48	79	감 525㎡
	배드민턴장	다	4개소	1,285	1,285					(4)	다	거여동 145-1	304	304						
		다-1	산78	(307)	(307)					(2)										폐지
		다-2	산78	(234)	(234)															폐지
		다-3	산19-5	(288)	(288)					(2)										폐지
		다-4	145-1	(456)	(456)															폐지
	체력단련장	라		751	751					(8)	라		680	680						
		라-1	산78	(353)	(353)					(1)	라-1	가락동 산77	(299)	(299)						
	체력단련장	라-2	산22-2	(78)	(78)															폐지
		라-4	산21-6	(65)	(65)															폐지
		라-5	145-1	(190)	(190)					(1)	라-5	거여동 145-1	(236)	(236)						
		라-6	산16임	(65)	(65)					(6)	라-6	거여동 산22	(145)	(145)						신설
	실내다목적구장	2	산21-1	1,440	1,440	철골조	1동	1,386.35	1,636.48		2	거여동 산21-1	1,440	1,440	철골조	1동	1386.35	1636.48		
	게이트볼장	나	산21-1	660	660															폐지
											야	장지동 851	378	378						신설
	족구장										뱌	거여동 산21-1	809	809						신설
	농구장	파	산26-1임	616	616						파	장지동 851	616	616						
	윗몸일으키기		전지역							8										폐지
	가슴펴기		〃							6										폐지
	팔굽혀펴기		〃							10										폐지
	평행봉		〃							10										폐지
	허리돌리기		〃							8										폐지
	철봉		〃							9										폐지
	체력단련시설											전지역							79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시설	소계												208	208					8	증 8기
											랴		208	208					8	
	모험놀이터										랴-1	장지동 851	(15)	(15)					(1)	신설
	목공놀이터										랴-2	장지동 851	(15)	(15)					(1)	신설
	소꿉놀이터										랴-3	장지동 851	(15)	(15)					(1)	신설
	미술놀이터										랴-4	장지동 851	(87)	(87)					(3)	신설
	음악놀이터										랴-5	장지동 851	(38)	(38)					(1)	신설
	바람놀이터										랴-6	장지동 851	(38)	(38)					(1)	신설
편익시설	소계																		1	
	음수대	④	산14임	(4)	(4)					1	⑥	가락동 산77							1	
관리시설	소계			410	410		2동	139.50	139.50				833	833		2동	206.92	226.72		증 423㎡
	관리사무소	1	산21-7	258	258	조적조	1동	64.80	64.80		1	거여동 산21-7	258	258	조적조	1동	64.80	64.80		지상1층
		3	97-2전	152	152	목조	1동	74.70	74.70		3	장지동 851	575	575	콘크리트	1동	142.12	161.92		
																				지상1층 사무실:19.80㎡ 기간제근로자 대기실(남):19.42㎡ 기간제근로자 대기실(여):9.00 자재창고:9.80㎡ 사워실(남):7.65㎡ 사워실(여):3.75㎡ 화장실(남):29.44㎡ 화장실(여):35.46㎡ 복도:7.80㎡
																				지상 2층 유아숲 대피소:19.80㎡
녹지 및 기타	소계			107,554									109,679.1							증 2,125.1㎡
	녹지 및 기타			107,554									109,679.1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3,167	7,225				
변경					4,130	9,858				
기정	소로	소계			1,817	5,199				
변경					3,765	9,094				
폐지		3	1	2	45	90	시설연결로	휴게광장(가-1)	소 로 3-2	
폐지			2	2	127	254	시설연결로	배드민턴장(다-1)	공원대지 경계	
기정			3	2	17	34	진 입 로	문정동길	휴게광장(가-1)	
변경			3	2.5	23	58	진 입 로	문정동길	소 로 3-26	
폐지			4	2	35	70	시설연결로	휴게광장(가-1)	관리사무소	
폐지			5	2	20	40	시설연결로	관리사무소	배드민턴장(다-3)	
기정			6	2	50	100	진 입 로	공원대지 경계	휴게광장(가-2)	
변경			6	4	73	292	진 입 로	공원대지 경계	휴게광장(가-3)	
폐지			7	3	53	159	진 입 로	입구광 갸-1	휴게광장(가-6)	
폐지			8	3	37	111	시설연결로	휴게광장(가-6)	휴게소(카-1)	
폐지			9	3	150	450	시설연결로	휴게소(카-1)	휴게소(카-2)	
폐지			10	3	111	333	시설연결로	휴게소(카-2)	휴게소(카-3)	
기정			11	3	67	201	진 입 로	휴게소(카-3)	입구광장(갸-4)	
변경			11	2	156	312	시설연결로	휴게소(카-3)	입구광장(갸-4)	
기정			12	2	4	8	시설연결로	진 입 부	입구광장(갸-7)	
변경			12	3	89	267	시설연결로	진 입 부	입구광장(갸-7)	
폐지			13	3	58	174	진 입 로	진 입 부	소 로 3-14	
기정			14	2	9	18	시설연결로	입구광장(갸-7)	휴게광장(가-9)	
변경			14	3	332	996	시설연결로	휴게광장(가-9)	입구광장(갸-7)	
폐지			15	6	21	126	진 입 로	입구광장(갸-6)	소 로 3-14	
기정			16	2	8	16	진 입 로	진 입 부	소 로 3-14	
변경			16	2.5	9	23	진 입 로	진 입 부	소 로 3-14	
기정			17	3	91	273	진 입 로	진 입 부	휴게광장(가-9)	
변경			17	3	20	60	진 입 로	진 입 부	휴게광장(가-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18	3	333	999	시설연결로	휴게광장(가-9)	휴게광장(가-8)	
변경			18	3	189	551	진입로	공원대지 경계	휴게광장(가-9)	
기정			19	3	200	600	시설연결로	휴게광장(가-8)	조경시설 라	
변경			19	3	453	1,359	시설연결로	휴게광장(가-7)	소로 3-18	
기정			20	3	155	465	진입로	진입부	소로 3-19	
변경			20	1.5	11	17	진입로	공원대지 경계	휴게광장(가-12)	
폐지			21	3	212	636	시설연결로	조경시설 라	휴게광장(가-7)	
기정			22	3	14	42	시설연결로	휴게광장(가-7)	입구광장(갸-5)	
변경			22	2	44	88	시설연결로	입구광장(갸-4)	휴게광장(가-7)	
신설			23	3.5	6	21	진입로	공원대지 경계	휴게광장(가-1)	
신설			24	1.5	5	8	진입로	공원대지 경계	입구광장(갸-12)	
신설			25	3	74	222	진입로	소로 3-26	공원대지 경계	
신설			26	3	133	399	시설연결로	입구광장(갸-10)	소로 3-25	
신설			27	2.5	4	10	시설연결로	소로 3-25	게이트볼장 뱌	
신설			28	1.5	291	437	시설연결로	소로 3-25	소로 3-35	
신설			29	2	120	240	시설연결로	산책로 7	소로 3-32	
신설			30	2	25	50	시설연결로	휴게광장(가-13)	소로 3-29	
신설			31	2	13	26	시설연결로	배드민턴장(다)	소로 3-29	
신설			32	1.5	4	6	시설연결로	산책로 9	휴게광장(가-14)	
신설			33	2	6	12	시설연결로	소로 3-33	휴게광장(가-5)	
신설			34	2	20	40	시설연결로	소로 3-6	소로 3-35	
신설			35	2	349	698	시설연결로	소로 3-6	휴게소(카-3)	
신설			36	2	46	92	진입로	공원대지 경계	소로 3-35	
신설			37	2	72	144	진입로	공원대지 경계	소로 3-35	
신설			38	2	7	14	진입로	공원대지 경계	소로 3-22	
신설			39	2.5	140	350	진입로	공원대지 경계	공원대지 경계	
신설			40	2.5	5	13	시설연결로	소로 3-19	휴게광장(가-12)	
신설			41	3	9	27	시설연결로	소로 3-19	휴게광장(가-12)	
신설			42	3	33	99	시설연결로	농구장 파	소로 3-18	
신설			43	3	16	48	시설연결로	소로 3-18	소로 3-42	
신설			44	3	16	48	시설연결로	휴게광장(가-10)	휴게광장(가-9)	
신설			45	3	105	315	시설연결로	소로 3-14	게이트볼장 (야)	
신설			46	3.5	10	34	시설연결로	휴게광장(가-1)	소로 3-47	
신설			47	2	80	158	시설연결로	휴게광장(가-1)	산책로 2	
신설			48	2	47	94	시설연결로	산책로 2	입구광장(갸-12)	
신설			49	2	45	91	시설연결로	산책로 4	입구광장(갸-12)	
신설			50	2	59	119	시설연결로	산책로 4	입구광장(갸-12)	
신설			51	2	10	21	진입로	공원대지 경계	체육공원(라-6)	
신설			52	2	31	62	시설연결로	체력단련장(라-6)	소로 3-26	
신설			53	2	46	93	시설연결로	입구광장(갸-10)	휴게광장(가-3)	
신설			54	2	28	56	시설연결로	소로 3-28	휴게광장(가-3)	
신설			55	2	90	180	시설연결로	소로 3-45	소로 3-1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	56	2	7	14	시설연결로	휴게광장(가-10)	소 로 3-55	
신설			57	2	24	49	시설연결로	소 로 3-55	소 로 3-45	
신설			58	2	304	608	시설연결로	소 로 3-45	소 로 3-19	
신설			59	2	19	38	시설연결로	소 로 3-58	소 로 3-60	
신설			60	2	67	135	시설연결로	야외무대(마)	음악놀이터(라-5)	
기정	산책로	소계			1,350	2,026				
변경					365	764				
기정			1	1.5	44	66	산책로	소 로 3-1	체력단련장(라-1)	
변경			1	1.5	41	62	산책로	휴게광장(가-1)	체력단련장(라-1)	
기정			2	1.5	46	69	산책로	소 로 3-2	체력단련장(라-1)	
변경			2	1.5	61	92	산책로	공원대지 경계	체력단련장(라-1)	
폐지			3	1.5	34	97	산책로	소 로 3-2	산책로 4	
기정			4	1.5	76	114	산책로	문정동길	체력단련장(라-1)	
변경			4	1.5	78	117	산책로	문정동길	체력단련장(라-1)	
폐지			5	1.5	236	354	산책로	소 로 3-3	산책로 6	
폐지			6	1.5	46	69	산책로	휴게광장(가-3)	관리사무소	
기정			7	1.5	88	132	산책로	오금로	체력단련장(라-5)	
변경			7	2	62	124	산책로	휴게광장(가-13)	체력단련장(라-5)	
폐지			8	1.5	90	135	산책로	휴게광장(가-4)	휴게광장(가-5)	
기정			9	1.5	68	102	산책로	휴게광장(가-5)	체력단련장(라-5)	
변경			9	3	123	369	산책로	소 로 3-32	체력단련장(라-5)	
폐지			10	1.5	20	30	산책로	입구광장(갸-2)	휴게소(카-2)	
폐지			11	1.5	109	164	산책로	입구광장(갸-3)	휴게소(카-2)	
폐지			12	1.5	45	68	산책로	입구광장(갸-3)	휴게소(카-3)	
폐지			13	1.5	308	462	산책로	휴게광장(가-10)	소 로 3-19	
폐지			14	1.5	35	52	산책로	소로 3-19	조경시설 사-1	
폐지			15	1.5	32	48	산책로	소로 3-19	소 로 3-19	
폐지			16	1.5	43	64	산책로	조경시설 (차)	소 로 3-21	

조성계획총괄도(기정)
장지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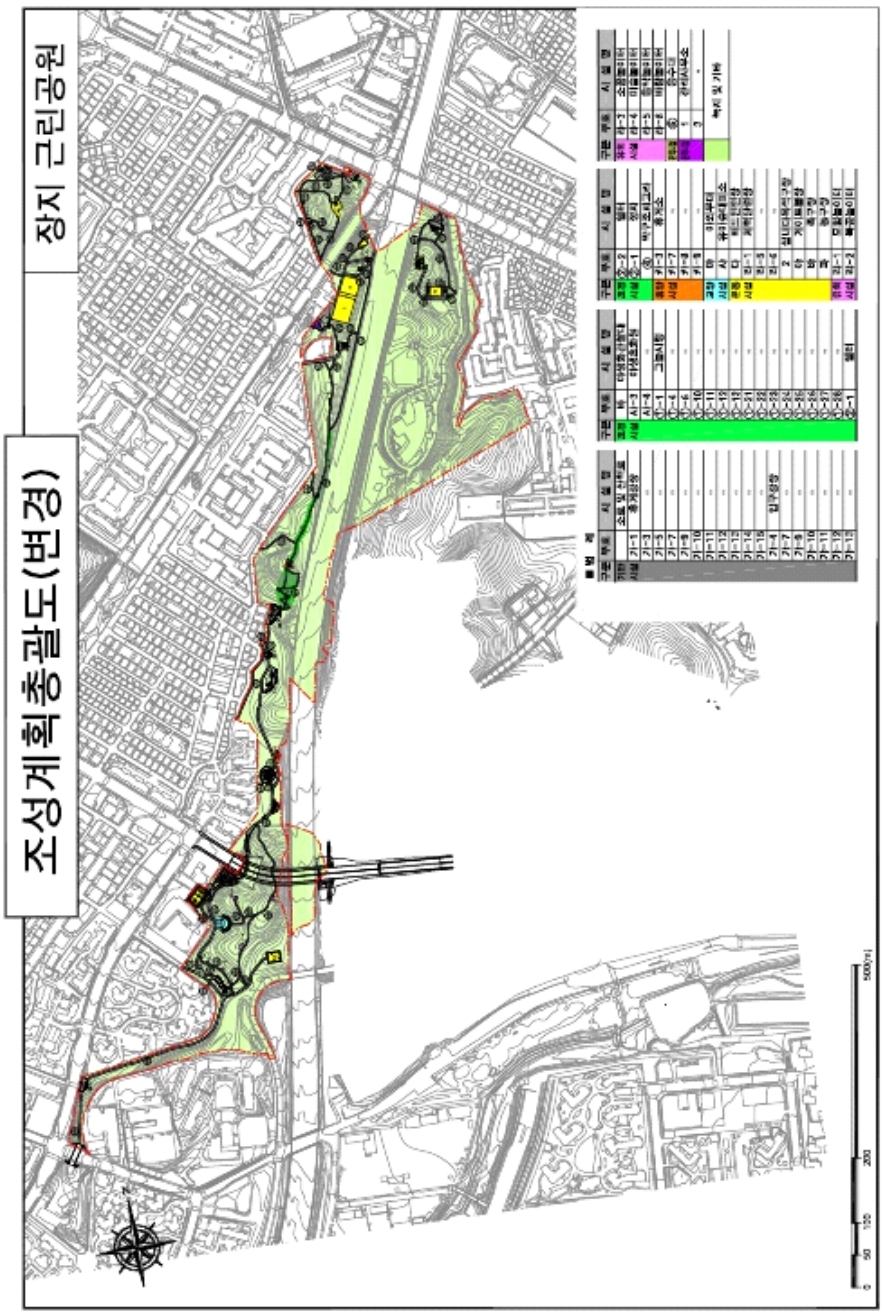
조성계획총괄도(변경)
장지 근린공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2호

푸른수목원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185호(2005.06.23.)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62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84호(2018.06.14.)로 추가 결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62(2017.12.22.)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구로구 항동 81-1번지 일대 푸른수목원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푸른수목원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푸른수목원근린공원 확대 편입지역 내 도서관을 신설하기 위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81-1번지 일대

3. 면 적 : 198,506㎡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4) 및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300-5535)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푸른수목원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위치: 서울시 구로구 항동 81-1 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계		196,042.00	61,079.97	3	1,580.97	1,861.41	205	198,506.00	62,173.97	4	2,270.97	2,861.41	204	증 2,464.00㎡
기반시설	소 계	26,902.39	26,902.39					27,349.39	27,349.39					증 447.00㎡
	도 로	(24,537.39)	(24,537.39)					(24,558.39)	(24,558.39)					증 21.00㎡
	광 장	(2,365.00)	(2,365.00)					(2,791.00)	(2,791.00)					증 426.00㎡
조경시설		11,375.58	11,375.58				25	11,375.58	11,375.58				24	감 1기
휴양시설		3,717.00	3,717.00				134	3,541.00	3,541.00				134	감 176.00㎡
유희시설		550.00	550.00				27	550.00	550.00				27	
운동시설		0	0				15	0	0				15	
교양시설		11,844.00	11,844.00	1	753.62	753.62	3	12,667.00	12,667.00	2	1,443.62	1,753.62	3	증 823.00㎡ (증 1동)
편익시설		5,010.00	5,010.00				1	5,010.00	5,010.00				1	
관리시설		1,681.00	1,681.00	2	827.35	1,107.79		1,681.00	1,681.00	2	827.35	1,107.79		
녹지 및 기타		134,962.03						136,332.03						증 1,370.00㎡
시설율 (법정 40%)		(61,079.97㎡ / 196,042.00㎡) x 100% = 31.16%						(62,173.97㎡ / 198,506.00㎡) x 100% = 31.32%						증 0.16%
건폐율 (법정 10%)		(1,580.97㎡ / 196.042.00㎡) x 100% = 0.81%						(2,270.97㎡ / 198.506.00㎡) x 100% = 1.14%						증 0.33%

나. 시설조서

구분		변경전 부호	변경전 위치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구조	변경전 규모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부호	변경후 위치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구조	변경후 규모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고
합 계				196,042.00	61,079.97		3	1,580.97	1,861.41	205			198,506.00	62,173.97		4	2,270.97	2,861.41	204	증 1,094.00㎡
기반시설	소 계			26,902.39	26,902.39								27,349.39	26,7349.39						증 447.00㎡
	도 로		전구역	24,537.39	24,537.39							전구역	24,558.39	24,558.39						증 21.00㎡
	광장	가	6개소	2,365.00	2,365.00						가	6개소	2,791.00	2,791.00						증 426.00㎡
		가-1	11-1전	(373)	(373)						가-1	11-1전	(373)	(373)						
		가-2	81-1전 96-1답	(1,377)	(1,377)						가-2	81-1전 96-1답	(1,377)	(1,377)						
		가-3	81-1전	(61)	(61)						가-3	81-1전	(61)	(61)						
		가-4	49전 51-1전	(303)	(303)						가-4	49전 51-1전	(303)	(303)						
		가-5	92-1일대	(126)	(126)						가-5	92-1일대	(126)	(126)						
		가-6	92-1일대	(125)	(125)						가-6	92-1일대	(125)	(125)						
											가-7	산19-1공	(426)	(426)						신설
조경시설	소 계			11,375.58	11,375.58					25			11,375.58	11,375.58					24	감 1기
	잔디광장	나	2개소	3,441	3,441						나	2개소	3,441	3,441						
		나-1	31유 43답	(1,668)	(1,668)						나-1	31유 43답	(1,668)	(1,668)						
		나-2	81-1전 96-1답	(1,773)	(1,773)						나-2	81-1전 96-1답	(1,773)	(1,773)						
	계류	다	4개소	5,457	5,457						다	4개소	5,457	5,457						
		다-1	전구역	(1,760)	(1,760)						다-1	전구역	(1,760)	(1,760)						
		다-2	전구역	(1,749)	(1,749)						다-2	전구역	(1,749)	(1,749)						
		다-3	전구역	(804)	(804)						다-3	전구역	(804)	(804)						
		다-4	전구역	(1,144)	(1,144)						다-4	전구역	(1,144)	(1,144)						
	미로정원	차	92-1일대	787	787						차	92-1일대	787	787						
	레일가든	카	92-1일대	426	426						카	92-1일대	426	426						
	생태연못	타	92-1일대	342	342						타	92-1일대	342	342						
	램프	파	92-1일대	133	133						파	92-1일대	133	133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계단	하	92-1일대	51	51						하	92-1일대	51	51						
	목교	거	92-1일대	18	18						거	92-1일대	18	18						
	사각파고라	Y	전구역							8	Y	전구역							8	
	정자	Z	산19-1임							1										폐지
	디자인 액자틀	AA	9-1전							2	AA	9-1전							2	
	수생 식물원	⑧	50-2전 51-1전 222-52철	457	457						⑧	50-2전 51-1전 222-52철	457	457						
	우산형 트랠리스	B	전구역	15.58	15.58					9	B	전구역	15.58	15.58					9	
	앉음벽	C	전구역	148	148						C	전구역	148	148						
	가벽	D	전구역	9	9						D	전구역	9	9						
	디딤석	E	전구역	91	91						E	전구역	91	91						
	놀이종탑	F	92-1일대							1	F	92-1일대							1	
	평의자	H	전구역							4	H	전구역							4	
휴양시설	소계			3,717	3,717					134			3,541	3,541					134	감 176.00㎡
	휴게소	라	33개소	3,717	3,717						라	33개소	3,541	3,541						
		라-1	11전	(763)	(763)						라-1	11전	(763)	(763)						
		라-2	산19-1임	(255)	(255)						라-2	산19-1임	(255)	(79)						감 176.00㎡
		라-3	43답 222-45구	(347)	(347)						라-3	43답 222-45구	(347)	(347)						
		라-4	31유	(35)	(35)						라-4	31유	(35)	(35)						
		라-5	31유	(40)	(40)						라-5	31유	(40)	(40)						
		라-6	43답	(40)	(40)						라-6	43답	(40)	(40)						
		라-7	43답	(36)	(36)						라-7	43답	(36)	(36)						
		라-8	48-1답	(193)	(193)						라-8	48-1답	(193)	(193)						
		라-9	43답 57-4철	(102)	(102)						라-9	43답 57-4철	(102)	(102)						
		라-10	55-3전 222-48철	(58)	(58)						라-10	55-3전 222-48철	(58)	(58)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휴게소	라-11	43답 222-48철	(119)	(119)						라-11	43답 222-48철	(119)	(119)						
		라-12	222-48철	(48)	(48)						라-12	222-48철	(48)	(48)						
		라-13	52-3철 222-48철	(60)	(60)						라-13	52-3철 222-48철	(60)	(60)						
		라-14	52-3철	(70)	(70)						라-14	52-3철	(70)	(70)						
		라-15	51-1전	(179)	(179)						라-15	51-1전	(179)	(179)						
		라-16	92-1일대	(47)	(47)						라-16	92-1일대	(47)	(47)						
		라-17	92-1일대	(26)	(26)						라-17	92-1일대	(26)	(26)						
		라-18	92-1일대	(72)	(72)						라-18	92-1일대	(72)	(72)						
		라-19	92-1일대	(184)	(184)						라-19	92-1일대	(184)	(184)						
		라-20	92-1일대	(83)	(83)						라-20	92-1일대	(83)	(83)						
		라-21	92-1일대	(82)	(82)						라-21	92-1일대	(82)	(82)						
		라-22	92-1일대	(43)	(43)						라-22	92-1일대	(43)	(43)						
		라-23	92-1일대	(59)	(59)						라-23	92-1일대	(59)	(59)						
		라-24	92-1일대	(97)	(97)						라-24	92-1일대	(97)	(97)						
		라-25	92-1일대	(171)	(171)						라-25	92-1일대	(171)	(171)						
		라-26	92-1일대	(143)	(143)						라-26	92-1일대	(143)	(143)						
		라-27	92-1일대	(44)	(44)						라-27	92-1일대	(44)	(44)						
		라-28	92-1일대	(113)	(113)						라-28	92-1일대	(113)	(113)						
		라-29	92-1일대	(79)	(79)						라-29	92-1일대	(79)	(79)						
		라-30	92-1일대	(33)	(33)						라-30	92-1일대	(33)	(33)						
		라-31	92-1일대	(28)	(28)						라-31	92-1일대	(28)	(28)						
		라-32	92-1일대	(35)	(35)						라-32	92-1일대	(35)	(35)						
		라-33	92-1일대	(33)	(33)						라-33	92-1일대	(33)	(33)						
	파고라	G	전구역							14	G	전구역							14	
	평의자	H	전구역							40	H	전구역							40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등의자	I	전구역							70	I	전구역							70	
	대형그늘막 트랠리스	J	전구역							1	J	전구역							1	
	야외테이블	K	전구역							6	K	전구역							6	
	휴게데크	L	전구역							3	L	전구역							3	
유희시설	소 계			550	550					27			550	550					27	
	어린이정원	너	92-1일대	154	154						너	92-1일대	154	154						
	숲속 놀이터	더	3개소	396	396						더	3개소	396	396						
		더-1	전구역	135	135						더-1	전구역	135	135						
		더-2	전구역	146	146						더-2	전구역	146	146						
		더-3	전구역	115	115						더-3	전구역	115	115						
	키즈체험시설	M	전구역							4	M	전구역							4	
	어린이의자	N	전구역							3	N	전구역							3	
	자연목 징검다리	O	전구역							3	O	전구역							3	
	우물놀이대	P	전구역							2	P	전구역							2	
	통나무테이블	Q	전구역							2	Q	전구역							2	
	자연스케치북	R	전구역							3	R	전구역							3	
	통나무의자	S	전구역							3	S	전구역							3	
	움막놀이대	T	전구역							1	T	전구역							1	
	가방걸이	U	전구역							1	U	전구역							1	
	나무실로폰	V	전구역							2	V	전구역							2	
	거미줄 오르기	W	전구역							2	W	전구역							2	
	자연목 타잔놀이대	X	전구역							1	X	전구역							1	
운동시설	소계									15									15	
	체력단련시설	A	전구역							15	A	전구역							1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교양시설	소 계			11,844	11,844		1	753.62	753.62	3			12,667	12,667		2	1,443.62	1,753.62	3	증 823.00㎡ (증 1동)
	식물원	마	2개소	6,573	6,573						마	2개소	6,573	6,573						
		마-1	9-1전 11-1전12-27답	(4,535)	(4,535)						마-1	9-1전 11-1전12-27답	(4,535)	(4,535)						
		마-2	9-1전 12-27답 산18-3임	(1,996)	(1,996)						마-2	9-1전 12-27답 산18-3임	(1,996)	(1,996)						
		마-3	51-1전	(42)	(41)						마-3	51-1전	(42)	(41)						
	야외 교육장	바	9-1전	716	716						바	9-1전	716	716						
	어린이 정원	사	9-1전 222-45구	1,238	1,238						사	9-1전 222-45구	1,238	1,238						
	조류 관찰대	아	2개소	27	27						아	2개소	27	27						
		아-1	31-1제	(14)	(14)						아-1	31-1제	(14)	(14)						
		아-2	31-1제	(13)	(13)						아-2	31-1제	(13)	(13)						
	관찰데크-1	④	33-2유	624	624					1	④	33-2유	624	624					1	
	관찰데크-2	⑤	44-1답 46답	343	343					1	⑤	44-1답 46답	343	343					1	
	관찰데크-3	⑥	48-2답	75	75					1	⑥	48-2답	75	75					1	
	숲교육센터	⑨	49전 50-2전 51-1전	635	635	철근 콘크리트	지상1층	753.62	753.62		⑨	49전 50-2전 51-1전	635	635	철근 콘크리트	지상 1층	753.62	753.62		
	작물정원-1	⑩	9-1전	687	687						⑩	9-1전	687	687						
	작물정원-2	⑪	50-3전	300	300						⑪	50-3전	300	300						
	작물정원-3	⑫	산23-2임	150	150						⑫	산23-2임	150	150						
	작물정원-4	⑬	산23-4임	476	476						⑬	산23-4임	476	476						
											2	도서관	823	823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690.00	1,000.00		신설 (1층-520.0㎡) (전시실-59.21㎡) (북카페-31.74㎡) (라운지-30.56㎡) (사무실-49.58㎡) (보존서고/자료정리실 -46.10㎡) (다목적실-49.66㎡) (홀/복도/계단 -166.75㎡) (화장실,/다목적화장실 수유실-42.40㎡) (기계실-44.40㎡) (2층-480.0㎡) (성인열람실 -171.60㎡) (어린이열람실 -137.83㎡) (디지털자료실 -32.54㎡) (홀/복도/계단 -115.29㎡) (화장실-22.74㎡)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익시설	소계			5,010	5,010					1			5,010	5,010					1	
	주차장	자	2개소	4,947	4,947						자	2개소	4,947	4,947						
		자-1	81-1전	(4,343)	(4,343)						자-1	81-1전	(4,343)	(4,343)						
		자-2	92-1일대	(604)	(604)						자-2	92-1일대	(604)	(604)						
	음수전	AB	31유	63	63					1	AB	31유	63	63					1	
관리시설	소계			1,681	1,681		2	827,35	1,107.79				1,681	1,681		2	827,35	1,107.79		
	방문자센터	1	81-1전	673	673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331.45	331.45		1	81-1전	673	673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331.45	331.45		
	공원관리소	러	92-1일대	499	499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495.9	776.34		러	92-1일대	499	499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495.9	776.34		
	계단실	머	전구역	225	225						머	전구역	225	225						
	D.A	버	전구역	119	119						버	전구역	119	119						
	낙엽재활용장	서	92-1일대	165	165						서	92-1일대	165	165						
녹지 및 기타	소계			134,962.03									136,332.03							증 1,370.00㎡
	녹지			134,962.03									136,332.03							증 1,370.00㎡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9,292.7**	**24,537.39**				
변경					**9,303.2**	**24,558.39**				
당초	중로	계			65.1	976.50				
당초		2	연1	15.0	65.1	976.50	도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당초	소로	**계**			9,227.6	23,560.89				
변경					**9,238.1**	**23,581.89**				
당초		3	연1	2.7	7.0	18.90	산책로	산1	산2	
당초		3	연2	3.0	14.2	42.60	산책로	산1	산2	
당초		3	연3	3.1	15.6	48.36	산책로	산3	산2	
당초		3	연4	2.8	24.0	67.20	산책로	산1	산2	
당초		3	연5	3.1	8.1	25.11	산책로	산3	산2	
당초		3	연6	1.2	28.4	34.08	산책로	연4	연8	
당초		3	연7	1.2	17.2	20.64	산책로	산1	연6	
당초		3	연8	3.0	28.2	84.60	산책로	산1	산2	
당초		3	연9	3.1	8.3	25.73	산책로	산3	산2	
당초		3	연10	3.0	18.8	56.40	산책로	연8	연11	
당초		3	연11	3.0	29.3	87.90	산책로	산1	산3	
당초		3	연12	2.6	4.2	10.92	산책로	연11	쉼터4	
당초		3	연13	3.0	16.4	49.20	산책로	산4	산3	
당초		3	연14	1.2	3.5	4.20	산책로	산1	쉼터4	
당초		3	연15	1.2	4.0	4.80	산책로	산5	쉼터4	
당초		3	연16	1.2	3.5	4.20	산책로	산1	쉼터4	
당초		3	연17	2.6	2.5	6.50	산책로	연19	쉼터4	
당초		3	연18	1.2	4.0	4.80	산책로	산5	쉼터4	
당초		3	연19	1.2	15.3	18.36	산책로	산1	산5	
당초		3	연20	1.2	19.3	23.16	산책로	연19	연22	
당초		3	연21	1.2	6.8	8.16	산책로	산1	연20	
당초		3	연22	3.0	16.2	48.60	산책로	산1	산5	
당초		3	연23	1.5	18.4	27.60	산책로	연24	산5	
당초		3	연24	3.0	23.3	69.90	산책로	산3	산5	
당초		3	연25	3.0	2.7	8.10	시설연결로	목교	산9	
당초		3	연26	3.0	22.2	66.60	산책로	산10	산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3	연27	3.0	6.8	20.40	산책로	산11	산10	
당초		3	연28	2.5	11.8	29.50	시설연결로	계류A	산9	
당초		3	연29	2.5	15.5	38.75	산책로	산10	산9	
당초		3	연30	2.5	4.5	11.25	산책로	산11	산10	
당초		3	연31	2.5	20.3	50.75	시설연결로	계류A	산9	
당초		3	연32	2.5	13.8	34.50	산책로	산11	산9	
당초		3	연33	2.0	23.5	47.00	시설연결로	계류A	산9	
당초		3	연34	2.0	30.7	92.10	시설연결로	목교	산9	
당초		3	연35	3.0	12.0	36.00	산책로	산16	산9	
당초		3	연36	1.2	13.5	16.20	산책로	연35	연37	
당초		3	연37	2.0	23.8	47.60	산책로	산16	산12	
당초		3	연38	2.0	14.7	29.40	산책로	연37	연40	
당초		3	연39	1.2	14.7	17.64	산책로	연37	연40	
당초		3	연40	3.0	23.7	71.10	산책로	산16	산12	
당초		3	연41	1.2	27.2	32.64	산책로	연40	산12	
당초		3	연42	5.6	11.8	66.08	시설연결로	레일가든	산12	
당초		3	연43	2.0	24.0	48.00	산책로	산16	산12	
당초		3	연44	2.0	18.4	36.80	산책로	연43	산14	
당초		3	연45	1.6	5.5	8.80	시설연결로	산14	주차장1	
당초		3	연46	2.1	1.4	2.94	시설연결로	산8	주차장1	
당초		3	연47	3.3	14.9	49.17	산책로	산18	산17	
당초		3	연48	4.0	5.9	23.60	산책로	산18	산17	
당초		3	연49	4.9	7.2	35.28	산책로	부지외곽	산21	
당초		3	연50	2.2	8.8	19.36	산책로	쉼터9	산21	
당초		3	연51	2.0	12.2	24.40	산책로	쉼터10	산21	
당초		3	연52	2.0	23.5	47.00	산책로	쉼터11	산21	
당초		3	연53	3.7	21.8	80.66	산책로	산22	산21	
당초		3	연54	3.2	7.3	23.36	산책로	부지외곽	산2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3	연55	3.4	8.0	27.20	산책로	산22	산21	
당초		3	연56	3.0	216.2	648.60	산책로	산22	연56	
당초		3	연57	3.2	41.9	134.08	산책로	연56	연56	
당초		3	연58	3.9	18.4	71.76	산책로	산22	산21	
당초		3	연59	3.1	15.6	48.36	산책로	산23	산22	
당초		3	연60	3.2	14.9	47.68	시설연결로	산24	낙엽재활용장	
당초		3	연61	1.2	64.7	77.64	산책로	연63	연63	
당초		3	연62	1.2	8.4	10.08	산책로	연63	연61	
당초		3	연63	1.2	31.2	37.44	산책로	쉼터13	연60	
당초		3	연64	1.2	21.7	26.04	산책로	연65	쉼터13	
당초		3	연65	1.2	41.7	50.04	산책로	산25	연70	
당초		3	연66	1.2	8.2	9.84	산책로	연65	쉼터13	
당초		3	연67	1.2	12.5	15.00	산책로	연70	연65	
당초		3	연68	1.2	5.4	6.48	산책로	연70	연65	
당초		3	연69	1.2	5.0	6.00	산책로	연72	연70	
당초		3	연70	1.2	46.5	55.80	산책로	연72	쉼터13	
당초		3	연71	1.2	8.5	10.20	시설연결로	연72	앉음벽	
당초		3	연72	1.2	32.7	39.24	산책로	산25	숲속놀이터1	
당초		3	연73	6.0	92.0	554.00	시설연결로	부진입광장	연75	
당초		3	연74	3.0	36.0	109.00	시설연결로	연75	연75	
당초		3	연75	4.0	201.0	805.00	시설연결로	연73	휴게소3	
당초		3	연76	4.0	146.0	587.00	시설연결로	건물진입광장-2	연77	
당초		3	연77	3.5	514.0	1,802.00	시설연결로	주차장2	산51	
당초		3	연78	3.0	50.0	150.00	시설연결로	건물진입광장-2	연77	
당초		3	연79	3.0	35.0	107.00	시설연결로	연77	진입광장	
당초		3	연80	3.0	47.0	143.00	시설연결로	연77	산39	
당초		3	연81	3.8	59.0	225.00	시설연결로	산37	연74	
신설		**3**	**연82**	**2.0**	**10.5**	**21.00**	**시설연결로**	**연75**	**휴게소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3	산1	4.0	323.8	1,295.20	시설연결로	계단	광장1	
당초		3	산2	3.0	113.3	339.90	산책로	부지내 녹지	부지내 녹지	
당초		3	산3	2.0	227.5	455.00	산책로	산2	산6	
당초		3	산4	2.0	253.0	506.00	산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당초		3	산5	3.0	66.4	199.20	산책로	연11	산6	
당초		3	산6	2.0	87.8	175.60	산책로	산6	산6	
당초		3	산7	1.2	34.2	41.04	산책로	광장1	부지내 녹지	
당초		3	산8	4.0	253.0	1,012.00	산책로	부지외곽	연1	
당초		3	산9	3.0	144.5	433.50	산책로	부지내 녹지	연36	
당초		3	산10	2.5	87.4	218.50	산책로	부지내 녹지	연31	
당초		3	산11	1.2	132.9	159.48	산책로	산10	연34	
당초		3	산12	3.0	75.4	226.20	산책로	연33	산14	
당초		3	산13	2.0	27.2	54.40	산책로	연39	연42	
당초		3	산14	2.8	47.3	132.44	산책로	산8	산16	
당초		3	산15	3.0	30.2	90.60	산책로	산14	연1	
당초		3	산16	2.0	250.5	501.00	산책로	부지외곽	연1	
당초		3	산17	4.0	108.0	432.00	산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당초		3	산18	3.6	225.4	811.44	산책로	산17	산17	
당초		3	산19	3.1	130.0	403.00	산책로	산18	부지내 녹지	
당초		3	산20	2.0	88.6	177.20	산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당초		3	산21	4.1	242.2	993.02	산책로	광장2	부지외곽	
당초		3	산22	3.5	286.0	1,001.00	산책로	산22	산22	
당초		3	산23	2.0	254.5	509.00	산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당초		3	산24	4.0	100.8	403.20	산책로	부지외곽	쉼터13	
당초		3	산25	1.2	257.3	308.76	산책로	산24	쉼터14	
당초		3	산26	1.2	110.3	132.36	산책로	쉼터13	쉼터17	
당초		3	산27	1.2	45.4	54.48	산책로	쉼터14	쉼터15	
당초		3	산28	1.2	29.5	35.40	산책로	쉼터15	쉼터1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3	산29	1.2	47.6	57.12	산책로	쉼터16	쉼터17	
당초		3	산30	1.6	49.2	78.72	산책로	쉼터17	산31	
당초		3	산31	1.6	42.2	67.52	산책로	쉼터18	산31	
당초		3	산32	1.5	206.0	309.00	산책로	야외교육장	진입광장	
당초		3	산33	2.0	17.0	35.00	산책로	연78	연79	
당초		3	산34	2.0	32.0	64.00	산책로	연79	산39	
당초		3	산35	2.0	16.0	33.00	산책로	진입광장	산36	
당초		3	산36	2.5	103.0	258.00	산책로	진입광장	진입광장	
당초		3	산37	2.0	158.0	317.00	산책로	휴게소1	산39	
당초		3	산38	1.5	16.0	25.00	산책로	산34	산39	
당초		3	산39	2.0	79.0	159.00	산책로	연76	진입광장	
당초		3	산40	2.0	40.0	81.00	산책로	산42	연76	
당초		3	산41	2.0	63.0	126.00	산책로	연74	산56	
당초		3	산42	2.0	128.0	257.00	산책로	산41	산56	
당초		3	산43	2.0	35.0	71.00	산책로	산44	산42	
당초		3	산44	2.0	77.0	154.00	산책로	연74	연76	
당초		3	산45	2.0	58.0	117.00	산책로	휴게소3	산44	
당초		3	산46	2.0	21.0	43.00	산책로	휴게소8	연76	
당초		3	산47	2.0	99.0	198.00	산책로	휴게소8	휴게소3	
당초		3	산48	2.0	26.0	52.00	산책로	연75	산47	
당초		3	산49	2.0	139.0	278.00	산책로	연72	식물원1	
당초		3	산50	2.0	146.0	293.00	산책로	연74	산49	
당초		3	산51	1.5	55.0	83.00	산책로	연76	북동측경계	
당초		3	산52	1.5	45.0	68.00	산책로	산51	작물정원3	
당초		3	산53	2.0	118.0	236.00	산책로	산46	산76	
당초		3	산54	1.2	47.0	57.00	산책로	숲교육센터	건물 진입광장2	
당초		3	산55	2.0	34.0	69.00	산책로	산50	작물정원1	
당초		3	산56	2.0	136.0	273.00	산책로	연80	산5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3	산57	2.0	45.0	91.00	산책로	산39	산40	
당초		3	산58	2.0	22.0	44.00	산책로	산37	산56	
당초		3	산59	2.0	24.0	48.00	산책로	산37	산56	
당초		3	산60	2.0	21.0	42.00	산책로	산37	산56	
당초		3	산61	1.5	19.0	29.00	산책로	연79	산62	
당초		3	산62	1.5	17.0	26.00	산책로	연76	산34	
당초		3	산63	1.0	73.0	73.00	산책로	연76	휴게소9	
당초		3	산64	1.0	9.0	9.00	산책로	연76	산63	
당초		3	산65	1.0	18.0	18.00	산책로	연76	산63	
당초		3	산66	1.5	46.0	69.00	산책로	휴게소9	휴게소10	
당초		3	산67	1.5	46.0	69.00	산책로	휴게소9	휴게소10	
당초		3	산68	1.0	6.0	6.00	산책로	산67	산66	
당초		3	산69	1.0	37.0	37.00	산책로	휴게소10	휴게소11	
당초		3	산70	1.0	15.0	15.00	산책로	연76	산69	
당초		3	산71	1.0	25.0	25.00	산책로	휴게소11	휴게소12	
당초		3	산72	1.0	12.0	12.00	산책로	휴게소11	연76	
당초		3	산73	1.0	27.0	27.00	산책로	휴게소12	연76	
당초		3	산74	1.0	18.0	18.00	산책로	연76	휴게소13	
당초		3	산75	1.0	59.0	59.00	산책로	휴게소13	휴게소14	
당초		3	산76	2.0	33.0	66.00	산책로	휴게소3	연76	
당초		3	진1	2.2	6.5	14.30	진입로	산8	공원 관리시설	
당초		3	진2	3.1	1.8	5.58	진입로	산12	공원 관리시설	
당초		3	진3	5.2	1.8	9.36	진입로	산12	공원 관리시설	
당초		3	진4	5.7	1.8	10.26	진입로	산12	공원 관리시설	
당초		3	진5	4.1	3.1	12.71	진입로	부지외곽	산18	
당초		3	진6	4.2	13.1	55.02	진입로	부지외곽	산22	

조성계획도(변경전)

푸른수목원근린공원

■시설결정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구 오 동 수 량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비 고
공 원 면 적			196,042	205	1,580.97	1,861.41	
시 설 면 적			61,079.97	205	1,580.97	1,861.41	시설률 31.16%
도로광장		소 계	26,902.39				
		도로(소계)	24,537.39				
		광장(소계)	2,365				
	가-5	광장1	126				
	가-6	광장2	125				
	가-1	부진입광장	373				
	가-2	진입광장	1,377				
	가-3	건물진입광장1	61				
	가-4	건물진입광장2	303				
운동시설		소 계		15			
	A	체력단련시설	-	15			
조경시설		소 계	11,975.58	25			
	자	미표정원	787				
	자	테팔기존	428				
	다-4	폰드 및 계류A	1,144				
	다-3	계류B	804				
	타	생태연못	342				
	피	핑프	133				
	마	계단	51				
	거	폭교	18				
	나-1	잔디광장1	1,668				
	나-2	잔디광장2	1,773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구 오 동 수 량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비 고
조경시설	다-1	계류C	1,760				
	다-2	계류D	1,749				
	용	수생식물원	457				
	B	우산형토piarist	15.58	9			
	C	암음벽	148				29㎡
	D	가벽	9				12M
	E	디딤석	91				49EA
	F	놀이경량	-	1			
	H	휴대의	-	4			
	Y	사각의고라	-	8			
	Z	정자	-	1			
	AA	디딤안에자동	-	2			
휴양시설		소 계	3,717	134			
	라-16	쉼터1	47				
	라-17	쉼터2	26				
	라-18	쉼터3	72				
	라-19	쉼터4	184				
	라-20	쉼터5	83				
	라-21	쉼터6	82				
	라-22	쉼터7	43				
	라-23	쉼터8	59				
	라-24	쉼터9	97				
	라-25	쉼터10	171				
	라-26	쉼터11	143				
	라-27	쉼터12	44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구 오 동 수 량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비 고
휴양시설	라-28	쉼터13	113				
	라-29	쉼터14	79				
	라-30	쉼터15	33				
	라-31	쉼터16	28				
	라-32	쉼터17	35				
	라-33	쉼터18	33				
	라-1	휴게소1	763				
	라-2	휴게소2	255				
	라-3	휴게소3	347				
	라-4	휴게소4	35				
	라-5	휴게소5	40				
	라-6	휴게소6	40				
	라-7	휴게소7	36				
	라-8	휴게소8	193				
	라-9	휴게소9	102				
	라-10	휴게소10	58				
	라-11	휴게소11	119				
	라-12	휴게소12	48				
	라-13	휴게소13	60				
	라-14	휴게소14	70				
	라-15	휴게소15	179				
	G	피고라	-	14			
	H	벤치자	-	40			
	I	등의자	-	70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구 오 동 수 량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비 고
휴양시설	J	대형그늘막휴게소	-	1			
	K	야외테이블	-	6			
	L	휴게데크	-	3			
유희시설	소 계		550	27			
	너	어린이정원	154				
	다-1	숲속놀이터1	135				
	다-2	숲속놀이터2	146				
	다-3	숲속놀이터3	115				
	M	키즈체험시설	-	4			
	N	어른이의자	-	3			
	O	자연체험관(2곳)	-	3			
	P	무릎놀이대	-	2			
	Q	통나무테이블	-	2			
	R	자연스케치북	-	3			
	S	통나무의자	-	3			
	T	음악놀이대	-	1			
	U	가방걸이	-	1			
	V	나무실로폰	-	2			
	W	거미줄오르기	-	2			
	X	자연속타잔놀이대	-	1			
교양시설	소 계		11,844	3	753.62	753.62	
	다-1	식물원1	4,535				
	다-2	식물원2	1,896				
	다-3	식물원3	42				
	바	야외교육장	716				
	사	어린이정원	1,238				
	다-1	조류관찰대1	14				
	다-2	조류관찰대2	13				
	㉠	관찰데크1	624	1			
	㉡	관찰데크2	343	1			
	㉢	관찰데크3	75	1			
	㉮	습지복원지	635		753.62	753.62	
	㉯	학물정원1	687				
	㉰	학물정원2	300				
	㉱	학물정원3	150				
	㉲	학물정원4	476				
편익시설	소 계		5,010	1			
	자-2	주차장1	606				
	자-1	주차장2	4,343				
	AB	음수전	63	1			
관리시설	소 계		1,681		827.35	1,107.79	
	의	공원관리소	499		495.9	776.34	
	아	계단실	225				
	버	DA	119				자동순환시설
	서	낙엽재활용장	165				
	1	방문자센터	673		331.45	331.45	
녹지 및 기타	소 계		134,962.03				
	녹지 및 기타		134,96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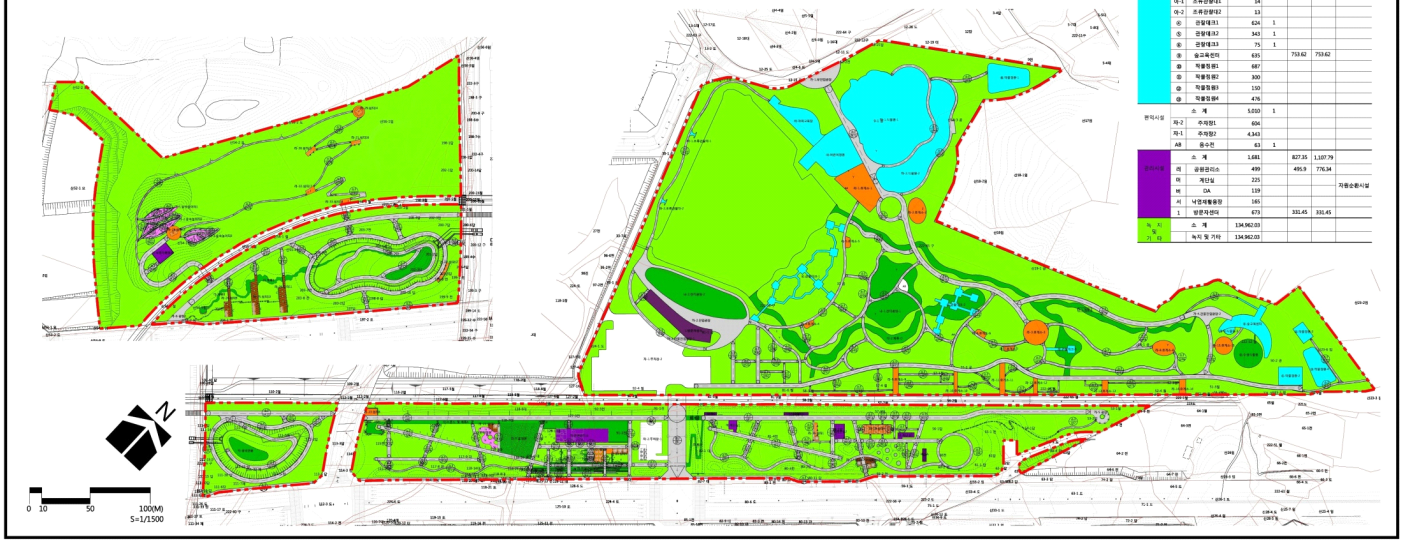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후)

푸른수목원근린공원

■시설결정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 수량	건축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공원면적			198,506.00	204	2,270.97	2,861.41	
시설면적			62,173.97	204	2,270.97	2,861.41	시설률 30.76%
도로및광장		소 계	27,349.39				
		도로(소계)	24,558.39				
		광장(소계)	2,791				
	가-5	광장1	126				
	가-6	광장2	125				
	가-1	푸진입광장	373				
	가-2	진입광장	1,377				
	가-3	건물진입광장1	61				
	가-4	건물진입광장2	303				
	가-7	건물진입광장3	426				
유통시설		소 계	-	15			
	A	체육단련시설	-	15			
공원시설		소 계	11,375.58	24			
	타	티로정원	787				
	카	레일가든	426				
	다-4	폰드 및 계류A	1,144				
	다-3	계류B	804				
	타	생태연못	342				
	파	팔즈	133				
	하	계단	51				
	거	목교	18				
	나-1	간이공장1	1,668				
	나-2	간이공장2	1,773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 수량	건축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공원시설	다-1	계류C	1,760				
	다-2	계류D	1,749				
	용	수생식물원	457				
	B	우산형토템기스	15.58	9			
	C	앙음벽	148				29MM
	D	가벽	9				12M
	E	디딤석	91				49MEA
	F	놀이동탑	-	1			
	H	정의자	-	4			
	Y	사각화고라	-	8			
	AA	디지안액자틀	-	2			
유영시설		소 계	3,541	134			
	라-16	쉼의1	47				
	라-17	쉼의2	26				
	라-18	쉼의3	72				
	라-19	쉼의4	184				
	라-20	쉼의5	83				
	라-21	쉼의6	82				
	라-22	쉼의7	43				
	라-23	쉼의8	59				
	라-24	쉼의9	97				
	라-25	쉼의10	171				
	라-26	쉼의11	143				
	라-27	쉼의12	44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 수량	건축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유영시설	라-28	쉼의13	113				
	라-29	쉼의14	79				
	라-30	쉼의15	33				
	라-31	쉼의16	28				
	라-32	쉼의17	35				
	라-33	쉼의18	33				
	라-1	휴게소1	763				
	라-2	휴게소2	79				
	라-3	휴게소3	347				
	라-4	휴게소4	35				
	라-5	휴게소5	40				
	라-6	휴게소6	40				
	라-7	휴게소7	36				
	라-8	휴게소8	193				
	라-9	휴게소9	102				
	라-10	휴게소10	58				
	라-11	휴게소11	119				
	라-12	휴게소12	48				
	라-13	휴게소13	60				
	라-14	휴게소14	70				
	라-15	휴게소15	179				
	G	화고라	-	14			
	H	정의자	-	40			
	I	등의자	-	70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 수량	건축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유영시설	J	대형놀이터정리스	-	1			
	K	야외테이블	-	6			
	L	휴게데크	-	3			
유희시설		소 계	550	27			
	나	어린이정원	154				
	라-1	원족놀이터1	135				
	라-2	원족놀이터2	146				
	라-3	원족놀이터3	115				
	M	키즈체험시설	-	4			
	N	어린이의자	-	3			
	O	자연체험길다리	-	3			
	P	무릎놀이대	-	2			
	Q	통나무책의탑	-	2			
	R	개구스케치북	-	3			
	S	통나무의자	-	3			
	T	음악놀이대	-	1			
	U	가방걸이	-	1			
	V	나무실로폰	-	2			
	W	거미줄오르기	-	2			
	X	자연체험잔놀이대	-	1			
공원시설		소 계	12,667	3	1,443.62	1,753.62	
	라-1	식물원1	4,535				
	라-2	식물원2	1,996				
	라-3	식물원3	42				
	바	야외교육장	716				
	사	어린이정원	1,238				
	라-1	프루경원대1	14				
	라-2	프루경원대2	13				
	㉠	관찰데크1	624	1			
	㉡	관찰데크2	343	1			
	㉢	관찰데크3	75	1			
	㉮	습지복원지	635		713.62	713.62	
	㉯	학졸정원1	687				
	㉰	학졸정원2	300				
	㉱	학졸정원3	150				
	㉲	학졸정원4	476				
	2	도서관	823		690.00	1,000.00	
편익시설		소 계	5,010	1			
	자-2	주차장1	604				
	자-1	주차장2	4,343				
	AB	등수전	63	1			
관리시설		소 계	1,681		827.35	1,107.79	
	라	공원관리소	499		495.9	776.34	
	마	계단실	225				
	M	DA	119				자원순환시설
	AI	시설재활용장	165				
	1	방문자센터	673		331.45	331.45	
녹지및기타		소 계	136,332.03				
		녹지 및 기타	136,33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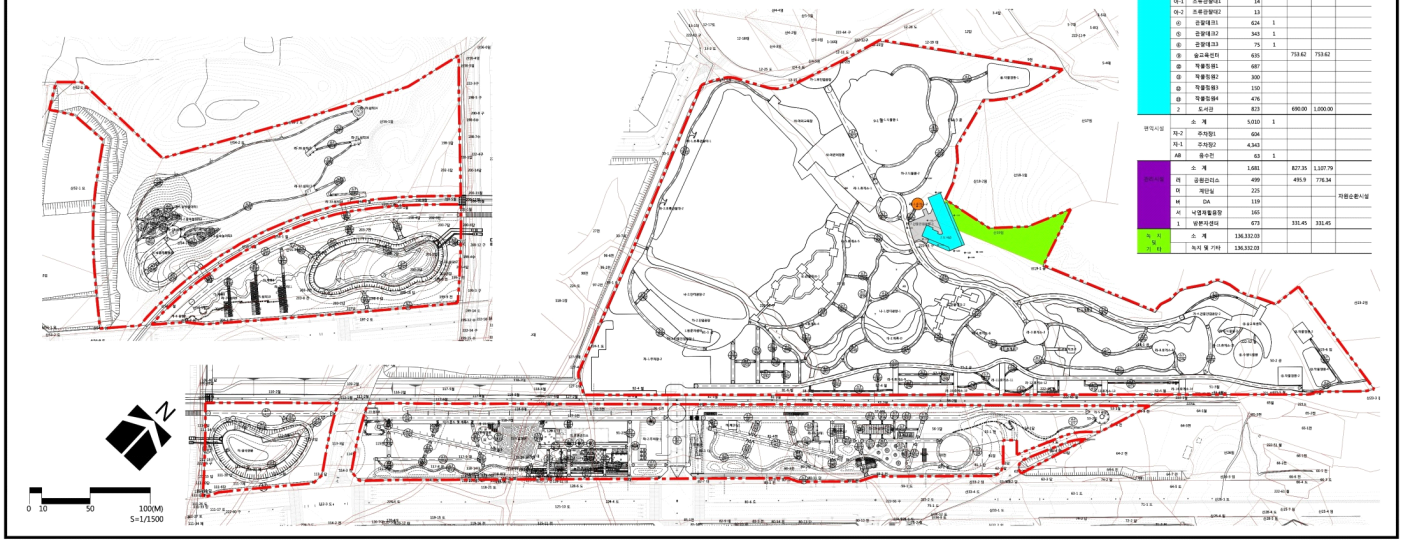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3호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거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　　칭 :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 수립배경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3. 수립목적
   ○ 제1차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걷는 도시, 서울'의 내실있는 추진 도모
   ○ 변화하는 서울의 보행교통 여건을 반영한 법정계획의 수립·추진으로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제공
4. 계획기간 : 2019년~2023년
5. 주요내용
   ○ 서울시 보행정책 및 1차 계획('13~'18년) 추진성과 분석・평가
   ○ 보행시설 및 보행교통 현안 조사·분석
   ○ 사회여건변화 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2차 계획 비전 및 추진목표,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 핵심성과 과제 도출, 추진전략 및 중장기 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02-2133-2420)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eoul.go.kr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연번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1	석축	종로구 청운동 7-1	종로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2	석축	종로구 부암동 66-4	종로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3	석축	종로구 부암동 산5-7	종로구	낙석발생 우려 등 도로교통에 안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4	석축	종로구 청운동 89-86	종로구	중요시설 인접 및 암반 불연속면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5	석축	종로구 평창동 554	종로구	암반 불연속면의 형성 등 불안정성을 내포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6	석축	종로구 행촌동 16-1	종로구	터널 갱구부 구조물로서 지속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7	석축+ 비탈면	중구 남대문로5가 541-3	중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8	옹벽	중구 신당동 304-256	중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9	석축	중구 신당동 432-2190	중구	구조물의 높이가 높아 계속적인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10	옹벽+ 석축	중구 장충동 산14-75	중구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서 계속적인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11	석축	중구 회현동1가 147-23	중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12	옹벽	용산구 한남동 726-41~363	용산구	구조물의 노후화(30년 이상 경과)로 인한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어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13	석축	용산구 후암동 406-57	용산구	다중 보도교통시설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14	옹벽	용산구 한남동 산10-57	용산구	전면이 통행량이 많은 한남대로로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15	옹벽	용산구 한남동 726-521	용산구	구조물의 노후화(40년 이상 경과) 및 통행량이 많은 한남대로로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16	석축	용산구 후암동 30-145	용산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17	옹벽	성동구 금호동4가 54-2	성동구	구조물의 노후화(40년 이상 경과)로 인한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어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18	옹벽	성동구 금호동2가 산9-1	성동구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어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연번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19	옹벽	성동구 금호동2가 산9-1	성동구	구조물의 높이가 5m이상으로 재난발생시 위험도가 높아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20	옹벽	성동구 금호동2가 산9-1	성동구	구조물의 높이가 5m이상으로 재난발생시 위험도가 높아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21	옹벽	성동구 금호동4가 987	성동구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어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22	옹벽	동대문구 청량리동 208-8~59	동대문구	구조물의 노후화(27년 경과)로 인한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어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23	옹벽	동대문구 청량리동 462~484	동대문구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서 계속적인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24	옹벽+비탈면	중랑구 상봉동 481-2	중랑구	주변 여건 상 지속적인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25	옹벽+비탈면	중랑구 망우동 산52-4	중랑구	주변 여건 상 지속적인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26	옹벽+인공비탈면	성북구 성북동 산25-180	성북구	주변 여건 상 지속적인 관리 필요 (급경사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27	석축	성북구 성북동 330-599	성북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28	석축+인공비탈면	성북구 돈암동 산34-1	성북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29	석축+인공비탈면	성북구 돈암동 산34-1	성북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30	옹벽	성북구 정릉4동 산15-19	성북구	구조물 높이가 높고 지속적으로 관리 필요 (급경사지로관리중)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31	옹벽	성북구 정릉3동 산1-283	성북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급경사지로관리중)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32	옹벽	성북구 돈암동 15-10	성북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급경사지로관리중)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33	옹벽+인공비탈면	도봉구 쌍문동 525-3	도봉구	구조물의 보수 등 지속적 관찰이 필요함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34	인공비탈면	노원구 상계동 72-195	노원구	주변여건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35	옹벽	서대문구 홍제동 산1-100	서대문구	옹벽 높이가 높고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함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36	옹벽	서대문구 창천동 4-54	서대문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연번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37	옹벽	양천구 신정동 330-19	양천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38	옹벽	강서구 화곡6동 42-37	강서구	지반침하 등 장기적 위험요소가 있어 계속적으로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39	옹벽	구로구 오류동 313-53	구로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40	석축	구로구 구로동 795-1	구로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41	옹벽	구로구 온수동 9-34	구로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42	옹벽	금천구 시흥동 산91-12	금천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43	옹벽	동작구 상도동 211-428	동작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44	석축	동작구 상도동 산75-1	동작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45	석축	동작구 사당동 산32-52	동작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46	옹벽	동작구 사당동 712-5	동작구	주변여건 등에 따라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47	옹벽+ 비탈면	동작구 동작동 86-12	동작구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서 계속적인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48	석축	동작구 대방동 466-67	동작구	석축 사면, 상부 비탈면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49	석축	동작구 사당동 산32-79	동작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50	석축	동작구 사당동 산44-19	동작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51	옹벽	동작구 상도동 554	동작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52	석축	관악구 봉천동 635-435	관악구	주택 밀집지역으로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53	석축+ 비탈면	관악구 신림동 산191-13	관악구	석축상부의 토사사면의 기울기가 급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54	옹벽	관악구 봉천동 산181-16	관악구	구조물의 노후화 및 주변여건 불안정으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55	옹벽	관악구 봉천동 1693-39(좌)	관악구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서 계속적인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연번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56	옹벽	관악구 봉천2동 7-77	관악구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서 계속적인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57	옹벽+석축	관악구 남현동 산57-49	관악구	구조물의 노후화 및 주변여건 불안정으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58	옹벽	관악구 봉천동 1510	관악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59	석축	관악구 봉천동 산24-31	관악구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60	옹벽	관악구 봉천동 1693-39	관악구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서 계속적인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61	옹벽+인공비탈면	서초구 서초동 산30-7	서초구	주변여건 불안정으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62	옹벽	서초구 반포동 산56-2	서초구	주변여건 등에 따라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63	옹벽	서초구 서초동 산133-6	서초구	주변여건 등에 따라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64	옹벽+비탈면	서초구 서초동 산150-124	서초구	주변여건 등에 따라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65	비탈면	서초구 서초동 산150-124	서초구	주변여건 등에 따라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66	옹벽	중구 필동 1-54	서부도로사업소	도로와 인접한 높은 옹벽으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67	옹벽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4	강서도로사업소	구조물의 노후화로 계속적 관리 필요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이상)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6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3호, 2018. 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평가항목

구 분	건축물 사업	정비사업(재개발 · 재건축)
중점 평가 항목 (11)	◦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 · 지질 ◦ 동 · 식물상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 · 진동 ◦ 위락 · 경관 ◦ 일조장해	◦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 · 지질 ◦ 동 · 식물상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 · 진동 ◦ 위락 · 경관 ◦ 일조장해
현황 조사 항목 (2)	◦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	◦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 · 주거

※ 사업자는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예상될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고시된 항목의 작성이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심의기준

가. 정량(수)적 기준: 고시 기준(평가기준) 이상

나. 정성적 기준: 적정 이상

※ 사업별 최종 심의기준(정량적, 정성적)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가. 건축물 사업

[중점평가항목-11]

1) 대기질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대기질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 운영 시 사업지구 내 · 외부지역 대기질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 실내공기질 평가
평가내용	①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대기질 영향 예측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현황 조사(PM-2.5 포함) – 현황 측정결과는 평가 시 장 · 단기기준 모두 적용 · 비교 – 기존 측정망 자료와 측정결과를 토대로 사업지역 전반의 평균적인 대기오염 상태 제시 •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영향 예측 – 공사진행 계획(공정표) 제시 – 전체 공정(기존 건축물 철거 및 나대지 상태 등 포함)에 대한 정성적 · 정량적 예측(PM-2.5 발생량 포함) – 예측지점은 주변 시설 및 기상현황(풍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사유, 이격거리, TM좌표 제시 – 유사 공사장 장비투입 현황을 조사하여 투입대수 산정(소음 · 진동항목 연계)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 명시(NO2/NOx 비율 적용 근거 등) – 서울기상대, AWS, 미기상 측정자료를 이용한 모델링 실시 및 상호 비교 평가 – 사업지구 주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복합 영향 검토(누적평가) – 주요 지점별 예측수준 표시 및 등농도 곡선 작성 – 현황(배경)농도는 사업지구 인근 자동측정망 및 지구 내 측정자료 등 이용 가능한 자료 중 최곳값을 적용하되 장 · 단기에 부합하는 값 적용 •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각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 – 건설장비별 배출계수는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자료 인용 등
	②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 대책 수립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영향 예측 결과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 공사 시 대기오염물질 가중 농도 최소화 방안 수립 •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로 전체 투입 대수의 80% 이상 사용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삭기, 지게차(건설기계) Tier3 이상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서울특별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이행계획 수립

구 분	내 용
	• 저감 대책 수립에 따른 영향 예측 지점에 대한 저감량 검토 및 저감 효율에 대한 근거 제시 • 공사장 내 대기오염물질 상시 관리를 위한 PM-10, PM-2.5, NO2 측정 계획 수립 •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또는 비상저감조치 시 조업단축 등 저감대책 검토
	③ 운영 시 사업지구 내·외부지역 대기질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 유발교통량 및 에너지사용에 따른 영향 예측 실시 - 예측지점은 주변 시설 및 기상변화(풍향 등)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사유, 이격거리, TM좌표 제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난방 등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 명시) · 유발교통량 및 이동오염원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 명시) - 서울기상대, AWS, 미기상 측정자료를 이용한 모델링 실시 및 상호 비교 평가 - 사업지구 주변 예정 사업을 고려하여 영향 예측 실시(누적평가) - 주요 지점별 예측수준 표시 및 등농도 곡선 작성 - 현황(배경)농도는 사업지구 인근 자동측정망 및 지구 내 측정자료 등 이용 가능한 자료 중 최곳값을 적용하되 장·단기에 부합하는 값 적용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가중 농도 최소화 방안 수립 • 총량규제 대상 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방지시설(BAT) 설치 검토 -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받은 제품 설치 - 개별난방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과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1등급인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④ 실내공기질 평가 • 실내공기질 개선 대책 검토 - 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계획 수립(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 금지 방안 제시 등) - 환기시설 계획 수립 - 학교사업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방안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 제시 - 공동주택의 내부 환기 검토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검토
평가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대기환경기준 • 「서울특별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기준 - 다중이용시설은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 별표 3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만족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2) 온실가스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 사업지구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현황 • 사업시행에 따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영향 예측 •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수립

구 분	내 용
평가내용	①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영향 예측 • 사업지구 에너지이용시설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 • 사업시행 전 · 후(저감 전) 에너지사용량 예측(전력사용량 등 모든 에너지사용량 포함) • 사업시행 전 · 후(저감 전) 연간 온실가스 예측 –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및 배출량 분석 – 온실가스 흡수원 현황 및 흡수량 분석 ※ 토지이용, 동 · 식물상 등의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녹지 및 토양 등에 따른 사업시행 전 · 후 흡수량 분석 · 제시 ②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수립 • 신 ·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시설 설치계획 수립 – 적용규모, 수량 및 위치 등 제시 –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가동여부, 에너지 생산량 등 주기적(월, 분기 등)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열생산시설에서 공급되는 지역 냉·난방 적용 우선 검토 • 조명에너지 효율화 계획 수립 –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 사용(적용 수량비율, 에너지절감량 산정) – 공용부 및 지하 주차장 등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계획 수립 권고 – 조광기, 부분 점멸 회로, 조명 자동제어설비 등 조명에너지 효율화 계획 수립 권고 • 운영 시 최소한의 냉 · 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창 면적비율” 계획 – 창호는 개폐에 따른 환기가 가능한 창호계획 검토 • 대기전력 차단장치 도입 –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설치 비율 제시 • 에너지소비 절약계획서(설계방안) 작성 • 〈삭 제〉 • 녹색건축물 인증(예비인증 포함) 검토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예비인증 포함) 검토 • 신축 건축물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 전기기기 등)별 에너지 계측 시스템 도입 –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세대 및 공용부의 월별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생산량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고효율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설치 검토 •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검토 – 직달일사에 따른 눈부심이나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양 등 고려 – 지하, 데크 하부, 건축물 내주부 등 자연채광이 어려운 공간에 선큰 공간, 천창, 광덕트 등 적극적인 자연채광 방안 고려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상품 사용방안 검토 • 건물 외피 등 열교 부분 에너지 손실 최소화 계획 수립 권고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td><td>• 기후변화 적응 조치 수립
– 옥상 및 벽면은 발열이 적은 물질 사용
– 건축물 벽면 및 옥상부 녹화를 실시하고, 불가능한 공간에 대해서는 사유 제시
– 녹화, 도로 차열성 포장 등 도시열섬현상 저감방안 검토 권고
• 옥상 및 벽면은 발열이 적은 물질 사용
• 건축물 벽면 및 옥상부 녹화를 실시하고, 불가능한 공간에 대해서는 사유 제시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확보 비율 제시
–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등 제시</td></tr>
<tr><td></td><td>③ 저감 대책 수립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평가
• 저감 대책 수립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산정 및 근거 제시(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 각 에너지 절약계획 등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비교 평가
•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
–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각 에너지 절감 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검토
– 사업시행 전·후의 온실가스 순발생량 분석
※ 흡수량 및 에너지감축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도 등을 모두 고려
• 온실가스 배출량 등 모니터링 계획 수립 권고</td></tr>
<tr><td>평가기준</td><td>•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
– 민간 건축물의 경우 연도별 설치비율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3%(’ 20.1.1부터는 14%) 초과비율은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연도별 설치비율
<table>
<tr><th>구 분</th><th>2019년</th><th>2020년</th><th>비 고</th></tr>
<tr><td>설치비율</td><td>18%</td><td>20%</td><td></td></tr>
</table>
· 1차 에너지 소요량 감축설계 시 성능대체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대상건물 대지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용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 이외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옥상녹화로 적용하되, 계획면적의 50% 인정
· 건축물 벽면 태양광 시뮬레이션으로 일조시간을 확인하고, 춘계(3~5월), 추계(9~11월) 1일 일조시간이 5시간 이상인 벽면 BIPV 권장
– 공공 건축물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이상
– 조명기기는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100% 적용(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고효율 조명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제시)</td></tr>
</table>

구 분	내 용
	–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설치기준 이상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주차면 확보 및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 충전시설 설치 – 충전시설의 10% 이상 급속충전시설 확보(단,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충전시설의 50% 이상 급속충전시설 설치) •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80% 이상 계획(단, 연구시설 · 병원 등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제외) • 창 면적비율 제한 – 주거용 · 비주거용 벽면율 50% 이상 확보 – 동·서측 창호에 대해서는 외부 차양 설치 권고 – 남측에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계획 수립 권고 ※ 건축물 벽면에 설치한 거치형 · 창호형 태양광 면적 벽면 인정 •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및 에너지 소비 절약계획서 작성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환경부고시)에 따른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다만, 건축물의 구조 설계상 1+등급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를 소명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 및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3) 수질(물순환, 지하수)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공사 시 오 · 우수처리계획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운영 시 우 · 오수처리계획 •빗물관리 및 저영향 개발계획 •수질오염총량 검토 •운영 시 용수공급계획 •침수안전도 검토
평가내용	① 공사 시 오 · 우수처리계획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부유물질 가중치의 예측 · 분석 •토사유출 저감 대책 수립 – 우천 시 유출흐름 분석 –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최소화되도록 유출흐름에 맞는 침사지 개소 수, 위치 선정 – 침사지 용량은 공사 시 재현기간 30년의 우수유출량 및 집중호우를 동시에 고려하여 토사가 공공하수관거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정 •공사 시 정화조 설치 등 오수처리계획 수립

구 분	내 용
	② 지하수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지하수 관련 현황 파악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하수질 측정 · 지하수 유동방향과 연관성이 있는 주변지역의 지하수관정 수질조사 실시 · 지하수이용 현황조사(환경부, 국토교통부 자료 인용 및 실측 조사 등)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수질 및 지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이 준공업지역 등으로 지하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하수 수질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여부 검토 ※ 지하수 수질조사와 토양오염 현황조사에서 지하수의 오염이 확인된 경우 오염원과 오염범위를 검토하고, 오염영향과 저감 대책을 제시 •공사 시 기존건축물 철거 대책(정화조, 지하매설물 등) – 사업지구 내 지하시설물(유류탱크, 하수관거, 정화조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토양 및 지하수오염 여부를 파악하여 지하수오염 방지계획 수립 – 사업 전 기존 정화조 등 처리계획 수립 •지하수 조사공이 폐공되지 않도록 조사 종료 후 관공처리 및 관리대책 수립
	③ 운영 시 우 · 오수처리계획 •우 · 오수처리계획은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고시)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분야 업무편람」 등 최근 관련규정에 따라 분류식 계획지역 해당여부 및 분류식 검토 •운영 시 발생오수량에 대한 오수처리대책 수립 – 계획오수량의 산정은 오수전환율 100%, 지하수유입은 없는 것으로 적용하고 처리대책 수립 •악취방지대책 수립 – 정화조 폐액이 오수관거와 오수관거에서 공공하수관거로 배출될 때 원천적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란 없이 배출될 수 있는 계획 수립 권고 · 사업부지 오수관거는 모든 구간에서 시간최대오수발생량에 대해 최소유속 0.6m/sec 이상을 확보하며, 연결되는 공공하수관거와의 관거고 차에 의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운영 시 계획하수량(계획시간 최대오수량+계획우수 유출량)에 대한 주변기존 하수관로의 통수능을 검토하고,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수립 – 연결 공공하수관거와 차집관거까지 관거통수능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연결되는 공공하수관거로 청천 시와 우천 시 유입되는 기존의 모든 오 · 우수량 고려
	④ 빗물관리 및 저영향 개발계획 • 나지상태와 사업 후의 불투수면적에 대해 계획확률강우에 의하여 인근지대로 유입되는 노면수량 및 공공하수관거 설계빈도의 초과우수량을 산정하고, 유출되는 노면수량과 하수관거 통수능(설계빈도 10년)을 초과하는 유출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우수유출 저감 계획(침투시설,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등) 검토 – 유형별 유출계수를 적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산정하고 적용한 유출계수 근거 제시(옥상녹화, 인공지반의 유출계수는 0.7 이상 적용) – 빗물이용시설의 용량 및 설치위치, 면적, 집수된 우수의 활용계획, 청천 시, 우천 시의 운영 및 관리계획 제시 – 빗물이용시설을 사용처와 가깝게 설치하여 운영비 및 에너지 절감시설로 계획(빗물이용 공급배관도면 제시)

구 분	내 용
	– 빗물이용시설 용량 산정 시 옥상층 녹화부분 제외 등 실질적인 집수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설이 유휴화되지 않도록 계획 – 빗물이용가능량은 1회 독립강우(전강우와 후강우사이의 무강우일이 24시간 이상인 강우)에 대해 산정하고 무강우 9일간 전량 사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계획 수립 –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강우 시 빗물의 지표면유출을 억제하고 빗물이 지면으로 환원되도록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및 투수성이 큰 바닥포장재 등의 침투시설 설치계획 수립 검토 –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시설 위치선정 및 유출강우 저감에 대한 근거 제시 · 유출강우 저감량은 LID 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제시 – 침투시설로 유입되는 지표면유출수의 흐름 파악하고 침투시설로 원활히 유입되도록 계획 – 침투율이 큰 침투시설은 자연지반에 설치하고, 인공지반에 설치 시 자연지반으로 유입되도록 계획 (구조, 설치위치, 토층구조 제시) – 침투시설 폐쇄방지를 위해 침투시설의 앞부분 협잡물전처리통 설치 및 유입구 협잡물제거시설 설치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및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매뉴얼」에 따른 빗물관리계획 수립 –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검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참조) – 빗물분담량에 따른 사업지구의 필요대책량을 산정하고,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대책량이 필요대책량을 충족하도록 검토 •자연지반 및 화단, 녹지대 등은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도(주변)보다 낮게 조성하고, 경계석으로 인해 지표면 유출 빗물이 저류 침투를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 •우천 시 유출빗물을 공공하수관거가 아닌 하천으로 방류할 경우 공사 시와 운영 시 초기우수 처리계획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 대책 수립
	⑤ 수질오염총량 검토 •사업시행 전 · 후 오수 발생량 및 강우시 사업부지 내 우수유출량 산정 •사업부지 내 우수가 하천 및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경우 초기우수 처리계획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 권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사업시행 전 · 후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등 산정하고 최소화계획 수립 (생활계, 토지계 등의 적용 원단위 근거 제시)
	⑥ 운영 시 용수공급계획 •용수공급계획 수립 – 계획급수량 산정(적용 원단위 근거 제시) – 상수사용량의 상수도관망 해석에 따른 공급가능성 및 주변지역 상수사용에 대한 영향 검토 – 용수절감계획 수립(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따른 절수 효과 산정 시 기 설치 일반제품의 최대 토수유량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가 기본이며, 추가로 절수 가능 제품의 설치 계획 수립 필요) – 절수기기, 중수, 빗물시설 운영에 의해 절감되는 용수량 제시 •중수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중수도시설 규모(㎥/일)에 대한 원수 확보계획 수립 – 중수도시설의 처리전량(㎥/일) 이용계획 수립

구 분	내 용
	⑦ 침수안전도 검토 • 침수안전도 검토 및 예방대책 수립 –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기왕강우량, 지형특성, 최대확률강우량에 대하여 사업시행 후 해당 사업지역과 해당 사업지역의 우수유출에 따른 인근지역 침수피해가능성 평가 및 침수안전도 확보대책 수립
평가기준	•공사 시 하천 및 하수관거의 토사유출 방지 •공사 시 및 운영 시 유출지하수 최소화 및 지하 환원 대책 수립 •지하수 수질현황 및 오염 시 오염원, 오염범위 및 저감 대책 •우수유출률 유지 – 사업 후 대상지역의 우수유출률은 나지상태와 비교 – 증가된 유출량은 우수유출저감시설로 처리대책수립 하고 유출량 저감 효과를 제시하여 우수유출률 유지 상태 확인 •침수안전도 확보 – 강우확률 30년 빈도에 대해 침수안전도 확보 – 우천 시 사업대상지역에서 우수유출량이 강우확률 30년에 대해 재현기간 10년을 초과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빗물관리시설(침투, 이용시설 등)의 설치 계획 제시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4) 토지이용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토지피복 유형별 생태면적률 변화 • 대지 안의 녹지면적 변화 • 지하 공간 개발
평가내용	① 토지이용변화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변화 예측분석 – 사업시행 전·후 토지이용계획 비교 – 현황사진 제시 •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 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와 이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 상위계획 및 주변 개발계획 도면 제시 – 용적률 등 인센티브 사항 제시 • 사업부지의 지역성 및 기존 도시형태, 역사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권고 •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한 배치계획 수립 • 보행통로 및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 검토 – 지역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제시 • 공개공지 위치 타당성 및 접근성 확보 계획 수립

구 분	내 용
	– 공개공지에 대한 적정 계획안 및 활용방안 제시 • 도로 조성 시 자전거 도로 계획(단지 내 도로 포함) • 옥상부 토지이용계획 제시
	② 토지피복 유형별 생태면적률 변화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피복유형별 면적의 변화를 포함한 생태면적률 변화분석 – 공간유형별 구적도 제시 – 토지피복유형별 단면 제시 – 자연지반녹지 최대 확보 검토 – 불투수포장면 최소화 – 기부채납분 제외 – 자연지반 산정 시 지하벽체 두께 제외
	③ 대지 안의 녹지면적 변화 • 사업시행 전·후의 녹지면적 변화 비교 – 지상부에 대한 사업시행 전·후 녹지면적 제시 – 대지면적 대비 녹지비율 제시(지상부 녹지에 한함) • 주변지역과 광역녹지축(징검돌 역할) 연계 방안 검토 – 주변지역과의 광역녹지축 연계방안 검토 – 사업지구 내 녹지축 연계방안 검토 – 모식적인 녹지축의 연계도 제시를 지양하고 녹지축 뿐만 아니라 녹지의 양적·질적 검토 제시
	④ 지하 공간 개발 적정성 검토 • 건축면적 대비 지하개발면적의 비교 및 자연지반 최대 확보 방안 검토 – 평면도상 굴착경계, 지하개발면적, 깊이 등 제시 – 지하공간 개발 최소화를 위한 계획과정 제시 – 자연지반 최대 확보 방안 제시(사업지구 내 지하구조물 종횡단면 제시)
평가기준	•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기존 자연녹지 보존계획 수립 • 공개공지 접근성 확보 계획 수립 • 생태면적률 : 35% 이상 (녹지지역인 경우 50% 이상) • 자연지반녹지 – 생태면적률의 30% 이상 또는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10% 이상 확보 • 대상지 내외의 녹지축 연결 • 지하공간개발 최소화 – 최대 굴착 깊이 40m 이내 • 자연지반 최대 확보
평가대상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5) 토양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토양오염개연성의 현황조사, 시험분석 및 유사사례 조사, 이력자료 제시 •표토 활용가능성 검토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평가내용	① 토양오염 현황조사 •토양오염 현황조사 – 과거 산업활동 및 토지이용이력을 조사하고, 과거에 존재했던 또는 현존하는 철거예정 지장물 중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23종)을 보관·취급하였는지의 현지답사 및 자료조사 실시(「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상 기초조사에 준하여 실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상 수행한 과거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기록 및 필요시 정화기록 제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과거 토양오염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실측조사 실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따라 측정 및 결과 제시 – 사업부지 내 기존 건물(시설물), 지장물 등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철거 후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 수립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채취지점 선정근거 제시(화단채취 금지) ※ 시료채취 어려움의 사유로 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점에서 시료채취 회피를 지양하여야 함 · 채취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 및 도면상 채취지점 표시(채취지점의 현재 용도 제시) · 토양오염 조사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시험성적서 제시(검량선, 기기분석 Raw data 등 첨부) ·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철도, 공장부지 등으로 사용된 지역에서는 사업지역 전체에 대한 심토굴착을 포함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또는 계획 수립 •사업지구 내 토양 오염의 개연성을 검토하고 지하수흐름을 고려한 상·하류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 ② 표토 활용가능성 평가 •표토의 이화학적 특징 분석 및 표토 활용가능성 평가 – 사업지구 내 훼손되는 녹지 등에 대하여 표토 이화학적 특징 분석 – 표토 재활용량 추정 및 재활용 방안 검토 – 표토 재활용을 위한 가적치장 확보 방안 제시하고, 재사용 시까지 관리방안 수립 – 이화학적 분석결과 조경용 표토로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퇴비화후 조경용 표토 또는 사업지구 내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 ③ 토양오염 저감 대책 •오염토양의 처리대책 수립 제시 – 유사사례 조사 및 토양오염 원인 규명 – 정밀조사 및 정화계획 수립 •공사 시 폐유 등 토양오염물질 처리방안 및 반입토 존재 시 토양오염유무 확인절차 제시 •현황조사 시 확인되지 않았던 토양오염 발견 시 처리대책 수립

구 분	내 용
평가기준	•현황조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여부 •오염토양에 대한 적법 처리계획 수립 •표토 재활용계획 수립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6) 지형·지질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지형의 물리적 변화 •토사 발생량 및 토사처리계획의 제시 •지하수위,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평가내용	① 지형의 물리적 변화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 시행 전·후 표고 분석(현황측량자료 제시) •사업 전·후 주변지역을 포함한 종·횡단면도 작성 – 대지경계선, 도로, 인접대지 지하단면, 지하철시설 및 지하도단면, 이격거리, 지반고 등 – 시추조사 및 실내실험을 통한 지층별 물리적·역학적 특성 분석 •지하개발 적정성 검토 – 사업지구 주변 건축물 지하개발 규모 제시 – 연평균 지하수위 아래로 개발 시 지하 개발규모의 타당성 제시
	② 토사 발생량 및 토사처리계획 제시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절·성토 발생량 산정 – 종·횡단면도를 근거로 정확한 토공량 산정 – 토사 반출 및 반입량 분석 – 사업지구 내 성토재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는 계획 수립 •토사처리계획 제시 – 잔토(사토) 처리계획 제시(사토장 위치, 이격거리, 운반경로 등) – 잔토(사토) 운반에 따른 2차 환경문제 발생 여부 및 대책 수립 – 수도권 매립지 등으로 이송 시 시가화 지역 외의 운송계획 수립
	③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지하시설물조사, 지반조사(시추조사)를 통해 지질 및 지반 환경을 고려한 지하수 영향분석 실시 – 지하수 영향조사서 및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지하수유출량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 지형현황, 토지이용, 지층구조, 투수계수를 등을 고려한 함양률 적용 분석 – 사업부지 내·외 지하수 함양률의 변화 검토

구 분	내 용
	– 예측 모델링에 사용한 코드와 적용성, 한계에 대한 설명 제시 – 예측 모델 보정방법을 설명하고 보정 전·후 수리상수(함양률, 수리전도도)의 변화 검토 – 모델링에 사용된 입력자료[수리전도도(투수계수), 함양률, 수리특성변수 등]는 현장중심의 구체적인 자료획득 과정과 결과 제시 – 유출지하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흙막이 공법 등 검토(흙막이 공법 시행 전·후 지하수위 및 유출량 비교) –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 흐름방향 제시 – 지하수 유출 및 흐름변화에 따른 호수,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시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위 유지방안 제시 – 지하수위 및 지하수유출량 모니터링 계획 수립(실시횟수, 주기, 구체적인 방법, 지점 등) ·착공시점부터 사업부지와 주변의 지하수위 분포 및 흐름 현황 모니터링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지하수 모델링 예측결과 비교, 검증계획 수립 – 〈삭 제〉 – 유출지하수 재활용계획 수립 ·운영 시 유출지하수는 침투시설을 이용하여 재유출이 없는 지하수 흐름 방향으로 최대한 지하 환원 방안 제시 ·환원하기 어려운 유출지하수는 친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방안 검토 •공사 완료 후 지하수모니터링 관정의 활용 및 원상복구 계획 수립
	④ 지하 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지하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지반안정성 유지방안 제시 – 인접건물, 도로 및 지하시설에 대한 대지경계, 지하굴착경계, 이격거리 제시 – 지하굴착 및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 계측계획 수립(설치위치, 개수 도면 표시) ※ 사업지구 주변으로 지하철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시설이 위치할 경우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내용 제시 ※ 한강변 등 충적층의 지하 굴착 시 토사유출 및 지하수위 강하에 따른 주변건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심층 검토
평가기준	•높이 5m 이상의 단일 옹벽 생성 지양 •기존 지형 활용에 따른 토사발생량 최소화 및 재활용 계획 •발생토사 적정처리 계획 수립 여부 •지하수위,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 방안의 적정성 •지하수위 유지 – 유출지하수 최소 발생 공법 선정 – 유출지하수의 지하환원 및 재이용 – 건축물 벽체와 바닥의 완전한 차수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7) 동·식물상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사업시행에 따른 동 · 식물상의 변화 •옥외 공간 설계대안의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동 · 식물 영향 검토
평가내용	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분류군별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 •현황조사 이동경로, 조사기간을 제시하되 가능한 한 문헌조사 등을 포함하여 춘추계 및 하계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시행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식생도, 토지이용현황도, 도시생태현황도 제시 •비오톱 유형을 확인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톱 유형에 대해서는 개별 비오톱 평가결과 확인 •조사범위 내 서식이 확인된 생물종에 대한 분포현황도 작성 •영향범위 내 법정 보호종(멸종위기 야생 생물, 천연기념물, 서울특별시 지정 보호 야생생물) 서식현황 분석•현황조사결과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로 나누어 표로 제시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동 · 식물 영향 검토 •기존 식생 보존대책 수립 – 사업지구 내 기존 수목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제시 –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 재활용 또는 폐기 등 선정기준 수립 – 기존 수목 처리(보존)계획표 제시 – 이식계획 수립 시 가이식장 위치 및 관리방안 등 제시 – 이식 등 재활용 수목을 포함한 조경 식재계획 제시 •사업부지 및 주변에 비오톱 유형 1, 2등급지역이 인접하는 경우 사업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 유무 및 사업부지의 생물서식공간과 연계방안 검토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중 비오톱유형평가도상 비오톱 1, 2등급 지역 제시 – 훼손여부 및 관련 지침 검토 – 인접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검토 •사업시행으로(공사) 인한 서식환경 악화가 영향범위 내의 기존 야생 동 · 식물 서식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공사 시 소음 · 분진 등으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가 기존 야생 동 · 식물 서식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대책 수립 •현재의 동 · 식물 서식현황 대비 사업시행에 따른 동 · 식물상의 변화 – 사업시행 전 · 후 동 · 식물상 변화 비교표 제시 – 기존자료조사, 탐문조사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측 · 분석 – 현재의 동 · 식물상 및 서식환경 대비 사업시행에 따른 생물서식환경 및 동 · 식물상의 개선 정도 파악 ③ 옥외 공간 설계대안의 생물다양성 증진 •옥외 공간 설계대안에 동물서식을 유도하기 위한 녹지 공간 조성 계획 · 설계안 마련 – 녹지면적 변화, 식재계획도 등 제시 – 건물 벽면, 옹벽, 사면 등 벽면녹화가 가능한 지역 녹화 실시

구 분	내 용
	•생물서식공간 확보방안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증진대책 검토 – 옥상녹화, 벽면녹화, 수공간 조성 등 비오톱 조성(옥상녹화의 경우 단일 식재 지양하고 생물다양성 고려) – 자생종 중심의 식재계획안 제시 – 연못(수공간) 및 유수환경 조성 등 각종 수생비오톱 조성 시 빗물을 이용하여 조성하는 방안 검토 – 생물다양성 증진대책 구체적 제시(도면, 목록 등) – 주변 공원, 하천, 산림 등과의 생태적 연계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검토 •옥상녹화계획도 제시 – 옥상녹화계획의 사용 수종 및 식재단면처리 계획 –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인공지반 식재 토심은 1.2m 이상 확보하도록 하되 교목 식재 시의 식재 토심은 1.5m 이상 확보(인공지반의 식재 단면 제시)
평가기준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지구 내 · 외 녹지의 연결 •비오톱 유형 1, 2등급 지역이 인접할 경우 인접 비오톱 유형 1, 2등급 지역과의 연계 •사업지구 내 비오톱 유형 1, 2 등급이 있을 경우 등급별 대책 수립 •비오톱 유형 평가등급과 개별 비오톱 평가등급이 모두 1등급인 토지는 보전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사업지구 장축의 2배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면적) •주변지역에 공원, 하천, 산림 등 일정규모의 개방공간이 있을 경우, 주변지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일정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 해당 개방공간에 대한 기존자료 및 일부 현지조사자료(기존자료가 없을 경우) 등을 분석하여 연계성 검토에 활용

8) 친환경적 자원순환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공사 시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 기존건물의 해체과정, 건축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 예측 – 폐기물의 분류, 재활용, 보관, 처리대책 수립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수립 – 폐석면, 폐유 등 유해폐기물 처리대책 •순환골재 등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 방안 검토 •운영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평가내용	① 공사 시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기존건물의 해체과정, 건축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 예측 •폐기물의 분류, 재활용, 보관, 처리대책 수립 •공사시 폐기물 처리 모니터링 계획 수립
	②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수립

구 분	내 용
	•건축물 철거 · 해체 시 폐석면 발생량 산정, 석면 비산방지대책 및 처리대책 수립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환경 등 관리계획 수립 – 사업지역 내 건축물 중 2분의 1 이상을 석면조사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석면조사(석면지도, 석면종류, 발생량, 위치, 면적 등)를 실시하고 처리대책 수립 – 석면비산 방지대책 및 석면폐기물 처리대책 제시 – 건축물 철거 · 해체 시 대기 중 석면 농도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폐석면의 발생량은 석면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산정 – 폐석면 처리 분류(매립, 고온용융, 고형화 등)에 따른 발생량과 처리대책 수립 – 임시지정폐기물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검토 – 폐석면 철거작업자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 –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권고
	③ 운영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시설(RFID 기기 등)을 설치하여 전량 위탁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 검토
	④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방안 검토 •도로 등 일반적인 포장면 하부에는 가능한 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5조에 따라 필요한 골재는 최대한 순환골재 사용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GR인증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등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방안 검토 (종류 및 활용처 제시)
평가기준	•석면조사 결과 및 처리대책 수립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상의 기준 – 도로의 보조기층용 골재 등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기존건물 철거 및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 •건축물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해당지역 또는 처리권역

9) 소음·진동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소음원, 정온시설 현황 조사 •공사 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소음 · 진동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운영 시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원의 평가 및 저감 대책 수립 •발파공정이 있을 경우, 발파에 따른 소음 · 진동 피해 가능성 검토 및 대책 수립
평가내용	① 정온시설 현황조사 •공사 및 운영 시 소음 · 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조사 – 소음에 민감한 학교 · 주거시설 · 병원 등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시설, 진동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그 밖에 민원이 예상되는 시설 등 •사업지역과 측정지점 간의 이격거리 및 층고, 좌표 표시

구 분	내 용
	•현황조사 지점에 대한 소음 · 진동 측정 – 공동주택은 층별 소음도 측정 ※ 측정(예측)지점에 대한 소음기준 적용 시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구분 표시
	② 공사 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영향 예측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정에 대하여 공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 예측 – 공사진행 계획 제시 – 공정별 공사물량(산출근거), 해당 공정의 소요일수, 투입장비 및 소요대수(산출근거), 해당 장비의 동력, 장비별 소음도(인용자료), 합성소음도, 이격거리별 소음도(산출식) 등 고려 •수음점과 음원의 거리, 표고 등을 고려하여 소음예측 실시 – 장비의 사용높이에 따른 예측소음도 산출 – 공사지점부터 수음점까지의 수평 등소음도 곡선 및 수음점에서의 수직 등소음도 곡선(층별 소음도 별도 표기) 작성 – 작성과정 및 근거자료 제시 – 지형 및 건물에 따른 회절, 반사영향 적용
	③ 운영 시 영향 예측 •운영 시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 · 진동의 조사 및 평가 – 발생 소음원 종류 및 소음도 현황 조사 – 주변 소음발생원(교통 및 항공소음 등)에 따른 사업지구 층별 소음도 예측 – 소음도 예측과정 및 예측조건, 예측공식, 사용 프로그램명 등 근거자료 제시 – 지하철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대책 •도로 교통소음 예측 시 교통량 산정과정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차량 주행속도는 설계속도의 80% 적용. 단, 실제 주행속도가 설계속도의 80%보다 높을 경우 실제 주행속도 적용 •등소음도 곡선, 수직단면도 작성 – 작성과정 및 근거자료 제시 – 지형 및 건물에 따른 회절, 반사영향 적용
	④ 발파 시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발파 시 사업지구 경계선 상에서 발파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예상지점에서의 진동속도 측정 및 측정자료 제출 •발파 공법별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 진동 영향 예측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참조한 저감 대책 수립 – 정온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무진동 발파 공법 등 적용가능 공법 제시 – 정온시설의 특성에 따라 진동속도 기준 검토 – 현황 파악 결과에 따라 동 지역에 적합한 허용기준 설정 및 공사방법, 저감 대책 수립 •저감 대책에 대한 효과 분석 •발파공사 기간 동안 발파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에 위치한 주요 정온시설(공동주택 등)에 대해 소음 · 진동 측정

구 분	내 용
	⑤ 공사 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 대책 수립 •공사 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 대책 수립 – 공정별 실제 설치 가능한 저감 설비 등 저감 계획 수립 •공사 시 소음영향 최소화 방안 수립 •「서울특별시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에 따른 공사장 이행계획 수립 •가설방음판넬 제원 산정 시 음원(장비 사용 높이 고려)과 수음점의 표고(수음점의 높이별 산출), 지형조건이나 건물배치상태, 방음벽의 차음성능(음향투과손실 15dB(A) 이하로 적용) 고려 •가설방음판넬과 소음원과의 거리를 가능한 한 10m 이상으로 하여 정온시설의 각 층별 예측소음도를 산출하고, 기준 초과 시 저감 방안 수립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여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흡음형 방음벽 검토 •저감 방안 수립 후에도 환경기준 초과하는 지역은 추가 저감 방안 수립 •공사단계(공정)별 저감 대책 수립에 대한 저감 효과 예측 분석(구체적 근거 제시) •방음벽 상부에 소음자동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 – 소음자동측정기 상시 운영 및 기록 유지방안 제시
	⑥ 운영 시 저감 대책 수립 •실내소음 목표치 설정 및 차음설계 실시 •층간소음(급배수 소음) 저감 계획 수립 •운영 시 저감 대책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6층 이상의 층에 실내소음기준을 도입할 경우 이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방법 및 성능 등 제반사항 제시 •저소음포장도로의 관리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 제시 – 저소음포장도로는 이물질에 따른 공극의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용 청소차량에 의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소음저감 효과의 유효기간 등 포함) 수립 – 계획 중인 저소음포장이 향후 몇 년간의 성능보증이 가능한지 여부 및 관리주체 명시 •저감 방안 수립 후에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추가 저감 방안 수립
	⑦ 냉각탑, 공조기, 엘리베이터 등 실외기 소음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평가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 환경기준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 · 진동 규제기준 •「학교보건법」의 교사 내 소음 기준 이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10) 위락·경관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건축물 입지로 인한 경관변화 및 스카이라인 검토 •통경축 및 조망축 검토 •건축물 전면성 및 위압 차폐감 검토 •주변 건축물과의 경관 조화성 •가로 녹시율 변화
평가내용	① 현황조사 •기존 건축물 및 인접 가로경관 현황조사 •사업에 따른 지형 고저차 변동 현황조사 •주요지점에서의 가시범위 검토 •주요지점 공간현황(위치, 입지, 지형 등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토
	② 경관변화 검토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 시행으로 경관 변화 예측·분석 – 도시지역임을 감안한 근경·중경·원경 다수의 조망지점 선정 분석(사업지구 가시범위에 위치하는 내외부 조망가능지점)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내 주요 조망지점 및 조망대상 반영 ·사업지구 가각부 경관영향 예측가능한 도로 결절점 및 곡선부 ·관공서, 학교 등 주요 건축물 및 문화재 ·공원, 광장, 하천변 등 주요 오픈스페이스 ·사업지구 내 절성토 등 지형변화가 급격한 지점 ·사업지구 주출입구 지구 내 주요지점 등 –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주변과의 조화 등 경관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 주변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등 고려 검토 – 남산 등 주요경관 침해여부 및 문화재 주변 도시환경 침해여부 검토 – 주요 도로 교차점에서의 건축물 전면성 및 위압차폐감 검토 – 주요지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스카이라인 분석 ·자연스카이라인과 인공스카이라인을 구분하고 이들 간의 조화성 검토 – 주요 조망점에서의 위압감 및 차폐감 정도 분석 – 분석결과는 조망지점과 조망방향, 가시범위에 대한 평면도 및 조망지점과 조망대상의 지형고저 현황에 대한 단면도, 경관분석 결과 일괄 제시 – 경관시뮬레이션 시 가급적 눈높이에서 50㎜렌즈 사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 제시 – 가로경관의 경우 가로시설물(가로등, 방음벽 등) 계획 시 시뮬레이션 반영 •건축물 색채계획 검토 – 주요지점에서 사업지구 전체 경관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③ 저감 대책 수립 •스카이라인 저감 방안 검토 – 건축물 높이, 규모 등에 대한 주변과의 경관연계성 검토

구 분	내 용
	•통경축 및 조망축 확보계획 검토 – 사업지구 내 통경축 확보 방안 제시 – 통경축 및 조망축 확보방안 유효성 검토 · 계획 대비 실제 확보된 가시 통경축 및 조망축 수평범위(m) 정량수치 제시 – 통경축 및 조망축 확보 관련 조망지점과 조망방향, 가시범위에 대한 평면도 및 조망지점과 조망대상의 지형고저현황에 대한 단면도, 분석 결과를 일괄 제시 •건축물 전면성(상징성) 및 위압차폐감 저감방안 유효성 검토 – 주요 도로 교차로 가각부 등 주 조망 방향의 건축물 전면성 및 위압차폐성 검토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방안 검토 –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입면, 색채 등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여부 검토 •지형변화구간의 사면위압감 저감 및 자연성 제고를 위한 저감 방안 검토 •스카이라인 등 각 항목 저감 방안 적용 예측결과는 실제 지점에서의 적용 전/후 경관시뮬레이션 결과로 제시
	④ 가로 녹시율 분석 •차도 및 보도의 가로 녹시율 증진방안 검토 및 사업 전 · 후 가로 녹시율 변화의 예측분석 – 영향 예측 시 계획된 식재규격 기준 적용 등 식재계획과 연계 – 내 · 외부 가로별 대표 지점 선정 분석 – 각 가로별 최소 1개 지점 이상, 구간별 녹화계획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 2개 지점 이상 – 보 · 차도 구분 분석 – 촬영지점 및 소실점 위치 적정 선정
평가기준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높이, 형태, 배치, 규모, 색상 등) •보도 및 차도에서의 가로 녹시율 최소 25% 이상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 가시가능 지역

11) 일조장해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일조분석 대상의 선정 •일조분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일조장해 여부 파악 •일조장해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건축물 외장재에 따른 햇빛반사 눈부심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평가내용	① 일조분석 대상 선정 •등시간일영도 등 영향권분석도 제시 •현장조사와 등시간일영도 분석을 통한 대상 선정 후 사업지구 및 대상 건물에 대한 현장측량 결과를 기준점 설정에 따른 상대적 3차원 좌표로 제시 •주거지역, 학교시설에 대한 층별 세대별 분석 지점 선정(지번 제시, 학교의 경우 운동장 포함) •지번도 및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 선정 •영향권 내 비대상 지점에 대한 사유 제시(용도 등)

구 분	내 용
	② 일조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량적인 일영범위 및 영향 정도 분석 •동지일 기준 주변지역 및 개발현황을 고려한 복합일영 분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영향 분석 내용 제시 •건물의 실측 및 형상화(창의 위치 및 크기)를 통한 상세 분석 내용 제시 •일조영향 분석과정 제시 – 입력자료, 백데이터, 음영길이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시 •분석지점 및 시점(동지일)에 대한 일조조건 제시 – 일적위, 남중시 태양고도 등 •사업시행 전 · 후의 시간별 일영전개도 제시 •분석지점별 총가조/연속가조 시간을 표 및 그래프로 제시 – 수인한도 불만족지점 뿐만 아니라 수인한도를 만족하거나 기존 침해세대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 •분석지점별 일조시간 차트(바)의 근거가 되는 천공도(또는 월드램분석도) 작성 제시 – 대표 분석지점 1곳을 선정하여 실제 실측상황과 비교하여 천공도 작성의 신뢰도 검증 제시 •피해 분석지점의 월드램 분석도와 사진의 일치도 비교 검증 – 피해 분석지점 5개소에서 정남향을 향하여 촬영한 사진 상에 나타난 주변 건물의 위치(고도각, 방위각 표시)를 월드램도에 작성된 주변 건물의 위치와 비교하여 일치여부 검토
	③ 일조 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 •건축계획(높이, 이격거리, 배치 등) 조정 등 다수(3개 이상)의 대안 검토 및 최적안 선정 과정 제시
	④ 눈부심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건축물의 외장재 사용에 따른 일몰 및 일출 시 건축물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인한 영향 검토 •건축물 햇빛반사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및 저감 대책에 대한 근거 제시
평가기준	•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일조권 침해 기준 –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에 미달하고, 8시에서 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총 최소 4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일조장해에 대한 적극적인 저감 대책 수립으로 영향 최소화 •눈부심 여부 및 최소화 대책 수립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항목-2]

1) 기상(미기상 포함)

구 분	내 용
평가내용	① 현황조사 •기상개황은 최근 10년간의 기상 자료 분석 제시 •사업지 주변 미기상 측정자료 제시(주 · 야간) •주변 건축물 규모 및 개발계획 등 설명

구 분	내 용
	② 미기상 변화예측 •기상측정망의 최대풍속(95% 범위) 자료를 활용하여 온도, 습도, 바람(풍향, 풍속)등 국지기상 측정자료와 함께 미기상 변화영향의 예측 및 비교 · 분석 – 최대풍속이 포함된 다양한 풍속 및 온도의 초기 조건이 고려된 경우의 미기상 변화 조사 및 비교(계절별 분석 포함) •미기상과 풍환경 분석 수치모델 이용 – 경계조건, 격자 간격, 격자 수 등의 조건 제시 – 수평 · 연직 분석 영역은 건축물 규모 및 높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 •주변지역을 포함한 사업지구 건물입지에 따른 바람길 영향 분석 – 사업지구를 둘러싼 삼각형 꼭지점에 위치한 AWS 자료 및 최소 8방위(동 · 서 · 남 · 북 · 북동 · 남동 · 남서 · 북서) 풍향에 대한 분석 실시 •분석조건을 명확히 하여 당해 사업과 연계 분석
	③ 보행환경평가 •미기상 변화 예측결과를 활용한 현상 분석 – 국지적인 풍속 및 온도 변화로 인한 오염농도 증가, 통풍량 감소, 쾌적도 등 분석 – 보행환경 평가는 사업시행 전 · 후 미기상 변화 수치자료를 활용하여 체감도의 비교분석 및 대안 검토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2) 인구

구 분	내 용
평가내용	① 사업시행 전 · 후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 조사 및 예측으로 인구변화 추정 •현황자료 등은 통계자료 인용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인구변화 예측(예측 근거자료 제시)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중점평가항목-11]

1) 대기질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대기질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운영 시 사업지구 내 · 외부지역 대기질 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실내 공기질 평가

구 분	내 용
평가내용	①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대기질 영향 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현황 조사(PM-2.5 포함) – 현황 측정결과는 평가 시 장·단기기준 모두 적용·비교 – 기존 측정망 자료와 측정결과를 토대로 사업지구 전반의 평균적인 대기오염상태 제시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영향 예측 – 공사진행계획(공정표) 제시 – 전체 공정(기존 건축물 철거 및 나대지 상태 등 포함)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예측(PM-2.5 발생량 포함) – 영향 예측지점은 주변 시설 및 기상현황(풍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사유, 이격거리, TM좌표 제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 명시(NO2/NOx 비율 적용 근거 등) – 서울기상대, AWS, 미기상 측정자료를 이용한 모델링 실시, 상호 비교 평가 및 영향분석(영향분석 시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장·단기 기준 적용) – 사업지구 주변에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누적영향 검토 – 주요 지점별 예측수준 표시 및 등농도 곡선 작성 – 현황(배경)농도는 사업지구 인근 자동측정망 및 지구 내 측정자료 등 이용 가능한 자료 중 최곳값을 적용하되 장·단기에 부합하는 값 적용 •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각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 – 건설장비별 배출계수는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자료 인용 등 ②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 대책 수립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영향 예측 결과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공사 시 대기오염물질 가중 농도 최소화 방안 수립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로 전체 투입 대수의 80% 이상 사용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삭기, 지게차(건설기계) Tier3 이상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서울특별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 이행계획 수립 •저감 대책 수립에 따른 영향 예측 지점에 대한 저감량 검토, 저감 효율에 대한 근거 제시 •공사장 내 대기오염물질 상시 관리를 위한 PM-10, PM-2.5, NO2 측정 계획 수립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또는 비상저감조치 시 조업단축 등 저감대책 검토 ③ 운영 시 사업지구 내·외부지역 대기질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운영 시 유발교통량 및 에너지소비에 따른 영향 예측 실시 – 영향 예측 지점은 주변 시설 및 기상변화(풍향 등)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사유, 이격거리, TM좌표 제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난방 등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산정과정 명시) · 유발교통량 및 이동오염원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사업완료 후와 목표연도의 교통량을 기준으로 산출 과정 명시) – 서울기상대, AWS, 미기상 측정자료를 이용한 모델링 실시, 상호 비교 평가 및 영향분석(영향분석 시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장·단기 기준 적용) – 사업지구 주변 예정사업을 고려한 누적영향 검토 – 주요 지점별 예측수준 표시 및 등농도 곡선 작성

구 분	내 용
	- 현황(배경)농도는 사업지구 인근 자동측정망 및 지구 내 측정자료 등 이용 가능한 자료 중 최곳값을 적용하되 장·단기에 부합하는 값 적용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가중 농도 최소화 방안 수립 •총량규제 대상 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방지시설(BAT) 설치 검토 - 운영 시 질소산화물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 수립 ·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받은 제품 설치 · 개별난방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과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1등급인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④ 실내공기질 평가 •친환경건축자재 사용계획 수립(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 금지 방안 제시 등) •환기시설 계획 수립 •공동주택 내부 환기 검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검토
평가기준	•「환경정책기본법」,「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대기환경기준 •「서울특별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기준 - 다중이용시설은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제16조 별표 3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만족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최소 사업지구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조사) •토사운송에 대해서는 처리권역까지 평가하되, 향후 공사 시 처리지역 확정 후 환경영향조사와 연계

2) 온실가스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사업지구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현황 •사업시행에 따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영향 예측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수립
평가내용	①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영향 예측 •사업지구 에너지이용시설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 •사업시행 전·후(저감 전) 에너지사용량 예측(전력사용량 등 모든 에너지사용량 포함) •사업시행 전·후(저감 전) 연간 온실가스 예측 -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및 배출량 분석 - 온실가스 흡수원 현황 및 흡수량 분석 ※ 토지이용, 동식물상 등의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녹지 및 토양 등에 따른 사업시행 전·후 흡수량 분석·제시
	②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수립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시설 설치계획 수립 - 적용규모, 수량 및 위치 등 제시 -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가동여부, 에너지 생산량 등 주기적(월, 분기 등) 모니터링 계획 수립

구 분	내 용
	•열생산시설에서 공급되는 지역 냉·난방 적용 우선 검토 •조명에너지 효율화 계획 수립 –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 사용(적용 수량·비율, 에너지절감량 산정) – 공용부 및 지하 주차장 등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계획 수립 권고 – 조광기, 부분 점멸 회로, 조명 자동제어설비 등 조명에너지 효율화 계획 수립 권고 •운영 시 최소한의 냉 · 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창 면적비율” 계획 – 창호는 개폐에 따른 환기가 가능한 창호계획 검토 •대기전력 차단장치 도입 –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설치 비율 제시 •에너지소비 절약계획서(설계방안) 작성 •〈삭 제〉 •녹색건축물 인증(예비인증 포함) 검토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예비인증 포함) 검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 세대 및 공용부의 월별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생산량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BEMS) •고효율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설치 검토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검토 – 직달일사에 따른 눈부심이나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양 등 고려 – 지하, 데크 하부, 건축물 내주부 등 자연채광이 어려운 공간에 선큰 공간, 천창, 광덕트 등 적극적인 자연채광 방안 고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상품 사용방안 검토 •건물 외피 등 열교 부분 에너지 손실 최소화 계획 수립 권고 •기후변화 대응 조치 수립 –옥상 및 벽면은 발열이 적은 물질 사용 –건축물 벽면 및 옥상부 녹화를 실시하고, 불가능한 공간에 대해서는 사유 제시 – 녹화, 도로 차열성 포장 등 도시열섬현상 저감방안 검토 권고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확보 비율 제시 –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등 제시
	③ 저감 대책 수립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평가 •저감 대책 수립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산정 및 근거 제시(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 각 에너지 절약계획 등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비교 평가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 –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각 에너지 절감 계획, 신 · 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검토 – 사업시행 전 · 후의 온실가스 순발생량 분석 ※ 흡수량 및 에너지감축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도 등을 모두 고려 •온실가스 배출량 등 모니터링 계획 수립 권고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평가기준</td><td>
•신 ·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 · 절약 계획 수립
– 민간 건축물의 경우 연도별 설치비율 이상으로 하되, 신 · 재생에너지 13%(’ 20.1.1부터는 14%) 초과비율은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연도별 설치비율
<table>
<tr><th>구 분</th><th>2019년</th><th>2020년</th><th>비 고</th></tr>
<tr><td>설치비율</td><td>18%</td><td>20%</td><td></td></tr>
</table>
· 1차 에너지 소요량 감축설계 시 성능대체비율만큼 신 · 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대상건물 대지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용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 · 재생에너지 이외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신 · 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 · 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단,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옥상녹화로 적용하되, 계획면적의 50% 인정
· 건축물 벽면 태양광 시뮬레이션으로 일조시간을 확인하고, 춘계(3~5월), 추계(9~11월) 1일 일조시간이 5시간 이상인 벽면 BIPV 권장
–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이상
– 조명기기는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100% 적용 (단,「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고효율 조명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제시)
·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설치기준 이상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주차면 확보 및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 충전시설 설치
– 충전시설의 10% 이상 급속충전시설 확보(단,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충전시설의 50% 이상 급속충전시설 설치)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80% 이상 계획(단, 연구시설 · 병원 등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제외)
•창 면적비율 제한
– 주거용 · 비주거용 벽면율 50% 이상 확보
– 동·서측 창호에 대해서는 외부 차양 설치 권고
– 남측에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계획 수립 권고
※ 건축물 벽면에 설치한 거치형 · 창호형 태양광 면적 벽면 인정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및 에너지 소비 절약계획서 작성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환경부고시)에 따른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다만, 건축물의 구조 설계상 1+등급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를 소명
</td></tr>
<tr><td>평가대상 지역</td><td>•사업지구 및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td></tr>
</table>

3) 수질(물순환, 지하수)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공사 시 우·오수처리계획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지하수질, 지하수 이용 등) •운영 시 우·오수처리계획 •빗물관리 및 저영향계획 •수질오염총량 검토 •운영 시 용수공급계획 •침수안전도 검토
평가내용	① 공사 시 우·오수처리계획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부유물질 가중치의 예측·분석 •토사유출 저감 대책 수립 – 우천 시 유출흐름 분석 –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최소화되도록 유출흐름에 맞는 침사지 개소 수, 위치 선정 – 침사지 용량은 공사 시 재현기간 30년의 우수유출량 및 집중호우를 동시에 고려하여 토사가 공공하수관거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정 – 공사 시 우수를 하천으로 방류할 경우 침사지를 걸친 처리수의 농도가 하천수질 기준에 맞도록 저감 계획 수립 – 침사지는 사업지구 지형을 고려하여 유출경로를 토대로 설치 – 침사지 내 침천물의 처분 및 관리계획 수립 •공사 시 정화조 설치 등 오수처리계획 수립 ②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지하수 관련 현황 파악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하수질 측정 · 지하수 유동방향과 연관성이 있는 주변지역의 지하수관정 수질조사 실시 ·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환경부, 국토교통부 자료 인용 및 실측 조사 등)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이 준공업지역 등으로 지하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하수 수질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여부 검토 ※ 지하수 수질조사와 토양오염 현황조사에서 지하수의 오염이 확인된 경우 오염원과 오염범위를 검토하고, 오염영향과 저감 대책을 제시 •공사 시 기존건축물 철거 대책(정화조, 지하매설물 등) – 사업지구 내 지하시설물(유류탱크, 하수관거, 정화조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여부를 파악하여 지하수 오염 방지계획 수립 – 사업 전 기존 정화조 등 처리계획 수립 •사업지구 내 지하수 이용관정을 조사하고, 지하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폐공처리방안 수립 – 지하수 조사공이 폐공되지 않도록 조사 종료 후 관공처리 및 관리대책 수립 ③ 운영 시 우·오수처리계획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고시)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분야 업무편람」 등 최근 관련규정에 따라 분류식 계획지역 해당여부 및 분류식 검토

구 분	내 용
	– 우수를 공공하수관거로 유입 및 하천으로 방류할 경우 공사 시와 운영 시 초기우수 처리계획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 대책 수립 권고 ※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하천이 위치할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거쳐 우수관을 하천으로 연결하여 직방류하는 방안 우선적 검토 권고 •운영 시 계획하수발생량에 대한 하수처리대책 수립 – 계획오수량의 산정은 오수전환률 100%, 지하수 유입은 없는 것으로 적용하고 처리 대책 수립 •악취방지 대책 수립 – 정화조 폐액이 오수관거와 오수관거에서 공공하수관거로 배출될 때 원천적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란 없이 배출될 수 있는 계획 수립 · 사업부지 오수관거는 모든 구간에서 시간최대오수발생량에 대해 최소유속 0.6m/sec 이상을 확보하며, 연결되는 공공하수관거와의 관거고 차에 의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운영 시 계획하수량(계획시간 최대오수량+계획우수 유출량)에 대한 주변기존 하수관로의 통수능을 검토하고,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수립 – 연결 공공하수관거와 차집관거까지 관거통수능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연결되는 공공하수관거로 청천 시와 우천 시 유입되는 기존의 모든 오·우수량 고려 •운영 시 중수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중수도시설규모(㎥/일)에 대한 원수확보계획 수립 – 중수도시설의 처리전량(㎥/일) 이용계획 수립
	④ 빗물관리 및 저영향 개발계획 •우수유출량 산정 및 저감계획 수립 – 유형별 유출계수를 적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산정하고 적용한 유출계수 근거 제시 – 나지상태와 사업 후의 불투수면적에 대해 계획확률강우에 의하여 인근지대로 유입되는 노면수량 및 공공하수관거 설계빈도의 초과우수량을 산정하고, 유출되는 노면수량과 하수관거통수능(설계빈도 10년)을 초과하는 유출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우수유출저감계획(침투시설,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등) 수립 · 빗물이용시설의 용량 및 설치위치, 면적, 집수된 우수의 활용계획, 청천 시, 우천 시의 운영 및 관리계획 제시 · 여러 동의 건축물인 경우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집수와 공급 관련 사용처와 가까운 위치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대체 집수면 설정 등을 고려하여 빗물이용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빗물이용시설의 설치위치, 집수배관 및 공급배관 도면 제시 · 빗물이용시설 용량 산정 시 옥상층 녹화부분 제외 등 실질적인 집수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설이 유휴화 되지 않도록 계획 · 빗물이용가능량은 1회 독립강우(전강우와 후강우사이의 무강우일이 24시간 이상인 강우)에 대해 산정하고 무강우 9일간 전량사용 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계획 수립 ·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 강우 시 빗물의 지표면유출을 억제하고 빗물이 지면으로 환원되도록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및 투수성이 큰 바닥포장재 등의 침투시설 설치계획 수립 –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시설 위치선정 및 유출강우 저감에 대한 근거 제시 · 유출강우 저감량은 LID 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제시 – 침투시설로 유입되는 지표면유출수의 흐름 파악하고, 침투시설로 원활히 유입되도록 계획

구 분	내 용
	・침투율이 큰 침투시설(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등)은 자연지반에 설치하고, 인공지반에 설치 시 자연지반으로 유입되도록 계획 ・침투시설에 대한 구조, 설치위치, 토층구조 제시 ・침투시설 폐쇄방지를 위해 침투시설의 앞부분 협잡물전처리통 설치 및 유입구 협잡물 제거시설 설치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및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매뉴얼」에 따른 빗물관리계획 수립 –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검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참조) – 빗물분담량에 따른 사업지구의 필요대책량을 산정하고,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대책량이 필요대책량을 충족하도록 검토 •자연지반 및 화단, 녹지대 등은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도(주변)보다 낮게 조성하고, 경계석으로 인해 지표면 유출 빗물이 저류 침투를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
	⑤ 수질오염총량 검토 •사업시행 전 · 후 오수발생량 산정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사업시행 전 · 후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등 산정하고 최소화계획 수립 (생활계, 토지계 등의 적용 원단위 근거 제시)
	⑥ 운영 시 용수공급계획 •용수공급계획 수립 – 계획급수량 산정(적용 원단위 근거 제시) – 상수사용량의 상수도관망 해석에 따른 공급가능성 및 주변지역 상수사용에 대한 영향 검토 – 용수절감계획 수립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따른 절수효과 산정 시 기 설치 일반제품의 최대토수 유량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가 기본이며, 추가로 절수 가능 제품의 설치 계획 수립 필요 – 절수기기, 중수, 빗물시설 운영에 의해 절감되는 용수량 제시
	⑦ 침수안전도 검토 •침수안전도 검토 및 예방대책 수립 –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기왕강우량, 지형특성, 최대확률강우량에 대하여 사업시행 후 사업지역과 사업지역의 우수유출에 따른 인근지역 침수피해가능성 평가 및 침수안전도 확보대책 수립
평가기준	•공사 시 및 운영 시 유출지하수 최소화 및 지하환원 대책 수립 •지하수 수질현황 및 오염 시 오염원, 오염범위 및 저감 대책 •우수유출률 유지 – 사업시행 후 사업지구의 우수유출률은 나지상태와 비교 – 증가된 유출량은 우수유출저감시설로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유출량 저감 효과를 제시하여 우수유출률 유지상태 확인 – 옥상녹화, 인공지반의 유출계수는 0.7 이상 적용 •침수안전도 확보 – 강우확률 30년 빈도에 대해 침수안전도 확보

구 분	내 용
	- 우천 시 사업지구에서 우수유출량이 강우확률 30년에 대해 재현기간 10년을 초과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빗물관리시설(침투, 이용시설 등) 설치계획 제시 •「서울특별시 물순환 기본계획 연구」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침투시설 설치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빗물관리계획 수립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4) 토지이용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교육여건 변화 및 대책 •토지피복 유형별 생태면적률 변화 •대지 안의 녹지면적 변화 •지하공간 개발 최소화
평가내용	① 토지이용의 변화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변화 예측 · 분석 - 사업시행 전 · 후 토지이용계획 비교 - 현황사진 제시 ②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 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와 이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 상위계획 및 주변 개발계획 도면 제시 - 용적률 등 인센티브 사항 제시 •사업부지의 지역성 및 기존 도시형태, 역사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권고 •바람길을 고려하고,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한 단지 배치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 시 기존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경관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대안) 검토 - 단지와 도로에 옹벽(단차)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옹벽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 녹화방안 제시 - 근린공원 및 소공원 등 공원시설은 일반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단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공원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단지 중앙을 비롯하여 골고루 배치되도록 하고, 연계방안 강구 •보도는 그린웨이(녹도) 개념을 도입하여 단지 내 순환되도록 배치 •사업지구 내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주차시설 계획 수립(위치, 규모 등) •보행통로 및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지역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제시 •공개공지 위치 타당성 및 접근성 확보 계획 수립 - 공개공지에 대한 적정계획안 및 활용방안 제시 •단지(공동주택 부지)와 인접하여 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소음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완충녹지 등의 공간 확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완충녹지 계획 참조

구 분	내 용
	③ 교육여건 변화 및 대책 – 사업시행 전·후 학생 수 증가를 예측한 후 학교 내 교육여건 변화 예측·분석
	④ 토지피복유형별 생태면적률 변화 •사업시행 전·후 토지피복유형별 면적의 변화를 포함한 생태면적률 변화 분석 – 공간유형별 구적도 및 토지피복유형별 단면 제시 – 자연지반녹지 최대 확보 – 불투수포장면 최소화 – 기부채납분 제외 – 자연지반 산정 시 지하벽체 두께 제외
	⑤ 대지 안의 녹지면적 변화 •사업시행 전·후 녹지면적 변화 비교 – 지상부에 대한 시행 전·후 녹지면적(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구분) 제시 – 대지면적 대비 녹지비율 제시(지상부 녹지에 한함) – 사업시행 전·후 주민 1인당 녹지면적 변화 및 평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방안 •사업지구(구역)의 공원·녹지 면적 각각 제시 •주변지역과 광역녹지축(징검돌 역할) 연계 방안 검토 – 사업지구 내 녹지축 연계방안 검토(사업지구 주변 녹지축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한 구체적 내용 제시) – 사업지구 인근 녹지 배치를 함께 제시하여 녹지축 조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시 – 모식적인 녹지축의 연계도 제시를 지양하고, 녹지축 뿐만 아니라 녹지의 양적 질적 확보방안 검토
	⑥ 지하공간 개발 적정성 검토 •지하개발면적 비교 및 자연지반 최대 확보방안 검토 – 평면도상에 굴착경계, 면적, 깊이 등 제시 – 대지면적 대비 지하개발 면적 비율 산정 – 단지별 지하 공간 개발면적, 자연지반녹지 면적, 인공지반녹지 면적을 도면 및 표로 제시 – 지하공간 개발 최소화, 자연지반 최대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사업지구 내 지하구조물 종횡단면 제시)
평가기준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기존 자연녹지 보존계획 수립 •공개공지 접근성 확보 계획 수립 •생태면적률 : 45% 이상 (녹지지역인 경우 50% 이상) •자연지반녹지 : 생태면적률의 40% 이상 •공원·녹지 면적은 사업지구(구역)의 35% 이상 확보(옥상·벽면녹화 제외) •대상지 내외의 녹지축 연결 •지하공간개발 최소화 – 최대 굴착깊이 40m 이내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5) 토양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토양오염 개연성의 현황조사, 시험분석 및 유사사례 조사, 이력자료 제시 •표토 활용가능성 검토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평가내용	① 토양오염 현황조사 •현황조사 – 과거 산업활동 및 토지이용이력을 조사하고, 과거에 존재했던 또는 현존하는 철거예정 지장물 중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23종)을 보관·취급하였는지 현지답사 및 자료조사 실시(「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상 기초조사에 준하여 실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상 수행한 과거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기록 및 필요시 정화기록 제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과거 토양오염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실측조사 실시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따라 측정 및 결과 제시 – 사업부지 내 기존 건물(시설물), 지장물 등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철거 후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 수립 · 사업지구 규모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구 내 토양도를 대표할 수 있는 토양시료 채취지점 선정(토양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지점) 및 근거 제시(화단채취 금지) ※ 시료채취 어려움의 사유로 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점에서 시료채취 회피를 지양하여야 함 · 채취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 및 도면상 채취지점 표시(채취지점의 현재 용도 제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 토양오염 조사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시험성적서 제시(검량선, 기기분석 Raw data 등 첨부) ·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철도, 공장부지 등으로 사용된 지역에서는 사업지역 전체에 대한 심토굴착을 포함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또는 계획 수립 •사업지구 내 토양 오염의 개연성을 검토하고 지하수흐름을 고려한 상·하류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 ② 표토 활용가능성 평가 •표토의 이화학적 특징 분석 및 표토 활용가능성 평가 – 사업지구 내 훼손되는 녹지 등에 대하여 표토 이화학적 특징 분석 – 표토 재활용량 추정 및 재활용 방안 검토 – 표토 재활용을 위한 가적치장 확보 방안 제시하고, 재사용 시까지 관리방안 수립 – 이화학적 분석결과 조경용 표토로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퇴비화후 조경용 표토 또는 사업지구 내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계획 수립 ③ 토양오염 저감 대책 •오염토양의 처리대책 수립 – 유사사례 조사 및 토양오염 원인 규명 – 정밀조사 및 정화계획 수립 •공사 시 폐유 등 토양오염물질 처리방안 및 반입토 존재 시 토양오염 유무 확인 절차 제시 •현황조사 시 확인되지 않았던 토양오염 발견 시 처리대책 수립 •공사 시 폐유보관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측정 계획 수립

구 분	내 용
평가기준	•현황조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오염토양에 대한 적법 처리계획 수립 •표토 재활용계획 수립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6) 지형·지질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지형의 물리적 변화 •토사 발생량 및 구체적인 토사처리계획 제시 •지하수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 지하수 관련 현황 파악 –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지하수유출량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위 유지방안 제시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평가내용	① 지형의 물리적 변화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 시행 전·후 표고 분석(현황측량자료 제시) •사업 전·후 주변지역을 포함한 종·횡단면도 작성 – 대지경계선, 도로, 인접대지 지하단면, 지하철시설 및 지하도단면, 이격거리, 지반고 등(현재 지반고 및 공사완료 후 지반고 표시) – 시추조사 및 실내실험을 통한 지층별 물리적·역학적 특성 분석 •지형 훼손을 최소화한 단지 배치계획 수립 – 평면도에 사면(옹벽) 발생구간(위치, 높이 등)을 표시하고, 처리계획 수립 – 종·횡단면도에 근거한 최소·최대 절·성토고 제시 – 발생사면 및 옹벽의 친환경적 처리 방안 검토 · 옹벽은 자연석 및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사면 및 옹벽에 녹화방안 검토 – 사업지구 내 설치되는 사면(옹벽) 안정성 검토 •지하개발 적정성 검토 – 사업지구 주변 건축물 지하개발 규모 제시 – 연평균 지하수위 아래로 개발 시 지하 개발규모의 타당성 제시 ② 토사 발생량 및 처리계획 제시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절·성토 발생량 산정 – 종·횡단면도를 근거로 정확한 토공량 산정 – 토사 반출 및 반입량 분석 – 사업지구 내 성토재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계획 수립

구 분	내 용
	•토사처리계획 제시 – 사토(잔토)처리계획 제시(사토장 위치, 이격거리, 운반경로 등) – 사토(잔토)운반에 따른 2차 환경문제 발생여부 및 대책 수립 – 수도권 매립지 등으로 이용 시 시가화 지역 외의 운송계획 수립 •비옥토 발생 시 처리계획 제시(적치 위치 등)
	③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 방안 •지하시설물조사, 지반조사(시추조사)를 통해 지질 및 지반 환경을 고려한 지하수 영향분석 실시 – 지하수 영향조사서 및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지하수유출량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 지형현황, 토지이용, 지층구조, 투수계수 등을 고려한 함양률 적용 분석 – 사업부지 내·외 지하수 함양률의 변화 검토 – 예측 모델링에 사용한 코드와 적용성, 한계에 대한 설명 제시 – 예측 모델 보정방법을 설명하고 보정 전·후 수리상수(함양률, 수리전도도)의 변화 검토 – 모델링에 사용된 입력자료[수리전도도(투수계수), 함양률, 수리특성변수 등]는 현장중심의 구체적인 자료 획득 과정과 결과 제시 – 유출지하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흙막이 공법 제시(흙막이 공법 시행 전·후 지하수위 및 유출량 비교) –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 흐름방향 제시 – 지하수 유출 및 흐름변화에 따른 호수,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시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위 유지방안 제시 – 지하수위 및 지하수유출량 모니터링 계획 수립(실시횟수, 주기, 구체적인 방법, 지점 등) · 착공시점 사업부지와 주변의 지하수위 분포 및 흐름 현황 모니터링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지하수 모델링 예측결과 비교, 검증계획 수립 – 유출지하수 재활용계획 수립 · 운영 시 유출지하수는 침투시설을 이용하여 재유출이 없는 지하수 흐름방향으로 최대한 지하 환원 방안 검토(사업지구와 인접하여 하천이 있을 경우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안 수립)
	④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지하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유지방안 제시 – 지질조사에 따른 연약지반 유무 제시 – 인접건물, 도로 및 지하시설에 대한 대지경계, 지하굴착경계, 이격거리 제시 – 지하굴착 및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 굴착 및 지하수위 강하에 따른 인접 구조물 지반침하 영향 예측(주변 개발계획 포함) ※ 사업지구 주변으로 지하철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시설이 위치할 경우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 실시 및 관련기관 협의내용 제시 ※ 한강변 등 충적층의 지하 굴착 시 토사유출 및 지하수위 강하에 따른 주변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심층 검토 – 경사계, 침하계 등 계측계획 수립(설치위치, 개수 등 도면 표시)
평가기준	•높이 5m 이상의 단일 옹벽 지양 •기존 지형 활용에 따른 토사발생량 최소화 및 재활용 계획 •발생토사 적정처리 계획 수립 여부

구 분	내 용
	•지하수위,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 방안의 적정성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7) 동·식물상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 •사업시행 전 · 후 동 · 식물상의 변화 및 영향 검토 •비오톱 유형 변화 및 대책 수립 •수목 식재계획 수립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서식 공간 조성
평가내용	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 •동 · 식물상 조사는 계절적 변동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 수립 – 사업시행에 따른 분류군별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 – 현황조사 이동경로, 조사기간 제시하되 가능한 한 문헌조사 등을 포함하여 춘추계 및 하계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시행 •조사범위 내 서식이 확인된 생물종에 대한 분포현황도 작성 및 토지이용현황도,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영향범위 내 법정 보호종(멸종위기 야생 생물, 천연기념물, 서울특별시 지정 보호 야생생물) 서식현황 분석 •조사결과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로 나누어 표로 제시 •비오톱 유형을 확인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톱 유형에 대해서는 개별 비오톱 평가결과 확인
	② 사업시행에 따른 동 · 식물상의 변화 및 영향 검토 •사업시행 전 · 후 동 · 식물상 변화 비교표 제시 •기존자료, 탐문조사, 토지이용계획 및 녹지의 양적 · 질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 · 분석 •사업시행으로 식재된 식물종으로 추가 도입이 예상되는 동물종 예측(변화예측결과 표로 작성) •현재의 동 · 식물상 및 서식환경 대비 사업시행에 따른 생물서식환경 및 동 · 식물상의 개선정도 파악 •사업시행으로(공사) 인한 서식환경 악화가 영향범위 내의 기존 야생 동 · 식물 서식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공사 시 장비 등 사용에 따른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가 기존 야생 동 · 식물 서식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대책 수립
	③ 비오톱 유형 변화 및 대책 수립 •사업지구 및 주변에 비오톱 유형 1, 2등급지역이 인접하는 경우 사업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 유무 및 생물서식공간과 연계방안 검토 – 비오톱 유형 1, 2등급 지역 제시 – 훼손여부 및 대체녹지 조성방안 검토 – 인접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검토
	④ 수목 식재계획 수립 •공공시설(공원, 놀이터 등), 보호수(노거수) 등 기존수목에 대한 조사결과(이식, 보존가치 등)를 제시하고, 처리계획 수립(이식, 보존, 기증, 재활용 등)

구 분	내 용
	– 사업지구 내 기존 수목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제시 –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 재활용 또는 폐기 등 선정기준 수립 – 기존 수목 처리(보존)계획표 제시 – 수목 이식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이식계획(보관방법 및 장소 등) 제시 – 이식 등 재활용 수목을 포함한 조경 식재계획 제시 •사업지구 주변 식재현황, 공원들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식재계획 수립 •생물서식공간 개념을 반영하여 다층구조 식재 •인공지반 식재 토심은 1.2m 이상 확보하도록 하되, 교목 식재 시의 식재토심은 1.5m 이상 확보(인공지반의 식재 단면 제시) •옥상녹화계획 수립 – 옥상녹화는 저관리형/관리형(관목 및 지피식물 등) 등으로 구분 계획하고,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옥상녹화계획도 제시) – 옥상녹화계획의 사용 수종 및 식재단면처리 계획 제시
	⑤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서식 공간 조성 •옥외 공간 설계 대안에 동물서식을 유도하기 위한 녹지 공간 조성 계획(설계안) 마련 – 녹지면적 변화, 식재계획도 등 제시 – 건물 벽면, 옹벽, 사면 등 벽면녹화가 가능한 지역 녹화 실시 •생물서식공간 확보방안 등 생물다양성 증진대책 검토(도면, 목록 등) – 옥상녹화, 벽면녹화, 수공간 조성 등 비오톱 조성(옥상녹화의 경우 단일 식재 지양하고 생물다양성 고려) – 자생종 중심의 식재계획안 제시 – 지표종을 설정해서 비오톱구간 조성 – 연못(수공간) 및 유수환경 조성 등 각종 수생비오톱 조성 · 유지용수는 빗물, 유출지하수 등 재이용수 활용 · 수생비오톱 주변은 자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층구조 식재 – 주변 공원, 하천, 산림 등과의 생태적 연계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검토 •도시공간의 생태계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포장면적의 최소화를 통하여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하고, 포장재는 가급적 투수성 및 보수성 재료 사용
평가기준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수립 •사업지구 내 · 외 녹지 연결 •사업지구 내 비오톱 유형 1, 2 등급이 있을 경우 등급별 대책(보전방안) 수립 •비오톱 유형 평가등급과 개별 비오톱 평가등급이 모두 1등급인 토지는 절대 보전 •비오톱 유형 1, 2등급 지역이 인접할 경우 인접 비오톱 지역과 연계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주변지역에 공원, 하천, 산림 등 일정규모의 개방공간이 있을 경우, 주변지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일정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 해당 개방공간에 대한 기존자료 및 일부 현지 조사자료(기존자료가 없을 경우) 등을 분석하여 연계성 검토에 활용

8) 친환경적 자원순환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공사 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운영 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순환골재 등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
평가내용	① 공사 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공사 시 건설폐기물 처리 – 기존건물의 해체과정, 건축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 예측 – 폐기물의 분류, 재활용, 보관, 처리대책 수립 •공사시 폐기물 처리 모니터링 •건축물 철거·해체 시 폐석면 발생량 산정, 석면 비산방지대책 및 처리대책 수립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환경 등 관리계획 수립 – 사업지역 내 건축물 중 2분의 1 이상을 석면조사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석면조사(석면지도, 석면종류, 발생량, 위치, 면적 등)를 실시하고 처리대책 수립 – 전체 건축물에 대해 철거·해체 공사 전에 석면 조사기관을 통하여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석면종류, 발생량, 위치, 면적 등) 작성 – 석면비산 방지대책 및 석면폐기물 처리대책 제시 – 건축물 철거·해체 시 대기 중 석면 농도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폐석면의 발생량은 석면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산정 – 폐석면 처리분류(매립, 고온용융, 고형화 등)에 따른 발생량과 처리 대책 수립 – 임시지정폐기물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검토 – 폐석면 철거작업자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권고 •기존 건축물 철거 시 정화조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 ② 운영 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운영 시 생활·지정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수립 •운영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시설(RFID 기기 등)을 설치하여 전량 위탁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 검토 ③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방안 검토 •도로 등 일반적인 포장면 하부에는 가능한 한 순환골재 사용 방안 검토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5조에 따라 필요한 골재는 최대한 순환골재 사용 – 순환골재 사용비율 제시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GR인증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등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방안 검토 (종류 및 본 사업의 활용처 제시)
평가기준	•석면조사 결과 및 처리대책 수립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상의 기준 – 도로, 주차장 등의 보조기층용 골재 등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9) 소음·진동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소음원, 정온시설 현황 조사 •공사 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소음 · 진동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운영 시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원의 평가 및 저감 대책 수립 •발파공정이 있을 경우, 발파에 따른 소음 · 진동 피해 가능성 검토 및 대책 수립
평가내용	① 정온시설 현황조사 •공사 및 운영 시 소음 · 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조사 – 소음에 민감한 학교 · 주거시설 · 병원 등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시설, 진동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그 밖에 민원이 예상되는 시설 등 – 사업지역과 측정지점 간의 이격거리 및 층고, 좌표 표시 •현황조사 지점에 대한 소음 · 진동 측정 – 공동주택은 층별 소음도 측정 ※ 측정(예측)지점에 대한 소음기준 적용 시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구분 표시 ② 공사 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영향 예측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정에 대하여 공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 예측 – 공사진행계획 제시 – 공정별 공사물량(산출근거), 해당 공정의 소요일수, 투입장비 및 소요대수(산출근거), 해당 장비의 동력, 장비별 소음도(인용자료), 합성소음도, 이격거리별 소음도(산출식) 등 고려 •수음점과 음원의 거리, 표고 등을 고려하여 소음예측 실시 – 장비의 사용높이에 따른 예측소음도 산출 – 공사지점부터 수음점까지의 수평 등소음도 곡선 및 수음점에서의 수직 등소음도 곡선(층별 소음도 별도 표기) 작성 – 작성과정 및 근거자료 제시 – 지형 및 건물에 따른 회절, 반사영향 적용 ③ 운영 시 영향 예측 •운영 시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 · 진동의 조사 및 평가 – 소음원 현황 제시 – 도로변 현황 소음도와 예측소음도 비교 · 분석 – 발생소음원 종류 및 소음도 현황 제시 – 주변 모든 소음발생원(교통 및 항공소음 등)에 따른 사업지구 층별 소음도를 동시에 영향을 받는 조건으로 예측 – 소음도 예측과정 및 예측조건, 예측공식, 사용 프로그램명 등 근거자료 제시 – 지하철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대책 •도로 교통소음 예측 시 교통량 산정과정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차량 주행속도는 설계속도의 80% 적용. 단, 실제 주행속도가 설계속도의 80%보다 높을 경우 실제 주행속도 적용 •등소음도 곡선, 수직단면도 작성 – 작성과정 및 근거자료 제시 – 지형 및 건물에 따른 회절, 반사영향 적용

구 분	내 용
	④ 발파 시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발파 시 사업지구 경계선 상에서 발파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예상지점에서의 진동속도 측정 및 측정자료 제출 •발파 공법별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 진동 영향 예측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참조한 저감 대책 수립 – 정온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무진동 발파 공법 등 적용가능 공법 제시 – 정온시설의 특성에 따른 진동속도 기준 검토 – 현황 파악 결과에 따라 동 지역에 적합한 허용기준 설정 및 공사방법, 저감 대책 수립 •저감 대책에 대한 효과 분석 •발파공사 기간 동안 발파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에 위치한 주요 정온시설(공동주택 등)에 대해 소음 · 진동 측정
	⑤ 공사 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 대책 수립 •공사 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 대책 수립 – 공종별 실제 설치 가능한 저감 설비 등 저감 계획 수립 •공사 시 소음영향 최소화 방안 수립 •「서울특별시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에 따른 공사장 이행계획 수립 •가설방음판넬 제원 산정 시 음원(장비 사용 높이 고려)과 수음점의 표고(수음점의 높이별 산출), 지형조건이나 건물배치상태, 방음벽의 차음성능(음향투과손실 15dB(A) 이하로 적용)을 고려 •가설방음판넬과 소음원과의 거리를 가능한 한 10m 이상으로 하여 정온시설의 각 층별 예측소음도를 산출하고, 기준 초과 시 저감 방안 수립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여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흡음형 방음벽 검토 •저감 방안 수립 후에도 환경기준 초과하는 지역은 추가 저감 방안 수립 •공사단계(공정)별 저감 대책 수립에 대한 저감 효과 예측 분석(구체적 근거 제시) •방음벽 상부에 소음자동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 – 소음자동측정기 상시 운영 및 기록 유지방안 제시
	⑥ 운영 시 저감 대책 수립 •도로변 공동주택에서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저감 대책 우선 검토 제시 – 공원, 녹지, 그 밖의 시설배치 등 근본적인 소음 대책 검토 – 연도형 상가 등 상가 상층부 주거시설에 대한 소음환경기준은 주거시설에 준하여 적용 •방음벽 등 저감 방안 수립 후 영향이 예상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예측소음도를 각 동별 · 층별로 제시 •저소음포장도로의 관리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 제시 – 저소음포장도로는 이물질에 따른 공극의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용 청소차량에 의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소음저감 효과의 유효기간 등 포함) 수립 – 계획 중인 저소음포장이 향후 몇 년간의 성능보증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관리주체 명시 •실내소음 목표치 설정 및 차음설계 실시 •공동주택에서 세대 간 전달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바닥구조 계획 및 급배수 소음 대책 수립 •〈삭 제〉 •저감 방안 수립 후에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추가 저감 방안 수립

구 분	내 용
	⑦ 냉각탑, 공조기, 엘리베이터 등 실외기 소음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평가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 환경기준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 · 진동 규제기준 •「학교보건법」의 교사 내 소음 기준 이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10) 위락·경관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및 스카이라인 검토 •통경축 및 조망축 검토 •사업지구 주변 단지와의 경관 조화성 검토 •가로 녹시율 변화
평가내용	① 현황조사 •관련 상위계획 및 주변 인접 개발계획 영향 검토 •기존 건축물 및 인접 가로경관 현황 조사 •사업시행 전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 현황 •사업에 따른 지형 고저차 변동현황 조사 •주요지점에서의 가시범위 검토 •주요지점 공간현황(위치, 입지, 지형 등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토
	② 경관변화 검토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 시행으로 경관 변화 예측 · 분석 – 도시지역임을 감안 근경 · 중경 · 원경 다수의 조망지점 선정 분석(사업지구 가시범위에 위치하는 내외부 조망가능지점)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내 주요 조망지점 및 조망대상 반영 · 사업지구 가각부 경관영향 예측가능한 도로 결절점 및 곡선부 · 관공서, 학교 등 주요 건축물 및 문화재 · 공원, 광장, 하천변 등 주요 오픈스페이스 · 사업지구 내 절성토 등 지형변화가 급격한 지점 · 사업지구 주출입구 지구 내 주요지점 등 – 건물의 높이 · 형태 · 배치, 주변과의 조화 등 경관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 남산 등 주요경관 침해여부 및 문화재 주변 도시환경 침해여부 검토 – 주요 도로 교차점에서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압 및 차폐감 검토 – 주요지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스카이라인 분석 · 자연스카이라인과 인공스카이라인을 구분하고 이들 간의 조화성 검토

구 분	내 용
	- 주요 조망점에서의 위압감 및 차폐감 정도 분석 - 분석결과는 조망지점과 조망방향, 가시범위에 대한 평면도 및 조망지점과 조망대상의 지형고저현황에 대한 단면도, 경관분석 결과를 일괄 제시 - 경관시뮬레이션 시 가급적 눈높이에서 50㎜렌즈 사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 제시 - 가로경관의 경우 가로시설물(가로등, 방음벽 등) 계획 시 시뮬레이션 반영 •건축물 색채계획 검토 - 주요지점에서 사업지구 전체 경관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③ 저감 대책 수립 •스카이라인 조화방안 검토 - 건축물 높이, 규모 등에 대한 주변과의 경관연계성 검토 - 획일적이지 않은 스카이라인 형성 및 주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성 검토 •통경축 및 조망축 확보계획 검토 - 사업지구 내 통경축 확보방안 제시 - 통경축 및 조망축 확보방안 유효성 검토 · 계획 대비 실제 확보된 가시 통경축 및 조망축 수평범위(m) 정량수치 제시 - 통경축 및 조망축 확보 관련 조망지점과 조망방향, 가시범위에 대한 평면도 및 조망지점과 조망대상의 지형고저현황에 대한 단면도, 분석 결과를 일괄 제시 •위압감 및 차폐감 저감 방안 제시 - 지형변화구간의 지형변화 최소화 등 사면위압감 저감 및 자연성 제고를 위한 저감 방안 검토 - 사업시행에 따른 위압 및 차폐정도 저감을 위한 건축물 층고 및 입면 분절 등 저감 방안의 유효성 검토 - 주요 도로와 인접하는 사업지구 가각부의 위압 및 차폐 저감을 위한 건축물 높이 및 배치 등 유효성 검토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방안 검토 -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입면, 색채 등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여부 검토 •스카이라인 등 각 항목 저감 방안 적용 예측결과는 실제 지점에서의 적용 전/후 경관시뮬레이션 결과로 제시
	④ 가로 녹시율 분석 •사업시행 전 · 후 가로 녹시율 변화 분석 - 사업지구 내부 가로 및 주변 가로별 복수 지점에서 대표 지점 선정 · 각 가로별 최소 1개 지점 이상, 구간별 녹화계획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 2개 지점 이상 - 보 · 차도 구분 분석 - 변화예측 수행 시 계획된 식재계획 기준 식재규격 적용 - 촬영지점 및 소실점 위치 적정 선정(현황사진은 표준렌즈로 촬영하고, 주 동선 상에서 보행축선을 사진 중앙에 두고 촬영)
평가기준	•사업계획에 대한 내 · 외부 조화성(건축물 높이, 형태, 배치, 규모, 색상 등) •가로 녹시율 : 보도 30%, 차도 25% 이상 확보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 가시가능 지역

11) 일조장해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일조분석 대상의 선정 •일조분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일조장해 분석 •일조장해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건축물 외장재에 따른 햇빛반사 눈부심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평가내용	① 일조분석 대상 선정 •등시간일영도 등 영향권분석도 제시 •현장조사와 등시간일영도 분석을 통한 대상 선정 후 사업지구 및 대상 건물에 대한 현장측량 결과를 기준점 설정에 따른 상대적 3차원 좌표로 제시 •주거지역, 학교시설 등에 대한 층별 · 세대별 분석(지번 제시, 학교의 경우 운동장 포함) •지번도 및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 선정 •영향권 내 비대상 지점에 대한 사유 제시(용도 등) ② 일조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영범위 및 영향정도 분석 •일조장해 분석은 동별 · 세대별로 분석 •동지일 기준 주변지역 및 개발현황을 고려한 복합일영 분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영향 분석 •분석 대상 건물의 실측 및 형상화(창의 위치 및 크기)를 통한 상세 분석 •일조영향 분석과정 제시 – 입력자료, 백데이터, 음영길이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시 •분석지점 및 시점(동지일)에 대한 일조조건 제시 – 일적위, 남중시 태양고도, 일영범위 등 •사업시행 전 · 후 시간별 일영전개도 제시 •분석지점별 총가조/연속가조 시간을 표 및 그래프로 제시 – 수인한도 불만족지점 뿐만 아니라 수인한도를 만족하거나 기존 침해세대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 •분석지점별 일조시간 차트(바)의 근거가 되는 천공도(또는 월드램분석도) 작성 제시 – 대표 분석지점 1곳을 선정하여 실제 실측상황과 비교하여 천공도 작성의 신뢰도 검증 제시 •사업지구 내(단지 내) 일조영향 검토 •피해 분석지점의 월드램 분석도와 사진의 일치도 비교 검증 – 피해 분석지점 5개소에서 정남향을 향하여 촬영한 사진 상에 나타난 주변 건물의 위치(고도각, 방위각 표시)를 월드램도에 작성된 주변 건물의 위치와 비교하여 일치여부 검토 ③ 일조장해(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사업계획(높이, 이격거리, 배치 등) 조정 등 다수(3개 이상)의 대안 검토 및 최적안 선정 과정 제시 – 일조장해 세대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각 동별 층수 및 층고 조정 등 •사업지구 내 폐쇄형, 일부 폐쇄형 동배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일조영향이 예상되는 세대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 •사업지구 내 학교부지가 위치할 경우 일조확보 방안 마련 ④ 사업시행에 따른 햇빛반사 눈부심 영향분석 및 대책 수립 •건축물의 외장재 사용에 따른 일몰 및 일출 시 건축물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인한 영향 검토 •건축물 햇빛 반사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 및 저감 대책에 대한 근거 제시

구 분	내 용
평가기준	•일조권 침해 기준 –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에 미달하고, 8시에서 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총 최소 4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배치, 구조, 높이 등)을 통한 일조장해 최소화 •눈부심 여부 및 최소화 대책 수립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항목-2]

1) 기상(미기상 포함)

구 분	내 용
평가내용	① 현황조사 •기상개황은 최근 10년간의 기상 자료 분석 제시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미기상 측정지점을 균형 있게 선정(선정사유 제시) •사업지 주변 미기상 측정자료 제시(주 · 야간) •주변 건축물 규모 및 개발계획 등 설명
	② 미기상 변화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미기상 변화 예측지점 제시 •미기상 및 풍환경 분석은 주변 사업계획 포함 실시 •기상측정망의 최대풍속(95% 범위) 자료를 활용하여 온도, 습도, 바람(풍향, 풍속)등 국지기상 측정자료와 함께 미기후 변화영향의 예측 및 비교 · 분석 – 최대풍속이 포함된 다양한 풍속 및 온도의 초기 조건이 고려된 경우의 미기상 변화 조사 및 비교 – 계절별 분석 실시 •미기상과 풍환경 분석이 가능한 모델 이용 – 경계조건, 격자 간격, 격자 수 등 모델 적용 내용 제시 – 수평 · 연직 분석 영역은 건축물 규모 및 높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 •주변지역을 포함한 사업지구 건물입지에 따른 바람장 영향 분석 – 사업지구를 둘러싼 삼각형 꼭지점에 위치한 AWS 자료 및 최소 8방위(동 · 서 · 남 · 북 · 북동 · 남동 · 남서 · 북서) 풍향에 대한 분석 실시
	③ 보행환경평가 •미기상 변화 예측결과를 활용한 현상 분석 – 국지적인 풍속 및 온도 변화로 인한 오염농도 증가, 통풍량 감소, 쾌적도 등 분석 – 보행환경 평가는 사업시행 전 · 후 미기상 변화 수치자료를 활용하여 체감도를 비교 분석하되 보행자 높이에서 온열환경 변화 검토 · 온열환경 평가는 미기상 측정지점 중심으로 분석하되, 이를 바탕으로 사업지구의 계절 평균적인 기상자료에 근거한 평가 및 대안 검토 – 보행자 이동경로 설정하고, 이동경로 위치별 쾌적도 평가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단. 대기질 평가대상지역과 동일하게 선정)

2) 인구·주거

구 분	내 용
평가내용	① 사업시행 전·후 상주·유동인구 조사 및 인구변화 추정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거민 현황 분석(통계자료 인용)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예측 •주변 개발계획을 포함한 인구변화 예측(근거자료 제시) •인구밀도 증가에 대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변화 검토
평가대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4. 기 타

1)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대상사업 시행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여러 대안을 비교,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후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 선정(사유 명시) 제시

2)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거주지역의 통·반장에게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본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일정 등을 통보하여 주민의견 수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7호

2019년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2019년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대 상 : 건축물 등 21,312호(건)
   ※ 건축물 21,229호, 기타물건 83건(차량 66, 기계장비 12, 항공기 2, 시설물 1, 회원권 2)
   ○ 변경·결정 현황

구 분	합 계	수시조정 내용				기타
		신규	삭제	인상	인하	
합 계	21,312	2	60	4	21,246	-
건축물(호)	21,229	-	-	-	21,229	-
기타물건	83	2	60	4	17	-
차 량	66	-	53	2	11	-
기계장비	12	-	6	1	5	-
항 공 기	2	2	-	-	-	-
시 설 물	1	-	1	-	-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	-	-	1	1	-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세부내역 붙임

3. 변경고시 내역 및 세부사항 열람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부서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시가표준액 변경 상세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 https://finance.seoul.go.kr/statutory_standard_price#list/1
   (찾아가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 ⇒ 세금 ⇒ 세금 ⇒ 세금자료실 ⇒ 시가표준액표(건물, 기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1부.
2. 2019년도 차량,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1부.
3. 2019년도 항공기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1부.
4. 2019년도 시설물(옥외오락시설)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1부.
5. 2019년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1부. 끝.

붙임 1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대 상】: 건축물 21,229호(상가 20,175, 오피스텔 1,054)

○ **조정내역**(인하 21,229)

(단위 : 천원)

연번	구별	물건소재지	건물 시가표준액 (변경 전)	건물 시가표준액 (변경 후)	지수 및 가감산율 (변경 전)				지수 및 가감산율 (변경 후)			
					구조	용도	위치	가감	구조	용도	위치	가감
※ 세부내역 : 서울시 홈페이지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참조												

(홈페이지주소) https://finance.seoul.go.kr/statutory_standard_price#list/1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찾아가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 ⇒ 세금 ⇒ 세금 ⇒ 세금자료실 ⇒ 시가표준액표(건물, 기타)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붙임 2 차량,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 차량 : 총 66건

○ 기준가격 조정 (13건)

(단위 : 천원)

구분	분류	연번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기준가격	
							조정전	조정후
1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 외국산	1534	승용	MAZDA	MX-5	NDAC7	60,000	39.900
2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 외국산	1535	승용	MAZDA	MX-5	NDAD7	60,000	39,900
3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 외국산	1731	승용	MERCEDE S-BENZ	GLA220	156945	45,545	41,450
4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 외국산	1732	승용	MERCEDE S-BENZ	GLA250 4Matic	156946	50,000	48,270
5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 외국산	1803	승용	MERCEDE S-BENZ	Mercedes-AMG S63 4Matic L	222188	245,948	199,000
6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 외국산	1859	승용	MERCEDE S-BENZ	S350d	222020	127,273	120,360
7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 외국산	1860	승용	MERCEDE S-BENZ	S350d	222032	124,810	120,360
8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 외국산	1925	승용	MERCEDE S-BENZ	SLC200	172434	126,455	55,450
9	2.승합자동차 2-1.형식분류 나. 외국산	411	승합	리센트레 코리아	익스플로러(EXPLORER) 캠핑트레일러	674	62,273	42,720
10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 외국산	1139	이륜	SUZUKI	DL650XA	C7	12,490	11,350
11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 외국산	1159	이륜	SUZUKI	GSX R1000A	DM	1,908	19,082
12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 외국산	1160	이륜	SUZUKI	GSX R1000RA	DM	2,181	21,809
13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 외국산	1389	이륜	YAMAHA	CZD300-A	SH08	6,450	5,860

○ 중복 삭제 (53건)

(단위 : 천원)

구분	분류	연번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기준가격
1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가.국산	4237	승용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A9DL22A4-01H	27,963
2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가.국산	4304	승용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A9DL22A4-01H	31,080
3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외국산	96	승용	AUDI	A635TDI	4G	50,150
4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외국산	199	승용	AUDI	S64TFSIQuattro	4G	99,280
5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외국산	203	승용	AUDI	S74TFSIQuattro	4G	96,668
6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외국산	207	승용	AUDI	SQ53.0TDIQuattro	8R	75,050
7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외국산	954	승용	FORD	Explorer2.3AWD	U502-H-AWD	50,222
8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외국산	1223	승용	JAGUAR	F-Type	3.0SCCONVS	107,164
9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외국산	1226	승용	JAGUAR	F-Type	3.0SCCOUPE	80,072
10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외국산	1228	승용	JAGUAR	F-Type	3.0SCCOUPES	95,195
11	1.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외국산	1247	승용	JAGUAR	XE20d	JA	45,800
12	1. 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외국산	1460	승용	LEXUS	NX300h	AYZ15L	49,364
13	1. 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외국산	1583	승용	MERCEDES -BENZ	C220d 4Matic	205005	54,091
14	1. 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외국산	1733	승용	MERCEDES -BENZ	GLC220d 4Matic	253905	56,310
15	1. 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외국산	2759	승용	외국산기타	QM3	C1K15-5C	22,327

구분	분류	연번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기준가격
16	1. 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외국산	2763	승용	외국산 기타	Twizy	K1J05-1Z	14,181
17	1. 승용자동차 1-1.형식분류 나.외국산	2764	승용	외국산 기타	Twizy	K1J05-2Z	13,500
18	2.승합자동차 2-1.형식분류 가.국산	1913	승합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	A11DL22A4C-01H	36,690
19	2.승합자동차 2-1.형식분류 가.국산	2866	승합	현대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구급차	TQ-AMB5A-E531	29,785
20	2.승합자동차 2-1.형식분류 가.국산	2867	승합	현대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구급차	TQ-AMB5A-E532	29,785
21	2.승합자동차 2-1.형식분류 가.국산	2931	승합	현대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특수구급차	TQ-SAMB5A-E533	47,959
22	2.승합자동차 2-1.형식분류 나.외국산	157	승합	YJ RV KOREA	코치맨(COACHMAN) 캠핑트레일러	LASER 640-4	50,000
23	2.승합자동차 2-1.형식분류 나.외국산	429	승합	만트럭버스 코리아	Lion´sDD	Lion´sDDRR4460	409,091
24	2.승합자동차 2-1.형식분류 나.외국산	430	승합	만트럭버스 코리아	Lion´sTouringGT	Lion´sTourin gGTRR8	213,000
25	2.승합자동차 2-1.형식분류 나.외국산	522	승합	블루버드엔터 프라이즈	스위프트(SWIFT) 캠핑트레일러	B-68SEL570	43,455
26	2.승합자동차 2-1.형식분류 나.외국산	840	승합	와이즈오토 홀딩스	와이즈오토스프린터 319KB	906 733	81,700
27	2.승합자동차 2-1.형식분류 나.외국산	1119	승합	태영모터스	볼보천정폐쇄형이층버스	6C2-VOLVO-EURO6-B8RLE-CT	371,900
28	2.승합자동차 2-1.형식분류 나.외국산	1171	승합	패밀리카라반	아드리아(ADRIA) 캠핑트레일러	FC-522-UP2	33,182
29	3.화물자동차 3-1.형식분류 가.국산	34	화물	D.KMARINE	D.K보트트레일러	DT N400S	1,520
30	3.화물자동차 3-1.형식분류 가.국산	41	화물	D.KMARINE	D.K보트트레일러	DTN400S	1,538

구분	분류	연번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기준가격
31	3.화물자동차 3-1.형식분류 가.국산	62	화물	가남제일특장	가남1톤내장탑차	GANAM-PORTER TOP	17,091
32	3.화물자동차 3-1.형식분류 가.국산	63	화물	가남제일특장	가남1톤내장탑차	GANAM-PORTE RTOP	18,360
33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가.국산	7231	특수	에버다임	에버다임사다리소방차	ERL52-S02	471,100
34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가.국산	7232	특수	에버다임	에버다임사다리소방차	ERL52-S03	470,454
35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가.국산	9560	화물	파워프라자	파워프라자라보ev PEACE	PP EV-1	33,545
36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가.국산	13957	화물	한성특장	한성16.5톤카고	HS16.5T-DP14	135,191
37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가.국산	18821	화물	현대	포터II내장탑차	HR-3HDSJKM-E532	15,015
38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가.국산	19470	화물	화인특장	화인7.9㎘버큠로리	FV7.9SM-H13	62,268
39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나.외국산	525	화물	VOLVO TRUCKS	FH Cargo	FH104FTR3HA	233,000
40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나.외국산	862	화물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TGM12.2504X2BL	78,000
41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나.외국산	864	화물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TGM26.3406X2-2BL	143,000
42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나.외국산	868	화물	만트럭버스코리아	TGS	TGS44.44010X4-6BL	206,000
43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나.외국산	869	화물	만트럭버스코리아	TGS	TGS44.46010X4-6BL	224,000
44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나.외국산	870	화물	만트럭버스코리아	TGS	TGS44.48010X4-6BL	218,000
45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나.외국산	871	화물	만트럭버스코리아	TGS	TGS44.50010X4-6BL	238,910
46	3. 화물자동차 3-1. 형식분류 나.외국산	937	화물	볼보트럭코리아	FH카고	FH104FTR3HA	218,000

구분	분류	연번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기준가격
47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가.국산	8	이륜	KR MOTORS	BEAVER	HY 125	1,950
48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가.국산	347	이륜	와코	GF125	CAFERACER125	2,490
49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외국산	107	이륜	BMW	BMW K1600GTL EXCLUSIVE	603	37,309
50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외국산	173	이륜	CAN AM	(삼륜)SPYDER RS-S(스파이더RS-S)	N	25,000
51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외국산	530	이륜	HONDA	CBR250RA	MC41	6,382
52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외국산	694	이륜	HONDA	WINGGO	WH100-2	1,809
53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외국산	1272	이륜	SYM	피들3	XA12W	2,190

□ 기계장비 : 총 12건

○ 기준가격 조정 (6건)

(단위 : 천원)

구분	분류	연번	산지구분	제작회사	기종명	기준가격	
						조정전	조정후
1	4.지게차	310	외국산	MANITOU	MT1840EASY	469,000	179,000
2	22.천공기	35	외국산	ATLAS COPCO	PowerROC T35	331,660	285,000
3	29.타워크레인	14	외국산	DALIAN PENGXIANG	PYL665-36	85,000	850,000
4	29.타워크레인	17	외국산	Dalian Pengxiang Construction Machinery Co., Ltd	PYL4511	160,000	110,000
5	29.타워크레인	27	국산	대우중공업	DWT1675	1,500,000	440,000
6	29.타워크레인	97	국산	한국타워크레인	HK480H-20	1,250,000	700,000

○ 중복삭제 (6건)

(단위 : 천원)

구분	분류	연번	산지 구분	제작회사	기종명	기준가격
1	6. 덤프트럭	6	국산	MAN TRUCK	TGS41.4408X4BB	210,000
2	6. 덤프트럭	301	국산	타타대우 상용차	K4DEA1	59,300
3	6. 덤프트럭	303	국산	타타대우 상용차	K4DRF1	69,000
4	6. 덤프트럭	336	국산	타타대우 상용차	N8DNF1	113,818
5	22. 천공기	65	외국산	ATLAS COPCO	POWERROCT35	310,000
6	23. 항타 및 항발기	77	외국산	일본차량	DH418K-100M	350,000

붙임 3 항공기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 항공기 : 총2건

○ 신규 도입 (2건)

(단위 : 천원)

연번	제작회사	기종 및 형식	정원 (명)	최대이륙중량 (kg)	내용연수 (년)	기준가격 (신규)
1	LAKE250	AEROFAB INC	6	1,424	6	200,000
2	PA-31T Cheyenne	PIPER	7	4,082	9	304,000

붙임 4 시설물(옥외오락시설)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 시설물(옥외오락시설) : 총 1건

○ 삭제 (1건)

(단위 : 원)

구분	연번	지역	유원지명	명칭 (현장표기명)	단위	기준가격(원)
1	1036	서울	서울 어린이 대공원	탱크전차	1개소당	80,000,000

붙임 5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 총2건

○ 기준가격 조정 (2건)

(단위 : 천원)

연번	시군구	시설명	회원권구분	기준가격 (당초)	기준가격 (조정)	비고
1	서울시 중구	반얀트리	정회원2 (미성년추가)	45,000	40,000	인하
2	서울시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피트니스	VIP(무기명1인)	105,000	110,000	인상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45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 사용기간
2019 -72	(사)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 (대표:권영길)	서울시 동대문구 황물로103,417호 (답십리동,킹스타빌딩)	o. 평화철길 잇기 1인1만원(10인1침목) 기증 범국민운동	500 (현금)	전국	2019.4.25. ~ 2019.12.31 / 2019.4.25. ~ 2021.4.15
2019 -73	(사)평화 통일동포연합 (대표:신창민)	서울시 영등포구 63로32,1118호(여의도 동라이프콤비빌딩)	o. 국내외 동포들에게 통일교육 및 계몽운동 전개를 위한 캠페인	500 (현금및물품)	전국	2019.5.10. ~ 2020.5.9. / 2019.5.10. ~ 2021.5.9.
2019 -74	(사)대한민국지키기 (대표:오천섭)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1길 1,1562호	o. 식량 안보를 위한 환경 해외농업개발 및 국제 (농업)개발협력 관련 사업	200 (현금및물품)	전국	2019.5.10. ~ 2020.5.9. / 2019.5.10. ~ 2021.5.9.
2018 -135-1 (변경:모집 금액증액)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표:김진호)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115(성수동1 가,에스콰이어빌딩)	o. 한국전쟁 미군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기금 지원	500 → 600 (현금)	전국	2018.12.25. ~ 2019.12.24. / 2018.12.25. ~ 2020.12.24.
2018 -145-1 (모집및사용 기간연장)	군인권센터 (대표:임태훈)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4길 20 태인빌딩 201호	o. 군성폭력상담소(가) 개소 추진사업	50 (현금)	전국	2019.1.1. ~ (2019.4.30.) 변경2019.12.31. / 2019.1.1. ~ (2020.5.31.) 변경2020.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473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1회차 위반 경고안내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217건)

경고 대상차량 차주분께서는 본 고지일로부터 2019년 6월 14일(금)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19년 6월 14일(금)이후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거나,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여 차량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	85구2556	김*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28 06:09	강변북로구리방향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	92모7428	백*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3-31 08:08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1차로(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	서울85노6661	에너*테크(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27 11:59	통일로서울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서울83나8191	주-자*건설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3-31 15:44	양재IC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	92가3056	정*라이즈(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31 14:31	올림픽대로잠실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	94러9635	서*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13 12:47	송파대로서울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7	83고1760	김*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20 12:32	강일IC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8	02구5804	고*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29 19:40	강변북로구리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9	42다3046	㈜제*오토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3-30 14:54	강변북로구리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0	43나5159	황*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31 15:30	송파대로서울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1	13버2169	현*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30 12:57	강변북로일산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2	36거7106	전*비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30 20:42	분당수서고속도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3	04어2458	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29 13:00	올림픽대로잠실방향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4	16도2399	주식회사 코*우징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28 20:04	강변북로일산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5	62무7054	이*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3-30 10:45	삼성역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6	서울57나1943	김*룡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30 17:01	강변북로서울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7	26저5900	주식회사 유*미방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28 12:29	올림픽대로잠실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8	52루9632	김*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31 13:38	강변북로서울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9	10로5549	황*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29 15:34	망우리고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	08고2645	임*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28 20:44	강변북로서울방향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1	서울54누2274	김*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31 09:53	서부간선도로서울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2	01고6975	연*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22 16:54	강일IC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3	01너5308	이*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3-22 14:49	망우리고개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4	01노8679	㈜인*플래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02 10:36	화곡로입구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5	01다6651	윤*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20 14:59	석수역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26	01더3529	강*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30 16:13	양재IC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7	01더6530	장*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3-30 09:55	양재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8	01더7615	김*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01 09:45	장충체육관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9	01도2020	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27 11:42	호암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0	01도4729	송*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15 17:12	수서IC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1	01로7377	조*건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3-21 18:04	남소문터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2	58나8337	주식회사 그*람들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31 16:23	강변북로구리방향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3	01보6424	김*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3-17 17:22	강일IC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4	01부8690	최*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3-01 07:05	혜화문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5	01소7855	장*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3-11 13:19	올림픽대로공항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6	01오4810	모*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10 17:34	상일IC주도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7	01저5505	최*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31 21:15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2차로(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8	01조9262	송*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24 08:09	수서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9	02고2971	장*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31 16:32	개화역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0	02너1467	박*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27 11:34	분당수서고속도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1	02머1978	문*덕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3-17 17:39	사당IC주도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2	11서0885	LIU *IBO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3-30 18:19	강변북로서울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3	02저7315	박*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3-17 15:21	개화역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44	03고6416	김*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23 16:52	강일IC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5	서울40구7736	오*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3-30 17:28	강변북로일산방향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6	04수9385	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3-15 19:06	망우리고개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7	06소8624	정*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30 20:07	장충체육관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8	07다0622	함*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11 04:22	개봉교후방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9	08조9298	PIAO *BI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31 10:45	양재IC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0	10거6636	㈜하이*케이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29 20:49	서하남IC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1	서울73다4080	최*팔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3-21 11:38	경인고속도로서울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2	13다4584	김*택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02 08:08	광희문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3	13루6074	남*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18 19:56	올림픽대로공항방향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4	14누8482	최*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31 16:56	분당수서고속도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5	15마4657	한*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14 13:28	분당내곡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6	17오6569	김*곤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01 17:21	도봉로 시계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7	18버4697	강*철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3-03 16:59	삼육대입구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8	19로2069	나*흥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16 16:30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1차로(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9	20너7359	최*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3-24 06:15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1차로(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0	서울83나7699	북서*의교회(박*민)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3-25 09:37	통일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1	21주7815	염*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17 22:10	석수역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62	23다0547	LI Z*GBO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29 16:11	강일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3	26두4417	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17 13:00	돈의문터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4	70머2070	박*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28 16:17	동일로서울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5	서울73머6133	우*택개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31 14:20	경인고속도로서울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6	32거1971	최*선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16 11:17	도봉로 시계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7	32루7766	이*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01 07:44	작동터널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8	33다3519	조*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31 19:22	돈의문터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9	34나8043	서*덕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16 11:54	올림픽대로공항방향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70	34어5769	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01 14:38	대곡교후방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71	35모6837	윤*철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3-29 10:35	흥인지문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72	35보8598	오*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3-31 16:22	광희문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73	36라8781	안*웅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14 10:09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1차로(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74	38가3222	다지*엠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20 12:34	화곡로입구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75	38거5860	최*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3-16 16:09	강일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76	38소2561	표*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17 10:49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2차로(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77	40라8804	서*욱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19 14:10	강일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78	41거3885	민*홍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3-31 20:42	분당수서고속도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79	42무6437	김*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31 19:01	개화역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80	42부8346	권*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16 22:23	철산대교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81	43라9670	JIN *ONG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3-27 13:00	혜화문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82	45무9120	김*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3-19 14:31	호암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83	46다1057	PIAO Y*TAI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29 17:47	호암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84	49마1761	이*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3-27 17:53	삼육대입구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85	49마5954	김*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09 13:17	도봉로 시계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86	49어2674	김*석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3-26 09:09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1차로(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87	52고6197	나*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3-24 19:20	광희문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88	53도2510	강*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24 15:52	개화역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89	53어5974	조*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28 17:53	지방도309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90	54머0680	SHEN X*N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11 17:41	석수역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91	55다5706	김*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27 13:43	유한공고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92	58어9711	정*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31 22:19	올림픽대로공항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93	59무2762	김*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3-13 15:45	서오릉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94	63고4529	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3-30 15:18	올림픽대로공항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95	64로9378	전*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3-19 18:48	서하남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96	64저3438	윤*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3-18 05:24	소의문터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97	66고0778	왕*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18 09:05	강일IC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98	80거6879	지*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27 13:06	강변북로일산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99	92소3394	정*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09 06:03	북부간선도로서울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00	68더4699	홍*표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24 16:25	도봉로 시계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01	80모3279	이*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27 12:01	경인고속도로서울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02	69도7109	신*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19 09:37	개화역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03	70구3275	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26 09:10	강일IC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04	70머3172	강*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06 13:40	도봉로 시계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05	80누4671	박*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29 15:50	서부간선도로서울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06	92수1600	안*극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30 08:48	서부간선도로서울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07	74주3525	WU X*HAN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23 11:28	석수역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08	75너4585	이*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04 12:04	수서IC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09	87더7662	㈜케*티환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27 15:57	동일로서울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10	76거1615	박*복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18 16:50	안양천로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11	76노9028	이*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29 19:33	가마산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12	79고5167	PIAO J*HAO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20 14:53	화곡로입구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13	79너6532	NYAMBEGERA M*GO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3-28 06:00	흥인지문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14	80가3075	김*겸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10 15:17	호암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15	80거2623	김*랑외1인(김*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3-19 08:12	망우리고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16	80거3296	김*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08 14:36	강일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17	80거6227	홍*현	서울특별시 중구	2019-03-30 08:27	광희문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18	80고4712	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3-28 10:11	혜화문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19	80구3544	㈜이*아시스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3-12 16:47	강일IC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20	80나1739	김*현	서울특별시 중구	2019-03-09 11:01	광희문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21	80노9448	김*욱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3-30 08:56	남소문터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22	80누3517	㈜주원제이*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3-19 09:50	올림픽대로공항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23	서울48구8153	정*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3-28 17:48	강변북로일산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24	52소5406	김*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30 15:06	올림픽대로공항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25	80라3397	주식회사 킴*월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22 10:38	강변북로일산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26	80로5521	동*그린영농(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11 07:31	양재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27	80마3019	이*덕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26 07:42	올림픽대로공항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28	80마3570	이*근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29 23:10	양재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29	80모5900	㈜세*수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10 08:53	호암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30	80모6830	유한회사-을*식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07 10:34	소의문터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31	80모7825	최*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30 11:30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1차로(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32	80무6709	㈜밀*스지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14 16:52	올림픽대로잠실방향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33	80무8476	㈜홍*씨티에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06 01:32	삼성역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34	80부3571	유*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3-31 08:29	흥인지문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35	01더3546	정*모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31 15:16	강변북로서울방향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36	80소3145	윤*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3-10 11:28	북부간선도로서울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37	80오2730	한*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31 08:58	올림픽대로공항방향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38	80저3175	김*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29 11:04	덕은교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39	80저5120	유*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09 07:16	서부간선도로서울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40	80조1822	주-새*대청환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26 08:23	벌말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41	02모1622	조*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31 12:13	올림픽대로공항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42	81모1849	㈜화*운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13 11:16	서부간선도로서울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43	82누5022	김*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28 09:20	개화역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44	82조7824	문*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29 15:01	상일IC진출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45	84나3551	류*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25 14:37	동일로서울방향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46	84어2203	이*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07 11:03	서하남IC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47	84오5977	박*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31 20:49	철산대교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48	02나1890	손*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30 16:29	상일IC주도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49	87구6571	안*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06 15:19	강변북로서울방향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50	89구8574	황*찬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3-17 08:08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2차로(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51	32수3694	김*돈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3-31 11:43	통일로서울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52	91나4254	김*봉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3-30 17:59	양재IC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53	91더3507	김*하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22 18:23	대곡교후방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54	91라8696	강*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3-20 15:45	호암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55	91부5456	정*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11 15:04	수서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56	92고7216	박*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24 18:31	분당수서고속도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57	92모7073	고*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29 07:31	삼성역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58	92보5768	유*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24 00:57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3차로(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59	92서3064	손*영	서울특별시 중구	2019-03-09 09:30	광희문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60	93주1762	고*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28 17:43	철산대교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61	95누3207	김*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26 22:26	유한공고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62	95누3263	성*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28 19:07	작동터널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63	54수9151	WEN Z*GRI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31 19:47	강변북로일산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64	01거8744	HONG H*RI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28 17:11	강변북로일산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65	96무3953	박*형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02 11:06	올림픽대로잠실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66	97구8282	윤*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3-24 06:12	강변북로서울방향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67	97저9365	조*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3-30 09:41	양재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68	서울30고7880	손*락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3-30 13:33	대곡교후방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69	서울31머3970	박*일	서울특별시 중구	2019-03-19 09:15	광희문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70	서울31머4677	범*검정(주)	서울특별시 중구	2019-03-19 16:00	양재IC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71	서울32거7945	최*곤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23 21:43	분당내곡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72	서울34고4595	남*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3-24 20:04	석수역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73	서울35러2651	정*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3-31 13:17	양재IC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74	서울36머2974	김*욱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3-22 18:32	올림픽대로공항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75	서울37더5085	유*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01 14:32	도봉로 시계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76	서울38너7412	이*근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30 14:02	소의문터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77	서울38더8737	최*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25 14:32	양재IC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78	서울38러2584	김*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3-15 17:34	도봉로 시계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79	서울38머4179	정*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18 17:19	개봉교후방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80	서울40구8571	조*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23 10:26	상일IC진출로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81	서울41고7875	뉴그*시스템(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31 15:21	개화역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82	서울41머4625	전*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3-12 13:53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1차로(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83	서울44노8269	이*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10 13:42	올림픽대로공항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84	서울44누4993	유*옥 외1인(전*만)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3-22 05:06	석수역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85	서울47고5016	이*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22 22:26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2차로(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86	서울48로6074	박*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31 15:27	철산대교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87	서울48로9542	임*열외1인(임*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21 15:47	올림픽대로공항방향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88	서울49러9520	이*선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3-31 18:42	분당내곡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89	서울51두9357	장*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3-31 11:46	양재IC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90	서울54노1181	양*윤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28 15:06	올림픽대로공항방향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91	서울56다1976	주-광*바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14 14:24	호암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92	서울56다4283	이*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11 12:12	소의문터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93	서울56다5245	주-스*너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12 12:24	개화역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94	32무2804	홍*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3-31 13:20	강변북로구리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95	서울57나8933	곽*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30 18:29	사당IC주도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96	서울72고9265	도*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23 09:21	대곡교후방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97	서울73다5112	이*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21 13:53	통일로서울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98	서울73러4773	김*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30 17:25	상일IC진출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99	서울73마4130	김*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3-26 15:38	경인고속도로서울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0	서울81루5513	박*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27 07:45	대곡교후방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1	서울82누9329	이*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02 15:53	경인고속도로서울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2	서울82두2911	원*기공(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30 11:59	오쇠삼거리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3	서울82두4645	천*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3-25 14:23	서부간선도로서울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4	서울82로5559	김*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3-30 09:06	광희문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5	서울82모9751	서*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09 13:16	북부간선도로서울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206	서울82무5815	이*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17 12:21	분당수서고속도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7	서울82바2319	㈜한*택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3-28 05:11	강변북로구리방향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8	서울83가3762	이*봉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3-29 06:11	망우리고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9	서울83가8756	방*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3-21 16:02	광희문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10	서울83나7543	강*삼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3-08 15:37	통일로서울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11	서울83사5173	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3-14 14:59	동일로서울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12	서울85너3127	주-오*이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19 15:42	서하남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13	서울85로4070	김*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12 15:47	개화역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14	서울85머3588	주-아*비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02 15:23	강변북로구리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15	서울86마1743	김*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3-20 14:55	유한공고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16	서울83거8001	변*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28 17:09	경인고속도로서울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17	서울71너9222	신*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28 12:33	경인고속도로서울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공 고 기 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9년 6월 14일(금)

나. 본 경고조치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Fax 02-2133-1025)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474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161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서울47러7954	박*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3-21 16:57	사당IC주도로 4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40조6603	장*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29 07:58	강변북로구리방향 1차로	〃	〃
3	26너1043	권*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3-29 09:17	수서IC 3차로	〃	〃
4	60가4373	김*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30 20:22	흥인지문 2차로	〃	〃
5	89너5046	송*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3-30 20:36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1차로	〃	〃
6	39조6275	오*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22 12:29	돈의문터 1차로	〃	〃
7	서울54모9589	조*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22 17:47	강일IC 4차로	〃	〃
8	95어4010	황*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29 09:48	상일IC주도로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9	80로4063	주식회사 민*산업개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29 09:49	동일로서울방향 4차로	〃	〃
10	01다1436	권*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29 10:30	광희문 2차로	〃	〃
11	서울45로4761	박*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30 22:57	개화역 2차로	〃	〃
12	87오3770	송*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31 00:03	올림픽대로공항 방향 2차로	〃	〃
13	03가8342	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31 01:20	양재IC 3차로	〃	〃
14	36다3473	남*학	서울특별시 중구	2019-03-03 12:57	흥인지문 1차로	〃	〃
15	83두3009	임*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03 16:15	올림픽대로잠실 방향 5차로	〃	〃
16	28부4948	염*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3-03 17:44	대곡교후방 3차로	〃	〃
17	서울39더7840	황*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3-22 21:12	양재IC 3차로	〃	〃
18	16고4837	박*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23 06:57	서부간선도로안 양방향 2차로(신)	〃	〃
19	01가2887	주-*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23 09:53	수서IC 3차로	〃	〃
20	92보6094	최*규	서울특별시 중구	2019-03-23 12:32	광희문 2차로	〃	〃
21	80누4062	㈜건축사사 무소*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3-29 13:01	대곡교후방 3차로	〃	〃
22	80거3882	김*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3-29 13:06	망우리고개 3차로	〃	〃
23	75버3955	ZHANG SH*NG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31 04:14	수서IC 3차로	〃	〃
24	92모7136	서*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31 06:02	오쇠삼거리 2차로	〃	〃
25	75수3855	박*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31 08:34	개봉교후방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6	80모7987	윤*보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31 10:00	강변북로서울 방향 5차로	〃	〃
27	80노3912	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3-04 15:28	안양천로 2차로	〃	〃
28	01가1867	주*열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23 15:47	흥인지문 1차로	〃	〃
29	88서1045	가*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23 15:55	삼육대입구 1차로	〃	〃
30	91머3922	김*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23 19:09	혜화문 2차로	〃	〃
31	86보6494	최*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29 14:53	철산대교 2차로	〃	〃
32	서울85고6626	김*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3-29 14:54	장충체육관 4차로	〃	〃
33	서울82무2524	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29 15:59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34	82고8516	김*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3-31 10:04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2차로	〃	〃
35	02고1453	배*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31 10:25	돈의문터 3차로	〃	〃
36	01누7795	조*봉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31 10:26	대곡교후방 3차로	〃	〃
37	20저6636	이*종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31 10:38	북부간선도로 서울방향 3차로	〃	〃
38	96두4383	송*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08 13:45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신)	〃	〃
39	72노5471	이*협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08 14:14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2차로(신)	〃	〃
40	서울31머4250	박*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08 15:14	혜화문 1차로	〃	〃
41	47더9071	민*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3-24 11:30	강일IC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42	59보4396	이*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29 17:19	망우리고개 2차로	〃	〃
43	서울83나4785	오*석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29 17:36	망우리고개 3차로	〃	〃
44	서울44도6333	이*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3-31 11:30	소의문터 3차로	〃	〃
45	29구2201	지*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3-31 12:22	양재IC 2차로	〃	〃
46	80우4490	신*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08 19:31	강일IC 3차로	〃	〃
47	53가6017	심*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10 14:50	상일IC주도로 2차로	〃	〃
48	41나5335	송*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3-24 17:25	강일IC 3차로	〃	〃
49	80보2113	이*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29 18:17	강변북로서울 방향 3차로	〃	〃
50	45로2967	이*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3-29 18:34	강일IC 4차로	〃	〃
51	70노4767	유*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29 18:57	안양천로 3차로	〃	〃
52	81모1529	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3-31 12:32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차로	〃	〃
53	56노1399	김*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31 13:15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2차로(신)	〃	〃
54	97마1519	조*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11 17:51	양재IC 1차로	〃	〃
55	86더9754	오*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25 20:14	양재IC 3차로	〃	〃
56	서울37더8160	김*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3-25 20:46	분당수서고속 도로 2차로	〃	〃
57	86조6538	신*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26 01:13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차로	〃	〃
58	92가5151	이*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29 18:58	상일IC진출로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59	72오5800	오*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29 18:58	개화역 4차로	〃	〃
60	03로4166	안*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29 19:00	남소문터 1차로	〃	〃
61	서울30고7241	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3-29 19:06	광희문 2차로	〃	〃
62	38라9028	안*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29 19:32	밤고개로 1차로	〃	〃
63	12더5752	김*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31 13:40	수서IC 2차로	〃	〃
64	84모8952	김*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13 13:47	강변북로구리 방향 2차로	〃	〃
65	57모5686	이*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13 18:39	안양천로 2차로	〃	〃
66	서울49머1330	박*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3-13 22:06	양재IC 3차로	〃	〃
67	70오3928	윤*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3-13 23:15	양재IC 1차로	〃	〃
68	43가9111	민*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29 20:11	화곡로입구 2차로	〃	〃
69	85버1045	이*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3-29 20:14	장충체육관 1차로	〃	〃
70	85구9697	이*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3-29 21:42	강변북로서울 방향 5차로	〃	〃
71	80모8099	최*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29 22:37	개화역 1차로	〃	〃
72	02모1398	고*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31 15:39	강일IC 4차로	〃	〃
73	59누3971	CUI H*RUN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31 16:06	강변북로서울 방향 2차로	〃	〃
74	73부6009	김*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31 16:10	서하남IC 5차로	〃	〃
75	80러2712	김*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14 12:01	강변북로구리 방향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76	80노8007	㈜필에*미디어	서울특별시 중구	2019-03-14 16:26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1차로	〃	〃
77	86머3506	김*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26 11:16	강변북로일산 방향 4차로	〃	〃
78	서울73머4059	홍*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3-26 11:16	광희문 2차로	〃	〃
79	89무3124	천*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26 12:18	올림픽대로공항 방향 2차로	〃	〃
80	82버2949	김*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26 14:51	강일IC 1차로	〃	〃
81	81나0302	최*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3-31 16:29	소의문터 2차로	〃	〃
82	43라9562	한*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31 17:43	밤고개로 1차로	〃	〃
83	80도1607	김*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15 11:14	경인고속도로서울방향 3차로	〃	〃
84	96오8157	조*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3-27 08:17	호암로 2차로	〃	〃
85	88오1624	우*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30 08:13	송파대로서울 방향 1차로	〃	〃
86	89나1898	천*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30 08:41	올림픽대로공항 방향 2차로	〃	〃
87	86더1900	㈜옐*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30 09:27	수주삼거리 1차로	〃	〃
88	서울41머2483	김*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03-31 17:43	강변북로구리 방향 1차로	〃	〃
89	80오3320	김*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31 17:59	강변북로일산 방향 4차로	〃	〃
90	83도5988	정*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31 18:14	철산대교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91	36너1430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31 18:14	수서IC 3차로	〃	〃
92	서울44루1075	박*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16 06:48	수주삼거리 1차로	〃	〃
93	46나9992	박*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16 09:22	가마산로 3차로	〃	〃
94	03구7242	안*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16 00:47	삼성역 3차로	〃	〃
95	75너5698	정*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16 16:48	강일IC 2차로	〃	〃
96	42도4543	이*열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16 19:02	남소문터 1차로	〃	〃
97	서울83가8318	이*식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27 15:15	도봉로 시계 3차로	〃	〃
98	89서8391	양*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27 15:27	사당IC주도로 1차로	〃	〃
99	82조9011	곽*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3-27 18:14	사당IC주도로 4차로	〃	〃
100	87거7861	김*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27 18:26	장충체육관 2차로	〃	〃
101	01로9655	㈜지*그룹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30 11:49	철산대교 2차로	〃	〃
102	94다7953	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3-30 11:52	혜화문 2차로	〃	〃
103	서울91자1043	윤*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31 18:52	올림픽대로잠실 방향 1차로	〃	〃
104	06보3811	김*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31 19:54	강변북로구리 방향 4차로	〃	〃
105	66버3652	배*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31 20:22	장충체육관 3차로	〃	〃
106	90소4943	박*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16 23:50	분당수서고속 도로 3차로	〃	〃
107	74조7900	황*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17 05:13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08	43서4909	조*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17 12:31	서하남IC 3차로	〃	〃
109	26두3458	심*택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17 12:38	도봉로 시계 3차로	〃	〃
110	서울43머3940	정*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17 18:05	삼육대입구 3차로	〃	〃
111	05오8046	여*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3-17 18:17	대곡교후방 4차로	〃	〃
112	80고3690	이*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27 19:01	유한공고 2차로	〃	〃
113	서울35러6563	김*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28 06:50	올림픽대로공항 방향 2차로	〃	〃
114	03다3637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28 10:37	올림픽대로잠실 방향 4차로	〃	〃
115	70다1772	최*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3-30 13:33	강변북로일산 방향 4차로	〃	〃
116	04노2713	김*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30 14:44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2차로	〃	〃
117	87로6304	김*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3-30 14:46	강변북로서울 방향 5차로	〃	〃
118	서울38머6896	전*순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3-30 14:50	혜화문 2차로	〃	〃
119	88거9644	전*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3-31 23:14	광희문 2차로	〃	〃
120	84저9476	황*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31 23:22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121	28구2331	이*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3-31 23:51	올림픽대로공항 방향 1차로	〃	〃
122	77버1249	박*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3-17 19:28	강일IC 3차로	〃	〃
123	01저6774	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3-17 19:41	석수역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24	49거7063	김*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03-17 22:43	삼육대입구 2차로	〃	〃
125	서울85구4864	주-에*타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3-18 15:03	대곡교후방 2차로	〃	〃
126	80주6538	김*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03-28 12:02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신)	〃	〃
127	88도3331	이*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03-28 13:55	양재IC 2차로	〃	〃
128	04노9834	송*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03-28 15:39	덕은교 2차로	〃	〃
129	02고2082	김*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03-28 15:55	강변북로서울 방향 3차로	〃	〃
130	34마3441	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3-30 15:46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차로	〃	〃
131	80고1971	윤*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3-30 15:51	혜화문 2차로	〃	〃
132	92오2351	김*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9-03-18 17:03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2차로(신)	〃	〃
133	86모6527	박*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03-28 16:10	광희문 1차로	〃	〃
134	01노6158	김*수외1인(손*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03-28 16:39	삼육대입구 2차로	〃	〃
135	31다7990	송*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30 16:24	수주삼거리 1차로	〃	〃
136	02너9853	유*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30 16:39	오쇠삼거리 2차로	〃	〃
137	80노8515	김*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30 17:10	서부간선도로 서울방향 1차로	〃	〃
138	49어3133	황*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3-19 15:38	삼육대입구 2차로	〃	〃
139	77너1368	박*민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03-19 16:35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40	04서9018	홍*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19 17:12	양재IC 1차로	〃	〃
141	94저0339	최*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03-28 17:49	개화역 3차로	〃	〃
142	93소2676	신*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3-28 18:39	망우리고개 2차로	〃	〃
143	71두3605	황보*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3-28 20:50	북부간선도로 서울방향 3차로	〃	〃
144	27보1864	김*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9-03-28 21:38	강일IC 1차로	〃	〃
145	93주4148	송*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30 17:32	사당IC주도로 3차로	〃	〃
146	92어7652	배*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03-30 17:48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차로	〃	〃
147	02나2324	최*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30 18:08	광희문 3차로	〃	〃
148	34거9798	남곡에*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03-30 18:13	혜화문 2차로	〃	〃
149	02버6083	이*하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9-03-30 18:29	도봉로 시계 4차로	〃	〃
150	88마1300	아유*초바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3-30 18:37	강변북로서울 방향 3차로	〃	〃
151	80누2170	김*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9-03-20 16:24	망우리고개 2차로	〃	〃
152	86고7671	김*범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20 16:41	안양천로 1차로	〃	〃
153	52저3898	편*철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20 17:09	광희문 1차로	〃	〃
154	90마8150	㈜지*건설산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21 08:31	유한공고 1차로	〃	〃
155	90소4873	권*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9-03-29 02:27	북부간선도로 서울방향 3차로	〃	〃
156	40다8650	이*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29 03:25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57	80나2909	김*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29 06:16	안양천로 2차로	〃	〃
158	37저1714	최*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9-03-30 18:37	강변북로일산 방향 1차로	〃	〃
159	80도4480	김*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03-30 18:51	개화역 5차로	〃	〃
160	81더0956	이*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30 19:03	개화역 3차로	〃	〃
161	43서3648	김*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03-30 19:21	석수역 2차로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9년 6월 14일(금)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Fax 02-2133-1025)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484호

「2019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한국일보사와 공동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따뜻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매년「서울특별시 봉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기부와 선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모범 시민 및 단체를 올해의 서울특별시 봉사상 수상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 시상분야 : 봉사분야

■ 시상인원 : 총 21명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대상"** 선정 가능

○ 수상자로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상내용 : 상패 및 메달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상 미지급

■ 추천대상자

○ 수상후보자 추천 최초 공고일('19. 5. 30.)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및 단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범시민 및 단체

◈ 기부선행, 시민화합,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 봉사한 시민 및 단체

◈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재능봉사를 실천한 시민 및 단체

◈ 문화,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실천한 시민 및 단체

추천제외대상

◈ 봉사상을 수상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동일한 공적으로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추천권자

○ 행정기관(자치구,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공서) 및 등록된 민간단체
: 해당 기관장 명의 추천(예시: OO구청장, OO병원장, OO협회장 등)

○ 미등록단체(동호회 등) 및 일반시민(개인) : 10인 이상의 연서 첨부

■ 추천구비서류

① 후보자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주요경력 및 수상내용 1부
④ 공적 요약서 1부 ⑤ 공적심사의결서(자치구 추천 시)
⑥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 접수기간 : '19.05.30.(목) ~ 08.02.(금) [65일간]

■ 추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7층 자치행정과(04524)

○ 온 라 인 : chenhae75@seoul.go.kr
※ '19. 08. 02.(금) 18:00까지 도착분에 유효함

■ 시 상 식 : 2019. 10. 24(목) 예정(※ 수상자 발표 10월초 개별통지)

■ 기타사항

○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2133-58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봉사상 후보자 추천서식(5종)

첨부 1

서울특별시 봉사상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개인:성명 ▸단체:단체명	한 글		성 별	*단체의 경우 기재생략*	사 진
	한 자	*단체의 경우 기재생략*			
주 소					
생년월일 ▸단체의 경우 등록번호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근 무 처	(전화)		직 위		

위 사람(단체)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봉사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추천자
□개인 / □단체

단체 및 기관명
(시민추천 : 00외 0인) *OO구청장/OO협회장* (인)

대 표 자 *홍길동* (인)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장
한국일보사사장 **귀하**

(1) 추천자란 : 개인 또는 미등록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공동추천자' 별첨 서식 작성 (첨부2)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방문 접수의 경우 편집가능 전자파일 추가 제출.

첨부 2

【공동추천자】

* 행정기관외 시민(개인10인연서) 및 미등록단체 추천시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⑴ 개인연서는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 19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로 기재

⑵ 공동 서명부는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함 (전자접수의 경우 스캔본 가능)

첨부 3

공 적 조 서

관리번호	*기재생략*				
후보자 구 분	개 인	성 명		생년월일	
	단 체	단체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직장명/직위)	

❑ **공적요지** *(반드시 1page로 작성)*

○

위와 같이 공적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OO동장/OO팀장 홍길순*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자 *OO구청장/OO협회장 홍길동* (인)

⑴ 기관의 경우 추천자는 기관장(자치구의 경우 구청장), 작성자는 소속부서장이 됨

⑵ 10인이상의 연서로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 : ex) 작성자 : 홍길동 / 추천자 : 홍길동 외10인

첨부 4

주요경력 및 수상내역

주요 경력		수상 경력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공 적 내 용 *(최대 3page 이내로 작성)*

❍ *활동사진 별도 제출 없이 공적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사진 최대 6매이내)*

- 공적내용이 포함된 동영상, 언론보도자료, 잡지, 책자 등은 별도 제출 가능

공 적 내 용
○

첨부 5

공 적 요 약 서

관리번호	*기재생략*				
후보자 구 분	개 인	성 명		생년월일	
	단 체	단체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적요약 *(반드시 1page로 작성)*

○ 객관적 사실위주로 작성 : 기간(일자), 장소, 실적 등

예) '00.5.20 ~ ' 05.6.31 (5년간) : OO요양원에서 매주 3회 4시간 급식봉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48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 사용기간
2019 -75	(사)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김태훈)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202호(서초동, 메종스터디빌)	o. 자유주의 및 법치주의 구현과 북한의 인권개선 등 지원사업	500 (현금)	전국	2019.5.22. ~ 2020.5.21. / 2019.5.22. ~ 2021.5.21.
2019 -76	(사)대한정신 건강재단 (대표:권준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521호	o.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발대식 및 정신건강바로알기 캠페인	30 (현금)	전국	2019.5.22 ~ 2019.12.31. / 2019.5.22. ~ 2019.12.31.
2019 -77	(사)사람숲 (대표:양길승)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B동 2018호(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o. 역사적 콘텐츠를 매개로한 도심 숲 조성과 보존	1,000 (현금및물품)	전국	2019.5.22. ~ 2020.5.21. / 2019.5.22. ~ 2021.5.2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489호

설계 ·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진우엔지니어링 (134911.0023753)	김명철	전문감리업 (서울S-2-54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51 (세진이노플렉스1차 1202-1207호)	2019. 5. 21.
		전문설계업1종 (서울E-2-55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493호

도시관리계획(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성동구 용답동 232-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2-5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9. 5. 31. ~ 2019. 6. 13.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02-2133-6297)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③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답십리동 일대	523,805	-	성동구, 동대문구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523,805	-	523,80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7,369	-	17,369	3.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40,613	-	40,613	7.8	
제2종일반주거지역	67,838	-	67,838	13.0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124	-	108,124	20.6	
준주거지역	97,978	-	97,978	18.7	
일반상업지역	119,478	-	119,478	22.8	
유통상업지역	72,405	-	72,405	13.8	

※ 미래자동차혁신센터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검토

나.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4.18.)에 따라 미관지구 폐지 반영)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계획

□ 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가구번호	비고
일반상업지역	·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간선가로변(천호대로)
	· A11, A12, A13	간선가로변(장한로)
준주거지역	· B1, B2, B3, B4, B5, B6	간선가로변(천호대로)
	· B7, B8, B9, B10, B11	이면부
유통상업지역	· C1, C2, C3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 D1, D2, D3, D7, D8	이면부
	· D4, D5, D6	간선가로변(한천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E1	이면부
제2종일반주거지역	· F1, F2, F3, F4, F5, F6, F7, F8	이면부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면적(㎡)	위치	비고
기정	1	29,883.7	성동구 용답동 234, 234-2	장안평중고차 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기정	2	682.8	성동구 용답동 233-1	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
기정	3	1,900.2	동대문구 장안동 459-1, 459-6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신설	4	556.5	성동구 용답동 232-5	성동구 용답동 232-5 역세권 청년주택

※ 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4호, 2017.9.14.) 및 동대문구 장안동 459-1 역세권 청년주택(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5호, 2018.7.19.) 획지계획에 따라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름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획지계획 신설 : 획지번호4 - A2 내 성동구 용답동 232-5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가구번호 A2내 "성동구 용답동 232-5" 필지에 획지계획 수립

□ 필지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계획내용	비고
A2	A2	6,123.2	2,638.2	성동구 용답동 232-1		
			165.7	성동구 용답동 232-10		
			429.6	성동구 용답동 232-12		
			428.0	성동구 용답동 232-13		
			556.6	성동구 용답동 232-5		획지4 역세권 청년주택
			840.2	성동구 용답동 232-6		
			304.2	성동구 용답동 232-7		
			498.3	성동구 용답동 232-8		
			262.4	성동구 용답동 232-9		

※ 가구번호 A1, A3~A15, B1~B12, C1~C3, D1~D8, E1, F1~F9 : 기재 생략

※ "성동구 용답동 232-5" 획지계획 신설 외 변경사항 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1) 불허용도

□ 불허용도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도면표시	불허용도	비 고
간선변	불허용도A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마권장 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이와 비슷한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상업지역에 한함) – 관광호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기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매매장, 매매장과 복합화 된 세차장 · 검사장 ·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은 불허)으로 매매장의 바닥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내 불허용도 건축물 포함(공통)

※ 이면부 불허용도 기재 생략

2) 권장용도

□ 권장용도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도면표시	권장용도		비 고
간선변	권장용도A	전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1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자동차영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자동차·이동수단 관련용도주1)	

※ 전층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 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 이상하되 2개층 이상 입지

※ 1층 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중복하여 완화할 수 없음

※ 이면부 권장용도 기재 생략

주1) 건축법상 용도분류에도 불구하고 1층 권장용도 중 "자동차·이동수단 관련용도"는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용도의 정의

- 자동차·이동수단 관련용도는 장안평 일대의 자동차(중고차 포함), 부품, 튜닝 등 지역산업을 대표하는 용도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라 아래의 분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적용함

①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중 451.자동차 판매업, 452.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3.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예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튜닝 및 관련용품 전시·판매·체험용도, 전기차·무인자동차 관련용품 전시·판매·체험용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용품(전동휠,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의 전시·판매·체험용도

※ 인센티브 적용시 용도변경 불가

3) 지정용도

□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지정용도	비고
기정	이면부	지정용도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50% 이상주1)	획지1
신설	간선변	지정용도B	·공동주택주2) (주거복합), 근린생활시설 ※ 단, 지상1~3층은 비주거용도 설치	획지4 역세권 청년주택

주1) 자동차관련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 시설"과 자동차 관련 판매·정비(튜닝 포함), 문화·전시·교육, 이동수단 등을 포함하는 용도

주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 지정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정용도B	·지정용도 신설 - 획지4 : 공동주택주1) (주거복합), 근린생활시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획지4(성동구 용답동 232-5필지)에 지정용도 신설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4) 용도완화(변경 없음)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건폐율에 관한 사항

□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적용구역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65% 이하	성동구 용답동 232-5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건폐율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건폐율 변경 - 기정 : 60% 이하 - 변경 : 65%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원활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3-3-3에 의거하여 A2 가구 내 1필지 중 "용답동 232-5"에 한하여 건폐율을 법적상한(80%) 이하인 65% 이하로 완화

□ 건폐율의 완화(변경 없음)

2)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사항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일반 상업지역	천호대로	400% 이하	66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변경			기본용적률 : 1,000% 이하		법적용적률 이하	·성동구 용답동 232-5필지에 한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상한용적률 = 기본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0.7×α(현금·건축물)}]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용적률 변경 - 기정(기준/허용/상한) : 400% 이하/660% 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변경(기본/상한) : 1,000% 이하/법적용적률 이하	·성동구 용답동 232-5필지에 한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용적률 적용

□ 용적률 적용기준(신설)

구분		적용기준	비고
공공기여율		·14% 이상(부지면적 기준)	·성동구 용답동 232-5 청년주택 사업지에 한함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부여
용도별 비율	주거	·80% 이상 90% 이하	
	비주거	·10% 이상 20%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규모의 경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설치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성동구 천호대로변 가중평균 적용표(변경 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변경 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유형A, 유형B)(변경 없음)
□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91.5.11이후 변경)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변경 없음)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변경 없음)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변경 없음)

3)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

□ 높이 결정조서(변경 없음)

적용구역			높이계획		비고
			기준	최고	
일반상업지역	간선	천호대로변	80m이하	120m이하	

※ 공동개발 등에 의한 전면부와 이면부가 동시 적용될 경우 전면부 지침에 따름
※ 공동개발이 해제되거나 변경되어 생기는 이면부 필지는 이면부의 지침에 따름
※ 기준높이 완화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준높이에 추가하여 적용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높이 결정

□ 높이 완화왕목 및 완화내용(변경 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가로변(천호대로, 장한로)	3m	-

※ 건축선 후퇴폭원이 상이한 2개가 만나는 지점은 후퇴거기가 큰 폭원만큼 후퇴
※ 도로결정선 변경시 결정도 폭원만큼 건축선 지정으로 간주

□ 벽면한계선 조성방식(변경 없음)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외장		·색채/형태/재료 - 건축물 외벽색채 기조는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로 함 -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질이 높은 것으로 함 -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색의 사용은 금하도록 함	
건축물 형태	저층부	·쇼윈도 설치, 투시형 셔터 및 투시형 벽 설치 ·1층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구분		계획내용	비고
	1층부형태	• 쇼윈도 :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위기 배려 • 투시형 셔터/투시벽 : 1층 전면용도와 가로활동의 연속성 유지 및 활성화 도모	
야간조명		• 기존 상부조명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상향/측향)의 강화 유도 • 투시형 벽면설치시 내·외부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함 •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건축설비		•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 건축물 안에 설치덮개를 하거나 주변경관에 배려되도록 함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		• 외부에 노출이 심하거나 건축물과의 이질감이 심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규제함 • 통합간판 설치 유도	
담장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조성함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성동구 간선가로별)(용도지역 변경조건)(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적용기준	비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간선부)	• 간선가로변 보행 및 휴게공간 확보 • 공공부문과 일체형 유도 •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을 준용한 공개공지 확보 • 공개공지와 쌈지형공지 중복지정 불가 • 조경면적 산정시 전면공지면적 제외	• 폭 3m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계획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적용기준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 및 교차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필지로의 직접 출입을 제한 • 간선도로변으로 직접 출입 규제 및 안전한 교통소통 유도 •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 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 간선도로변(천호대로, 장한로)
(공동)주차 출입구	• 간선변 : 이면도로에서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일부 필지에 적용 • 이면부 차량진출입 유도를 위해 간선부와 이면부간 공동개발시 간선부 차량 진출입을 위한 계획 미적용	• 간선도로변(천호대로, 장한로) • 31개소

다. 공공기여계획(신설)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비고
공공임대주택	1,000% 이하 [일반상업지역(변경 없음)]	부지 면적의 14% 이상주) (77.92㎡ 이상)	·용답동 232-5에 한함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501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 공고

「교통안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공 고 명 :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
2.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3. 공고내용 :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내용
   ○ 계획기간 : 2019년
   ○ 대상지역 : 서을시 전체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목표 및 방향
   - 2019년 교통안전 추진과제 및 부문별 추진계획
   - 사업별 투자계획
4. 문의처 : 서을특별시 교통운영과(☏02-2133-247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50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업체명 : 자이에너지운영(주)
2) 대표자 : 박 승 범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40(다동, 센터플레이스빌딩 5층)
(☎ 02-6410-0344)
4) 업종 : 유독물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유독물[제12호]
6) 지정일자 : 2019. 5. 2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505호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선정 결과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시범사업 추진 이전 주민모임·자치구의 제안으로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2019.3.28.일 공모한 희망지사업의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선정결과

연번	자치구	위 치	면 적 (㎡)	시장명	비고
1	성북구	장위동68-14 일대	159,451	장위전통	
2	성동구	용답동13-22일대	108,000	용답상가	
3	강서구	화곡동370-37 일대	160,000	화곡중앙골목	

연번	자치구	위 치	면 적 (㎡)	시장명	비고
4	강북구	수유동605-248 일대	143,800	장미원골목	
5	마포구	연남동277-15 일대	116,524	동진	
6	중랑구	면목3,8동459-1 일대	99,706	사가정	

2.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 2133-4645.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513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엄태*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9길 20-5, B301호 (증산동)	위반일시 : 2019-03-08 07:05 위반장소 : 아현가구단지앞 위반내용 :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36.4t, 초과값:4.4t, 경기06소7*48)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19-04-22 납기일 : 2019-06-30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1가길 10-13, 201호 (대조동)	위반일시 : 2019-03-08 13:35 위반장소 : 박정희기념관 위반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35t, 초과값:1.35t, 서울06하6*97)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19-04-22 납기일 : 2019-06-30
조동*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33번길 17-1, 201호 (가좌동))	위반일시 : 2019-03-19 13:51 위반장소 : 가양대로아래 위반내용 :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2t, 초과값:1.2t, 인천06아5*26)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19-04-22 납기일 : 2019-06-30
김성*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36-1, 가동 206호 (문산읍, 도우빌라	위반일시 : 2019-03-22 14:19 위반장소 : 통일로402_1 위반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45t, 초과값:1.45t, 서울06파6*51)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19-04-22 납기일 : 2019-06-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식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 22, 2*1호 (소사본동, 슈팰리스)	위반일시 : 2018-12-05 10:31 위반장소 :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대로 아현 초등학교앞 위반내용 :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2.9t, 초과값:2.9t, 적발횟수:3회, 서울07나5*85)	과태료 : 160만원 부과 처분일 : 2019-01-25 납기일 : 2019-06-3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9. 06.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514호

도시·군관리계획(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9. 5. 31. ~ 2018. 6. 13.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 (☎02-2133-6296)

Ⅲ.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	증) 1,785.4	1,785.4	-

□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신설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1,785.4	•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신설)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계	1,785.4	-	1,785.4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785.4	감) 1,785.4	-	-	-
	준주거지역	-	증) 1,785.4	1,785.4	100.0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사유
		기정	변경		
-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785.4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결정(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신설)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획지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	1,785.4	강서구 등촌동671-1번지	1,785.4	

□ 결정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획지계획 신설 : 1,785.4㎡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획지계획을 결정(신설)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용도	지정용도(1)	•공동주택(주거복합)주)	
			불허용도(A)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제외) •장례식장	

주)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결정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지정, 불허용도 신설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신설)하고자 함

나.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건폐율		•60% 이하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기본용적률	•400% 이하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500%) 이하	
		높이		•50m 이하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에 의거하여 적용함.

□ 결정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	용적률	•기본용적률 : 40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500%)이하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용함.
	최고높이	•50m 이하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코자 함.

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계획 적용기준(신설)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공공기여율 1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설치 및 제공 •추가용적률 연면적 5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354.19㎡(19.84%) ① 기본공공기여율 : 179.31㎡(10.04%) ② 추가공공기여율 : 174.88㎡(9.80%) → ① + ② = 354.19㎡(19.84%)	기본 용적률 400% 부여 상한 용적률 5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15% 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비주거비율 : 14.68% (1,305.96㎡)		
주택 건설 기준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 전용15㎡, 30㎡ 계획 •민간임대주택 : 전용15㎡, 30㎡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지상2층에 102.26㎡ 계획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 기준으로 하되,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지상2층에서만 설치하여야 함.

□ 결정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신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결정(신설)

라. 공공기여계획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00%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0%이상 − 179.31㎡ (10.04%) •추가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세대의 대지지분 − 174.88㎡ (9.80%) •179.31㎡ + 174.88㎡ = 354.19㎡(19.84%)	•354.19㎡ (19.84%)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

마.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대상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비고
−	이면도로변	대상지 북측 등촌동 강서로56길변	3m	−	•보도형 조성 (이면부 보행구간 확보)
		대상지 남측 등촌동 강서로54길변	3m	−	•보도형 조성 (이면부 보행구간 확보)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지 (차량출입구 제외)	강서로54길, 강서로56길

□ 결정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전면공지 신설	• 강서로54길, 56길의 보행환경 제고를 위해 전면공지 결정(신설)

나. 기타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타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인접대지경계선 및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높이제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통해 완화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515호

'서울, 건축 이야기'

제5회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

2019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서울, 건축 이야기』는 그들이 서울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애환을 기록하고, 도시의 얼굴이 되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서울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글과 사진, 동영상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재기발랄한 서울시민과 서울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내용 : 서울소재 건축물 및 **열린공간(New Open Spaces)**[1]을 중심으로 삶과 이웃의 스토리가 묻어 있는 작지만 특별한 동네 이야기
※ 올해는 홍대일대와 성수동의 동네 이야기를 중심으로 특별 코너를 만들 예정
※ 대상 건축물은 모집공고일 현재 사용승인 받은 서울시 소재건축물로 한함

2. 응모기간 : 2019. 5. 30.(목) ~ 7. 26.(금) 18:00

3. 응모자격 : 서울의 건축을 사랑하는 누구나

4. 시 상 수 : 28작품
- 대상 1, 최우수상 4(부문별 2점), 우수상 8, 장려상 12, 엠보팅 시민상 3

5. 접수부문 : 에세이 / 미디어(사진 또는 동영상)
-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나 생각을 에세이 또는 미디어 형식으로 제출

6. 접수방법
- 공모전 메인 홈페이지 : www.서울아름다운건물찾기.kr
- 동영상의 경우 파일이 15MB이상일 시 유튜브를 통한 작품 업로드(작품접수시 유튜브 URL 기재)

1) 2019 서울건축문화제 주제: 열린공간_New Open Spaces

<접수 유의사항>

· 공공에게 개방된 건물이 아니더라도 무관함.
(단, 개인소유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 작품출품동의서 요망)
· 1인이 다수 작품 출품 시 건축물 당 각각 별도로 접수
· 응모하는 모든 작품의 초상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음원 등은 그 이용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어야 함.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사진 접수 불가(인쇄물, 각종 블로그 사진 등)
· 응모하는 모든 작품의 초상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음원 등은 그 이용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어야 함.

7. 부문별 제출항목

부 문	에세이	미디어	
		사진	동영상
공통사항	① 공모접수 ② 작품설명 요약(제목 포함) – 작품을 찍은 이유 등 200자 이상 ③ 작품 건축물 주소 및 명칭 – 국문, 영문		
부 문 별 제출서류	④ 에세이 – A4용지 2매 분량 (200자원고지 9매 이내) ⑤ 작품이미지 – 현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 2장 (전체 배경과 건축이 함께 나온 사진)	⑤ 사진 3컷 이상 – 건축물(공간)과 함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내 · 외부 사진 – 전체 배경과 건축이 함께 나온 사진 ※ 과거(흑백)사진 무관	④ 영상 – 3분 이내(15MB) ⑤ 작품이미지 – 현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 (영상 캡처본 X) – 전체 배경과 건축이 함께 나온 사진
출품형식	한글 또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1Mb 이상으로 촬영한 JPEG파일, 스마트 폰 카메라 사용 무관, 포토스토리형식 권장	확장자 wmv, avi, mp4 720*480 pixel 다큐, 영화, 광고, 패러디, 애니메이션, VR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

8.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 심층심사, 시민투표(인터넷 및 현장투표)
- 심사요소 : 주제 적합성, 창의성, 예술성, 활용도
- 결과발표 : 2019. 8월 중(시민투표결과는 추후 별도공지)

9. 시상자 특전

- 서울특별시장상, 전시회/시상파티 개최, 수상작품집 제작·증정
- 시 상 식 : 2019.9.6.(금) 예정
- 수상작 전시 : 2018.9.6.(금) ~ 9.22.(일)

※ 제11회 서울건축문화제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0. 유의사항

1) 본 공모전은 '서울의 건축'과 함께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모하여 건축에 대한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이 찾은 서울의 얼굴이 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9 서울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건축 스토리텔링 아카이빙을 위하여 작품을 전시 및 홍보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 시 작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공모작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동일인이 여러 작품 출품이 가능하며, 다수의 출품작이 선정될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2작품 이내로 한정하여 시상합니다.
5) 동일 건축물에 대하여 다수인이 접수할 경우 공모사유(에세이), 출품사진을 심사하여 2인 이내로 한정하여 시상합니다.
6) 출품규격과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응모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출품작 사진은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제는 선정된 후라도 출품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8) 선정된 후라도 공모취지와 요강에 반하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출품작은 전시회, 작품집 등 공모전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 출품사진의 화질 문제 발생 시 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1) 공모전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12) 시상은 출품 수 또는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접수 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공모전 관련 일정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516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주관 부서
동의안 (3건)	1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노동정책담당관
	2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노동정책담당관
	3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도시철도계획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51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호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12번길 87, *동 ***호(청학동)	일시: 2019-03-07 16:15 장소: 강서구 발산동 내용: 제한 축하중 1.65톤 초과	처분일: 2019. 4.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9. 6. 30.
송석두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19번길 **, ***호(선화동)	일시: 2019-03-18 05:57 장소: 가양대교북단 사거리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19. 4.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9. 6. 30.
정지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동 ***호(만수동, 삼환아파트)	일시: 2019-03-23 15:19 장소: 고강사거리 내용: 제한 축하중 1.4톤 초과	처분일: 2019. 4.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9. 6. 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태홍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63번길 **, *동 ***호(석남동)	일시: 2019-01-15 13:57 장소: 목동교동측IC 내용: 제한 총중량 4.85톤 초과, 2회	처분일: 2019. 2. 25. 과태료: 70만 원 납기일: 2019. 4. 30.
이용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26길 *, ***호(독산동)	일시: 2019-01-22 06:56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제한 축하중 1.7톤 초과	처분일: 2019. 2.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9. 4. 30.
명경식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386-1, *동 ***호(가정동)	일시: 2019-01-25 07:13 장소: 개화육갑문 내용: 제한 축하중 1.5톤 초과	처분일: 2019. 2.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9. 4. 30.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19. 6.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3%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522호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명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 · 공고

2. 공고기간 : 2019. 5.30. ~ 7.28.(60일간)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가.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1) 종 류 : 생활폐기물

2) 발 생 량 : 3,037톤/일 (2017년 기준)

나.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다.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와 규모 : 소각시설 500톤/일

※ 상기 사항은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변동될 수 있음

4.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가. 입지선정 기준

1) 해당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공개모집)
2) 부지면적 17,000㎡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
3) 주거지와 격리정도를 고려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4)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한 지역
5)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
6) 토지이용계획(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7) 소각열 활용이 용이한 시설이 인접한 지역
8) 공개모집 신청이 없을 경우 서울시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지역 검토

나. 입지선정 방법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

5.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가. 기간 : 2019. 5.30. ~ 7.28.(60일간)

나.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다. 응모자격 :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과반수의 주민동의를 얻은 개인, 단체, 문중대표 등

※ 단, 신청지역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라. 후보지 조건

1) 부지면적 17,000㎡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
2)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은 제외)

마. 신청서류

1)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 응모신청서
2) 신청지역 주민동의서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

※ 신청서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 접수기한 : 2019. 7. 29.(월) 15:00까지 방문 접수한 건에 한함

6.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각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설공사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지원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함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이외의 자치구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의 100분의 10 가산금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함

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2조 별표 1.에 따라 주민 난방비 지원

※ 별표 1.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에 따라 지역 난방비 차등지원

자원회수시설 가 동 률	65%초과	65%~50% 초과	50%이하	0%
지 원 금 출연요율	70%	60%	50%	0%

라. 입지주민 및 자치구 특별지원(정책결정)

1)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자치구 외의 자치구의 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24,000원 내·외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영향권 지역내 주민에게 특별출연금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의 10% 입지 자치구 발전기금 지원

7.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당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자원순환과(☎ 02-2133-3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 응모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인
(대표자)</td><td>성 명
(단체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7">응모지</td><td colspan="2">위 치</td><td>지 번</td><td>지 목</td><td>면 적
(㎡)</td><td colspan="2">토지 소유자
주 소 / 성 명</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주민동의</td><td colspan="2">동</td><td>세대수</td><td>동의세대수</td><td>동의율(%)</td><td colspan="2">비 고</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응모사유</td><td colspan="7"></td></tr>
</table>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후보지를 신청합니다.

붙 임 입지 응모 주민동의서

2019. . .

신청인(대표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 응모 주민동의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원에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설치 신청을 동의하며, 최종 선정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음을 연대하여 서명(날인)합니다.

연번	성 명 (세대주)	주 소	생년월일	서명(인)

※ 필히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9-4호

2019년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 산 등 록 사 항 공 개 목 록

소속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최재성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737,598	0	0	737,598	
배우자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대지 367.00㎡ 중 21.64㎡ 건물 33.75㎡	80,000	0	0	80,000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대지 207.00㎡ 중 25.90㎡ 건물 45.55㎡	80,000	0	0	80,000	
배우자	다세대주택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건물 91.11㎡	100,000	0	0	100,000	
부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대지 132.00㎡ 건물 59.07㎡	319,000	0	0	319,000	
모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대지 165.00㎡ 건물 33.06㎡	158,598	0	0	158,598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12,390	0	0	12,390	
본인	자동차	2010년식 sm5 배기량(1,998cc)	5,770	-	-	5,770	
본인	자동차	2013년식 레이 배기량(998cc)	6,620	-	-	6,620	

▶ 예금(소계)			**125,219**	**4,653**	**9,913**	**119,959**	
본인		(주)KB손해보험 1,656(56 증가), (주)KEB하나은행 2,009, 강북 4, 국민은행 5,987(1,883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2,340(100 증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8,752(255 증가), 중소기업은행 37	22,257	1,880	3,352	20,785	급여 및 보험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 국민은행 19,772(1,693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5,337(137 증가), 신한금융투자(주) 124(43 증가), 신한은행 35,879,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7,927, 우리은행 24	67,191	1,873	0	69,064	급여 및 보험
부		강북 2,348(500 증가), 농협중앙회 9,742(400 증가)	11,190	900	0	12,090	노령연금
모		(주)KEB하나은행 3, 농협중앙회 18,017(6,561 감소)	24,581	0	6,561	18,020	
▶ 유가증권(소계)			**2,291**	**66**	**0**	**2,357**	
배우자	상장주식	한미사이언스 29주	2,291	66	0	2,357	주식
▶ 채무(소계)			**80,000**	**0**	**0**	**8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진한빌라 임대보증금	80,000	0	0	80,000	
총 계			**797,498**	**4,719**	**9,913**	**792,304**	**증감액: -5,194천원 (가액변동: 66천원)**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9-75호

사고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사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종 로 구 청 장

1. 고시취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재대상)에 따라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방법에 따라 해제되기 전까지 지정·관리하고자 함.
2. 고시내용 : 사고지 조서

구 분	동 명	지 번	지목	면적(㎡)	비고(기재 내용)
불 법 임목훼손	구기동	232-1번지	전	7,748	사고지(불법 임목 훼손-세부사항공원녹지과 문의)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익을 위하여 종로구청 도시개발과(☎2148-2665)와 공원녹지과(☎2148-2873), 부동산정보과(☎2148-291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지 지형도면(1)

(종로구 구기동 232-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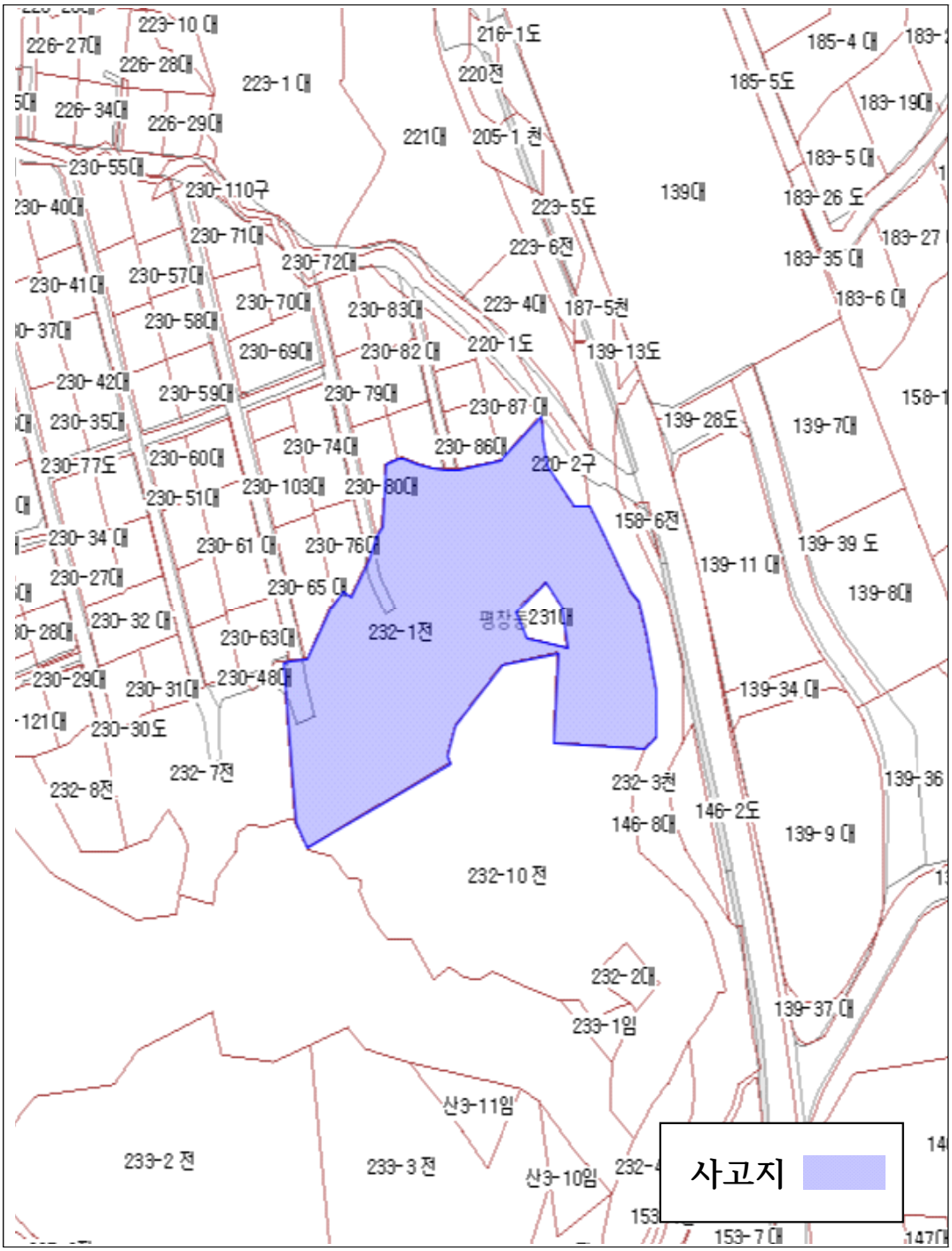

◈ 용산구고시 제2019-7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이촌소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구 도시계획법」 부칙(제2435호,1972.12.30.) 및 동법 시행령 부칙(1973.3.21.) 공원결정(의제)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8호(2006.3.23.)로 결정(변경) 되고, 용산구 고시-제56호(2019.5.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 이촌소공원에 대해
2.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9-440호(2019.5.9.)호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고시 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6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사업의 명칭 : 이촌소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면적) : 토지보상(1,736.9㎡)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바. 고시방법 : 서울시보에 게재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소유권 및 그외의 권리의 명세 : 별 첨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공원녹지과 ☏ 02-2199-76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	용산구 이촌동 301-60	공원	1,736.9	1,736.9	○○○○○ ○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빌딩 ***호				이촌 소공원

◈ 강북구고시 제2019-8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8-83호(2018.6.7.)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19-569호(2019.5.9.)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열람공고한 『강북구 수유동 294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공사』를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30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나. 사업 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비고
공영주차장 건설	강북구 수유동 294-29번지 일대	1,922㎡ (3층4단)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8-83호 (2018.6.7.)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3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주차관리과(☎901-5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건설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294-29	대	142.00	142.00	강북구 수유동 294-29	배정주					
2	294-30	대	159.00	159.00	관악구 청룡7길 55, 706호 (봉천동,선경아파트)	강정희		송파구 풍성로 40(풍납동)	풍납동새마을금고	공동담보 토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44,가동402호(산내마을)	문정목	공동담보 토지	
3	294-31	대	182.00	182.00	관악구 남부순환로260길 19, 202호(남현동)	이민재		광진구 뚝섬로 639(자양동)(신천지점)	중앙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4	294-32	대	162.00	162.00	강북구 인수봉로 76길 29-3 (수유동)	이정숙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우이동지점)	우리은행	공동담보 토지	
5	294-33	대	149.00	149.00	송파구 올림픽로 99, 162동 1002호(잠실동,잠실엘스)	김보라		광진구 뚝섬로 639(자양동) (신천지점)	중앙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6	294-34	대	132.00	132.00	중랑구 송림길 50-12(신내동)	노형진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4 (오전동)	의왕새마을금고	공동담보 토지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13 118동1202호(내손동,포일자이아파트)	위원식	공동담보 토지	
7	294-17	대	139.00	139.00	강북구 수유동 294-17	김영상					
8	294-16	대	116.00	116.00	강북구 인수봉로76길 29-8	변금선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의정부지점)	우리은행	공동담보 토지	
9	294-15	대	116.00	116.00	광진구 영화사로 9가길 64 용성아트빌 303호(중곡동)	한서영		광진구 뚝섬로 639(자양동) (신천지점)	중앙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0	294-14	대	116.00	116.00	송파구 송파대로32길 8, 6동 1305호(가락우성아파트)	김선옥		서초구 양재동 5-10 (교대역지점)	남서울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471번길 101-20	이준영	공동담보 토지	
11	294-13	대	106.00	106.00	성북구 보국문로29길 17, 302호(정릉동,푸른아파트)	강정현		광진구 뚝섬로 639(자양동) (신천지점)	중앙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강남구 영동대로 230,7동506호(대치동,우성아파트)	유만재	공동담보 토지	
12	555-15	대	122.00	122.00	광진구 뚝섬로 576, 203동 1108호(자양동,우성아파트)	송문주		광진구 뚝섬로 639(자양동) (신천지점)	중앙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13	555-39	대	99.00	99.00	강동구 강동대로51길 60, 202호(성내동)	양진호		서초구 양재동 5-10 (교대역지점)	남서울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14	555-40	대	46.00	46.00	강남구 광평로19길 10, 1007동 204호(수서동, 까치마을아파트)	송수연		광진구 뚝섬로 639(자양동) (신천지점)	중앙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15	294-35	도로	4.00	4.00	강북구 수유동 294-29	조영찬					
16	294-28	도로	10.00	10.00	강북구 수유동 294-29	조영찬					
17	294-18	잡종지	20.00	20.0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8번길 26-3,103동501호(삼익아파트)	원호태					
18	294-27	잡종지	13.00	13.00	강북구 인수봉로76길 29-9	김재운					
19	294-19	잡종지	10.00	10.00	강북구 인수봉로76길 29-8	변금선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의정부지점)	우리은행	공동담보 토지및건물 294-16	
20	294-26	잡종지	13.00	13.00	강북구 수유동 294-31	이정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21	294-20	잡종지	10.00	1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62번길 1-20, 103호(풍덕천동)	임광균					
22	294-25	잡종지	13.00	13.00	강북구 수유동 392-9 양지휴먼빌라 404	이정숙					
23	294-21	잡종지	10.00	10.00	송파구 송파대로32길 8, 6동 1305호(가락우성아파트)	김선옥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471번길 101-20	이준영	공동담보 토지	
24	294-24	잡종지	13.00	13.00	강북구 수유동 294-33	한홍석					
25	294-22	잡종지	13.00	13.00	강북구 수유동 294-13	정화국					
26	294-23	잡종지	7.00	7.00	중랑구 송림길 50-12(신내동)	노형진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4 (오전동)	의왕새마을금고	공동담보 토지및건물 (294-34)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13, 118동 1202호(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	위원식	공동담보 토지및건물 (294-34)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사업의 명칭 :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건설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연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294-29	주택	2층	연와조	140.23	강북구 수유동 294-29	배정주				
2	294-30	단독주택	지1+1층	연와조	118.04	관악구 청룡7길 55, 706호 (봉천동,선경아파트)	강정희	송파구 풍성로 40(풍납동)	풍납동 새마을금고	공동담보 토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44,가동402호(산내마을)	문정목	공동담보 토지	
3	294-31	주택	1층	연와조	80.46	관악구 남부순환로260길 19, 202호(남현동)	이민재	광진구 뚝섬로 639(자양동) (신천지점)	중앙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4	294-32	주택	1층	연와조	86.98	강북구 미아동 152 요진아파트 101-305	이정숙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우이동지점)	우리은행	공동담보 토지	
								중구 회현동1가 203 (우이동지점)	우리은행	공동담보 토지	
5	294-33	주택	1층	벽돌조	84.90	송파구 올림픽로 99, 162동 1002호(잠실동,잠실엘스)	김보라	광진구 뚝섬로 639(자양동) (신천지점)	중앙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6	294-34	주택	2층	벽돌조	72.83	중랑구 송림길 50-12(신내동)	노형진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13 118동1202호(내손동,포일자이아파트)	위원식	공동담보 토지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4 (오전동)	의왕 새마을금고	공동담보 토지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연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7	294-17	주택 및 근생	2층	벽돌조	131.31	강북구 수유동 294-17	김영상				
8	294-16	단독주택	1층	벽돌조	57.92	강북구 인수봉로76길 29-8	변금선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의정부지점)	우리은행	공동담보 토지	
9	294-15	단독주택	1층	연와조	56.34	광진구 자양로43길 52, 에이동402호(신한베스트빌)	한서영	광진구 뚝섬로 639(자양동) (신천지점)	중앙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10	294-14	주택	1층	연와조	57.09	송파구 송파대로32길 8, 6동 1305호(가락우성아파트)	김선옥	서초구 양재동 5-10 (교대역지점)	남서울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471번길 101-20	이준영	공동담보 토지	
11	294-13	단층주택	1층	벽돌조	51.14	성북구 보국문로29길 17, 302호(정릉동,푸른아파트)	강정현	광진구 뚝섬로 639(자양동) (신천지점)	중앙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강남구 영동대로 230,7동 506호(대치동,우성아파트)	유만재	공동담보 토지	
12	555-15	개별주택	1층	벽돌조	54.15	광진구 뚝섬로 576, 203동 1108호(자양동,우성아파트)	송문주	광진구 뚝섬로 639(자양동) (신천지점)	중앙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13	555-39	주택	1층	연와조	49.42	강동구 강동대로51길 60, 202호(성내동)	양진호	서초구 양재동 5-10 (교대역지점)	남서울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14	555-40	주택	1층	벽돌조	41.11	강남구 광평로19길 10, 1007동 204호(수서동, 까치마을아파트)	송수연	광진구 뚝섬로 639(자양동) (신천지점)	중앙농업 협동조합	공동담보 토지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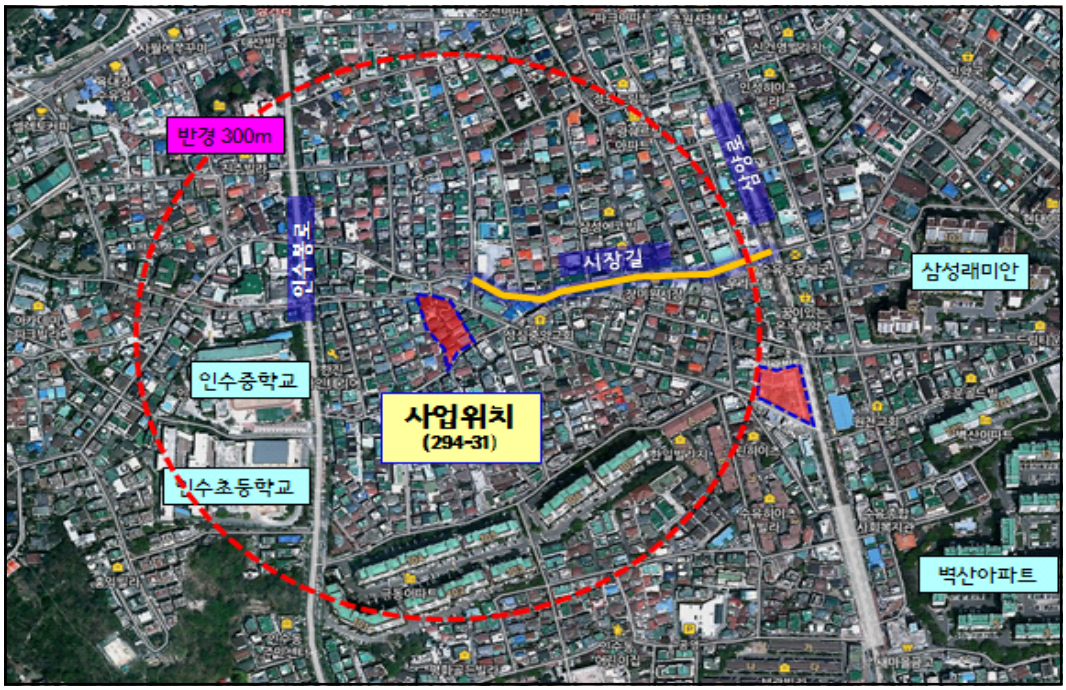

◈ 도봉구고시 제2019-77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8-219호(2018. 7.1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62호(2018. 5.17.)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도봉구 창동 산159-1번지 일대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02-2091-37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59-1 일대

나.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초안산근린공원 조성

라. 사업의 규모 및 내용(변경)

- 면 적 ┌ 기정 23,825㎡
  └ 변경 21,556㎡ (감2,269㎡)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마. 사업기간(변경 없음) : 실시계획 변경고시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 따로 붙임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각 1부. 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변경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기정			23,825	23,825							
	변경			21,556	21,556							
1	변동 없음	창동 산156-5	임야	2,051	2,051	서울 특별시						
2	변동 없음	창동 산159-6	과수원	5,389	5,389	서울 특별시						
3	변동 없음	창동 산159-1	과수원	4,465	4,465	주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	154/1001	김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00, ***동 ***호 (목동********)	지분가압류 근저당권가처분	
									노원 세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9길14 (재산법인세과-694)	압류	
									강남 세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5 (숨긴재산추적과-9113)	압류	
									서울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징수과-7535)	압류	
									조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15, ***동 ****호(옥수동, *** 옥수******)	근저당권 설정	
						서울 특별시		847/1001				
4	변동 없음	창동 산159-5	과수원	389	389	주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	154/1001	김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00, ***동 ***호 (목동********)	지분가압류 근저당권가처분	
									노원 세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9길14 (재산법인세과-694)	압류	
									강남 세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5 (숨긴재산추적과-9113)	압류	
									서울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징수과-7535)	압류	
									조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15, ***동 ****호(옥수동, *** 옥수******)	근저당권 설정	
						서울 특별시		847/1001				

서울시보 제3522호 | 서울특별시 | 2019. 5. 30.(목)

연번	변경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변동 없음	창동 산160-3	임야	198	198	서울특별시						
6	변동 없음	창동 산193-4	임야	2,631	2,631	서울특별시						
7	변동 없음	창동 산193-5	임야	3,777	3,777	서울특별시						
8	기정	창동 산193-1	임야	4,925	4,925	이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5길 13-10, ***동 ****호 (서초동,********)					
	변경	창동 산193-6	임야	2,656	2,656	이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5길 13-10, ***동 ****호 (서초동,********)					

서울시보 제3522호 서울특별시 2019. 5. 30.(목)

◈ 노원구고시 제2019-62호

도시계획시설(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9-3호(2019.01.10)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노원구공고 제2019-291호(2019.03.21) 및 노원구공고 제2017-292호(2019.03.21)로 도시계획시설(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회신을 받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35-12 외 1필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35-12, 1035-14
2. 사업시행자
   ○ 성　명 :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437(상계동 701-1)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 사업의 명칭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4. 사업의 내용
   ○ 면　　적 : 184㎡
   ○ 사업규모 : 공공청사 조성 54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7.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노원구보 게재
8.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과(☎02-2116-06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실제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	노원구 상계동 1035-12	전	165	165		홍범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3길 22	1/2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유자 변경
						홍범준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1/2				〃
3	노원구 상계동 1035-14	전	19	19		신동혁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5-14	1/2				
						신동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5-14	1/2				

물 건 조 서

사업명 :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노원구 상계동 1035-12	휀스	철판 (0.5×2.4m)	21개		이만복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63-5 준희자원				
2	노원구 상계동 1035-12	휀스	철판 (0.8×1.5m)	7개							
3	노원구 상계동 1035-12	휀스	그물망 쇠파이프(5m) 쇠파이프(7m)	5개		유재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63-5 한덕자원				
		휀스	철판(2.5×4.8m)	4개							
4	노원구 상계동 1035-14	휀스	그물망 쇠파이프(5m) 쇠파이프(7m) 철판(2.5×4.8m)	1개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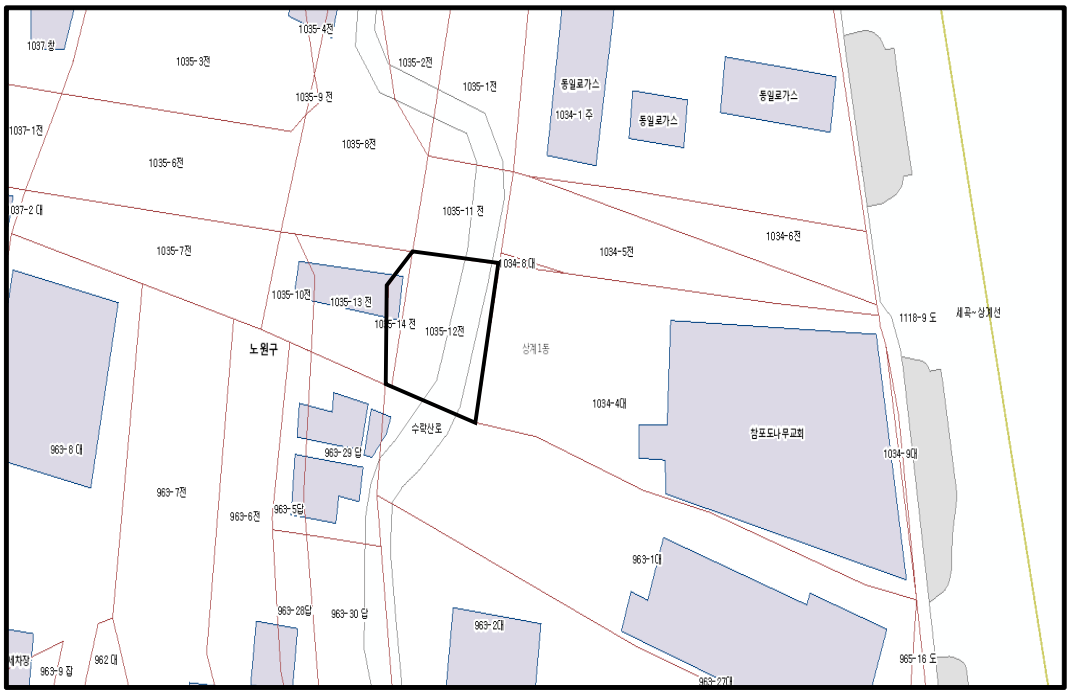
1037-창
1035-3전
1035-4전
1035-2전
1035-1전
1035-9 전
1037-1전
1035-8전
1035-6전
037-2 대
1035-11 전
1035-7전
1035-10전
1035-13 전
1035-14 전
1035-12전
노원구
상계1동
1034-8대
1034-5전
1034-6전
1118-9 도
세곡~상계선
1034-4대
963-8 대
963-29 답
수락산로
963-7전
963-6전
963-5답
1034-9대
963-1대
963-28답
963-30 답
963-2대
962 대
963-9 잡
965-16 도
963-27대
동일로가스
1034-1 주

■ 현장사진

성악주

◈ 은평구고시 제2019-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9-39호(2019. 3. 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은평구 공고 제2019-659호(2019. 5. 2.)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열람공고한 「신사동 347-3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은평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 위치 : 은평구 신사동 347-3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신사동 347-3 도로개설

다. 사업시행 규모 : 도로(B=10m, L=20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 조서 등 :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로과(본관 5층)(☎351-7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치 도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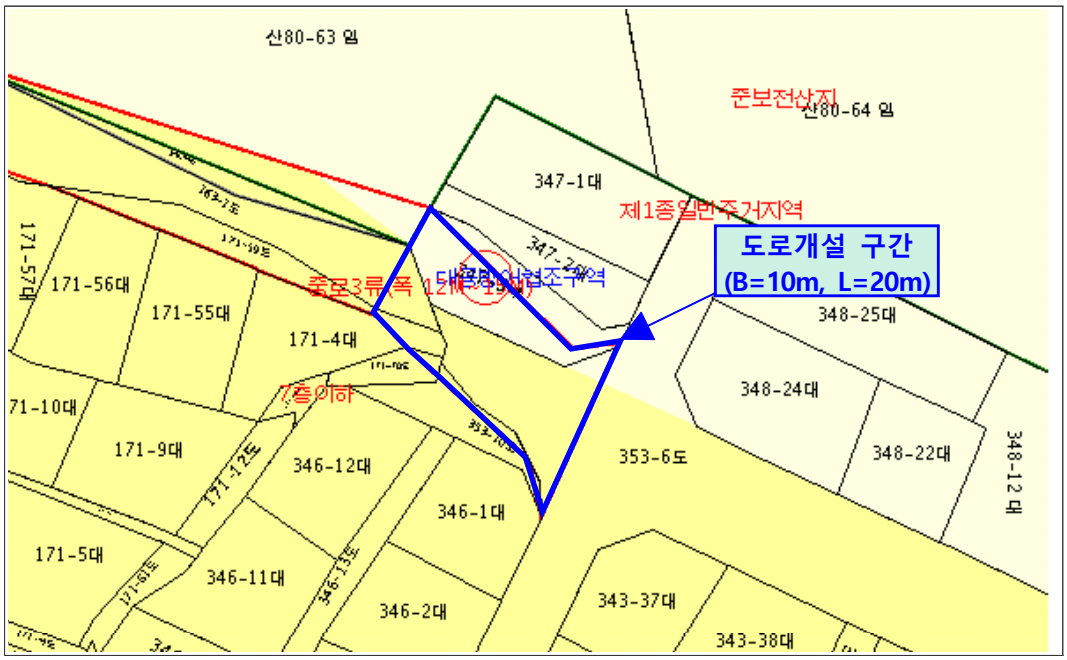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신사동 347-3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신사동	163-1	도로	1,210	20	서울특별시						
2	신사동	171-59	도로	79	11	설영완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47-6					
3	신사동	171-70	도로	13	2	설영완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47-6					
4	신사동	347-3	대	117.8	77.4	기획재정부		1/3				
						이병옥	충남 당진시 합덕읍 버그내1길 104	1/3				
						이병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401동 1701호(여의도동,여의도자이)	1/3				
5	신사동	353-6	도로	3,518.6	116	서울특별시						
6	신사동	353-10	도로	52.3	8	은평구						

서울시보 제3522호 서울특별시 2019. 5. 30.(목)

◈ 강서구고시 제2019-65호

도시계획시설(염창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건설부고시 제112호(1990.5. 1.)로 최초 조성계획결정, 강서구고시 제1999-34호(1999.8.25.)로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염창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19-629호(2019.4.25.)로 열람공고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사업의 명칭 : 염창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5-17번지 외 2필지

다. 사업의 규모 : 토지보상 274㎡, 물건(건물)보상 67.1㎡, 영업권보상 1식

라. 사업의 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물건, 영업권 보상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사.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12.3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영업권조서 : 별도첨부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255, 주무관 남준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염창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필지		274	274							
1	강서구 염창동 5-17	대지	274	274	2/4	김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1길 90(연창동)	강서농협협동조합 (114936.0000274)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27(방화동)(등촌시장지점)	근저당권	
					1/4	오지한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82(청라동)				
					1/4	오경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5, 407동 1001호				

서울시보 제3522호
서울특별시
2019. 5. 30.(목)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염창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강서구 염창동 5-17 외 2필지	건물	블럭조	37.34	2/4	김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1길 90(염창동)	강서농협협동조합 (114936.0000274)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27(방화동)(등촌시장지점)	근저당권	1호
					1/4	오지한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82(청라동)				
					1/4	오경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5, 407동 1001호				
2	강서구 염창동 5-17 외 2필지	건물	세멘트 브럭조	29.76	2/4	김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1길 90(염창동)	강서농협협동조합 (114936.0000274)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27(방화동)(등촌시장지점)	근저당권	2호
					1/4	오지한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82(청라동)				
					1/4	오경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5, 407동 1001호				

수용 또는 사용할 영업권조서

□ 사업명 : 염창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일련번호	소재지	상호명	업종	소유자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강서구 염창동 5-17	유림	음식및숙박업 (한식점업)	김선자 외 2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1길 90(염창동)	

◈ 구로구고시 제2019-10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개봉동 산59-5외 2필지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구 로 구 청 장

1. 결정취지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 개봉동 유아숲 체험장 인근의 방치된 부지를 활용하여 유아들의 체험학습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결정함.

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개봉동 산59-5번지 외 2필지	-	증)756	756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공공공지	• 공공공지 : 756㎡	• 유아숲 체험장 인근의 방치된 부지를 활용하여 유아들의 체험학습 및 인근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

3. 지형도면의 작성

-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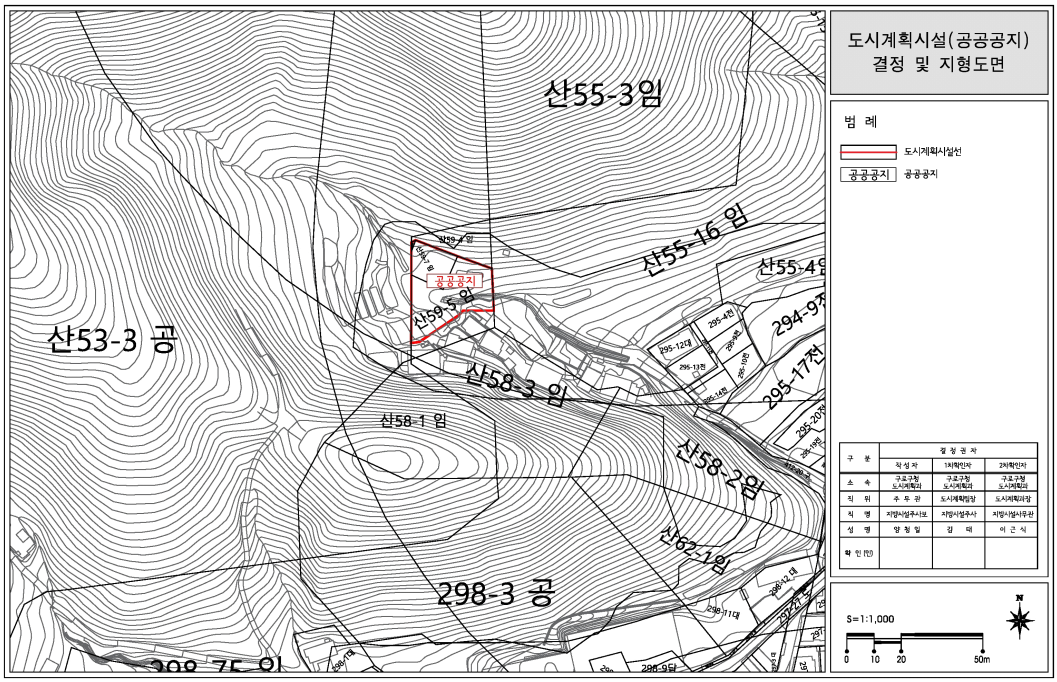

◈ 구로구고시 제2019-1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8호(2016.12.30.)로 결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75호(2018.09.27.)호 변경 결정된 우리 구 개봉동 222번지일대 서울개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로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30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명칭 :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대로	3	87	25~28	보조간선도로	1,250 (71)	대로1-45	개봉동 403-31	일반도로	건고503 (69.08.27)	하수도와 일부 중복결정(50.2㎡)
-	중로	1	1	20	집산도로	20	대로1-45	개봉동 416-170	일반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998 (16.12.30)	하수도와 일부 중복결정(280.4㎡)
-	중로	2	1	15	국지도로	71	개봉동 416-285	대로3-87	일반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998 (16.12.30)	하수도와 일부 중복결정(1,085.2㎡)
-	소로	3	1	6~10	국지도로	230 (169)	개봉동 산21-8	대로1-45	일반도로	서고254 (86.04.24)	폭원변경 하수도와 일부 중복결정(5㎡)

※ ( )는 전체노선 중 구역 내 연장임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케이지엠씨개발 대 표 김 영 만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2, 젠빌딩 4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07.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명칭	종류	주소	성명	
1	구로구 개봉동	144-13	도	25.0	25.0	-	서울특별시	-	-	-	
2	구로구 개봉동	144-14	대	8.0	8.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04(개봉동)	㈜현대엠앤케이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주식회사 부산은행	
								근저당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주식회사 경남은행	
3	구로구 개봉동	210-1	장	9,050.0	6.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4	구로구 개봉동	222	장	10,700.0	6.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5	구로구 개봉동	224	대	2,613.0	208.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6	구로구 개봉동	353-19	장	850.2	208.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7	구로구 개봉동	353-24	장	1,770.8	9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8	구로구 개봉동	353-46	장	160.4	137.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9	구로구 개봉동	353-49	구	212.2	212.2	-	구로구	-	-	-	
10	구로구 개봉동	416-172	장	308.0	34.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1	구로구 개봉동	416-173	장	374.0	32.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2	구로구 개봉동	416-182	대	28.0	1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3	구로구 개봉동	416-231	도	2.0	2.0	-	국(기획재정부)	-	-	-	
14	구로구 개봉동	416-307	구	4,561.0	1,031.7	-	국(국토교통부)	-	-	-	
15	구로구 개봉동	429-4	장	15.0	15.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6	구로구 개봉동	429-5	장	1,250.0	96.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7	구로구 개봉동	429-13	대	4.0	4.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8	구로구 개봉동	산21-14	임	11.0	11.0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산 22-1	기독교 한국하나님의교회	-	-	-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도 로	2	27	

○ 대체시설 총괄

구 분	면적(㎡)	비 고
도 로	2,136.2	- 4개 노선(일반도로(대로, 중로, 소로) - 기존 확장 및 진입도로 신설

2)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 : 구로구청장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고시 제2019-10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8호(2016.12.30.)로 결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75호(2018.09.27.)호 변경 결정된 우리 구 개봉동 222번지일대 서울개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가로공원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가로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30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개봉동 416-28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가로공원) 사업

2) 명칭 :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가로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1) 면　　적 : 3,684.6㎡

2) 조성계획(안)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최　초	최　종	
가로공원	구로구 개봉동 416-285번지 일대	-	3,684.6	2016.12.30	2018.09.27	하수도와 일부중복결정 (3,394.2㎡)

3) 주요 시설내용

○ 기반시설 : 광장 1,392㎡, 도로 513㎡

○ 휴양시설 : 쉼터 104㎡

○ 운동시설 : 체력단련장 136㎡

○ 관리시설 : 점검구 1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케이지엠씨개발 대 표 김 영 만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2, 젠빌딩 4층

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2019.12.31일까지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고시 제2019-1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8호(2016.12.30)호로 서울개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75호(2018.09.27)호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된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동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구 로 구 청 장

1. 사업명칭 : 개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신축공사 RD1

2. 사업주체

가. 상호 및 성명 : ㈜케이지엠씨개발 대표 김영만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2 젠빌딩 4층

3. 사업위치 면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적 및 규모

가.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대

나. 용 도 : 공동주택(민간임대 아파트 1,0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다.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 21.49%, 용적률 362.78%

라. 주택의 규모 : 7개동, 지하2층/지상35층, 연면적 156,965.3528㎡

4. 사업기간 : 2017. 06 ~ 2020. 07

5.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처리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1)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명칭 :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대로	3	87	25~28	보조간선도로	1,250 (71)	대로1-45	개봉동 403-31	일반도로	건고503 (69.08.27)	하수도와 일부 중복결정(50.2㎡)
-	중로	1	1	20	집산도로	20	대로1-45	개봉동 416-170	일반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998 (16.12.30)	하수도와 일부 중복결정(280.4㎡)
-	중로	2	1	15	국지도로	71	개봉동 416-285	대로3-87	일반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998 (16.12.30)	하수도와 일부 중복결정(1,085.2㎡)
-	소로	3	1	6~10	국지도로	230 (169)	개봉동 산21-8	대로1-45	일반도로	서고254 (86.04.24)	폭원변경 하수도와 일부 중복결정(5㎡)

※ ( )는 전체노선 중 구역 내 연장임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케이지엠씨개발 대 표 김 영 만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2, 젠빌딩 4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07.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명칭	종류	주소	성명	
1	구로구 개봉동	144-13	도	25.0	25.0	-	서울특별시	-	-	-	
2	구로구 개봉동	144-14	대	8.0	8.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04(개봉동)	㈜현대엠앤케이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주식회사 부산은행	
								근저당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주식회사 경남은행	
3	구로구 개봉동	210-1	장	9,050.0	6.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4	구로구 개봉동	222	장	10,700.0	6.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5	구로구 개봉동	224	대	2,613.0	208.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6	구로구 개봉동	353-19	장	850.2	208.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7	구로구 개봉동	353-24	장	1,770.8	9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8	구로구 개봉동	353-46	장	160.4	137.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9	구로구 개봉동	353-49	구	212.2	212.2	-	구로구	-	-	-	
10	구로구 개봉동	416-172	장	308.0	34.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1	구로구 개봉동	416-173	장	374.0	32.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2	구로구 개봉동	416-182	대	28.0	1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명칭	종류	주소	성명	
13	구로구 개봉동	416-231	도	2.0	2.0	-	국(기획재정부)	-	-	-	
14	구로구 개봉동	416-307	구	4,561.0	1,031.7	-	국(국토교통부)	-	-	-	
15	구로구 개봉동	429-4	장	15.0	15.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6	구로구 개봉동	429-5	장	1,250.0	96.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7	구로구 개봉동	429-13	대	4.0	4.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8	구로구 개봉동	산21-14	임	11.0	11.0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산 22-1	기독교 한국하나님의교회	-	-	-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도 로	2	27	

○ 대체시설 총괄

구 분	면적(㎡)	비 고
도 로	2,136.2	- 4개 노선(일반도로(대로, 중로, 소로) - 기존 확장 및 진입도로 신설

(2)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 : 구로구청장

2) 도시계획시설(가로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가)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개봉동 416-28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가로공원) 사업

(2) 명칭 :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가로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1) 면　　적 : 3,684.6㎡

(2) 조성계획(안)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최　초	최　종	
가로공원	구로구 개봉동 416-285번지 일대	-	3,684.6	2016.12.30	2018.09.27	하수도와 일부중복결정 (3,394.2㎡)

(3) 주요 시설내용

○ 기반시설 : 광장 1,392㎡, 도로 513㎡

○ 휴양시설 : 쉼터 104㎡

○ 운동시설 : 체력단련장 136㎡

○ 관리시설 : 점검구 1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케이지엠씨개발 대 표 김 영 만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2, 젠빌딩 4층

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2019.12.31일까지

6.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구로구고시 제2019-10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8호(2016.12.30)호로 서울개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75호(2018.09.27)호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된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동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구 로 구 청 장

1. 사업명칭 : 개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신축공사 RD2
2. 사업주체

가. 상호 및 성명 : ㈜케이지엠씨개발 대표 김영만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2 젠빌딩 4층

3. 사업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168-2번지 일대

나. 용　도 : 공동주택(민간임대 아파트 4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다.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 25.4%, 용적률 179.88%

라. 주택의 규모 : 1개동, 지하2층/지상13층, 연면적 6,791.2706㎡

4. 사업기간 : 2017. 06 ~ 2020. 07

5.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처리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1)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명칭 :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대로	3	87	25~28	보조간선도로	1,250 (71)	대로1-45	개봉동 403-31	일반도로	건고503 (69.08.27)	하수도와 일부 중복결정(50.2㎡)
-	중로	1	1	20	집산도로	20	대로1-45	개봉동 416-170	일반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998 (16.12.30)	하수도와 일부 중복결정(280.4㎡)
-	중로	2	1	15	국지도로	71	개봉동 416-285	대로3-87	일반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998 (16.12.30)	하수도와 일부 중복결정(1,085.2㎡)
-	소로	3	1	6~10	국지도로	230 (169)	개봉동 산21-8	대로1-45	일반도로	서고254 (86.04.24)	폭원변경 하수도와 일부 중복결정(5㎡)

※ (　)는 전체노선 중 구역 내 연장임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케이지엠씨개발 대 표 김 영 만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2, 젠빌딩 4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07.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명칭	종류	주소	성명	
1	구로구 개봉동	144-13	도	25.0	25.0	-	서울특별시	-	-	-	
2	구로구 개봉동	144-14	대	8.0	8.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04(개봉동)	㈜현대엠앤케이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주식회사 부산은행	
								근저당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주식회사 경남은행	
3	구로구 개봉동	210-1	장	9,050.0	6.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4	구로구 개봉동	222	장	10,700.0	6.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5	구로구 개봉동	224	대	2,613.0	208.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6	구로구 개봉동	353-19	장	850.2	208.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7	구로구 개봉동	353-24	장	1,770.8	9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8	구로구 개봉동	353-46	장	160.4	137.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9	구로구 개봉동	353-49	구	212.2	212.2	-	구로구	-	-	-	
10	구로구 개봉동	416-172	장	308.0	34.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1	구로구 개봉동	416-173	장	374.0	32.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2	구로구 개봉동	416-182	대	28.0	1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3	구로구 개봉동	416-231	도	2.0	2.0	-	국(기획재정부)	-	-	-	
14	구로구 개봉동	416-307	구	4,561.0	1,031.7	-	국(국토교통부)	-	-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명칭	종류	주소	성명	
15	구로구 개봉동	429-4	장	15.0	15.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6	구로구 개봉동	429-5	장	1,250.0	96.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7	구로구 개봉동	429-13	대	4.0	4.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	-	
18	구로구 개봉동	산21-14	임	11.0	11.0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산 22-1	기독교 한국하나님의교회	-	-	-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도 로	2	27	

○ 대체시설 총괄

구 분	면적(㎡)	비 고
도 로	2,136.2	- 4개 노선(일반도로(대로, 중로, 소로) - 기존 확장 및 진입도로 신설

(2)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 : 구로구청장

2) 도시계획시설(가로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가)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개봉동 416-28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가로공원) 사업

(2) 명칭 :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가로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1) 면　　적 : 3,684.6㎡

(2) 조성계획(안)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최　초	최　종	
가로공원	구로구 개봉동 416-285번지 일대	-	3,684.6	2016.12.30	2018.09.27	하수도와 일부중복결정 (3,394.2㎡)

(3) 주요 시설내용

○ 기반시설 : 광장 1,392㎡, 도로 513㎡

○ 휴양시설 : 쉼터 104㎡

○ 운동시설 : 체력단련장 136㎡

○ 관리시설 : 점검구 1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케이지엠씨개발 대 표 김 영 만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2, 젠빌딩 4층

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2019.12.31일까지

6.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동작구고시 제2019-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6-29호(2016. 3.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6-73호(2016. 9.29.), 제2018-64호(2018.8.23.), 제2018-79호(2018.10.04.), 제2019-14호(2019.02.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개설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노량진동42-18 ~ 16-3간 도로(입체결정 포함)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노량진 철도횡단지하보도 개설공사
  (노량진 드림스퀘어복합빌딩 신축관련 지하횡단보도 개설공사)

다. 규모(변경없음)

- 도로(지하보도)개설 : 폭 6m ~ 9m, 길이 75m
- 도로(입체결정) : 폭 6m ~ 9m, 길이 30m

라. 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구 분	법인소재지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사업시행자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2길 9-3 외 10필지(노량진동)	드림스퀘어 (김현숙 외 106명)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기정) 2017. 3. 1. ~ 2019. 5.31.(27개월)
- (변경) 2017. 3. 1. ~ 2019. 6.30.(28개월)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청(동작구청)에 기부채납
- 건물 내 입체결정 부분은 건축물 준공 전까지 저촉 토지부분에 대해 구분 지상권 설정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596) 또는 드림스퀘어(☎02-792-0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19-42호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0호(2012.1.12.)로 정비구역지정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114호(2014.11.27.)로 사업시행인가고시, 동작구고시 제2018-97호(2018.11.22.)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나. 면　적 : 20,66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병례)
   나.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9. 5. 23.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구역면적 : 20,667.70㎡ (대지면적 16,275.2㎡)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4,418.1㎡, 55,637.0㎡
      ○ 건폐율 및 용적률 : 27.15%, 234.07%
      ○ 규모 : 7개동(지하2/지상15) 3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상가면적(㎡)
	계	59.96 (59A)	59.91 (59B)	74.95 (74)	75.95 (75-1)	75.95 (75-2)	84.95 (84A)	84.97 (84B-1)	84.97 (84B-2)	84.97 (84C)	
계	366	45	43	14	11	12	84	48	60	49	571.65
조합원	177	45	13	14	7	8	21	19	1	49	100.61
보류시설	9		4				3	1	1		
일반분양	180		26		4	4	60	28	58		471.04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1) 신 설

종　류	규 모(㎡)	비　고
도 로	1,621.7	무상귀속
공 원	2,200.8	무상귀속
공공공지	103	무상귀속
합 계	3,925.5	

2) 용도폐지

종 류	규 모(㎡)	비 고
도 로	1,030.7	385.5㎡ 무상양여
하 천	288	25㎡ 무상양여
구 거	246	246㎡ 무상양여
공 원	525	63㎡ 무상양여
합 계	2,089.7	719.5㎡ 무상양여

라. 기존건축물 철거예정 시기 : 2017. 12월 철거완료. 끝.

◈ 동작구고시 제2019-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7-78호(2017.09.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동작구 상도동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중(보)로3-35호선 외 1개 노선) 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1) 중(보)로 3-35호선 - 동작구 상도동 159-1번지 일원
2) 소(국)로 2-79호선 - 동작구 상도동 159-39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동작구 상도동 도시계획도로(중(보)로3-35호선 외 1개노선) 개설공사

라. 사업시행지의 규모 (변경없음)

시설명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도 로	중로	3	35	12~35	보조 간선도로	710 (85)	상도동 210-455	상도동 32-11	
	소로	2	79	8	국지도로	71	상도동 159-392	상도동 159-441	

※( )구역 내 연장임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기존 : 상도역지역주택조합(조합장 조사인), 태려건설산업주식회사(대표 김동석), 롯데건설주식회사(대표 하석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36길4(상도동)]

○ 변경 : 상도역지역주택조합(조합장 조사인), 태려건설산업 주식회사(대표 김동석)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36길12(상도동)]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존 :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20. 04. 30

○ 변경 :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21. 01. 31

사.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변경없음)

○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도로	비고
1	상도동	157-67	대	451	42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2	상도동	158-1	대	100	42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3	상도동	158-10	대	241	47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4	상도동	158-11	도	163	12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5	상도동	158-12	대	99	45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6	상도동	158-24	대	73	33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7	상도동	158-25	도	159	6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8	상도동	159-1	대	976	429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소(국)2-79	
9	상도동	159-5	대	2,594	509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10	상도동	159-8	도	96	96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11	상도동	159-123	대	116	18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소(국)2-79	
12	상도동	159-156	대	109	5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소(국)2-79	
13	상도동	159-250	대	9,366	429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도로	비고
14	상도동	159-258	도	241	146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소(국)2-79	
15	상도동	159-355	대	61	20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소(국)2-79	
16	상도동	159-357	대	51	30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소(국)2-79	
17	상도동	159-358	대	239	38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소(국)2-79	
18	상도동	159-441	대	145	130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19	상도동	159-487	대	19	19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20	상도동	204-177	대	22	22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21	상도동	204-178	대	155	117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22	상도동	211-449	대	169	141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23	상도동	211-450	대	78	45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24	상도동	211-474	대	120	1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25	상도동	211-482	대	178	117	태려건설산업(주)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7,10층 (여의도동, 한주빌딩)	중(보)3-35	
계				16,021	**2,539**				

○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해당사항 없음. 끝.

◈ 서초구고시 제2019-101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설부고시 제108호(1975.6.23.)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반포동 19-4번지 일원에 대하여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공고 시행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초 구 청 장

가. 인가신청의 요지 :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및 대수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환경개선공사

○ 명칭 : 서울고속버스터미날(주) 대수선 및 용도변경

2) 사업대상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외 2필지

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터미널 이용승객을 위한 시설재배치 및 편의시설 설치

○ 사업내용 : ①주출입구 환경개선, ②화장실 환경개선
③통합매표소 설치, ④실내동선 환경개선

○ 전체면적 및 규모(변경사항 없음)

구분	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건축면적	23,124.01㎡	23,124.01㎡	-	
연면적	110.834.00㎡	110.834.00㎡	-	
용적률산정 연면적	90,805.83㎡	90,805.83㎡	-	
건폐율	26.54%	26.54%	-	
용적률	104.24㎡%	104.24%	-	

○ 용도변경

구분	시설용도		당초	변경 신청	최종 보완	증감(㎡)	시설내비율 (%)	
			면적 (㎡)	면적 (㎡)	면적(㎡)		변경 전	변경후
도시계획시설	주시설	대합실	7,008.10	6,158.77	6,484.53	- 523.57	75.57	73.33
		승강장	1,864.50	1,217.67	1,152.14	- 712.36		
		업무시설	8,916.44	8,916.44	8,916.44	-		
		세차장	912.00	912.00	912.00	-		
		박차장	31,520.13	31,520.13	31,520.13	-		
		발코니	1,085.44	1,085.44	1,085.44	-		
		전체공유	2,479.49	2,240.65	2,267.46	- 212.03		
		소 계	53,786.10	52,051.10	52,338.14	-1,447.96		
	부대시설	정비고	2,832.00	2,832.00	2,832.00	-	17.06	16.91
		업무시설	1,082.56	975.65	975.65	- 106.91		
		주유소	600.30	600.30	600.30	-		
		기계실	6,396.58	6,396.58	6,396.58	-		
		폐수처리장	666.12	666.12	666.12	-		
		전체공유	567.17	602.77	602.22	35.05		
		소 계	12,144.73	12,073.42	12,072.87	- 71.86		

	편익시설	업무시설	1,726.15	1,726.15	1,726.15	-	7.37	9.76
		근린생활시설	1,199.50	2,933.77	2,690.10	1,490.60		
		판매시설	1,422.88	1,410.59	1,410.58	- 12.30		
		복도, 홀	534.98	521.52	521.52	- 13.46		
		전체공유	361.06	659.49	618.39	257.33		
		소 계	5,244.57	7,251.52	6,966.74	1,722.17		
	운수시설 소계		71,175.40	71,376.04	71,377.75	202.35	100.00	100.00
비도시계획시설	근린생활시설		2,725.95	2,006.95	2,006.93	- 719.02		
	업무시설		9,243.75	10,568.29	10,548.68	1,304.93		
	판매시설		38,216.27	37,528.46	37,548.07	- 668.20		
	제2종 근린생활시설		389.25	389.29	389.25	-		
	종교시설		134.96	134.96	134.96	-		
	복도, 홀		7,548.88	7,401.07	7,401.08	147.80		
	발코니		3,386.71	3,386.71	3,386.71	-		
	전체공유		9,796.14	9,825.58	9,823.88	27.74		
	외부계단		137.13	137.13	137.13	-		
	소 계		71,579.04	71,378.44	71,376.69	- 202.3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대표이사 박주형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0년 3월
6)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해당 사항 없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2155-67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고시 제2019-7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92호(1995.01.2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22호(2007.12.0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된 가락동 140-6번지 가주초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송 파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가주초등학교의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건축범위(건폐율, 용적률)를 변경결정 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초교	송파구 가락동 140-6번지	8,000	-	8,000	서고 제1994-451호 (1995.01.06.)	가주 초등학교

   ○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건축제한완화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이하	40이하	120이하	130이하	5층	5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	ㅇ 건축범위(건폐율, 용적률)변경 - 건폐율 : 30%이하 → 40%이하 (증 10%) - 용적률 : 120%이하 → 130%이하 (증 10%)	ㅇ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체육관 및 급식시설을 증축하고자 건축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임

※ 권고사항: 운동장 규모의 최소 축소 방법 등 효율적인 건축계획 검토 필요

3.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2147-299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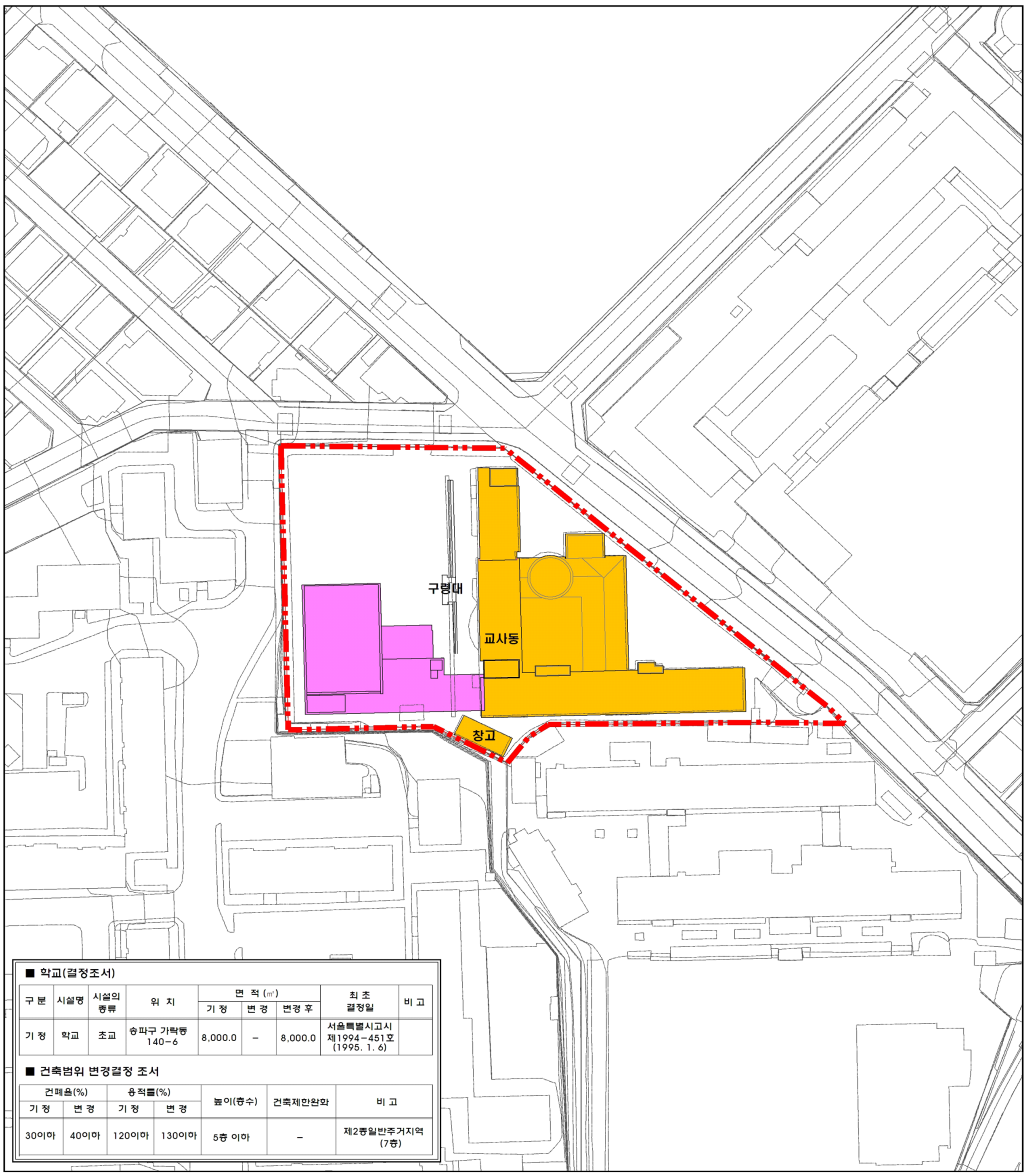

◈ 송파구고시 제2019-74호

도시관리계획(삼전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47호(2018.10.25.)로 결정(변경)된 「삼전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삼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송 파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삼전 지구단위계획」 내 잠실동 336-16번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해 주민제안(공동개발(권장) 해제) 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	삼전동 7번지 일대	136,002 (196.9)	-	136,002 (196.9)	서울시고시 제1996-46호 (96.03.06)	-

* 면적의 ( )는 사업대상지 내 사항 임.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A4	잠실동 336-15, 336-16	428.3	공동개발(권장)	-	공동개발(권장) 해제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잠실동 336-15, 336-16	◦ 공동개발 권장 → 단독개발	◦ 공동개발을 위한 소유자 간 의사합의가 어려움에 따라 공동개발(권장) 해제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2147-300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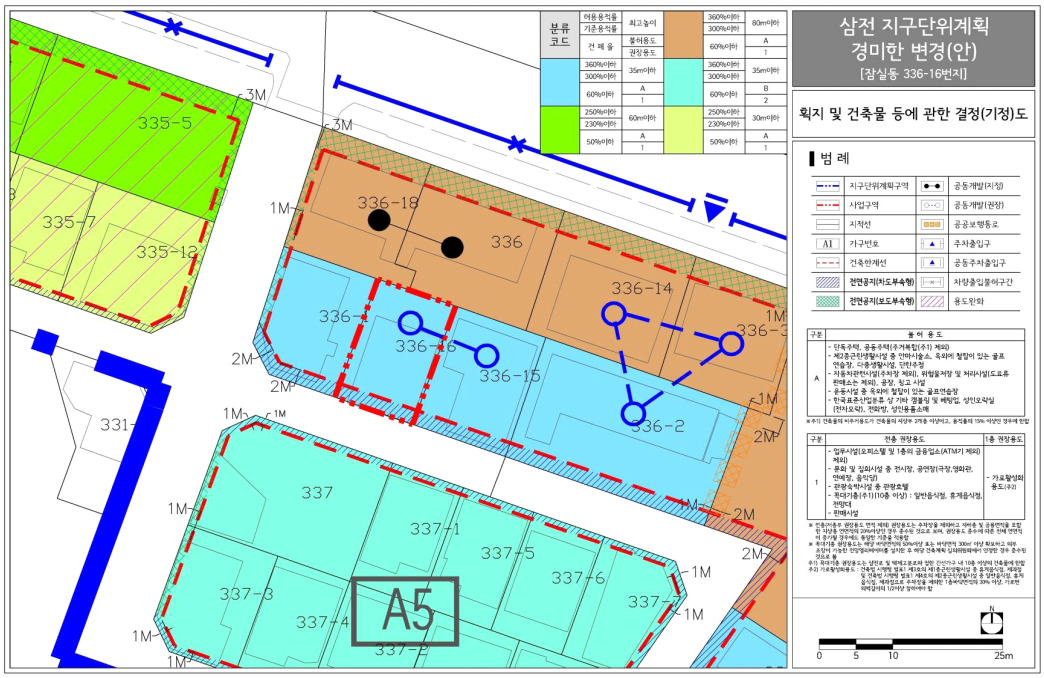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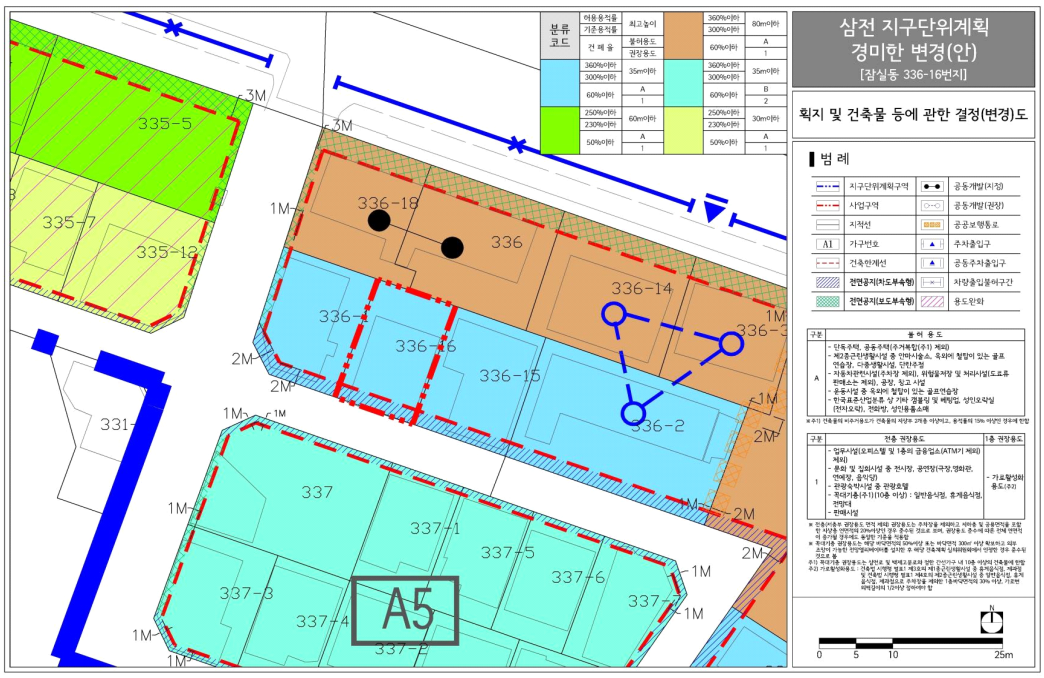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19-42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작성 및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9호(1987.9.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0-202호(1990.4.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7호(2019.2.14.)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중구 만리동2가 6-1 일대 손기정체육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하고 이를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3396-5852)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0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6-1 일대(손기정체육공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손기정 복합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손기정체육공원 리뉴얼)

3) 내 용 : 공원 재조성

다. 사 업 규 모 : 29,682.2㎡

라. 사업 시행자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중구청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마.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년 8월

바. 열 람 기 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사. 열 람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02-3396-5852)

아. 관련조서

• 시설결정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9,682.20	13,378.86	7	2,568.36	11,532.86	112	
기반시설	소계	2,639.47	2,639.47					
	도로	2,472.79	2,472.79					
	광장	166.68	166.68					
조경시설		291.47	291.47					
휴양시설		184.43	184.43				13	
유희시설		274.86	274.86				2	
운동시설		8,238.69	8,238.69	3	1,106.29	2,224.72	1	
교양시설		1,543.28	1,543.28	3	1,434.77	9,280.84	3	
편익시설		6.75	6.75				1	
관리시설		199.91	199.91	1	27.30	27.30	92	
녹 지		16,303.34						

•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9,682.20	13,378.86		7	2,568.36	11,532.86	112	
기반시설	소 계			2,633.31	2,633.31						
	도로			2,466.63	2,466.63						
	광장	가		166.68	166.68						
	진입광장	가-1	주진입부	(130.80)	(130.80)						
	부진입광장	가-2	부진입측	(35.88)	(35.88)						
조경시설	소 계			291.47	291.47						
	파고라										
	등의자										
	옹벽 1	①		243.32	243.32						
	화계	②	진입광장	44.08	44.08						
	옹벽 2	③	체육센터 입구	4.07	4.07						
휴양시설	소 계			184.43	184.43					13	
	휴게소	나		184.43	184.43						
	파고라	④								3	
	그네파고라	⑤	어린이놀이터							2	
	등의자A	⑥								8	
	등의자B	⑦	광장				54.5m				
	앉음벽	⑧	진입광장				24.2m				
유희시설	소 계			274.86	274.86					2	
	어린이놀이터	다	서관 앞	274.86	274.86						
	연결형 모험놀이대A	⑨	어린이놀이터내			목재				1	
	연결형 모험놀이대B	⑩	어린이놀이터내			목재				1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운동시설	소 계			8,238.69	8,238.69		3	1,106.29	2,224.72	1	
	노인체육시설	1	부진입광장 옆	125.10	125.10	조적조	(1)	125.10	239.07		
	손기정 체육센터 (서관)	2	어린이놀이터 옆	676.20	676.20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1)	663.64	1,327.28		
	다목적운동장	라-3	지상트랙 내	3,042.30	3,042.30						
	테니스장	라-5	도서관 옆	1,271.94	1,271.94						
	게이트볼장	라-4	소3-2 옆	644.00	644.00						
	스텐드	라-6	다목적운동장 옆	434.20	434.20	석재				1	
	지상트랙	라-1	다목적운동장 옆	1,488.27	1,488.27						
	소트랙	라-2	어린이놀이터 주변	239.13	239.13						
	체육센터	3	부진입광장 옆	317.55	317.55		(1)	317.55	658.37		
교양시설	소 계			1,543.28	1,543.28		3	1,434.77	9,280.84	3	
	손기정문화센터 (본관) (손기정기념관)	5		814.25	814.25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1)	814.25	1,519.90		
	손기정문화센터 (후관)	4		442.21	442.21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1)	442.21	884.42		
	승리의조각상	⑫	게이트볼장 옆	12.01	12.01	청동				1	
	손기정발도장	⑬	소3-5 내	(6.16)	(6.16)	청동				1	
	손기정두상	⑪	월계수상징공간 옆	64.89	64.89	청동				1	
	월계수상징공간	마		31.61	31.61						
	도서관	6	진입광장 옆	178.31	178.31	철근콘크리트	(1)	178.31	6,876.52		
편익시설	소 계			6.75	6.75					1	
	음수장	바	소트랙 옆	6.75	6.75					1	
관리시설	소 계			199.91	199.91		1	27.30	27.30	92	
	공원등A									90	
	관리사무소		체육센터 내								
	주차장출입구계단	7		39.29	39.29		(1)	27.30	27.30		
	급배기타워	⑰		27.34	27.34					(8)	
	종합안내판	⑯	진입광장 옆							2	
	게양대	⑭	부진입광장 옆	0.32	0.32						
	환기구	⑮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옆	107.22	107.22						
	변전실	사		25.74	25.74						
녹지시설	소 계			16,303.34							54.93%

•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1408.1	2,472.79				
소로	소 계			596.8	1,487.17				
	3류	1	6.5	6.6	30.78	연결로	부진입광장	체육센터	
	3류	2	1.5	88.8	129.65	연결로	산책로3	소로3-4	
	3류	3	3.0	22.1	67.34	연결로	손기정두상	소로3-4	
	3류	4	2.5	5.2	15.04	연결로	게이트볼장	소로3-3	
	3류	5	3.5	4.2	23.52	연결로	주차장출입구계단	소로3-12	
	3류	6	3.0	54.0	119.35	연결로	진입광장	소로3-7	
	3류	7	3.0	93.2	290.05	연결로	소로3-6	소로3-9	
	3류	8	4.0	76.9	129.53	연결로	소로3-7	산책로9	
	3류	9	4.0	60.5	123.17	연결로	소로3-7	산책로10	
	3류	10	4.0	59.6	206.36	연결로	산책로2	소로3-7	
	3류	11	4.0	69.7	188.98	연결로	산책로7	소로3-12	
	3류	12	4.0	56.0	169.56	연결로	소로3-12	산책로6	
산책로	소 계			811.3	979.46				
		1	3.0	390.5	146.43	산책로	부진입광장	소로3-2	
		2	3.5	38.3	96.00	산책로	부진입광장	산책로3	
		3	6.5	2.4	64.68	산책로	산책로2	소로3-2	
		4	1.5	111.1	161.35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5	
		5	1.5	28.1	34.70	산책로	산책로4	소로3-4	
		6	2.5	41.7	102.67	산책로	소3-12	산책로7	
		7	2.0	47.2	90.34	산책로	산책로6	소로3-11	
		8	1.5	68.1	113.32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9	
		9	2.0	35.2	69.90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10	
		10	2.0	48.7	100.07	산책로	산책로9	소로3-9	

• 편입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편입여부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계				29,919.5	29,919.5				
중구	만리동1가	57-7	공	11,550.5	11,550.5	완전편입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6-1	공	16,423.9	16,423.9	완전편입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2-2	공	1,613.3	1,613.3	완전편입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2-30	도	78.3	78.3	완전편입	중구		
중구	만리동2가	6-4	구	125.2	125.2	완전편입	중구		
중구	만리동2가	32-4	도	89.0	89.0	완전편입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289-2	공	31.7	31.7	완전편입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289-3	공	7.6	7.6	완전편입	서울시		

◈ 중랑구공고 제2019-5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1974.04.20.)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합니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0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59-2~158-8번지, 중화동 157-1~154-57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중화동 159-2~158-8간 도로사업, 중화동 157-1~154-57간 도로사업

다. 사업의규모 : 면적 1176㎡(6필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9.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로과(☎02-2094-2692)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중화동 159-2~158-8간 도로사업, 중화동 157-1~154-57간 도로사업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중화동	159-2	대	43.0	43.0	여형수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09번길 20-36(평내동)				
2	중화동	157-16	대	96.0	96.0	최광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화동 145-1	성북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3	압류	
3	중화동	158-5	전	519.0	519.0	곽준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156, 3동 405호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박규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0-24, 102호(응암동)				
						여인환	미합중국 뉴저지주 부리스 오드리코트 5				
4	중화동	158-8	전	241.0	241.0	여정훈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51, 510동 104호(인창동, 신일아파트)				
						박규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0-24, 102호(응암동)				
						여인환	미합중국 뉴저지주 부리스 오드리코트 5				
5	중화동	154-30	대	66.0	65.0	여동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03동 1001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6	중화동	154-85	임야	212.0	212.0	현연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310	중랑구청	봉화산로 179	압류	

서울시보 제3522호 서울특별시 2019. 5. 30.(목)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 위 치 도

▢ 현황사진

◈ 중랑구공고 제2019-592호

신내어울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2005-480호(2005.12.2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55호(2011.10.10.)로 변경된 중랑구 신내동 315번지 일대 신내어울공원에 대하여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중 랑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신내어울공원
2. 위　　치 : 중랑구 신내동 315 일대 (대상지:신내동 315-9)
3. 면　　적 : 12,915.6㎡
4. 조성계획 변경(안)

구분		기정						비고	변경						비고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총 계		12,915	4,454				19		12,915	4,912				30	
도로 및 광장	소계	659	659						1,035	1,035					증 376
	도로	582	582						688	688					증 106
	광장	77	77						347	347					증 270
조경시설							13							18	
휴양시설		2,893	2,893						2,667	2,667					감 226
유희시설															
운동시설		902	902				6		902	902				12	
교양시설									308	308	1	308	829		증 308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8,462							8,003						감 459
공원시설율 (법정40%)		(4,454 / 12,915)×100 = 34.49%							(4,912 / 12,915)×100 = 38.03%						
공원건폐율 (법정20%)		(0 / 12,915)×100 = 0%							(308 / 12,915)×100 = 2.38%						

5.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중랑구청 맑은환경과 (02-2094-2453)
8.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맑은환경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공고 제2019-771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9-37호(2019. 3. 21.)로 실시계획 고시 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202-5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변경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른 열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 내용은 도봉구청 문화체육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이 사업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기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202-5 외 7필지
- 변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202-7 외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변경)
- 기정: 8,400㎡
- 변경: 8,072㎡

라. 사업의 내용(변경없음):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마.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서울특별시 도봉구 656)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0.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등 권리명세(변경): 별첨 조서

아.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도봉구청 문화체육과(☎02-2091-2265)

차. 공고방법: 시보게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2019년도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연번	변경 구분	소재지 (도봉구)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면적 (㎡)	편입 면적 (㎡)	2019년도 보상예상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기정**				**8,400**	**8,400**	**8,400**							
	변경				**8,072**	**8,072**	**8,072**							
1	기정	창동	산202-5	임	33	33	33	장은식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0길 **(삼선동2가, 3층)	1				
	변경	삭제(2020년으로 보상연도 이월)												
2	변동 없음	창동	산202-7	임	900	900	900	장은식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0길 **(삼선동2가, 3층)	1				
3	변동 없음	창동	산203-8	임	72	72	72	장은식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0길 **(삼선동2가, 3층)	1/2				
								김선열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2.8/28				
								장수교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2.8/28				
								장윤영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2.8/28				
								장재웅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5.6/28				

연번	변경 구분	소재지 (도봉구)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면적 (㎡)	편입 면적 (㎡)	2019년도 보상예상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변동 없음	창동	산203-10	임	1,800	1,800	1,800	장은식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0길 **(삼선동2가, 3층)	1/2				
								김선열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2.8/28				
								장수교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2.8/28				
								장윤영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2.8/28				
								장재웅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5.6/28				
5	기정	창동	산204-5	임	117	117	117	이순용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호(한솔빌라트)	1				
	변경	삭제(2020년으로 보상연도 이월)												
6	변동 없음	창동	산204-7	임	2,600	2,600	2,600	이순용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호(한솔빌라트)	1				
7	기정	창동	산205-24	임	178	178	178	김영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99, ***동 ***호(장항동, 호수마을)	1	의정부 신곡새마을 금고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신곡동)	근저당권 설정	
											최유순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435, ***동 ***호(신천동, 파크리오)	근저당권 설정	
	변경	삭제(2020년으로 보상연도 이월)												

연번	변경 구분	소재지 (도봉구)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면적 (㎡)	편입 면적 (㎡)	2019년도 보상예상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변동 없음	창동	산205-26	임	2,700	2,700	2,700	김영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99, ***동 ***호(장항동, 호수마을)	1	의정부 신곡새마을 금고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신곡동)	근저당권 설정	
											최유순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435, ***동 ***호(신천동, 파크리오)	근저당권 설정	

◈ 서대문구공고 제2019-5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181호(1966.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8호(2016.6.9.)로 최종 변경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78호(2015.3.19.)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백련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서대문구청(푸른도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1-2 등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보상사업
다. 사업의 면적 : 10,48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 2021. 12. 31까지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별첨
차.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90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지분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3필지	47,187	10,482							
홍은동 산11-2	임야	44,237	8,509	1	재단법인****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	-	-	-	-
홍은동 311	대지	473	473	1	재단법인****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	-	-	-	-
홍은동 산26-1 34	임야	2,477	1,500	1	학교법인****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	중부 세무서	서울시 중구 소공로 **	압류	-

※ 편입면적 소수점 내림

◈ 마포구공고 제2019-538호

도시계획시설(샛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변경)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49호(1993.8.1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샛터근린공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2. 마포구 공고 제2019-359호(2019. 4. 4.)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나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변경)합니다.

3.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산동 177-16번지 등 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명칭 : 샛터근린공원조성(토지보상)

다. 사업의 면적

1) 변경 전 : 26,730㎡

2) 변경 후 : 11,13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마포구청장(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번지)

마. 사업의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 6. 30.까지

바 열람기간 : 2019. 5.23. ~ 6.06.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02-3153-9553)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자. 토지·물건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공원녹지과, ☎02-3153-9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면적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소 재 지 (위 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지분)
						성 명	주 소(등기)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계			26,730	11,132							
1	성산동 177-16	전	844	844	경작지 나대지	현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46 쌍용플래티넘아파트 102-***		해당없음		
2	성산동 177-15	전	42	42	경작지 나대지	이*주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21번길 5-***		해당없음		
3	성산동 산4-7	임야	2,314	2,314	경작지 묘지	이*주 이*홍 이*주 이*선 이*주 이*주 이*주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62,105-6**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57길12 10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7, 10-1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306, 101-3**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7, 108-1***		해당없음		7/28 7/28 6/28 2/28 2/28 2/28 2/28
4	성산동 165-120	전	2,640	2,640	경작지 묘지	이*관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20 408-***(서현동, 현대아파트)		해당없음		
5	성산동 산4-25	임야	165	165	나대지	백*희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24, 307-1***(문정동, 훼미리아파트)		해당없음		
6	성산동 177 -12	전	255	189	나대지 적치물	김*희	서울시 서대문구 명물길62 오시리스타워 *		해당없음		
7	성산동 산4-8	임야	3,942	3,942	산책로 등	주*환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79길 26, 108-***(고덕아이파크)	심동*	화성시 석우동56 동탄예당마을 신일유토빌 134-***	소유권일부 가처분 592/394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 (수원지점)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김호*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49, 1107-1***	근저당권	
8	성산동 산37-1	임야	16,528	996	산책로 등	이*관 이*근 이*선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20, 408-***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590번길 29,307-*** 서울시 마포구 모래내로5길 ***		해당없음		5/10 4/10 1/10

물 건 조 서

연번	소 재 지 (위 치)	물건의 종류	상호명	구조 규격	편입 내역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성산동 산4-7	묘지		토사	4개 각 4m×4m	이*주 이*홍 이*주 이*선 이*주 이*주 이*주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62,105-6**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57길12 10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7, 10-1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306, 101-3**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7, 108-1***				7/28 7/28 6/28 2/28 2/28 2/28 2/28
2	성산동 165-120	묘지		토사	5개 각 4m×4m	이*관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20 408-***(서현동, 현대아파트)				
3	성산동 177-12	적치장 등	㈜진주 글라스	유리 등	150㎡	이*옥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77-***				무허가

◈ 양천구공고 제2019-7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조성)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73호(2018.11.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된 온수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 인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토지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양 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양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0-3574), 양천구청 홈페이지(http://yangcheon.go.kr → 고시・공고)

다.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양천구 신월동 350-31번지 등 7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2019년 도시계획시설(온수도시자연공원)사업

3) 사업의 규모 : 토지보상 18,358㎡

4)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사업 시행자 ┌성 명 : 양천구청장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5) 사업 착수・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6) 사용・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등의 조서 : 따로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2019년 도시계획시설(온수도시자연공원)사업
□ 사업시행자 : 양천구청장

일련번호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계			19,362	18,358	9명					
1	신월동 산155-3	임	1,989	1,989	왕흥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207동 2801호(하안동, 이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	1/2			
					황교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3동 301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18			
					신현종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43길 51, 101동 703호(서초동, 현대리츠빌)	2/18			
					김가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3동 301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18			
					신현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601동 2301호(정자동, 파크뷰)	2/18			
2	신월동 350-31	임	9,325	9,325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145	1			
3	신월동 350-45	임	1,440	604	에스에이치공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1			
4	신정동 산125-29	임	471	471	에스에이치공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1			
5	신정동 산125-30	임	4,094	3,926	에스에이치공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1			
6	신정동 산125-9	임	1,547	1,547	황병조	서울 서초구 서리풀길 12, 403호(서초동, 트라움하우스)	1			
7	신정동 739-31	임	496	496	천기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로142번길 22-1	1			

지장물조서

일련번호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및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신월동 산155-3	가설건축물	철파이프(농막)	47	왕흥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207동 2801호(하안동, 이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			
2		과수목(감나무)	-	11주	왕흥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207동 2801호(하안동, 이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			
3		과수목(뽕나무)	-	34주	왕흥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207동 2801호(하안동, 이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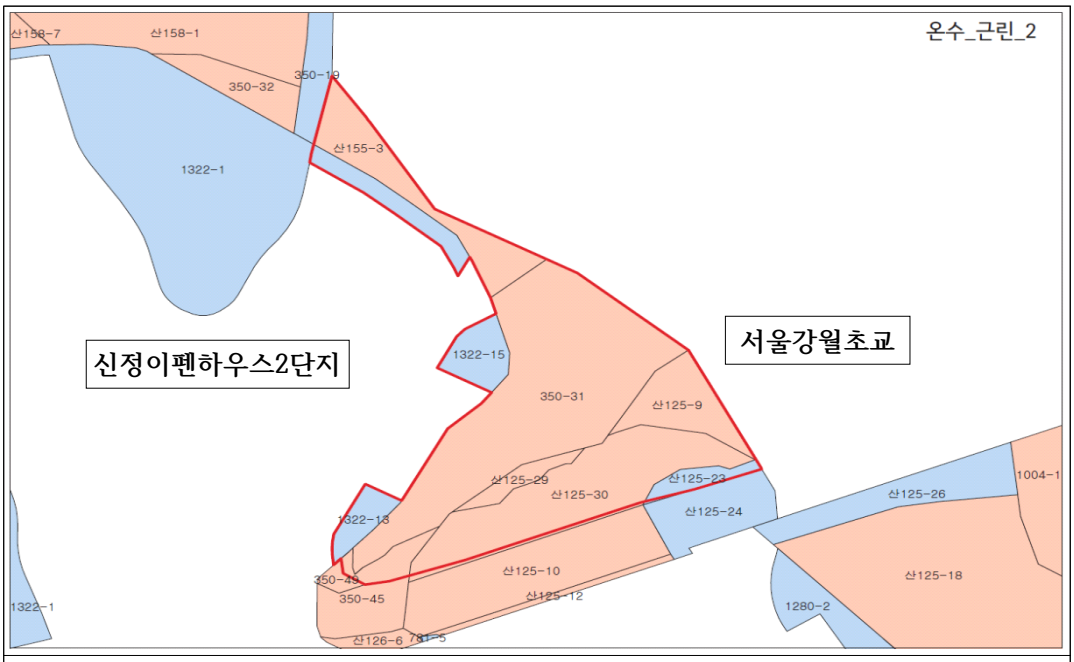

신월동 산155-3 일대 6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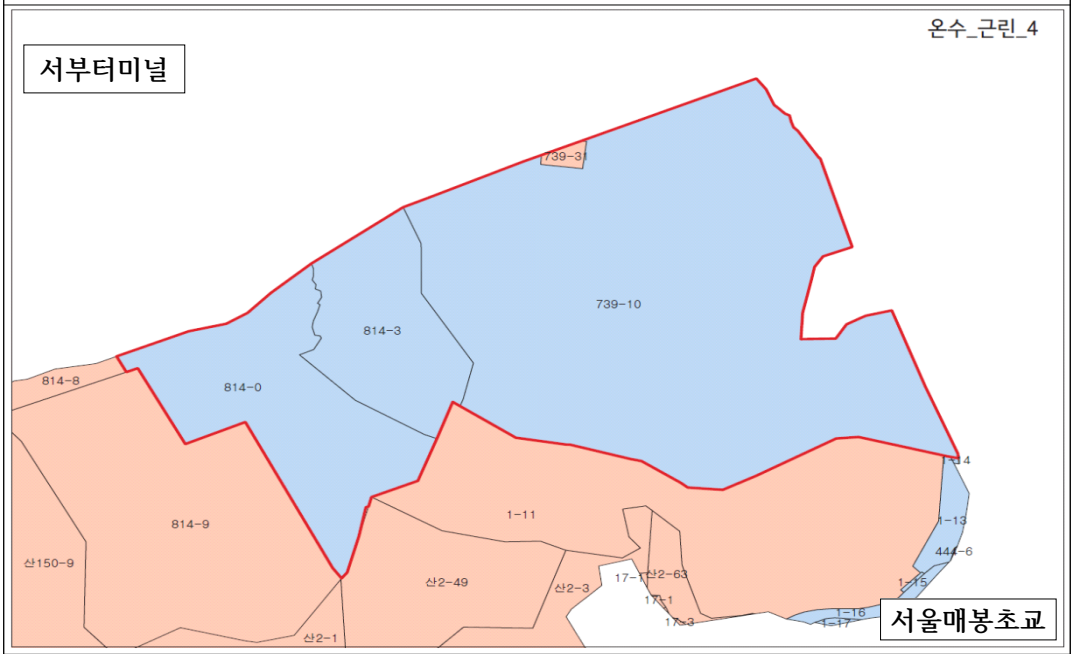

신정동 739-31

◈ 영등포구공고 제2019-976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1999.2.12.)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호(2012.1.26)로 변경결정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관련 도서를 열람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30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42, E-mail : ghqkd5247@ydp.go.kr)
3. 열람내용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신설)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영등포동1가 94-2외 (지하1층)	연면적	-	증)869.08	869.08	-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신설)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영등포동1가 94-2외 (지하1층)	대지지분	-	증)138.84	138.84	-	영등포 구청
			위치(층)	-	지하1층	지하1층		
			연면적	-	증)869.08	869.08		

주) 입체적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은 전용, 공용, 부대시설을 합한 계약면적이고 향후 건축허가 변경시 조정될 수 있음

주)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노유자시설(세부용도:청소년문화수련시설)로 신청하고, 세부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영등포구청과 협의하여 확정 후 준공시 기부채납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신설)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위치 :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대 특별계획 구역 - 연면적 : 869.08㎡ - 대지지분 : 138.84㎡ - 환산부지면적 : 227.84㎡	○ 영등포구 구민복리시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입체적 결정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녹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계획 예시안)
		기 정	변 경	
용 도 지 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좌 동	
건 폐 율		60%이하	좌 동	
용적률	기준/허용	•준주거지역: 300%/360% •일반상업지역: 600%/800% •340.47%이하/419.36%이하 - 기준용적률 : 300×3,369.7/3,895.2(준주거) +600×525.5/3,895.2(상업) = 340.47% (가중평균) - 허용용적률 : 360×3,369.7/3,895.2(준주거) +800×525.5/3,895.2(상업) = 419.36% (가중평균)	좌 동	•대지면적 - 준주거: 3,369.7㎡ - 상업지역: 525.5㎡
	상한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 419.36%×(1+1.3×1×0.04464) = 443.70%이하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418.19%×(1+1.3×1×312.745/(4069.1-312.745)+0.7×227.84/(4069.1-312.745)) = 481.20%이하	
최고높이		•80m이하	좌 동	
공공보행통로		•대상지 내부 5m	좌 동	
권장 용도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좌 동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및 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와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계획구역 Ⅰ-3 세부개발계획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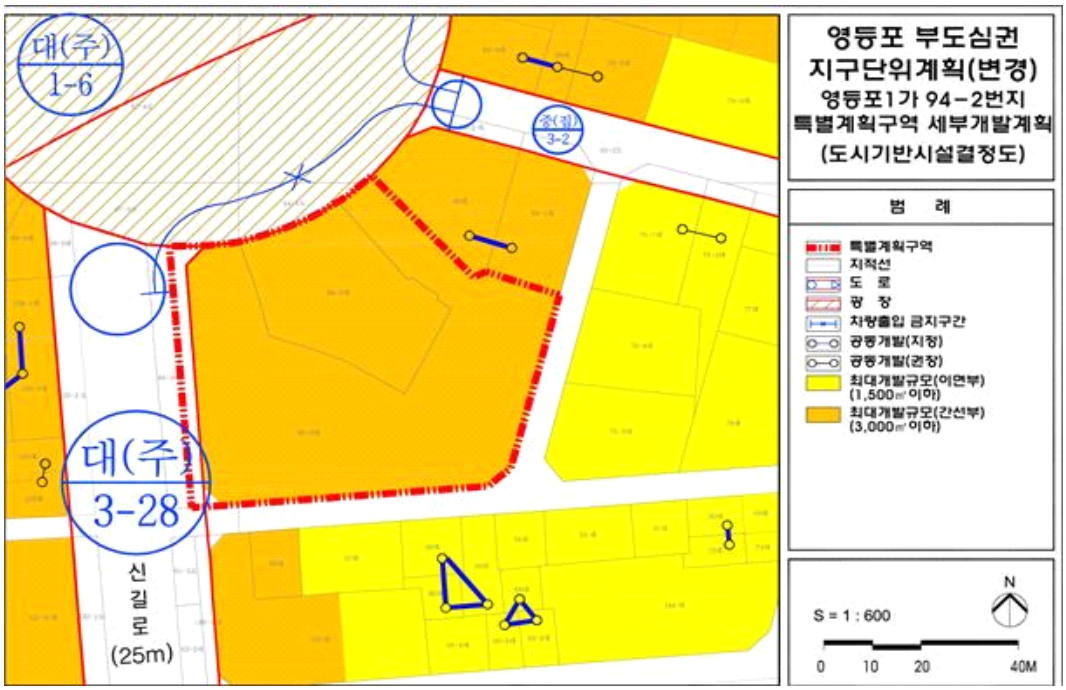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Ⅰ-3 세부개발계획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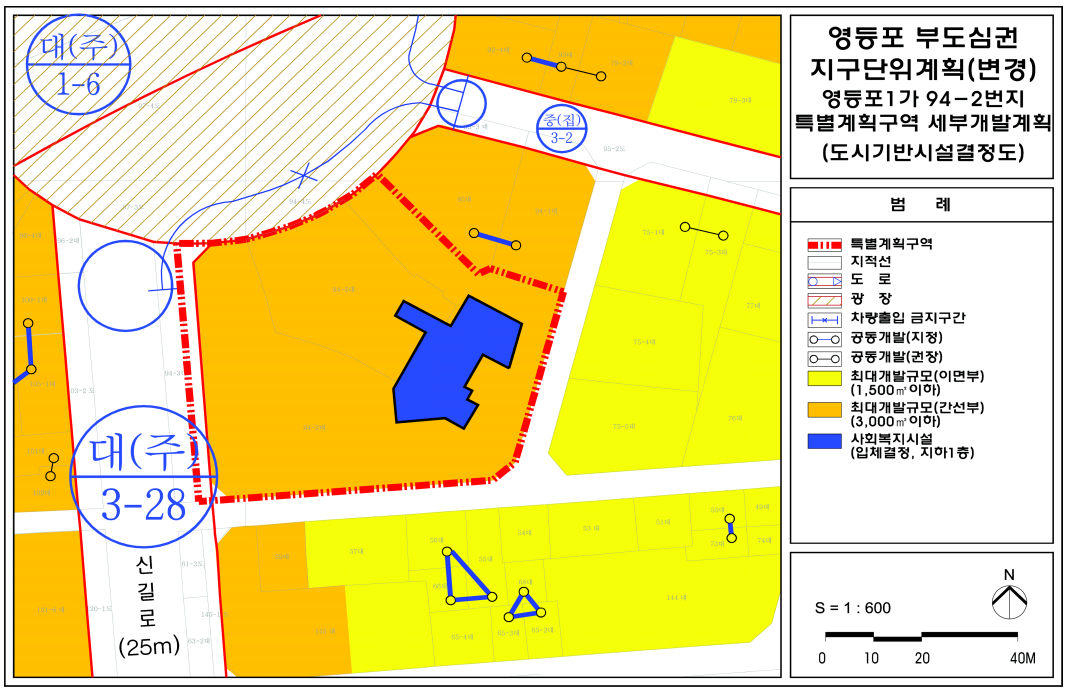

◈ 영등포구공고 제2019-1007호

도시관리계획[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96호(1997. 6. 2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 11. 29.)로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 9. 8.)로 폐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4호(2019. 5. 23.)로 일부환원 고시된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길동 255-9호 일대 도시관리계획[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30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33)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길동 254-7번지 일대	66,649	증)7.6	66,656.6	서고 제1997-196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신길동 254-7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증)7.6㎡	• 신길동 255-7의 완전편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사항과 동일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 가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 최대획지규모(변경)

구 분	적 용 대 상		최대획지규모(㎡)	비고
	기정	변경		
간선변(신길로변, 가마산길변)	NC6-a, NC7	NC6	2,000	-

■ 획지 및 공동개발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적용대상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NC4-a	NC4	257-21대, 257-43대		255	공동개발 지정		이면부 적정규모 유도
		257-22대, 257-44대, 257-45대		423	공동개발 지정		맹지를 포함한 이면부 적정규모 유도
		257-24대, 257-27대, 258-22대, 257-25대, 257-26대, 259-1대		477	공동개발 지정		맹지를 포함한 이면부 적정규모 유도
NC6-a	NC6	260-3대, 259-10대, 259-4대, 259-7대, 259-8대, 259-9대, 254-15대		1,093	획지		부정형 필지를 포함한 간선변 적정규모 유도
NC4-a	NC7	257-5대, 257-18대, 257-6대, 257-16대, 257-17대	254-1대, 254-5도, 254-7대, 255-11도, 255-22대, 255-23대, 255-7도, 255-9대, 256-6대, 257-16대, 257-17대, 257-18대, 257-19대, 257-5대, 257-6대, 257-9대	8,034.8	공동개발 지정	획지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내 획지
		257-8대, (255-5대 합필), 257-19대, 257-20대, 257-9대, (255-6대 합필), 259-1대			공동개발 지정		
NC4-b		256-6대, 255-23대, 255-9대			획지		
NC6-b		254-7대			획지		
NC7		254-1대, 255-22대			획지		

■ 변경사유서 :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불허용도)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나) 건축물의 용도계획(권장용도)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다)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건폐율(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적률(변경)

구 분	적용대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 고
간선 도로변	NC1-a, NC2, NC3, NC5, NC6, NC8-a, NC9-a, NC10-a, NC11-a, NC12, NC13, NC14, NC15, NC16, NC18-a, NC19, NC7	300%이하	50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용
이면부	NC1-b, NC4, NC8-b, NC9-b, NC10-b, NC11-b, NC18-b,	250%이하	450%이하	

• 상한용적률 산정방식(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이내
※ 가중치=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α토지=공공시설(토지) 제공면적/공공시설(토지) 제공후 대지면적
※ α건축물=공공시설(건축물환산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토지) 제공후 대지면적

■ 변경사유서 : 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사항 및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19.01)사항 반영

(3)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변경)

주거용도 연면적 비율(%)	허용용적률	비 고
60%이상~70%이하 (특별계획구역은 80%이하)	420%	-
50%이상~60%미만	450%	-
30%이상~50%미만	480%	-
30%미만	500%	-

주: 1. 주거용도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말한다.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및 서울시 오피스텔 관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3.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은 건축물 용적률의 허용용적률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4. (신설)특별계획구역의 주거용도 연면적 비율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80%이하로 할 수 있다.

■ 변경사유서 : 특별계획구역에서 별도의 주거용도 연면적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4)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변경)

■공통지침(변경없음)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적용(신설)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70% 이내)

항 목	세 분	세 부 계 획 기 준	비 고
공동개발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사항[2)]	-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사항[2)]	-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건축물 용 도	전층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면적 / 연면적) × 0.2	• 2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저층부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 × (해당용도 면적 / 1~3층바닥면적) × 0.3	• 3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주1)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는 없음
주2)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란 대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위치준수,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을 모두 준수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100%를 말함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30% 이상)

항 목	세 분	세 부 계 획 기 준		비 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기준용적률x0.12 • 우수(그린2등급):기준용적률x0.08 • 우량(그린3등급):기준용적률x0.04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 0.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효율1등급:기준용적률x0.08 • 에너지효율2등급:기준용적률x0.06 • 에너지효율3등급:기준용적률x0.04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 공급률20%초과:기준용적률x0.12 • 공급률15%~20%:기준용적률x0.10 • 공급률10%~15%:기준용적률x0.08 • 공급률5%~10%:기준용적률x0.06 • 공급률3%~5%:기준용적률x0.04		-건축물의 총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빗물저류 · 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0.05		-

■ 변경사유서 : 특별계획구역에서 별도의 인센티브 기준 적용을 위한 항목 신설

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가) 대지 내 공지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신설)

■ 특별계획구역 총괄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대	-	증) 8,800.3	8,800.3	-

■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지구			• 근린상업지역(변경없음) • 일반미관지구	-
기반시설 (공공시설)			• 순부담률 20%이상 기부채납 • 도로 : 현황 반영하여 가로망 변경, 동측(3~6m→6m)도로 확폭 • 건축물 내 기반시설 등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
		저층부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기준/허용 용적률	• 기준 300% / 허용 500% 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 제공 토지면적/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α건축물 : 공공시설 제공 건축물환산부지면적/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주거용도 연면적 비율(%) / 허용용적률 60%이상~80%이하 / 420% 50%이상~60%미만 / 450% 30%이상~50%미만 / 480% 30%미만 / 500%	-
		최고높이	• 90m 이하	-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3m, 4m • 이면도로변 3m, 5m • 이면부 서측 대지경계 6m	-
		벽면한계선	•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구간	-
기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	-
	공개공지		• 간선도로 교차로 가각부에 개방형 공개공지 조성 (단, 전면공지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	-
	공공보행통로		• 벽면한계선 후퇴에 의한 공공보행공간 확보 - 가마산로69가길 : 폭 8m, 높이 6m 이상 (필로티형에 한함) - NC6 획지경계 : 폭 4m 중 특별계획구역 내 2m 확보	-
	보차혼용통로		• 대상지 서측경계 : 폭 6m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	-

4.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사항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대	-	증) 8,800.3	8,800.3	-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대	8,800.3	• 시장폐업으로 발생한 대규모 유휴부지의 계획적인 관리와 토지이용효율 증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신규 지정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5	8	집산 도로	376 (32)	신길동 301	신길동 233-1	일반 도로	-	건고768 (64.1.28)	-
기정	소로	3	47	6	집산 도로	206 (65)	신길동 362-1	신길동 254-1	일반 도로	-	건고768 (64.1.28)	-
변경	소로	3	47	6	집산 도로	150 (5)	신길동 362-1	신길동 257-10	일반 도로	-	-	연장축소
기정	소로	3	48	6	집산 도로	204 (101)	신길동 230-1	신길동 254-1	일반 도로	-	건고768 (64.1.28)	-
변경	소로	3	48	6	집산 도로	189 (90)	신길동 230-1	신길동 254-1	일반 도로	-	건고768 (64.1.28)	선형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소로3-47	소로3-47	• 구역 내 도로연장 축소 -L = 65m→5m(구역 내)	• 구역 내 장기미집행구간 제외
변경	소로3-48	소로3-48	• 구역 내 도로선형 변경 및 연장 축소 -L = 101m→90m(구역 내)	• 현황도로(신길로37길)를 반영하여 장기미집행구간 선형 변경

나)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시 장	소매시장	신길동 255-9	2,843	감)2,843	-	서고 370호 (1983.7.20)	신영 사러가

■ 시장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장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소매시장	• 시장 폐지 -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255-9 -면적 : 2,843㎡	• 시장기능 상실로 시설 폐지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획지		합계	8,800.3	
			NC7	신길동 255-9 일대	8,034.8	-
			도로	신길동 255-7 일대	765.5	672.2㎡ 기부채납

■ 결정사유서 : 도시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획지 결정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좌동
저층부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좌동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좌동

■ 결정사유서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결정

나) 건축물의 밀도

(1) 건폐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폐율	• 60% 이하	좌동

■ 결정사유서 : 근린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건폐율 적용

(2) 용적률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기준/허용 용적률	• 기준 300% / 허용 500% 이하	좌동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 제공 토지면적/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α건축물 : 공공시설 제공 건축물환산부지면적/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좌동
주거복합 건물의 용적률	<table><tr><th>주거용도 연면적 비율(%)</th><th>허용용적률</th></tr><tr><td>60%이상~80%이하</td><td>420%</td></tr><tr><td>50%이상~60%미만</td><td>450%</td></tr><tr><td>30%이상~50%미만</td><td>480%</td></tr><tr><td>30%미만</td><td>500%</td></tr></table>	좌동

■ 결정사유서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밀도기준 적용

(3) 건축물의 높이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최고높이	• 90m 이하	좌동

■ 결정사유서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밀도기준 적용

다) 건축물의 배치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3m, 4m • 이면도로변 3m, 5m • 이면부 서측대지경계 6m	좌동
벽면한계선	•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구간	좌동

■ 결정사유서 : 건축물 이격 배치를 통해 도로변 보행공간 및 대지 내 통로 확보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대지 내 공지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	좌동
공개공지	• 간선도로 교차로 가각부에 개방형 공개공지 조성 (단, 전면공지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	좌동

■ 결정사유서 : 이면부 및 교차로 가각부 보행환경 개선 및 개방감 확보, 소규모 휴게·휴식공간 제공

나) 대지 내 통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공공 보행통로	• 벽면한계선 후퇴에 의한 공공보행공간 확보 – 가마산로69가길 : 폭 8m, 높이 6m 이상 (필로티형에 한함) – NC6 획지경계 : 폭 4m 중 특별계획구역 내 2m 확보	좌동
보차 혼용통로	• 대상지 서측경계 : 폭 6m	좌동

■ 결정사유서 :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 보행동선 유지 및 보행환경 개선

다) 차량 및 보행동선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	좌동

■ 결정사유서 : 원활한 교통처리 유도 및 통행환경 개선 도모

라)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 순부담률 20%이상 기부채납 • 도로 : 현황 반영하여 가로망 변경, 동측(3~6m→6m)도로 확폭 • 건축물 내 기반시설 등	• 순부담률 20.03%(1,743.6㎡) – 도로 : 672.2㎡ – 건축물(환산부지) : 599.9㎡ – 건축물(토지지분) : 471.5㎡

■ 결정사유서 : 계획지침에서 제시한 순부담률 이상의 공공시설조성 및 제공

5.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로 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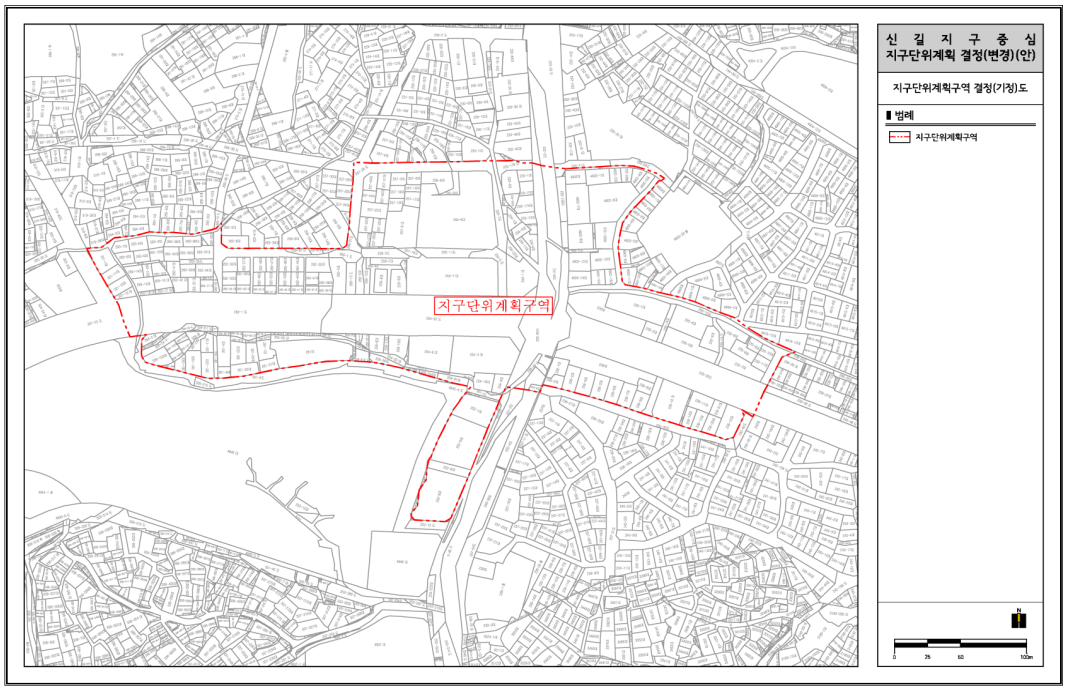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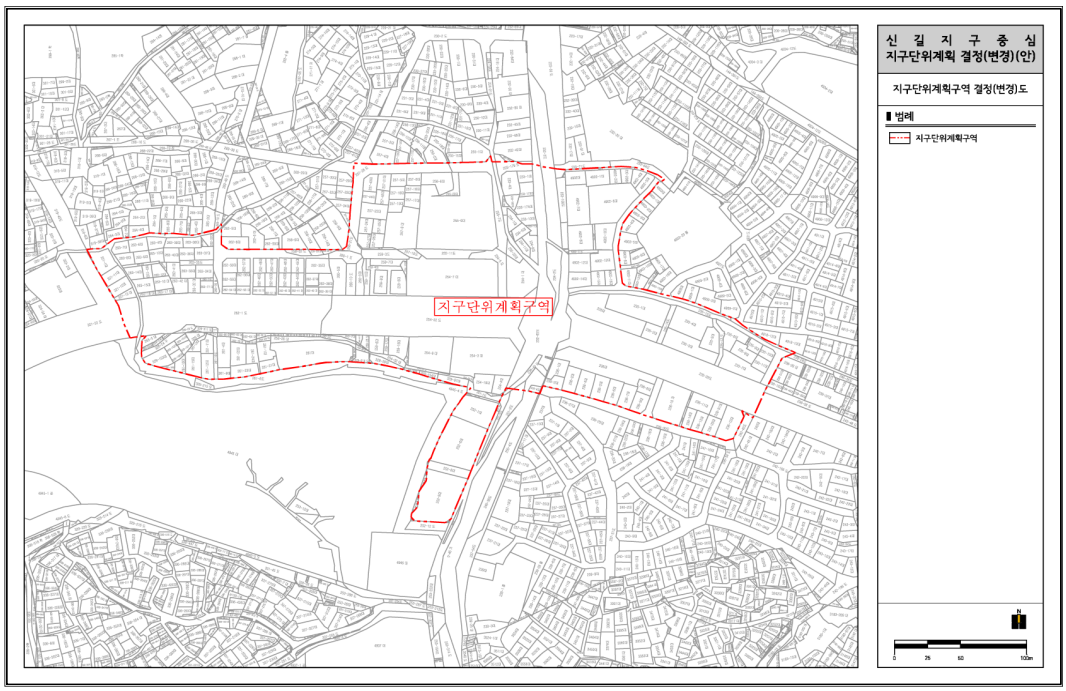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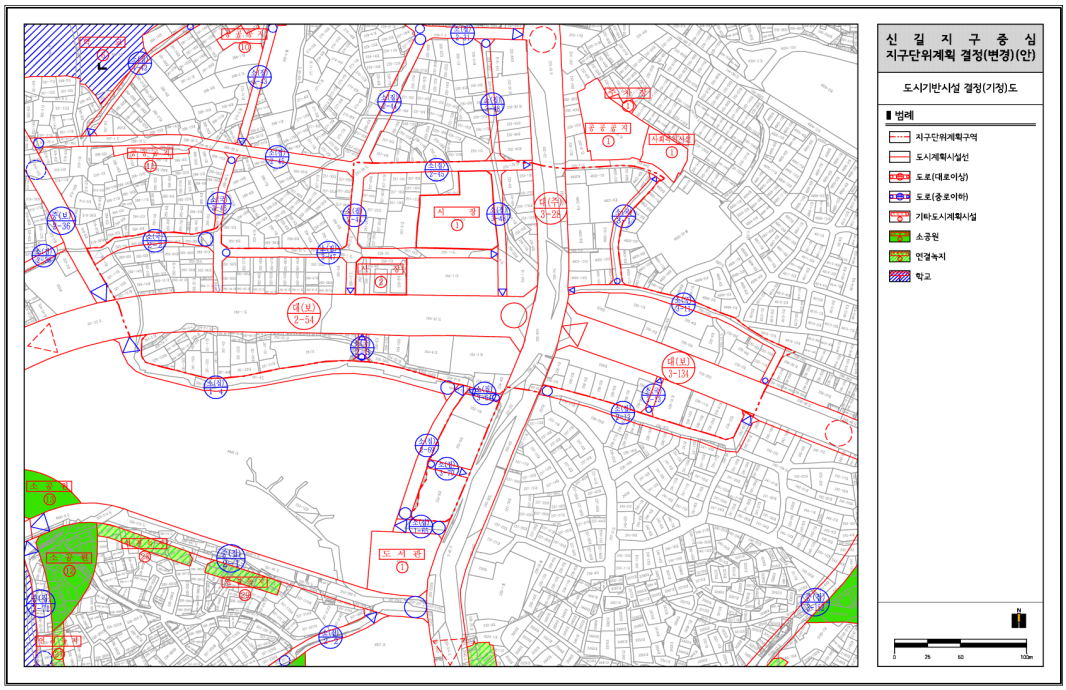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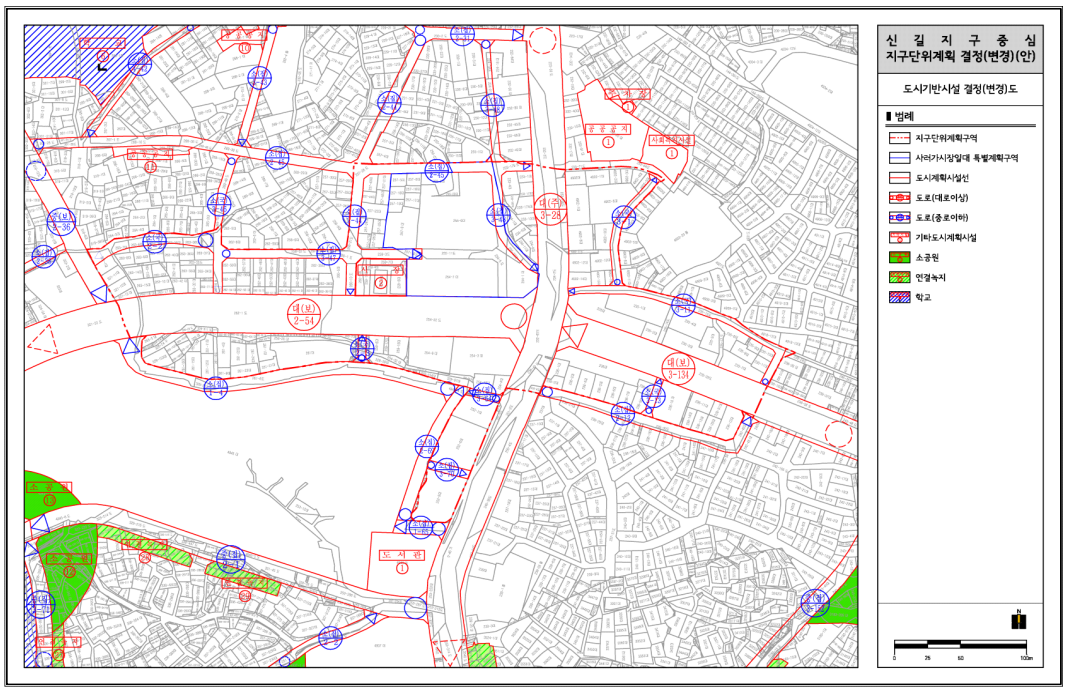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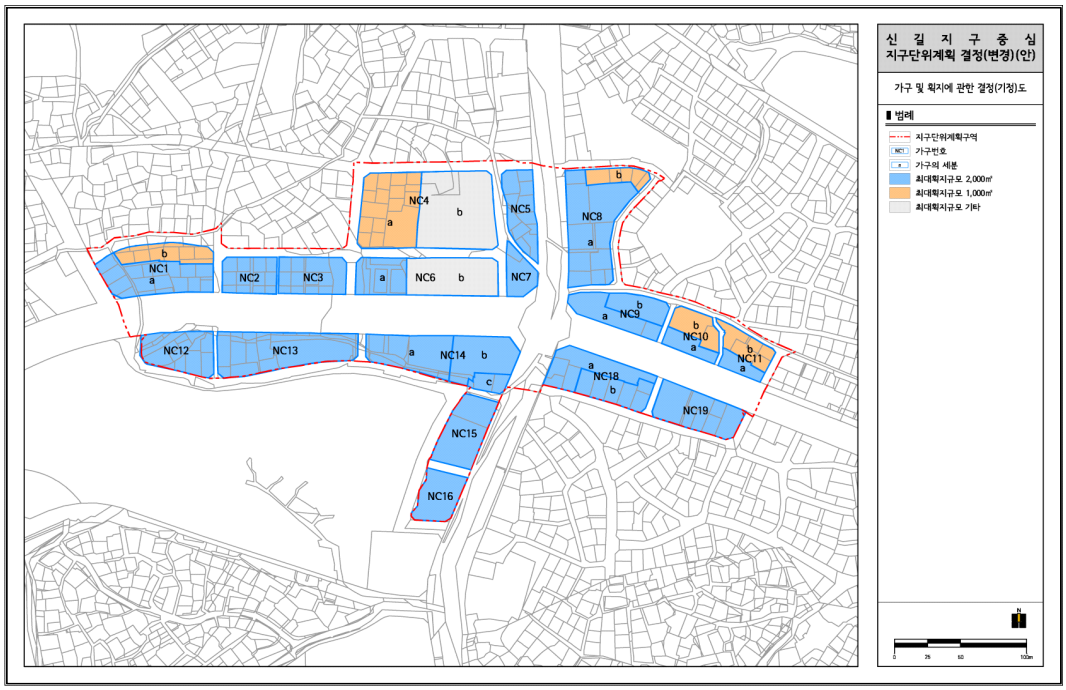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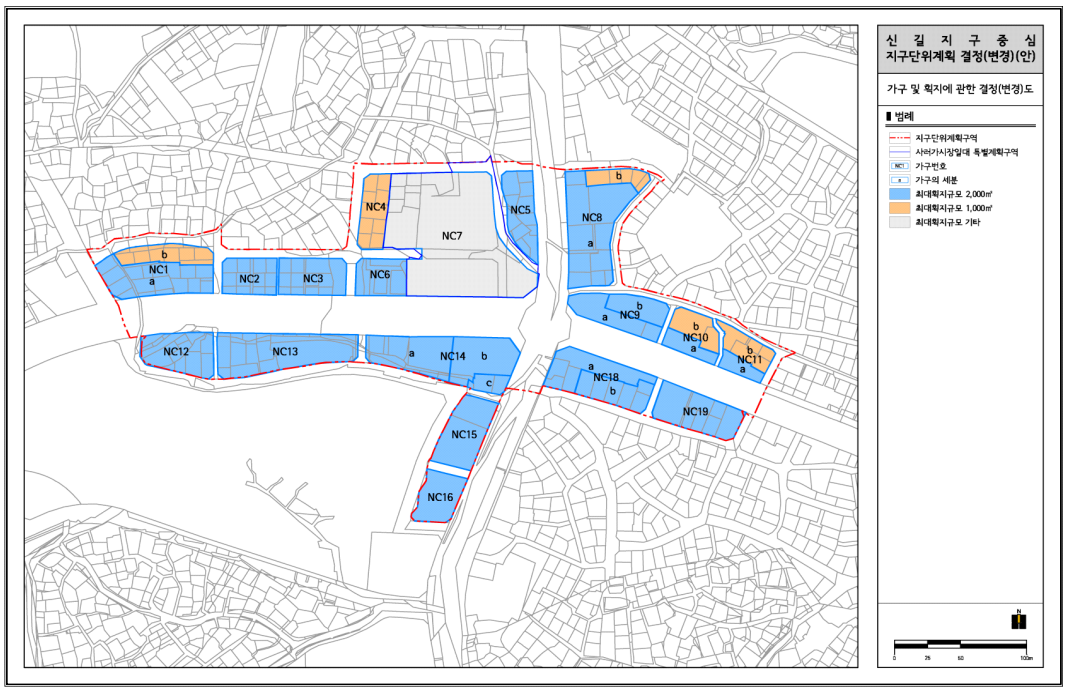

▢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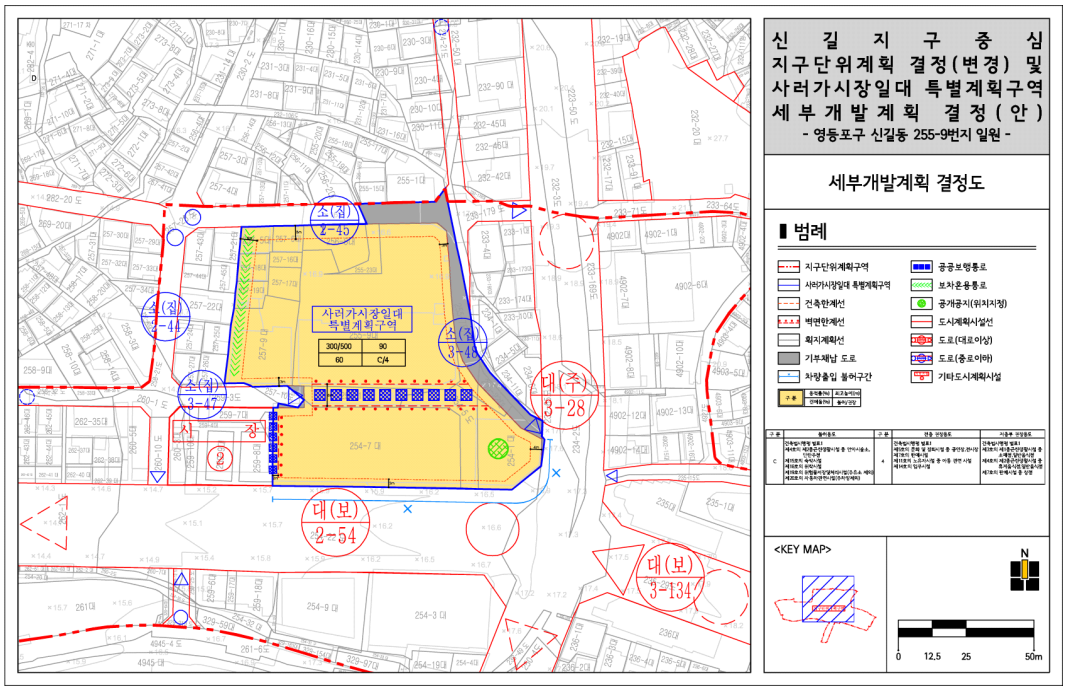

열 람 의 견 서

□ 개 요

도시관리계획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위 치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

□ 의견제출자

구 분	① 토지등소유자 ② 주거세입자 ③ 사업체 세입자 ④ 구역외 거주자 ※ 해당 번호에 V 체크해 주세요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물건지(임대) 위 치	

□ 제출의견

2019. . .

의견제출자 성명 (인)

◈ 강남구공고 제2019-1066호

도시계획시설(봉은역사공원 조성) 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6호(2009.5.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근린→역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21호(2016.4.21.) 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되고, 강남구고시 제2017-170호(2017.12.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시행(분할)된 봉은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사업의 명칭 : 봉은역사공원 조성(2단계)
   다. 사업면적 : 공원면적 75,405㎡ 중 968.03㎡
   라. 사업시행자
      ○ 성 명 :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대표 주지 원명(김종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마. 사업기간 : 2017. 12. 29. ~ 2019. 3. 31.

◈ 강동구공고 제2019-900호

일자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강동구 둔촌동 산140번지 일대 일자산도시자연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강 동 구 청 장

1. 공 원 명 : 일자산도시자연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산140번지 일대

3. 면　　적 : 713,416㎡

4. 조성계획 변경(안)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 면적 (m2)	시설 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 면적 (m2)	시설 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m2)	연면적 (m2)				동수 (동)	바닥 면적 (m2)	연면적 (m2)		
계		713,416	58,051	19	4,008.9	4,888.7	283	713,416	62,043	19	4,008.9	4,888.7	285	
공원시설구역	소 계	142,487	38,057	15	3,695.9	4,575.7	255	142,487	38,410	15	3,695.9	4,575.7	255	
	생태공원지구	53,291	9,157	5	827.9	1,408.7	76	53,291	9,157	5	827.9	1,408.7	76	변경 없음
	배수지지구	19,056	7,274	2	197	197	85	19,056	7,274	2	197	197	85	변경 없음
	화훼원지구	3,887	1,228	3	410	410	9	3,887	1,228	3	410	410	9	변경 없음
	방아다리지구	66,253	20,398	5	2,261	2,560	85	66,253	20,751	5	2,261	2,560	85	
시설지구 외		570,929	23,633	4	313	313	35	570,929	23,633	4	313	313	37	

공원시설구역률	(142,487 ÷ 713,416) × 100% = 19.97%	(142,487 ÷ 713,416) × 100% = 19.97%	법정 20% 이하
시 설 률	(58,051 ÷ 713,416) × 100% = 8.14%	(62,043 ÷ 713,416) × 100% = 8.70%	법정 20% 이하
건 폐 율	(4,008.9÷ 713,416) × 100% = 0.56%	(4,008.9÷ 713,416) × 100% = 0.56%	법정 4% 이하

1) 주요 변경내용

가. 방아다리지구

○ 운동시설 : 3,822㎡ → 2,775㎡ (감 1,047㎡)

- 변경 : 실외배드민턴장, 농구장 감 1,047㎡

○ 편익시설 : 3,112㎡ → 4,224㎡ (증 1,112㎡)

- 신설 : 주차장 1,112㎡

나. 시설외지구

○ 편익시설 : 공작물 35기 → 공작물 37기 (증 2기)

- 신설 : 간이화장실 1기, 간이세척장 1기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

7. 열람장소 :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3425-6444)

8.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일자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지구별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계		713,416	58,051	19	4,008.9	4,888.7	283	713,416	62,043	19	4,008.9	4,888.7	285	
공원시설구역	소 계	142,487	38,057	15	3,695.9	4,575.7	255	142,487	38,410	15	3,695.9	4,575.7	255	
	생태공원지구	53,291	9,157	5	827.9	1,408.7	76	53,291	9,157	5	827.9	1,408.7	76	변경없음
	배수지지구	19,056	7,274	2	197	197	85	19,056	7,274	2	197	197	85	변경없음
	화훼원지구	3,887	1,228	3	410	410	9	3,887	1,228	3	410	410	9	변경없음
	방아다리지구	66,253	20,398	5	2,261	2,560	85	66,253	20,751	5	2,261	2,560	85	
시설지구 외		570,929	23,633	4	313	313	35	570,929	23,633	4	313	313	37	

공원시설구역률	(142,487 ÷ 713,416) × 100% = 19.97%	(142,487 ÷ 713,416) × 100% = 19.97%	법정 20%이하
시 설 률	(58,051 ÷ 713,416) × 100% = 8.14%	(62,043 ÷ 713,416) × 100% = 8.70%	법정 20%이하
건 폐 율	(4,008.9÷ 713,416) × 100% = 0.56%	(4,008.9÷ 713,416) × 100% = 0.56%	법정 4%이하

도시계획시설(일자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지구별조서

가. 총괄표(위치: 강동구 둔촌동 산 140번지 일대)

○ 방아다리지구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계		66,253	20,398	5	2,261	2,560	85	66,253	20,751	5	2,261	2,560	85	
기반시설	소 계	7,647	7,647					7,935	7,935					
	도 로	7,012	7,012					7,327	7,327					
	광 장	635	635					608	608					
조경시설		3,656	3,656				1	3,656	3,656				1	
휴양시설		145	145				23	145	145				23	
운동시설		3,822	3,822	2	1,685	1,685	3	2,775	2,775	2	1,685	1,685	3	
교양시설		2,016	2,016	1	438	737		2,016	2,016	1	438	737		
편익시설		3,112	3,112	2	138	138		4,224	4,224	2	138	138		
관리시설							58						58	
녹지 및 기타		45,855						45,502						

공원시설구역 내 시 설 률	(20,398 ÷ 66,253) × 100% = 30.79%	(20,751 ÷ 66,253) × 100% = 31.32%	법정 40%이하
건 폐 율	(2,261 ÷ 66,253) × 100% = 3.41%	(2,261 ÷ 66,253) × 100% = 3.41%	법정 8%이하

서울시보 제3522호
서울특별시
2019. 5. 30.(목)

나. 시설조서

○ 방아다리지구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 (m2)	건축물(m2) 연면적 (m2)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 (m2)	건축물(m2) 연면적 (m2)	공작물 (기)	
합 계				66,253	20,398		5동	2,261	2,560	85			66,253	20,751		5동	2,261	2,560	85	증 353㎡
기반시설	소 계			7,647	7,647								7,935	7,935						증 288㎡
	도 로			7,012	7,012								7,327	7,327						증 315㎡
	광 장	가	3개소	635	635						가	3개소	608	608						감 27㎡
		가-1	둔촌동 산124	(18)	(18)						가-1	둔촌동 산124	(18)	(18)						
		가-2	둔촌동 산125	(379)	(379)						가-2	둔촌동 산125	(352)	(352)						감 27㎡
		가-3	둔촌동 573	(238)	(238)						가-3	둔촌동 573	(238)	(238)						
조경시설	소 계			3,656	3,656					1			3,656	3,656					1	
	계 류	나	둔촌동 산119	979	979						나	둔촌동 산119	979	979						
	못	다	둔촌동 산119	1,318	1,318						다	둔촌동 산119	1,318	1,318						
		다-1	둔촌동 산119	(648)	(648)						다-1	둔촌동 산119	(648)	(648)						
		다-2	둔촌동 565	(670)	(670)						다-2	둔촌동 565	(670)	(670)						
	관상용식수대	라	둔촌동 산119	1,359	1,359						라	둔촌동 산119	1,359	1,359						
	파 고 라	①	1개소			목재				1	①	1개소			목재				1	
휴양시설	소 계			145	145					23			145	145					23	
	쉼 터	마	3개소	145	145						마	3개소	145	145						
		마-1		(45)	(45)						마-1		(45)	(45)						
		마-2		(23)	(23)						마-2		(23)	(23)						
		마-3		(77)	(77)						마-3		(77)	(77)						
	등의자	②	18개소							18	②	18개소							18	
	평의자	③	3개소							3	③	3개소							3	
	야외탁자	④	2개소							2	④	2개소							2	
운동시설	소 계			3,822	3,822		2동	1,685	1,685	3			2,775	2,775		2동	1,685	1,685	3	감 1,047㎡
	실외배드민턴장	바	둔촌동 산125	705	705															폐지 감 705㎡
	실내배드민턴장	(1)	둔촌동 산125	1,175	1,175		1동	1,175	1,175		(1)	둔촌동 산125	1,175	1,175		1동	1,175	1,175		
	실내체육관	(2)	둔촌동 산141	510	510		1동	510	510		(2)	둔촌동 산141	510	510		1동	510	510		
	농 구 장	사	둔촌동 산125	342	342															폐지 감 342㎡
	X-GAME장	아	둔촌동 산125	1,090	1,090						사	둔촌동 산125	1,090	1,090						
	역기올리기	⑤	2개소							2	⑤	2개소							2	
	윗몸일으키기	⑥	1개소							1	⑥	1개소							1	

서울시 제2019-22호
서울특별시 공보
2019. 5. 30.(목)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 (m2)	건축물(m2) 연면적 (m2)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 (m2)	건축물(m2) 연면적 (m2)	공작물 (기)	
교양시설	소계			2,016	2,016		2동	438	727				2,016	2,016		2동	438	727		
	야외무대	자	둔촌동 산125	201	201						아	둔촌동 산125	201	201						
	문화회관	(3)	둔촌동 산119	1,815	1,815		1동	438	737		(3)	둔촌동 산119	1,815	1,815		1동	438	737		
편익시설	소 계			3,112	3,112		2동	138	138				4,224	4,224		2동	138	138		증 1,112㎡
	주 차 장	차	3개소	2,961	2,961						자	3개소	4,073	4,073						증 1,112㎡
		차-1	둔촌동 산125	(656)	(656)						자-1	둔촌동 산125	(1,768)	(1,768)						증 1,112㎡
		차-2	둔촌동 6-13	(752)	(752)						자-2	둔촌동 6-13	(752)	(752)						
		차-3	둔촌동 562	(1,553)	(1,553)						자-3	둔촌동 562	(1,553)	(1,553)						
	화 장 실	(4)	2개소	151	151		2동	138	138		(4)	2개소	151	151		2동	138	138		
		(4)-1	둔촌동 산125	(134)	(134)		1동	(134)	(134)		(4)-1	둔촌동 산125	(134)	(134)		1동	(134)	(134)		
		(4)-2	둔촌동 산119	(17)	(17)		1동	(4)	(4)		(4)-2	둔촌동 산119	(17)	(17)		1동	(4)	(4)		
관리시설	소 계									58									58	
	안 내 판	⑦	5개소							5	⑦	5개소							5	
	조 명 등	⑧	46개소							46	⑧	46개소							46	
	쓰레기분리 수거함	⑨	7개소							7	⑨	7개소							7	
녹지 및 기타				45,855									45,502							감 353㎡

다. 도로조서

○ 방아다리 지구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2,540.0)	(7,012.0)				
변경					2,673.0	7,327.0				
당초	소로	계			37.0	411.0				
		3	1	3.0	137.0	411.0	진입로	둔촌동 6-14	둔촌동 산14-1	
당초	산책로	계			(2,403.0)	(6,601.0)				
변경					2,536.0	6,916.0				
당초		3	1	2.0	242.0	484.0	산책로	둔촌동 산11-3	둔촌동 산13-1	
			2	3.0	86.0	258.0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당초			3	3.0	(290.0)	(870.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변경				3.0	251.0	775.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당초			4	3.0	114.0	342.0	산책로	둔촌동 산124	둔촌동 산125	
			5	2.5	16.0	40.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당초			6	3.0	(106.0)	(318.0)	산책로	둔촌동 산124	둔촌동 산125	
변경				3.0	105.0	315.0	산책로	둔촌동 산124	둔촌동 산125	
당초			7	3.0	(29.0)	(87.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변경				3.0	67.0	234.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당초			8	3.0	230.0	690.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당초			9	3.0	(22.0)	(66.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571	
변경				3.0	22.0	65.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571	
당초			10	3.0	236.0	708.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11	2.0	7.0	14.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12	2.0	76.0	152.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13	2.0	24.0	48.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14	3.0	75.0	252.0	산책로	둔촌동 6-13	둔촌동 6-12	
			15	1.2	15.0	18.0	산책로	둔촌동 6-5	둔촌동 6-5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3	16	2.5	10.0	25.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17	1.5	8.0	12.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18	3.0	377.0	1,131.0	산책로	둔촌동 565	둔촌동 565	
			19	36.5	74.0	259.0	산책로	둔촌동 565	둔촌동 565	
			20	3.0	81.0	243.0	산책로	둔촌동 565	둔촌동 565	
			21	2.0	121.0	242.0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22	2.0	48.0	96.0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23	2.0	45.0	90.0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24	2.0	43.0	86.0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25	2.5	28.0	70.0	산책로	둔촌동 산119	둔촌동 산119	
신설			26	3.0	7.0	23.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571	
			27	2.5	60.0	145.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28	1.2	61.0	76.0	산책로	둔촌동 산125	둔촌동 산125	

도시계획시설(일자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지구별조서

가. 총괄표(위치: 강동구 둔촌동 산140번지 일대)

○ 시설지구 외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계		570,929	23,633	4	313	313	35	570,929	23,633	4	313	313	37	
기반시설	소 계	16,461	16,461					16,461	16,461					
	도 로	13,350	13,350					13,350	13,350					
	광 장	3,111	3,111					3,111	3,111					
조경시설		3,243	3,243				4	3,243	3,243				4	
교양시설		670	670					670	670					
휴양시설		2,540	2,540				20	2,540	2,540				20	
편익시설		420	420	3	14	14		420	420	3	14	14	2	
관리시설		299	299	1	299	299	11	299	299	1	299	299	11	
녹지 및 기타		547,296						547,296						

공원시설구역 내 시 설 률	(23,633 ÷ 570,929) × 100% = 4.14	(23,633 ÷ 570,929) × 100% = 4.14	법정 20%이하
건 폐 율	(313 ÷ 570,929) × 100% = 0.055%	(313 ÷ 570,929) × 100% = 0.055%	법정 4%이하

나. 시설조서

○ 시설지구 외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m2)	건축물(m2) 연면적(m2)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m2)	건축물(m2) 연면적(m2)	공작물(기)	
합 계				570,929	23,633		4동	313	313	35			570,929	23,633		4동	313	313	37	
기반시설	소 계			16,461	16,461								16,461	16,461						
	도 로			13,350	13,350								13,350	13,350						
	광 장	가	5개소	3,111	3,111						가	5개소	3,111	3,111						
		가-1	길동 산12	(312)	(312)						가-1	길동 산12	(312)	(312)						
		가-2	길동산 11-3	(710)	(710)						가-2	길동산 11-3	(710)	(710)						
		가-3	길동산 14-1	(528)	(528)						가-3	길동산 14-1	(528)	(528)						
		가-4	길동 204	(663)	(663)						가-4	길동 204	(663)	(663)						
		가-5	길동 206-1	(898)	(898)						가-5	길동 206-1	(898)	(898)						
조경시설	소 계			3,243	3,243					4			3,243	3,243					4	
	야생초화원	나	4개소	1,236	1,236						나	4개소	1,236	1,236						
		나-1	길동 산9	(212)	(212)						나-1	길동 산9	(212)	(212)						
		나-2	길동 산8	(351)	(351)						나-2	길동 산8	(351)	(351)						
		나-3	길동 산7-2	(363)	(363)						나-3	길동 산7-2	(363)	(363)						
		나-4	길동 3	(310)	(310)						나-4	길동 3	(310)	(310)						
	연 못	다	길동 274	648	648						다	길동 274	648	648						
	암석원	라	길동 산49	1,359	1,359						라	길동 산49	1,359	1,359						
	초 정	①	1개소							1	①	1개소							1	
	파고라	②	3개소							3	②	3개소							3	
교양시설	소 계			670	670								670	670						
	영농체험장	마	길동 274	670	670						마	길동 274	670	670						

서울시보 제3522호 서울특별시 2019. 5. 30.(목)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m2)	건축물(m2) 연면적(m2)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구조	규모	건축물(m2) 바닥면적(m2)	건축물(m2) 연면적(m2)	공작물(기)	
	소 계			2,540	2,540					20			2,540	2,540					20	
휴양시설	쉼 터	바	4개소	172	172						바	4개소	172	172						
		바-1	길동 산49	(23)	(23)						바-1	길동 산49	(23)	(23)						
		바-2	길동 산49	(77)	(77)						바-2	길동 산49	(77)	(77)						
		바-3	길동 산49	(58)	(58)						바-3	길동 산49	(58)	(58)						
		바-4	길동 산11-3	(14)	(14)						바-4	길동 산11-3	(14)	(14)						
	캠 핑 장	사	길동 204,205	2,368	2,368						사	길동 204,205	2,368	2,368						
	평 의 자	③	12개소							12	③	12개소							12	
	등 의 자	④	6개소							6	④	6개소							6	
	야외탁자	⑤	2개소							2	⑤	2개소							2	
	소 계			420	420		3동	14	14				420	420		3동	14	14	2	
편익시설	화 장 실	(1)	3개소	69	69		3동	14	14		(1)	3개소	69	69		3동	14	14		
		(1)-1	길동 산42-2	(22)	(22)		1동	(6)	(6)		(1)-1	길동 산42-2	(22)	(22)		1동	(6)	(6)		
		(1)-2	길동 산49	(17)	(17)		1동	(4)	(4)		(1)-2	길동 산49	(17)	(17)		1동	(4)	(4)		
		(1)-3	길동 산50-6	(30)	(30)		1동	(4)	(4)		(1)-3	길동 산50-6	(30)	(30)		1동	(4)	(4)		
	약 수 터	⑥	2개소	132	132						⑥	2개소	132	132						
		⑥-1	길동 산55	(72)	(72)						⑥-1	길동 산55	(72)	(72)						
		⑥-2	길동 산11-3	(60)	(60)						⑥-2	길동 산11-3	(60)	(60)						
	음 수 대	⑦	길동 240,205	219	219						⑦	길동 240,205	219	219						
	화 장 실										⑩	길동 206-1	1개소						1	
	세 척 장										⑪	길동 206-1	1개소						1	
	소 계			299	299		1동	299	299	11			299	299		1동	299	299	11	
관리시설	관리소외	아	길동 203-2	299	299		1동	299	299		아	길동 203-2	299	299		1동	299	299		
	안 내 판	⑧	10개소							10	⑧	10개소							10	
	약수터저수조	⑨	1개소							1	⑨	1개소							1	
녹지 및 기타				547,296									547,296							

다. 도로조서

○ 시설지구 외

구 분	등 급	류 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5,225.0	13,350				
당 초	소 로	계			508.0	2,576				
		3 류	1	6.0	272.0	1,632	진입로	길동 산52-7	길동 산33	
			2	4.0	236.0	944	진입로	길동 산18-1	길동 산18-18	
당 초	산책로	계			4,717.0	10,774				
			1	2.0	300.0	600	산책로	길동 산5-2	길동 산7-3	
			2	1.5	42.0	63	산책로	길동 산5-2	길동 산5-2	
			3	1.5	44.0	66	산책로	길동 산6	길동 산7	
			4	1.5	38.0	57	산책로	길동 산8	길동 산8	
			5	1.5	30.0	45	산책로	길동 산8	길동 산8	
			6	1.5	30.0	45	산책로	길동 산9	길동 산7-3	
			7	1.5	266.0	399	산책로	길동 산12-1	길동 산20	
			8	2.0	315.0	630	등산로	길동 산49	길동 204	
			9	2.0	56.0	112	산책로	길동 산53	길동 산53	
			10	2.0	21.0	42	등산로	길동 산55	길동 산53	
			11	2.0	131.0	262	산책로	길동 산55	길동 산55	
			12	2.0	261.0	522	산책로	둔촌동 산13-1	둔촌동 산12	
			13	2.0	117.0	234	등산로	둔촌동 산12	둔촌동 산11-3	
			14	2.0	85.0	170	등산로	둔촌동 산14-1	둔촌동 산14-1	
			15	2.0	242.0	484	등산로	둔촌동 산16-1	둔촌동 산18-17	
			16	4.0	66.0	264	등산로	길동 산20	길동 산42-2	
			17	2.0	54.0	108	등산로	길동 산43	길동 산43	
			18	3.0	54.0	162	산책로	길동 산42-2	길동 산42-2	
			19	2.0	193.5	387	등산로	길동 산52-7	길동 산53	
			20	2.0	9.0	18	등산로	길동 산12	길동 산12	
			21	2.0	48.0	96	등산로	길동 산18-18	길동 산 18-18	
			22	2.0	339.0	678	등산로	길동 산13-1	길동 산18-1	
			23	2.0	82.0	164	등산로	길동 산18-18	길동 산18-17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 초	산책로		24	3.0	19.0	57	산책로	길동 204	길동 204	
			25	5.0	19.0	95	산책로	길동 204	길동 204	
			26	3.0	29.0	87	산책로	길동 204	길동 204	
			27	3.0	295.0	885	산책로	길동 204	길동 204	
			28	2.0	47.0	94	산책로	길동 204	길동 204	
			29	2.0	54.0	108	산책로	길동 204	길동 204	
			30	2.0	47.0	94	산책로	길동 204	길동 205	
			31	2.0	39.0	78	산책로	길동 205	길동 205	
			32	6.0	51.0	306	산책로	길동 206-1	길동 206-1	
			33	2.5	212.0	530	산책로	길동 산206-2	길동 산49	
			34	3.0	377.0	1131	산책로	길동 산49	길동 산49	
			35	3.5	74.0	259	산책로	길동 산49	길동 274	
			36	3.0	81.0	243	산책로	길동 274	길동 273	
			37	2.0	121.0	242	산책로	길동 산49	길동 산49	
			38	2.0	48.0	96	산책로	길동 산49	길동 산49	
			39	2.0	45.0	90	산책로	길동 산49	길동 산49	
			40	2.0	43.0	86	산책로	길동 산49	길동 산49	
			41	3.0	66.0	198	산책로	길동 산49	길동 산49	
			42	3.0	54.0	162	산책로	길동 산50-9	길동 산50-10	
			43	1.5	14.0	21	산책로	길동 산50-9	길동 산50-9	
			44	1.5	26.0	39	산책로	길동 산52	길동 산52	
			45	2.0	83.0	166	산책로	길동 산18	길동 산18	
			46	2.0	49.5	99	산책로	길동 산73	길동 산73	

- 방아다리지구 조성계획도(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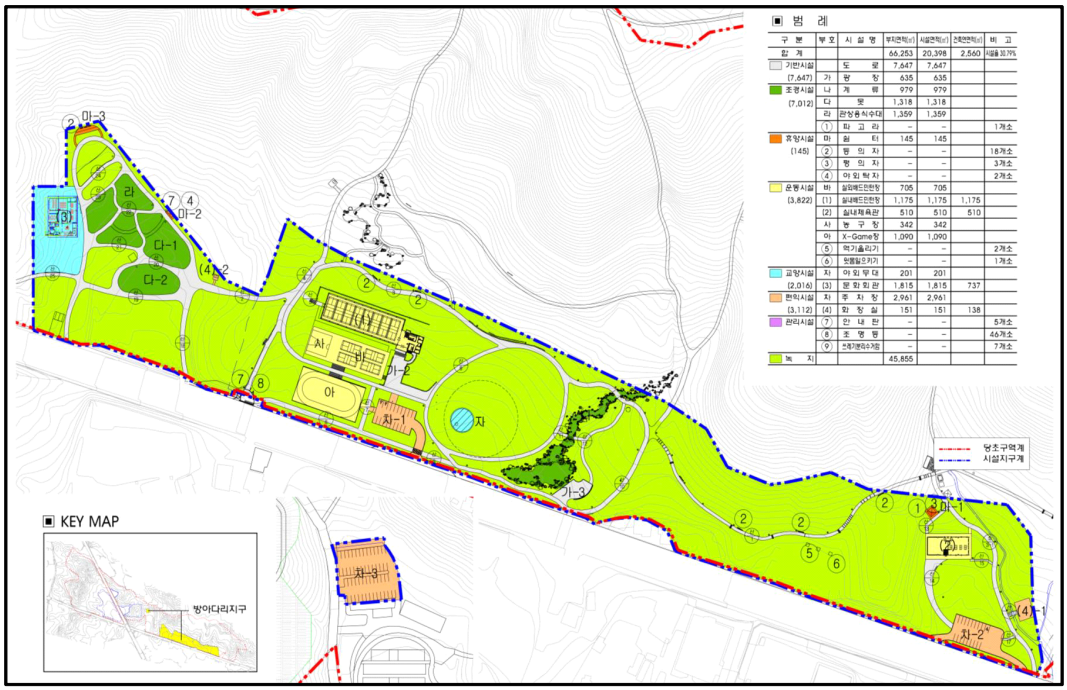

- 방아다리지구 조성계획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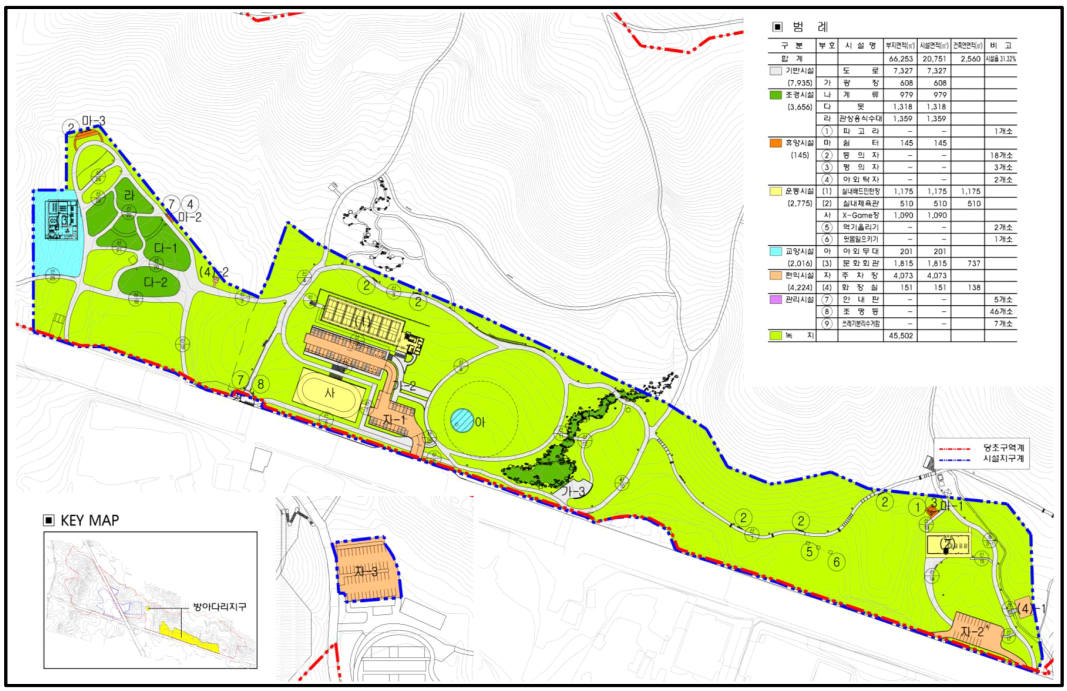

- 시설외지구 조성계획도(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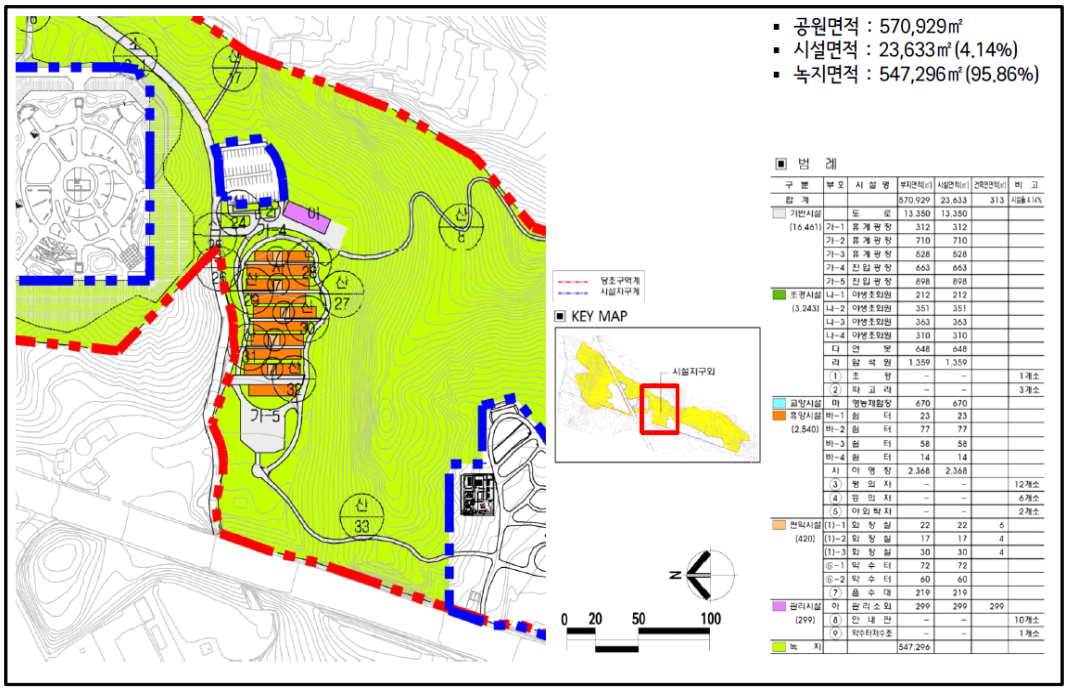

- 시설외지구 조성계획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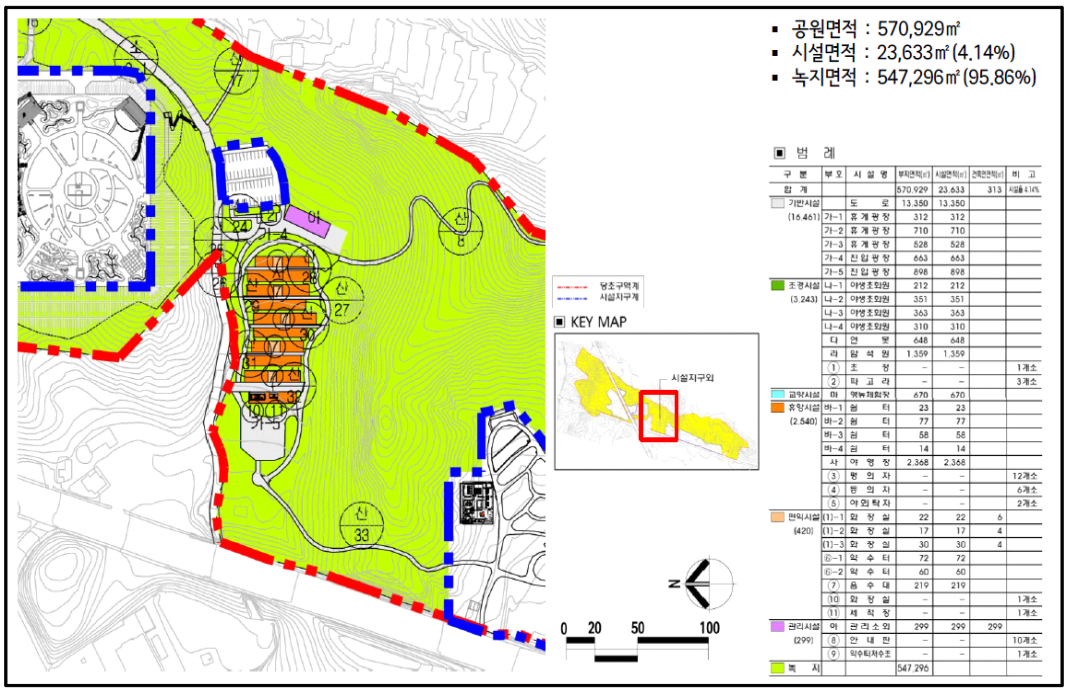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시계 내 한강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2척 (기선1,부선1)	정박대기	'19.06.01. ~ '19.06.30.	'19. 05.21.
			선박 1척 (부선1)	정박대기	'19.05.25. ~ '19.06.0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 내 한강 (올림픽대교)	선박 2척	정밀점검	'19.06.03.~ '19.06.09.	'19. 05.2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 내 한강 (한남대교)	선박 2척	정밀점검	'19.06.03.~ '19.06.07.	'19. 05.2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서울시계 내 한강 (성산대교 남단)	선박 2척	성능개선공사	'19.05.25.~ '19.12.31.	'19. 05.2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시계 내 한강 (행주대교)	선박 2척	고양시 문화재단 불꽃행사	'19.05.25. (1일간)	'19. 05.2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119특수구조단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94	서울시계 내 한강 (서강대교~행주대교)	선박 8척	여의도 수난구조대 청사주변 준설공사	'19.05.24.~ '19.06.17.	'19. 05.2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계 내 한강 (아차산대교)	선박 2척	정밀안전진단	'19.06.10.~ '19.06.30.	'19. 05.27.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9-136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사전통지분)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9.5.30. ~ 6.12.(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9.6.13. ~ 2019.6.26.(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자진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516	백*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나길 **	(사당동)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517	하*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길 **	(사당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524	이*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	***동****호 (석수동, 석수e편한세상아파트)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527	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호로 ***	***동 ***호 (금호동*가, 두산아파트)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529	FALLON * JAMES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가길 **	(용산동*가)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532	이*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다길 *	(동빙고동)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536	이*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번길 **	***호 (오천읍)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544	한*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길 **	***동****호 (상도동, 상도에스에이치빌)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550	이*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길 *	***호 (역삼동)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551	김*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	(묵동)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560	안*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	***동 ****호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 *통*반)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561	김*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번길 *	***동****호 (화도읍, 남양주월산사랑으로부영*단지)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588	강*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길 ***	****동***호 (상봉동, 태영아파트상봉동대시앙)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590	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번길 **	***동 ***호 (곤지암읍, 청우리치빌)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599	강*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	(공덕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자진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604	최*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	(신길동)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635	(주)픽*라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	***호 (합정동)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636	X* HONGRI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번길 **-*	*층 ***호 (부평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643	이*군,이*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길 *	***호 (방화동)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645	주식회사 헤*라이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길 **-*	*층 (서교동, 우암빌딩)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649	임*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B**호 (개포동, 효창빌라)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650	신*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길 **	***동***호 (신월동, 금강아파트)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654	표*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 **-*	***호 (잠원동)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656	김*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길 **	(이태원동)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661	배*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다길 **	*층 (한남동)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5	000667	김*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가길 *	(자양동)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39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1-28번지 외 6필지
   - 면 적 : 8,505.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복합시설공간 조성
   - 내 역 : 다목적 광장 및 농구장 1개소, 족구장 1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9.05.23.~2024.05.22.(2019.05.23.~2020.01.2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40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91-2
   - 면 적 : 일시점용 32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 열수송관 보수공사
   - 내 역 : 열수송관 보수를 위한 굴착공사(H=3.0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9.05.23.~2019.06.22.(점용기간, 공사기간 동일)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41 문의 : ☎120